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Ⅰ)

Correctional Policy and Intervention to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of Released Prisoners (Ⅰ)

권수진 · 박성훈 · 금용명 · 라광현 · 허 황

KICJ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Ⅰ)

연구책임자

권 수 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성 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 용 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라 광 현 동아대학교 부교수

허 황 동아대학교 부교수

연구지원

홍 정 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우 지 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박 수 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교정본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민간 갱생보호기관 등 관계기관은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법무보호복지(갱생보호)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의 한계를 개선하여 현행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촉진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2년에 걸쳐 수행되는 연속과제로 1차년 연구에서는 국내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령, 정책, 실태,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고,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그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주관적 현실과 법무보호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독일, 일본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전제조건,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여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회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법무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귀한 의견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윤창식 소장님, 법무부 권창모 서기관님을 비롯하여, 심층면접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를 함께 수행한 교도소연구소 금용명 소장님, 동아대학교 라광현 교수님과 허 황 교수님, 연구원의 박성훈 선임연구위원, 홍정운 조사연구원, 우지우 인턴연구원, 박수일 인턴연구원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위원 권 수 진



목 차

국문요약	1
------------	---

제1장 권수진

서론	11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20

제2장 권수진

우리나라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23
-------------------------	----

제1절 교정시설 입·출소 및 재복역 현황	25
1. 교정시설 입소 및 출소 현황	25
2. 재복역률 현황	27
가. 출소자 재복역률	27
나.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자 재범률	29
제2절 출소 전 사회복귀 지원	31
1. 근거 법령	31
가. 형집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1

나.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33
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35
라.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35
2. 교정시설의 출소예정자 사회정착 지원	36
가. 교정교육	36
나.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39
다. 사회적 처우	43
라. 중간처우시설	53
제3절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	58
1. 근거 법령	58
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8
나. 주요 내용	58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62
가. 조직 및 인원	62
나. 주요 사업	63
3. 민간기관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78
가. 민간 갱생보호법인	78
나. 민간 갱생보호법인 현황	81
다. 주요 사업	86
제4절 소결	89

제3장 박성훈

출소(예정)자 심층면접 분석 결과 93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95
1. 출소자의 재범요인 관련 연구	95
2. 출소자 관련 연구 방법	103
가. 양적 연구	103
나. 질적 연구	107
제2절 조사의 설계	112
1. 조사 목적	112

2. 조사 방법	112
3. 조사 내용	114
4. 참여자 특성	115
제3절 심층면접 결과	120
1. 출소 준비 및 계획	120
가. 과거 출소와 다른 점	120
나. 출소 이후 계획	124
다. 가족과의 관계	128
2. 출소 이후 기대와 우려	130
가. 출소 이후 우려되는 것	131
나. 출소자에게 필요한 지원	135
다. 출소 이후 사회적 낙인	138
3. 재범에 대한 인식	143
가. 재범의 원인	143
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	147
4. 출소자 지원정책 인식	150
가. 교정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151
나. 갹생보호제도 및 기관에 대한 인식	155
제4절 소결	165
1. 주요 결과	165
2. 정책 시사점	167
가. 교정시설 프로그램	167
나. 법무보호복지 서비스	169

제4장 라광현, 허황, 금융명

주요국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173

제1절 미국	175
1. 개관	175
2. 출소자 현황	176
가.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입·퇴소 현황	176

나. 연방 및 주 교도소 수용 현황	178
다. 연방 및 주 교도소 석방 유형	178
라. 재범률 관련 통계	179
3. 출소 전 사회복귀 지원	180
가. 근거 법령	180
나. 담당 조직 및 인력	181
다. 관련 프로그램	185
라. 지원 현황	195
4.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	196
가. 근거 법령	196
나. 공공기관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197
다. 민간기관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201
5. 요약 및 시사점	203
제2절 독일	206
1. 개관	206
가. 연구를 위한 전제로서 독일의 형집행제도의 이해	206
나. 교정시설의 현황 - 니더작센주를 예로 들어	209
2. 출소자 현황	215
3. 출소 전 사회복귀 지원	217
가. 근거 법령	217
나. 소위 전환관리(Übergangsmanagement)	232
4.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	240
가. 의의 및 법적 근거	240
나. 범죄자지원 주체	242
5. 요약 및 시사점	252
제3절 일본	255
1. 개관	255
2. 출소자 현황	256
가. 형법범 검거자 중 재범자 및 재범자율	256
나. 신수형자 중 재입자 및 재입자율	257
다. 출소 수형자 중 2년 이내 재입자 및 재입율	257
라. 중요 죄명·특성별 2년 이내 재입율	259
3. 출소 전 사회복귀 지원	261

가. 근거 법령	261
나. 수형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준비	262
다. 평가	273
4.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	274
가. 근거 법령	274
나. 공공기관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275
다. 민간기관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285
라. 평가	292
5. 요약 및 시사점	292
제4절 소결	296

제5장 권수진, 박성훈

요약 및 정책제언 299

제1절 요약	301
1. 우리나라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301
가. 교정시설 입·출소, 재복역률 현황	301
나. 출소 전 사회복귀 지원	302
다.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	303
2.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현황 조사연구	303
3. 외국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306
가.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 마련	306
나. 교정시설 입소 시부터 사회복귀 준비	306
다.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	306
라. 민간기관의 참여, 협력기업의 확보	307
마.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307
제2절 정책제언	308
1.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 더 일찍, 더 많이, 더 확실하	308
가. 교정시설 입소 시부터 사회복귀 준비	308
나. 사회와의 연계, 사회적 처우 확대	309

다. 교정시설과 사회와의 중간 완충지대 마련	309
2.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전제조건	310
가. 근거 법령의 정비 : 독립 법률의 제정	310
나.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311
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관련 전문인력 확보	311
라. 민간 자원 확보	312
3.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313
가. 교정시설 프로그램	313
나. 법무보호복지 서비스	315
 참고문헌	 317
Abstract	331

표 차례

[표 2-1-1] 교정시설 입·출소 현황(2013~2022년)	25
[표 2-1-2] 출소사유별 재복역 인원 현황(2013~2022년)	27
[표 2-1-3] 최근 5년간 5대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자 재범률(2016~2020년)	29
[표 2-2-1] 수형자 교육 인원 현황(2013~2022년)	36
[표 2-2-2] 수형자 교육 이수 현황(2013~2022년)	37
[표 2-2-3] 수형자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자 현황(2013~2022년)	38
[표 2-2-4] 수형자 교화프로그램 운영 현황(2013~2022년)	38
[표 2-2-5] 교도작업 취업 현황(2013~2022년)	39
[표 2-2-6] 외부통근 및 개방지역작업 현황(2013~2022년)	40
[표 2-2-7] 교도작업 작업장려금 지급 현황(2013~2022년)	41
[표 2-2-8] 직업훈련 인원 현황(2013~2022년)	42
[표 2-2-9] 수형자 취업 지원 현황(2013년~2022년)	43
[표 2-2-10] 귀휴 인원 현황(2013년~2022년)	44
[표 2-2-11] 귀휴자 형기별 현황(2013년~2022년)	44
[표 2-2-12] 귀휴자 집행률별 현황(2013년~2022년)	46
[표 2-2-13]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현황(2013년~2022년)	47
[표 2-2-14]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형기별 현황(2013년~2022년)	48
[표 2-2-15]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현황(2013년~2022년)	49
[표 2-2-16]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형기별 현황(2013년~2022년)	50
[표 2-2-17] 가족접견 실시 수형자 현황(2017년~2022년)	51
[표 2-2-18]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 현황(2013년~2022년)	52
[표 2-2-19]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 형기별 현황(2013년~2022년)	53
[표 2-2-20] 개방교도소 현황	54
[표 2-2-21] 소망의 집 현황	56
[표 2-2-22] 희망센터 현황	57
[표 2-3-23] 최근 5년 숙식제공 실적	63
[표 2-3-24] 최근 5년 긴급지원 실적	64
[표 2-3-25] 최근 5년 기타 자립지원 실적	65

[표 2-3-26] 최근 5년 주거지원 실적	66
[표 2-3-27] 최근 5년 가족친화 프로그램 실적	66
[표 2-3-28] 최근 5년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 프로그램 실적	67
[표 2-3-29] 최근 5년 학업지원 실적	68
[표 2-3-30] 최근 5년 결혼지원 실적	68
[표 2-3-31] 최근 5년 일반 직업훈련 지원 실적	69
[표 2-3-32] 최근 5년 허그 직업훈련 지원 실적	69
[표 2-3-33] 취업알선 지원 현황	71
[표 2-3-34] 단계별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지원 내역	71
[표 2-3-35]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지원 실적 - 참여 현황	72
[표 2-3-36]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지원 실적 - 수료 및 취업 현황	73
[표 2-3-37]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지원 실적 - 취업자 근속 현황	73
[표 2-3-38]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지원 실적 - 수당 지원 현황	74
[표 2-3-39] 창업지원자 업종 현황	75
[표 2-3-40] 최근 5년 사전상담 지원 실적	76
[표 2-3-41] 최근 5년 심리상담 실적	76
[표 2-3-42] 최근 5년 사후관리 및 멘토링 실적	77
[표 2-3-43] 사회성 향상 교육 종류	78
[표 2-3-44] 최근 5년 사회성 향상 교육 실적	78
[표 2-3-45] 민간 갱생보호법인 현황	82
[표 2-3-46] 2022년 갱생보호사업 현황	87
[표 2-3-47] 최근 3년간 법인별 사업실적	87
[표 3-1-1] 출소자의 사회정착 관련 선행연구	99
[표 3-1-2] 수형자 대상 심층면접 질문지	107
[표 3-1-3] 출소자 취업지원관 대상 심층면접 질문지	108
[표 3-1-4] 상담심리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질문지	109
[표 3-2-5] 조사의 설계	114
[표 3-2-6] 출소예정자 및 출소자 대상 심층면접 질문지	114
[표 3-2-7]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116
[표 3-3-8] 출소 준비 및 계획	120
[표 3-3-9] 출소 이후 기대와 우려	130
[표 3-3-10] 재범에 대한 인식	143
[표 3-3-11] 출소자 지원정책 인식	150
[표 4-1-1] 미국의 교도소 입·퇴소 인구 추세	177

[표 4-1-2] 연방 및 주 교도소 입·퇴소 현황(2021년)	178
[표 4-1-3] 연방 및 주 교도소 석방자 현황(2021년)	179
[표 4-1-4] BJS의 출소자 추적조사 결과	179
[표 4-1-5] SCA 재정지원 사업 보조금 프로그램 현황	195
[표 4-2-1] 독일 연방 전체에서 수용자의 수	208
[표 4-2-2] 사법집행시설 현황(2015년 11월 30일 기준)	215
[표 4-2-3] 입소자 등의 통계	216
[표 4-2-4] 출소자 등의 통계	216
[표 4-2-5] 민간시설 현황(2015년 11월 30일 기준)	246
[표 4-3-1] 형법범 검거자 중 재범자 및 재범자율	256
[표 4-3-2] 신수형자 중 재입자 및 재입자율	257
[표 4-3-3] 만기석방과 가석방 출소자의 2년 이내 재입자 및 재입율	258
[표 4-3-4] 범죄유형별 2년 이내 재입자 및 재입율	259
[표 4-3-5] 고령자와 여성 출소 수형자의 2년 이내 재입자 및 재입율	261
[표 4-3-6] 형사시설의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복지전문관 배치 추이	268
[표 4-3-7] 형사시설에서의 특별개선지도	272
[표 4-3-8] 종합적 취업지원대책의 대상자 중 취업자 수 및 비율	272
[표 4-3-9] 지방재범방지추진계획 수립 지방공공단체	273
[표 4-3-10] 특별조정 내역	284
[표 4-3-11] 약물사범 보호관찰대상자 중 치료·지원자	284
[표 4-3-12] 갇생보호시설 및 자립준비금 거주자	285
[표 4-3-13] 보호사 수 및 총족율	291
[표 4-3-14] 협력고용주 및 고용되어 있는 형무소 출소자	292



그림 차례

[그림 2-2-1] 귀휴자 형기별 인원 구성비(2013년~2022년)	45
[그림 2-2-2] 귀휴자 집행률별 인원구성비(2013년~2022년)	46
[그림 2-2-3]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형기별 인원 구성비(2013년~2022년)	49
[그림 2-3-1] 공단 기술교육원	70
[그림 2-3-2] 갱생보호 지원 절차	87
[그림 3-2-1] 심층면접 참여자의 성별 분포(명)	118
[그림 3-2-2] 심층면접 참여자의 연령 분포(명)	118
[그림 3-2-3] 심층면접 참여자의 범죄유형 분포(명)	119
[그림 3-2-4] 심층면접 참여자의 잔여형기 및 출소기간 분포(명)	119
[그림 3-3-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지원 및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안내지	158
[그림 4-1-1] 미국의 교도소 입·퇴소 인구 추세	177
[그림 4-1-2] 워싱턴 주 교정부 재진입국 조직도	183
[그림 4-1-3] 일반적인 교도소 조직도	184
[그림 4-2-1] 경찰에 접수된 형사사건의 처리유형(갈때기 모형)	208
[그림 4-2-2] 폐쇄형 및 개방형 집행에서 수감자 및 피감호자 수	2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교정본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민간 갇생보호기관 등 관계기관은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법무보호복지(갇생보호)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다만, 이러한 지원 노력에 한계가 있어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촉진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총 2년에 걸쳐 수행되는 것으로 이번 1차 년도에는 국내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령, 정책, 실태,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고, 출소에 정자 및 출소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그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주관적 현실과 법무보호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더해 미국, 독일, 일본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전제조건,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효과 제고하여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회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우리나라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가. 교정시설 입·출소, 재복역 현황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형자 중 매년 약 5만 명 이상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교정

2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1)

시설 출소자 중 재복역 인원 및 재복역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였으나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출소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형자의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 성공적인 사회정착, 재범방지 목적으로 관계 법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작업과 직업훈련, 사회적 처우(귀휴,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 만남의 집 이용, 사회봉사 및 사회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사회에서는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 관계법령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가 출소자 사회정착을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기관에서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숙식제공, 긴급지원, 기타 자립지원), 가족지원(주거지원, 가족희망, 학업지원, 결혼지원), 취업지원(직업훈련, 취업알선,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상담지원(사전상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멘토링, 사회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출소(예정)자 사회정착 지원 현황 조사연구

가. 출소 준비 및 계획

출소예정자들은 출소를 앞두고 과거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금주, 단약, 삶에 대한 태도 등에서 달라진 생각과 습관, 부모님, 자녀 등 가족과 지인에 대한 미안함, 재범 중단의 다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 수감 이후 아버지의 사망, 자녀의 출산 등 가족의 변화된 상황과 나이들에 대한 인식, 반복되는 재범의 굴레 속에서 여전히 느끼는 막막함을 언급하였다. 출소 이후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가족을 만나 도움 요청, 구직이나 자격증 취득, 주거 마련, 재혼 준비, 상담, 단약,

금주 등 행동 개선, 교정 선고 등 종교 활동을 언급하였다. 여러 사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교류가 유지되는 참여자와 그렇지 못한 참여자로 나뉘었다. 관계가 지속되는 가족은 주로 누나, 여동생 등 여자 형제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대부분 잦은 재범과 오랜 수형생활로 가족뿐 아니라 친구, 동료 등 다른 사회적 유대도 크게 나빠진 상태였다.

나. 출소 이후 예상되는 기대와 우려

출소 이후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은 참여자일수록 주거·생계를, 구직을 생각하는 참여자일수록 취업, 주거나 취업보다도 사회부적응을 걱정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출소 후 차게 될 전자발찌와 주변 사람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기고 자기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재범 또한 우려의 대상이었다. 출소자에게 필요한 지원으로는 숙식지원, 심리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이 언급되었고, 특히 나이가 어린 청소년 출소자와 점차 증가하는 정신질환 출소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출소 이후 겪었거나 겪게 될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시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참여자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참여자로 나뉘었다. 후자의 경우 사회적 낙인은 출소자 스스로 가지는 심리적 부담으로 여기거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 재범에 대한 인식

재범의 원인으로는 부족한 돈이나 힘겨운 생활고 같은 경제적 문제,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극복해야 할 술, 낮은 자기통제나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 같은 성격과 기질, 출소 이후 찾아오는 무료함과 외로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차별과 답답함이 거론되었다. 재범예방을 위해 출소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모, 아내, 자녀와 같은 가족의 도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가족과의 유대가 약한 경우 대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멘토의 도움, 출소자를 돕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언급되었고, 일부 참여자는 출소자 스스로의 변화의지(마음가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4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Ⅰ)

라. 출소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인식

교정시설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는 긍정적으로, 다른 참여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 소통의 기회,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의 계기, 강사의 공감 능력을 들었는데 특히 심리교육, 인성교육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평이한 내용, 강사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복역기간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는 점, 출소 이후 자신이 배운 기술이나 취득한 자격증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갱생보호제도에 대해서는 출소 후 생활지원을 제공받고 있는 참여자일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사전상담 교육의 내용이 어렵고 전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 심리상담 지원이 출소자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여성출소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 생활시설의 규율이 약하다는 점, 공단의 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은 개선사항으로 언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직원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 공단을 기반으로 삶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4. 외국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가.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 마련

미국의 Second Chance Act와 First Step Act, 독일의 재사회화법, 일본의 재범방지 등 추진에 관한 법률은 모두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법률이다. 각국은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출소자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소자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된다면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교정단계부터 출소자의 사회복귀 준비

독일은 범죄자의 교정시설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집행의 활용도를 높이

고, 가능한 한 시설 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시설 출소자가 출소 시 겪게 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독일은 전환관리를 통해 교정시설 입소단계부터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인력과 함께 개인별로 적합한 처우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처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 같이 교정단계에서부터 사회복귀 계획을 세우고 출소 준비를 시작한다면, 그만큼 사회복귀 효과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

독일은 수형자의 출소 후의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교정시설 입소단계부터 개인별로 적합한 처우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 인력(사회복지사, 사회교육사, 채무상담사 등)이 있다. 일본도 형사시설 입소 시부터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정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가 교정시설에 상주해 출소 준비를 지원한다면 출소 후 사회정착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라. 민간기업의 참여, 협력기업의 확보

미국은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에 의해 연방·주·지방 정부 외에도 민간기관에 상당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도 민간에 의한 범죄자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출소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인 협력 고용주에게 세제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며,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력기업의 확보가 중요하다.

마.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미국은 출소자 재범률 감소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완화를 목적으로 한 SCA, FSA 등에 근거해 연방·주·지방 정부 및 민간 조직에 상당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출소자 재범방지 및 사회정착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시행하면서 상호 협력과 지원으로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정당국과 출소자 지원 부처, 사회복지부처, 고용노동부처 등 관계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지역사회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5. 정책제언

가.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 더 일찍, 더 많이, 더 확실히

1) 교정시설 입소 시부터 사회복귀 준비

교정시설에서는 출소예정자에게 형기종료 약 2개월 전에 15시간 석방전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시기를 더 앞당기고 교육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도 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출소 1개월 전부터 1시간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출소 임박한 시점이 아니라 초기 교정단계부터 수형자가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사회와의 연계, 사회적 처우 확대

사회와 단절된 구금생활은 오히려 범죄자의 재사회화,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에 큰 장애가 된다. 특히, 장기수의 경우 가족, 사회와의 단절 기간이 긴 만큼 가족관계 회복,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사회적 처우를 확대하고, 중간처우시설을 확충하여 사회와 유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교정시설과 사회와의 중간 완충지대 마련

장기간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한 장기수형자에게 사회로의 복귀는 더욱 낮설고 막막하고 어려운 생활의 시작이다. 이에 교정시설과 사회와의 중간 완충지대(Halfway House)를 마련하여, 모든 수형자가 교정시설 출소 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곳에서 직장생활 등 일정 부분 사회를 경험하다가 출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전제조건

1) 근거 법령의 정비 : 독립 법률의 제정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은 보호관찰법이다. 그러나 보호관찰과 법무보호복지의 법적성격 차이, 법무보호복지업무의 정체성 재정립, 법무보호복지업무의 위상 제고,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전문성 확보,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제고, 법무보호업무의 유기적 민관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독립된 근거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출소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범방지 업무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교정본부와 각 교정시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보호관찰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간의 협조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공단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담당 직원이 각 교정시설에 배치되어 상주하면서 수형자의 출소 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관련 전문인력 확보

교정직원들의 주된 업무는 교정시설 내 수형자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직원과 함께 사전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법률자문, 경제자문, 의료자문, 생활자문, 심리상담 등 출소(예정)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4) 민간 자원 확보

(법무부 교정본부와 각 교정시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한국법무보

8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Ⅰ)

호복지공단 등) 관 주도의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 노력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교정시설과 민간 자원과 연계하면 참여도 더 높일 수 있고 효과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출소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모범수 출소자에 대한 국가의 보증, 및 보험 등의 방안을 활용해 출소자를 고용하는 협력기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1) 교정시설 프로그램

가) 인성교육 확대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을 확대하되, 적절한 콘텐츠와 강사섭외 등 인성교육에 대한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나) 석방전교육 내실화

석방전교육의 교육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고 교육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간처우와 연계하여 석방전교육이 지역사회 또는 개방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직업훈련제도 개선

교정시설에서부터 출소자의 근로 의식을 고취시키고 현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 동기나 근로 의식이 높은 수용자를 선별하고, 출소 후 관련 분야의 취업 및 고용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라) 작업장려금 활성화

작업장려금은 수형자 출소 후 사회정착을 위한 생활 준비금으로서 중요하다. 따라서 수형자가 교정시설에서 일정 수준의 작업장려금을 모아서 출소 후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교정시설 생산 물품(교도작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작업장려금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출소 이후 일정 기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법무보호 서비스

가) 사전상담 개선

석방전교육 중 진행하는 사전상담을 위해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거나 교정시설에 공단 직원이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수시로 사전상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출소자 대부분이 남성 중심인데, 여성 출소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 보인다.

나)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 서비스는 사전상담을 거쳐 출소 후 본인 신청 및 심사를 거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다만, 여타 사회서비스의 변화 추세에 맞게 법무보호복지 역시 온라인 서비스 전달체제로 점차 전환하고, 최소한의 서류만 구비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받도록 법무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다) 심리상담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심리상담(일대일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의 상담 주제에 제한이 없는데, 주요 호소 문제는 출소 이후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우울, 불안, 대인관계 위축, 가족 문제, 재범 충동, 각종 중독 문제이며, 심리상담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날로 수요가 높아지는 심리상담에 대한 출소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라) 임의적 서비스 개선

임의적 성격의 법무보호 서비스를 고위험군 혹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소자에게 부분적이거나 필요적 성격의 서비스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원할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공단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자원과 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다면 출소 이후 삶의 만족도 제고와 재범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제 1 장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Ⅰ)

서 론

권 수 진

제1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가.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의 정책적 함의

1)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 안전한 사회 구현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¹⁾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 즉 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는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²⁾ 이를 위해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 출소예정자에게 다양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은 출소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출소자, 보호관찰

1) 120대 국정과제 중 63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https://www.opm.go.kr/opm/info/government04.do>, 2023년 11월 1일 최종검색).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자를 보호, 감독함과 동시에 다방면에서 이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출소자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재범을 포함한 범죄의 증가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 원 이상으로, 이는 당시 국내 GDP의 약 16.2%에 해당하며, 국민 1인당 약 326.5만 원을 범죄의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⁴⁾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비용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예방 및 재범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한편, 2013년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받은 출소자의 재범율은 0.5%~3.6% 수준으로 전체 출소자의 재범역률 6.2%~22.3%에 비해 낮아 법무보호복지사업이 출소자 재범방지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법무보호복지서비스(갱생보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여기서도 강조된다.

3)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효과 제고

출소자가 사회로 복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생활지원, 직업훈련, 취창업지원, 상담지원 등 사회정착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교정본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민간

4) 본 연구가 추정한 2008년도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총 사회적 비용은 158조 7,29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 우리나라 GDP가 977조 7,865억 원이므로, 범죄의 사회적 비용이 GDP의 약 16.2%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 우리나라 총인구가 4,861만이므로, 국민 1인당 약 326.5만 원을 범죄의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함을 알 수 있다(박경래 외,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53, 397면 참조).

5) 감사원, 특정감사자료 2013. 3. 1., 39면; 원혜옥,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규정의 검토”, 법무보호연구 제1권, 2014, 15면에서 재인용.

갱생보호기관 등에서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법무보호복지(갱생보호)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다만,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소자들의 지원시설 및 지원 프로그램 이용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소자 혹은 지원 대상자 중 일부 출소자의 재범은 이러한 지원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출소자 지원 정책의 실태 및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재범을 높은 범죄군의 재범방지 및 사회정착을 위한 교정정책과 지원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해 재범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교정정책과 법무보호(갱생보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생계형 범죄자 중 절도 범죄자는 출소 후 3년 이내 재수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2021년 약 51%에 이르고 있고, 100만 원 이하 소액의 절도범죄는 약 70%에 이르고 있어 이들의 재범방지 및 사회정착을 위한 교정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재범률이 높은 고위험군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정착을 위해 교정시설을 비롯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⁶⁾

5) 정의와 효용의 균형을 추구하는 교정정책

오랜 기간 엄벌주의로 일관해 온 미국에서는 미래 교정의 방향을 정의(justice)와 효용(utility) 간 균형을 추구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세기 전 세계적인 경험과 연구를 통해 응보에 기반한 교정정책이 범죄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무너지고 있다. 서구 여러 나라의 교정정책은 이미 정의의 실현이라는 토대에 효용을 더하는 추세다. 여기서 효용은 공리주의 관점의 편익(benefits)에 기초한 것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구금 중심의 무력화를 통한 예방보다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국민 다수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대 효용의 교정정책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⁷⁾

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료(2022.03.10.).

7) Cullen and Jonson. "Correctional Theory: Context and Consequences", 2017, 18면.

나. 정책실무 부서의 동향

1)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근거 법률 분리·제정 추진

입법 연혁적으로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961년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었고, 보호관찰을 위해 1988년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었다가, 1995년 당시 보호관찰과 법무보호복지(갱생보호)는 범죄인의 사후관리와 재범방지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강화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취지에서 기존 갱생보호법은 폐지되고, 법무보호복지 관련 규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흡수 통합되었다.⁸⁾ 그러나 이후 보호관찰과 법무보호복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고, 보호관찰 업무와 법무보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체 기관의 법적 지위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⁹⁾ 이에 관계기관은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근거 법률을 분리·제정하여 출소자 지원정책의 활성화 및 체계화를 추진 중이고,¹⁰⁾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근거를 분리·제정하는 법률안이 제안되었다.¹¹⁾

2) 관계기관별 유기적 상호 협력체계 구축

현재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와 보호관찰과 등 관계기관이 각각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정기관, 보호관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역사회 간 유기적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교정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출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8) 홍완식,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법무보호연구 제5권 제1호(통권 제7호), 2019.6.30., 70면.

9) 권수진·탁희성·박선영·오병두,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186면.

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료(2022.03.18.).

11) 2021년 4월 23일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김남국 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109694)되어 같은 해 6월 18일 전체회의의 상정되었으나 이후 답보 상태이다.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가.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개선방안 마련

이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2년에 걸쳐 수행되는 연속과제로 국내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령, 정책, 실태,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고, 출소예정자 및 출소자, 관계기관 담당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주요국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전제조건,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교정시설 출소 전부터 교정당국 및 각 교정시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민간기관, 협력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기관 간에 유기적인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질 때, 출소(예정)자의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관계기관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더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정단계에서부터 출소 이후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출소(예정)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다.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안전 사회 확립

국정과제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정부는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¹²⁾ 그럼에도

12) 120대 국정과제 중 63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https://www.opm.go.kr/opm/info/government04.do>, 2023년 11월 1일 최종검색)

18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Ⅰ)

불구하고 최근 보복범죄, 무차별범죄 등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회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연구기간 총 2년의 연구로 기획되었다. 이에 이번 1차 년에는 배정된 예산과 관계기관의 상황을 반영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와 각 교정시설, 그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도하에 실시되고 있는 출소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실태 및 현황을 검토하였다. 즉 법무부 교정본부와 각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소예정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실태 및 현황을 살펴보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사업(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창업지원, 상담지원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1차 년의 연구는 과거 출소를 하였으나 재범을 저질러 다시 복역하고 있는 출소예정자, 그리고 출소하여 현재 공단의 지원을 받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여 과거 그들이 출소 이후 삶을 위해 준비했던 과정,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게 된 과정,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경험, 출소 이후 도움을 받았던 경험 등도 파악하고자 하였다.¹³⁾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의 출소(예정)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령, 정책 및 현황에 대하여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번 1차 년의 연구를 통해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전제조건, 그리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1차 년의 연구보고서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소(예정자)의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령, 정책 및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였다. 즉, 법무부 교정본부와 교정시설에서의 출소예정자의 사회정착 지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3) 향후 2차 년의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민간 단체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출소자의 사회정착 사회지원 실태와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출소자에 대한 추가 면접 및 관계기관 담당자와 면담, 그리고 일반인 인식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출소(예정자)의 사회정착 지원 관련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로서 교정시설의 출소예정자와 교정 직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의 출소(예정)자 사회정착 지원 관련 법령, 정책 및 현황에 대하여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전제조건, 그리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가. 문헌연구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 논문, 보고서 등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등 관계부처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사례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나. 통계 자료 분석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교정통계연보, 법무보호연감 등 공식 통계자료와 내부자료 등 관련 통계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다. 출소(예정)자 심층면접

출소자에 관한 연구는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접근방법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번 연구는 출소자의 경험이나 생각에 대한 어떠한 가설을 세워 검증하기보다 질적인 접근을 통해 출소자가 경험하고 느꼈던 ‘주관적 실재’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였다. 이러한 질적인 접근법을 통해 과거 출소자, 현재 출소자가 출소 이후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출소 이후 재범을 저지르게 된 사건과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출소자 지원을 위한 국가의 개입과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등을 출소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출소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실재는 객관적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소 이후 재범예방과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정기관 담당자, 그리고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생활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을 대상으로도 자문회의와 워크숍을 실시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라. 비교법 연구

이와 더불어 외국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얻기 위해 비교법 연구를 하였다. 즉, 미국, 독일, 일본의 출소자 지원 관련 법규, 제도, 현황, 평가에 관한 국내·외 문헌자료, 공식 통계, 기타 인터넷 공개 자료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수집,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자문회의

이에 더해 법무부 교정본부와 각 교정시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 실무 담당자, 학계 연구자 등을 초청하여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연구 내용 및 정책제언을 보완하는 등 연구성과를 제고하였다.

제 2 장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1)

우리나라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권 수 진

제2장

우리나라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제1절 | 교정시설 입·출소 및 재복역 현황

우리나라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현황 및 실태를 검토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용자가 사회에서 교정시설로 구금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입소와 출소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교정시설 출소자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교정시설에 재복역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재복역률 현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교정시설 입소 및 출소 현황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정시설 입·출소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1-1] 교정시설 입·출소 현황(2013~2022년) (단위 : 명, %)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입소	계	55,479 (100)	56,044 (100)	62,395 (100)	64,541 (100)	62,624 (100)	57,742 (100)	56,420 (100)	51,874 (100)	35,342 (100)	36,970 (100)
	직입소	27,333 (49.3)	26,573 (47.4)	29,357 (47.1)	28,330 (43.9)	24,851 (39.7)	22,429 (38.8)	21,827 (38.7)	18,609 (35.9)	4,243 (12.0)	5,609 (15.2)
	형 확정	23,267 (41.9)	24,281 (43.3)	27,206 (43.6)	30,269 (46.9)	31,500 (50.3)	29,638 (51.3)	29,225 (51.8)	28,204 (51.3)	26,590 (75.2)	26,381 (71.3)
	기타	4,879 (8.8)	5,190 (9.3)	5,832 (9.3)	5,942 (9.2)	6,273 (10.0)	5,675 (9.8)	5,368 (9.5)	5,061 (9.8)	4,509 (12.8)	4,980 (13.5)

26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Ⅰ)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출소	계	54,297 (100)	54,203 (100)	60,414 (100)	62,979 (100)	62,819 (100)	58,450 (100)	56,900 (100)	51,817 (100)	35,844 (100)	36,547 (100)
	형기 종료	16,374 (30.2)	17,191 (31.7)	19,187 (31.8)	21,357 (33.9)	23,324 (37.1)	21,821 (37.3)	21,092 (37.1)	19,737 (38.1)	17,910 (50.0)	16,479 (45.1)
	가석방	6,201 (11.4)	5,394 (10.0)	5,507 (9.1)	7,157 (11.4)	8,275 (13.2)	8,693 (14.9)	8,174 (14.4)	7,911 (15.2)	9,390 (26.2)	10,310 (28.2)
	사면	13 (0.0)	282 (0.5)	559 (0.9)	479 (0.8)	309 (0.5)	-	561 (1.0)	206 (0.4)	110 (0.3)	65 (0.2)
	노역 종료	14,208 (26.2)	15,163 (28.0)	19,234 (31.8)	19,802 (31.4)	18,352 (29.2)	16,847 (28.8)	16,896 (29.7)	15,375 (29.7)	4,739 (13.2)	5,056 (13.8)
	기타	17,501 (32.2)	16,173 (29.8)	15,927 (26.4)	14,184 (22.5)	12,559 (20.0)	11,089 (19.0)	10,177 (17.9)	8,588 (16.6)	3,695 (10.3)	4,637 (12.7)
연도 말 수형자 인원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70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입·출소 현황을 살펴보면, 교정시설 입소자는 2013년 55,479명, 2014년 56,044명, 2015년 62,395명, 2017년 62,624명으로 6만 명대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8년 57,742명, 2019년 56,420명, 2020년 51,874명으로 감소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던 2021년 35,342명, 2022년 36,970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교정시설 출소자는 2013년 54,297명, 2014년 54,203명, 2015년 60,414명, 2016년 62,979명, 2017년 62,819명으로 6만 명대까지 증가하였으나, 2018년 58,450명, 2019년 56,900명, 2020년 51,817명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 35,844명, 2022년 36,547명이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면서 출소자 중 가석방자가 2021년 9,390명으로 전체 출소자의 26.2%였으며, 2022년에는 출소자 중 가석방자가 10,310명으로 전체 출소자의 28.2%를 기록하였다.

요컨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인 2020년까지는 일반적으로 교정시설에 매년 약 5만 명 이상 입소하고, 약 5만 명 이상 출소하였다. 이러한 교정시설 입·출소 현황에 의하면, 교정시설 수형자 중 매년 약 5만 명 이상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돌아갈 가족 또는 직장이 있는 출소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출소자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중에는 교정시설 수형생활 중 범법행위를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는

출소자도 있으나, 그렇지 못해 사회복귀에 실패하거나 다시 재범으로 이어지는 출소자도 있었을 것이다.

2. 재복역률 현황

가. 출소자 재복역률

출소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였다는 것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 즉 사회통합을 의미한다. 사회적 통합은 가족관계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취미, 기타 영역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¹⁴⁾ 따라서 출소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였는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회복, 인간관계 회복, 취·창업 등을 통한 기본 생계유지 및 경제활동, 학업, 문화생활, 기타 사회활동, 재범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 중 출소자의 재범 여부가 출소자의 사회정착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출소 후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재복역률¹⁵⁾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복역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1-2] 출소사유별 재복역 인원 현황(2013~2022년)

(단위 : 명, %)

조사연도 (출소연도)	출소사유	계	형기종료	가석방	감호 종료	가출소	사면
2013 (2009)	출소인원	25,725	16,701	8,386	-	14	624
	재복역인원	5,699 (22.2%)	4,714 (28.0%)	946 (11.5%)	-	5 (35.7%)	34 (5.4%)

14) 독일 교도소 목회 gefaengnissoersorge 홈페이지, <https://gefaengnissoersorge.net/resozialisierungsgesetz> (2023년 11월 1일 최종검색).

15)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출소 후 다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한다(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75면).

28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Ⅰ)

출소사유 조사연도 (출소연도)		계	형기종료	가석방	감호 종료	가출소	사면
2014 (2010)	출소인원	25,066	16,956	8,082	1	15	12
	재복역인원	5,547 (22.1%)	4,895 (28.9%)	651 (8.1%)	-	1 (6.7%)	-
2015 (2011)	출소인원	23,045	15,895	7,129	3	18	-
	재복역인원	4,936 (21.4%)	4,470 (28.1%)	458 (6.4%)	-	8 (44.4%)	-
2016 (2012)	출소인원	22,028	15,179	6,500	-	10	339
	재복역인원	5,465 (24.8%)	4,958 (32.7%)	482 (7.4%)	-	3 (30.0%)	22 (6.5%)
2017 (2012)	출소인원	22,121	15,889	6,201	-	18	13
	재복역인원	5,471 (24.7%)	5,057 (31.8%)	406 (6.5%)	-	7 (38.9%)	1 (7.7%)
2018 (2014)	출소인원	22,484	16,799	5,394	-	10	281
	재복역인원	5,780 (25.7%)	5,389 (32.1%)	363 (6.7%)	-	2 (20.0%)	26 (9.3%)
2019 (2015)	출소인원	24,356	18,269	5,507	-	23	557
	재복역인원	6,486 (26.6%)	6,024 (33.0%)	404 (7.3%)	-	7 (30.4%)	51 (9.2%)
2020 (2016)	출소인원	27,917	20,229	7,157	-	53	478
	재복역인원	7,039 (25.2%)	7,004 (31.7%)	496 (6.0%)	-	12 (28.6%)	40 (12.4%)
2021 (2017)	출소인원	30,702	22,062	8,275	-	42	323
	재복역인원	7,551 (24.6%)	7,004 (31.7%)	495 (6.0%)	-	12 (28.6%)	40 (12.4%)
2022 (2018)	출소인원	29,469	20,740	8,693	-	26	10
	재복역인원	7,004 (23.8%)	6,362 (30.7%)	630 (7.3%)	-	7 (26.9%)	5 (50.0%)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75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출소자 재복역률을 살펴보면, 2013년 재복역 인원은 5,699명으로 출소자 25,725명의 22.2%이다. 그런데 2016년부터 재복역 인원은 5,465명으로 출소자 22,028명의 24.8%로 증가하였고, 2019년 재복역 인원은 6,486명으로 출소자 24,356명의 26.6%까지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다만, 2021년 재복역 인원은 7,551명으로 출소자 30,702명의 24.6%, 2022년 재복역 인원은 7,004명으로 출소자 29,469명의 23.8%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2013년과 2022년을 비교하였을

때 재복역률이 1.6%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출소자 중 재복역 인원 및 재복역률의 증가하였다는 것은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였으나 성공적으로 사회정착을 하지 못한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정착할 수 있는 교정교화,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즉, 현행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자 재범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교정시설 출소자 또는 보호처분 대상자에게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무보호복지사업별 지원 현황, 법무보호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다음과 같다.

▶▶ [표 2-1-3] 최근 5년간 5대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자 재범률(2016~2020년)

(단위 : 명, %)

구분		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지원	계
2016	지원	2,273	152	2,882	14	4,997	10,318
	재범	16	5	6	0	26	53
	재범률	0.7	3.3	0.2	0.0	0.5	0.5
2017	지원	2,167	152	3,003	3	5,655	10,980
	재범	16	6	4	0	10	36
	재범률	0.7	3.9	0.1	0.0	0.2	0.3
2018	지원	1,846	220	3,602	3	5,726	11,397
	재범	17	1	4	0	7	29
	재범률	0.9	0.5	0.1	0.0	0.1	0.3
2019	지원	1,568	278	4,305	5	6,117	12,273
	재범	13	5	1	0	26	45
	재범률	0.8	1.8	0.0	0.0	0.4	0.4

구분	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지원	계	
2020	지원	1,634	235	4,280	2	6,605	121,756
	재범	3	3	1	0	41	48
	재범률	0.2	1.3	0.0	0.0	0.6	0.4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정책부, “2016~2020 주요보호서비스 수혜인원 재범현황”, 2021: 오삼광(2022),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필요성 검토”, 법무보호연구, 8(2), 35면에서 재인용.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한 5년간 5대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공단에서 실시한 전체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은 2016년 10,318명에서 2019년 12,273명으로 점차 높아졌고, 2020년에는 121,756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2019년 대비 약 10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0.5%였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0.3%를 기록하였고, 2019년과 2020년에는 0.4%였다. 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복지 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사람의 재범률은 평균 0.3%~0.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출소자의 재범역률이 25% 내외인 점(2016년 24.8%, 2019년 26.6%, 2021년 24.6%, 2022년 23.8%)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복지 서비스는 출소자가 자의로 신청하여 제공받는다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일반 출소자에 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사람의 재범률이 현저히 낮으며,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¹⁶⁾

16) 오삼광(2022),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필요성 검토”, 법무보호연구, 8(2), 34~35면.

제2절 | 출소 전 사회복귀 지원

교정시설에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형자가 교정시설 입소할 때부터 출소할 때까지 사회복귀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 근거 법령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은 대표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등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형집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형집행법 제64조에 의하면,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고,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교육을 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 중간처우시설에 수용하여 외부통학, 위탁교육도 받게 할 수 있다.¹⁷⁾

또한, 형집행법 제65조에 따라,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상담·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¹⁸⁾

17) 형집행법 제64조

18) 형집행법 제64조

2) 작업과 직업훈련

형집행법 제66조에 의하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¹⁹⁾ 이때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나이·형기 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등 수형자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²⁰⁾ 그리고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 기업체 등에 통근작업,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²¹⁾

형집행법 제71조에 의하면, 교도작업은 1일의 작업시간(휴식·운동·식사·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 제외)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²²⁾

형집행법 제73조에 따라, 작업의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며,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석방 시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²³⁾

3) 사회적 처우 및 중간처우

교정기관에서는 사회적 처우의 일환으로 수형자에게 일반귀휴, 특별귀휴를 실시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77조에 의하면, 교정시설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질병이나 사고

19) 형집행법 제66조

20) 형집행법 제65조

21) 형집행법 제68조

22) 형집행법 제71조

23) 형집행법 제73조

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일반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위의 일반귀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는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²⁴⁾

교정시설의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으로 가족만남의 날 행사와 가족만남의 집 이용이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면,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하며, “가족 만남의 집”이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²⁵⁾

그리고 형집행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교정기관에서는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봉사활동·견학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할 수 있다.²⁶⁾

형집행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수형자의 처우에 관해 규정하면서 중간처우의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 일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다.²⁷⁾

나.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1) 사회복귀 지원의 기본원칙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은 제1조에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24) 형집행법 제77조

25)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9조

26) 형집행법 제57조 제5항

27) 형집행법 제57조 제4항

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에서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의 기본원칙으로 “① 사회복귀지원의 수준은 수용자에게 재활의지와 자립심을 북돋우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② 사회복귀 지원 방법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특성과 수요에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③ 다른 법령에서 이 지침과 유사한 지원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지침은 보충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간처우

교정시설에서는 형집행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함께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중간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동 지침에서는 중간처우의 기본원칙으로 “① 자율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자치 활동, ②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처우, ③ 자립 능력의 향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⁸⁾

동 지침에서는 중간처우시설의 기준으로 ① 사회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독립시설 또는 교정시설 구외 또는 지역사회 내에 입지, ② 개방환경의 조성을 위해 일반 주택형 또는 수련시설형으로 설치, ③ 자율성 함양을 위한 최소한의 보안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²⁹⁾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중간처우시설로는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인 사회적응훈련원, 소망의 집이 있고,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인 희망센터가 있다.³⁰⁾ 현재 천안 개방교도소가 사회적응훈련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³¹⁾ 소망의 집은 안양교도소, 춘천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순천교도소, 창원교도소 내에 있으며,³²⁾ 희망센터는 밀양구치소(밀양희망센터), 천안교도소(아산희망센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평택희망

28)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1289호) 제27조

29)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1289호) 제28조

30)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1289호) 제2조

31) 천안개방교도소는 1988년 개청 당시 남성수용자 개방시설이었으나, 최근 여성수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32) 이중 창원교도소 소망의 집은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운영을 중지하였다.

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제1289호)에 따라, 형기 종료 2개월 내외의 자,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절차, 신용회복절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안내 등의 ‘석방전교육’을 15시간 실시하고 있다.³³⁾³⁴⁾

라.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1193호)에서는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 제4조에서는 수형자 처우의 원칙으로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⁵⁾

그리고 동 지침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제25조부터 제27조), 작업 및 직업훈련(제35조부터 제38조), 사회적 처우(제29조부터 제34조), 중간처우(제39조부터 제45조) 등에 관해 경비등급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33)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제1317호) 제9조(석방전교육) ① 소장은 형기종료 2개월 내외의 자,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를 대상으로 석방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석방전 교육은 수용 기간 중 1회에 한한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시간은 15시간(별지 제39호 교육예시 참조)으로 한다.

1. 사회보장절차, 신용회복절차, 보호관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안내, 취업·창업지원 정보 제공 등
2. 기타 출소 후 사회 적응에 필요한 인성교육 등

34) 사회보장절차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실시하고, 신용회복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및 민간更生보호법인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2023년 9월 기준 교정시설에서 실시한 석방전교육 실시 현황은 총 549회 8,960명이다(교정본부 자문회의 내용(2023. 11. 1.)).

35)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1289호) 제4조 (수형자 처우의 원칙)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하고,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엄정한 형집행에 따른 처우를 원칙으로 한다.

2. 교정시설의 출소예정자 사회정착 지원

가. 교정교육

1) 교육프로그램

교정시설에서는 교육이 필요한 수형자에게 일반 학과교육·전문대학 위탁교육·방송통신대학교육 등 각종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등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수형자들을 위해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순천교도소에 순천제일대학교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주교도소, 전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포항교도소 등에 방송통신대학교를 설치하였다.³⁶⁾

▶▶▶ [표 2-2-1] 수형자 교육 인원 현황(2013~2022년)

(단위: 명(%))

연도	계	일반학과교육(검정고시반교육)				방송통신 고등 학교 과정	방송 통신 대학 과정	전문 대학 위탁 교육	학사 고시반 교육
		계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				
2013	1,140 (100)	785 (68.9)	47 (4.1)	228 (20.0)	510 (44.7)	54 (4.7)	79 (6.9)	41 (3.6)	181 (15.9)
2014	1,110 (100)	720 (64.9)	34 (3.1)	188 (16.9)	498 (44.9)	78 (7.0)	93 (8.4)	44 (4.0)	175 (15.8)
2015	898 (100)	609 (67.8)	34 (3.8)	147 (16.4)	428 (47.7)	28 (3.1)	75 (8.4)	47 (5.2)	139 (15.5)
2016	939 (100)	556 (59.2)	19 (2.0)	126 (13.4)	411 (43.8)	22 (2.3)	90 (9.6)	47 (5.0)	224 (23.9)
2017	1,103 (100)	616 (55.8)	22 (2.0)	150 (13.6)	444 (40.3)	21 (1.9)	88 (8.0)	44 (4.0)	334 (30.3)
2018	1,146 (100)	639 (55.8)	11 (1.0)	155 (13.5)	473 (41.3)	22 (1.9)	94 (8.2)	46 (4.0)	345 (30.1)
2019	1,160 (100)	655 (56.5)	13 (1.1)	144 (12.4)	498 (42.9)	17 (1.5)	92 (7.9)	48 (4.1)	348 (30)
2020	1,207 (100)	650 (53.9)	10 (0.8)	123 (10.2)	517 (42.8)	20 (1.7)	98 (8.1)	50 (4.1)	389 (32.2)
2021	1,164 (100)	647 (55.5)	10 (0.8)	114 (9.8)	523 (44.9)	8 (0.7)	88 (7.6)	45 (3.9)	376 (32.3)
2022	1,104 (100)	573 (51.9)	10 (0.9)	101 (9.1)	462 (41.9)	4 (0.4)	90 (8.1)	51 (4.6)	386 (35.0)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39면.

36)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38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수형자 교육 인원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수형자의 높아지는 학력으로 초등·중등·고등과 검정고시반 교육 인원은 모두 점차 감소하였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 또한 2013년 54명(4.7%)에서 2022년 4명(0.4%)로 감소한 반면, 방송통신대학과정의 경우 2013년 79명(6.9%)에서 2022년 90명(8.15%)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달리 고졸 또는 고졸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사고시반은 2013년 181명(15.9%)에서 2022년에는 386명(35%)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표 2-2-2] 수형자 교육 이수 현황(2013~2022년)

(단위: 명)

연도	계	방송통신 고등학교 과정	방송통신 대학교 과정	전문대학 위탁교육	학사고시반 교육
2013	74	9	12	22	31
2014	86	6	22	18	40
2015	73	7	11	16	39
2016	83	6	18	17	42
2017	87	5	17	21	44
2018	96	7	23	18	48
2019	73	8	9	23	38
2020	54	6	12	23	45
2021	64	0	17	15	47
2022	66	0	12	18	47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39면.

수형자 교육 이수 현황을 살펴보면, 방송통신 고등학교 과정의 이수인원은 10명 이내이고, 방송통신대학교 과정 이수인원은 2014년 22명, 2018년 28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대체로 20명 이내이다. 전문대학위탁교육 이수인원 역시 2013년 22명, 2019년 23명, 2020년 23명이고, 그 외 20명 이내이다. 한편, 학사고시반 교육 이수인원은 2013년 31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과 2022년 47명으로 대체로 50명 이내이다.

▶▶▶ [표 2-2-3] 수형자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자 현황(2013~2022년)

(단위: 명)

연도	응시인원	합격인원				
		인원	합격률	시험종목		
				초졸 학력	중졸 학력	고졸 학력
2013	686	571	83.2%	14	187	370
2014	780	565	72.4%	12	163	390
2015	723	575	79.5%	34	147	394
2016	618	533	86.2%	17	133	383
2017	619	508	82.1%	12	125	371
2018	664	492	74.1%	8	120	364
2019	711	502	70.6%	10	113	379
2020	672	508	75.6%	7	76	425
2021	749	542	72.4%	6	75	461
2022	591	441	74.6%	6	76	359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40면.

수형자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응시인원의 경우 2013년 686명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 749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 591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검정고시 합격률의 경우에도 2013년 83.2%에서 2019년 70.6%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22년 74.6%로 다시 증가하여 70%대를 기록하고 있다.

2) 교화프로그램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정서안정과 심성순화를 위해 교화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 문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표 2-2-4] 수형자 교화프로그램 운영 현황(2013~2022년)

(단위: 회수, 명)

연도	인성교육		일반사범 문화프로그램 (기타포함)	
	회수	인원	회수	인원
2013	296	6,202	456	67,285
2014	262	5,763	434	51,542
2015	567	8,604	645	50,566

연도	인성교육		일반사범 문화프로그램 (기타포함)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6	368	10,066	1,132	57,061
2017	362	10,525	1,428	63,671
2018	357	9,909	1,322	50,873
2019	430	10,987	917	43,018
2020	249	4,917	361	8,983
2021	403	7,176	425	3,836
2022	317	5,720	729	14,464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42면.

수형자 교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교육프로그램 횟수 및 인원은 안정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집단 활동이 제한되면서 인성교육의 경우 2019년 430건에서 2020년 249건으로 약 42% 감소하였고, 일반사범 문화프로그램 또한 2019년 917건에서 2020년 361건으로 약 60% 감소하였다. 다만, 팬데믹이 완화된 2022년의 경우 2020년 대비 인성교육은 약 27% 증가하였으며, 문화 프로그램 또한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나.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교도작업은 수형자 교정교화 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을 통해 수형자에게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기술을 습득시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에게 교도작업을 부과하고 있다.³⁷⁾

▶▶ [표 2-2-5] 교도작업 취업 현황(2013~2022년)

(단위: 명)

연도	수형자 총 인원	취업불가능 인원	취업가능인원		
			계	취업 인원	불취업 인원
2013	32,078 (100%)	9,142 (28.5%)	22,936 (71.5%)	18,991 (59.2%)	3,945 (12.3%)
2014	32,867	9,085	23,782	21,471	2,311

37)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43면.

연도	수형자 총 인원	취업불가능 인원	취업가능인원		
			계	취업 인원	불취업 인원
	(100%)	(27.6%)	(72.4%)	(65.3%)	(7.0%)
2015	34,425 (100%)	10,458 (30.4%)	23,967 (69.6%)	22,090 (64.2%)	1,877 (5.5%)
2016	36,082 (100%)	12,154 (33.7%)	23,928 (66.3%)	22,100 (61.2%)	1,828 (5.1%)
2017	35,990 (100%)	11,613 (32.3%)	24,377 (67.7%)	22,265 (61.9%)	2,112 (5.9%)
2018	34,633 (100%)	11,451 (33.1%)	23,182 (66.9%)	21,410 (61.8%)	1,772 (5.1%)
2019	34,604 (100%)	11,662 (33.7%)	22,942 (66.3%)	21,562 (62.3%)	1,380 (4.0%)
2020	34,621 (100%)	12,612 (36.4%)	22,009 (63.6%)	20,577 (59.4%)	1,432 (4.1%)
2021	33,892 (100%)	12,924 (38.1%)	20,968 (61.9%)	19,534 (57.6%)	1,434 (4.3%)
2022	33,809 (100%)	13,436 (39.7%)	20,373 (60.3%)	19,165 (56.7%)	1,208 (3.6%)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43면.

교도작업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수형자 총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취업불가능 인원이 2013년 9,142명(28.5%)에서 2022년 13,436명(39.7%)으로 11.2% 증가하였다. 반면 전체 취업 가능 인원은 2013년 22,936명(71.5%)에서 2022년 20,373명(60.3%)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취업 가능 인원 중 취업하지 않은 불취업 인원은 2013년 3,945명(12.3%)에서 2022년 1,208명(3.6%)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표 2-2-6] 외부통근 및 개방지역작업 현황(2013~2022년)

(단위: 명, 천원)

연도	수형자 연 인원	세입액	직업장려금
2013	327,987	7,020,329	3,486,886
2014	269,546	1,217,417	3,740,391
2015	304,810	7,913,519	4,470,057
2016	312,488	8,33,245	4,441,067
2017	311,081	8,455,982	4,645,846

연도	수형자 연 인원	세입액	직업장려금
2018	254,477	7,807,164	4,199,263
2019	256,348	8,113,602	4,640,035
2020	232,645	7,357,225	3,927,903
2021	247,038	7,489,146	4,819,731
2022	152,069	6,815,266	4,517,912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44면.

외부통근 및 개방지역작업 현황을 살펴보면, 외부통근 및 개방지역작업 수형자 연 인원이 2013년 327,987명에서 2022년 152,069명으로 175,918명 감소하였다. 한편, 외부통근 및 개방지역작업 수형자에게 지급된 직업장려금은 2013년 3,486,886,000원에서 2022년 4,517,912,000원으로 증가하였다.

» [표 2-2-7] 교도작업 작업장려금 지급 현황(2013~2022년)

(단위: 천원, 명)

연도	지급액	지급 연 인원	1인당 1일 평균(원)
2013	14,906,986	5,022,670	2,968
2014	17,798,954	4,435,528	4,013
2015	20,231,129	5,634,098	3,591
2016	20,853,628	5,615,637	3,713
2017	19,882,229	5,874,204	3,385
2018	22,074,502	4,967,883	4,443
2019	23,129,488	5,187,748	4,458
2020	20,621,076	5,139,172	4,013
2021	22,659,230	4,870,453	4,652
2022	22,600,238	3,738,721	6,045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46면.

교도작업 후 수형자에게 지급되는 직업장려금 역시 지급 연인원은 2019년을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1인당 1일 평균 지급액과 총 지급액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에는 지급액이 20,621,076원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22년에는 1인당 1일 평균 지급액이 2013년 이후 최대치인 6,045,000원 지급되었다.

▶▶▶ [표 2-2-8] 직업훈련 인원 현황(2013~2022년)

(단위: 명, %)

연도	계획 인원	실시인원									
		계	공공직업훈련			일반직업훈련					
			양성 훈련	향상 훈련	숙련 훈련	양성 훈련	향상 훈련	숙련 훈련	고급 훈련	교도 작업 적응 훈련	단기 실무
2013	3,975	4,852 (100)	2,421 (49.9)	913 (18.8)	249 (5.1)	320 (6.6)	53 (1.1)	-	66 (1.4)	477 (9.8)	353 (7.3)
2014	6,294	6,276 (100)	3,070 (48.9)	831 (13.2)	307 (4.9)	389 (6.2)	37 (0.6)	-	26 (0.4)	550 (8.8)	1,066 (17.0)
2015	6,502	6,484 (100)	2,898 (44.7)	860 (13.3)	360 (5.6)	400 (6.2)	16 (0.2)	-	21 (0.3)	574 (8.9)	1,355 (20.9)
2016	6,546	6,644 (100)	2,986 (44.9)	927 (14.0)	344 (5.2)	342 (5.1)	26 (0.4)	-	19 (0.3)	647 (9.7)	1,353 (20.4)
2017	6,696	6,727 (100)	3,487 (51.8)	232 (3.4)	447 (6.6)	468 (7.0)	50 (0.7)	-	10 (0.)	724 (10.8)	1,309 (19.5)
2018	6,922	6,939 (100)	3,572 (51.5)	215 (3.1)	545 (7.9)	504 (7.3)	22 (0.3)	53 (0.8)	10 (0.1)	907 (13.1)	1,111 (16.0)
2019	6,763	6,433 (100)	3,559 (55.3)	265 (4.1)	552 (8.6)	452 (7.0)	-	74 (1.2)	11 (0.2)	429 (6.7)	1,091 (17.0)
2020	6,058	5,942 (100)	3,619 (60.9)	287 (4.8)	442 (7.4)	491 (8.3)	-	327 (5.5)	8 (0.1)	216 (3.6)	552 (9.3)
2021	6,084	5,417 (100)	3,452 (63.7)	228 (4.2)	423 (7.8)	520 (9.6)	-	290 (5.4)	7 (0.1)	-	497 (9.2)
2022	6,090	5,635 (100)	3,943 (70.0)	306 (5.4)	323 (5.7)	616 (10.9)	-	190 (3.4)	8 (0.1)	-	249 (4.4)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47면.

직업훈련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21년 5,417명에서 2022년 5,635명으로 218명 증가하였다. 공공직업훈련 중 양성훈련의 경우 2013년 2,421명(49.9%)을 시작으로 2022년 3,943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반직업훈련의 경우에는 모두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 [표 2-2-9] 수형자 취업 지원 현황(2013년~2022년)

(단위: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취업 인원	1,405	1,576	1,503	1,663	1,670	1,542	1,557	1,625	1,725	1,832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51면.

수형자 취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670명에서 2018년 1,542명으로 감소했지만, 2019년 1,557명, 2020년 1,625명, 2021년 1,725명, 2022년 1,832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 사회적 처우

사회적 처우는 수형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설 내 처우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생활을 일반 사회생활에 접근시키는 처우로 개방 시설 수용 및 처우, 귀휴,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만남의 날 행사³⁸⁾ 참가, 가족접견, 등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운영,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등이 있다.³⁹⁾

1) 귀휴

귀휴는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도주의 위험성이 적은 수형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기간과 행선지를 제한하여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로, 수형자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수형자에게 출소 전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⁴⁰⁾

38) 가족만남의 날 행사는 2023년까지만 운영예정이다(법무부 교정본부 자문회의, 2023.11.1).

39)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52면.

40)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52면.

▶▶▶ [표 2-2-10] 귀휴 인원 현황(2013년~2022년)

(단위: 명, %)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귀휴 인원	1,282	1,356	999	1,084	1,142	1,198	1,193	75	52	1,097
수형자 인원 대비 귀휴 비율	4.2%	4.4%	3.1%	3.2%	3.3%	3.5%	3.5%	0.2%	0.1%	3.4%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52면.

귀휴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282명, 2014년 1,356명, 2015년 999명, 2016년 1,084명, 2018년 1,198명, 2019년 1,193명으로 점차 증가하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75명, 2021년 52명 급감하였다가, 2022년 1,097명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귀휴자는 1천 명 이상이다. 다만, 최근 10년간 수형자 인원 대비 귀휴 인원 비율은 2013년 4.2%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3.4%로 감소하였다.

특히 귀휴자 형기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귀휴자 중 형기 3년 미만이 671명(61.2%)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6년 미만이 282명(25.7%)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귀휴자 형기별 현황을 살펴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래도 귀휴는 수형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중장기수형자보다는 비교적 단기수형자에게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표 2-2-11] 귀휴자 형기별 현황(2013년~2022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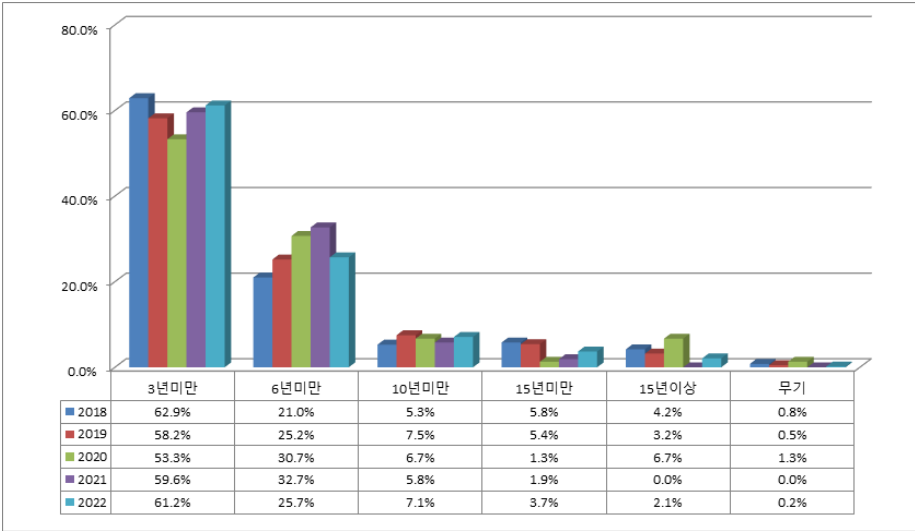
연도 구분	계	3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무기
2013	1,282 (100%)	718 (56.0%)	324 (25.3%)	74 (5.8%)	74 (5.8%)	68 (5.3%)	24 (1.9%)
2014	1,356 (100%)	746 (55.0%)	365 (26.9%)	102 (7.5%)	48 (3.5%)	71 (5.2%)	24 (1.8%)
2015	999 (100%)	572 (57.3%)	218 (21.8%)	57 (5.7%)	85 (8.5%)	58 (5.8%)	9 (0.9%)
2016	1,084 (100%)	666 (61.4%)	196 (18.1%)	64 (5.9%)	85 (7.8%)	71 (6.5%)	2 (0.2%)
2017	1,142	686	245	92	67	49	3

연도\구분	계	3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무기
	(100%)	(60.0%)	(21.5%)	(8.1%)	(5.9%)	(4.3%)	(0.2%)
2018	1,198 (100%)	754 (62.9%)	252 (21.0%)	64 (5.3%)	69 (5.8%)	50 (4.2%)	9 (0.8%)
2019	1,193 (100%)	694 (58.2%)	301 (25.2%)	89 (7.5%)	65 (5.4%)	38 (3.2%)	6 (0.5%)
2020	75 (100%)	40 (53.3%)	23 (30.7%)	5 (6.7%)	1 (1.3%)	5 (6.7%)	1 (1.3%)
2021	52 (100%)	31 (59.6%)	17 (32.7%)	3 (5.8%)	1 (1.9%)	0 (0.0%)	0 (0.0%)
2022	1,097 (100%)	671 (61.2%)	282 (25.7%)	78 (7.1%)	41 (3.7%)	23 (2.1%)	2 (0.2%)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53면.

» [그림 2-2-1] 귀휴자 형기별 인원 구성비(2013년~2022년)

(단위: %)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5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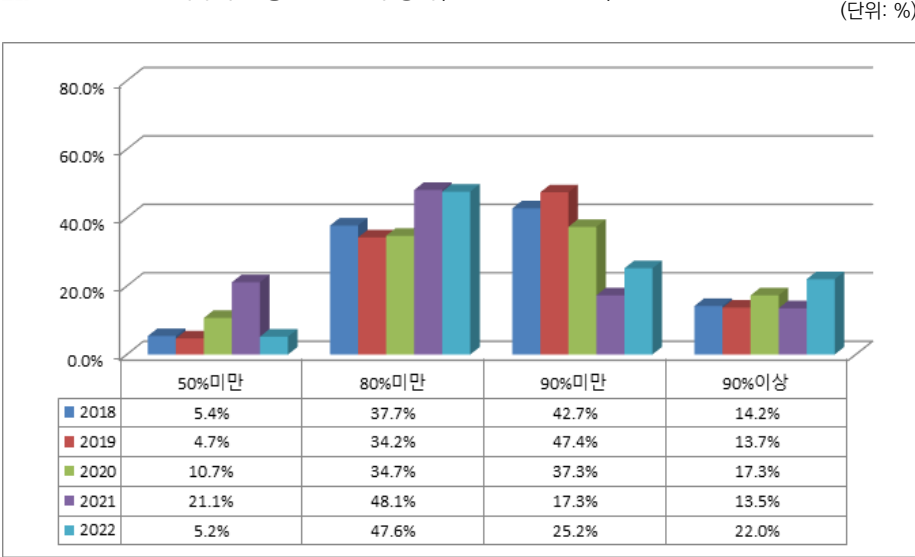
▶▶▶ [표 2-2-12] 귀휴자 집행률별 현황(2013년~2022년)

(단위: 명, %)

구분 연도	계	50% 미만	80% 미만	90% 미만	90% 이상
2013	1,282 (100%)	37 (2.9%)	461 (36.0%)	542 (42.3%)	242 (18.9%)
2014	1,356 (100%)	36 (2.7%)	407 (30.0%)	658 (48.5%)	255 (18.8%)
2015	999 (100%)	18 (1.8%)	214 (21.4%)	480 (48.0%)	287 (28.7%)
2016	1,084 (100%)	25 (2.3%)	378 (34.9%)	409 (37.7%)	272 (25.1%)
2017	1,142 (100%)	40 (3.5%)	428 (37.5%)	523 (45.8%)	151 (13.2%)
2018	1,198 (100%)	65 (5.4%)	452 (37.7%)	511 (42.7%)	170 (14.2%)
2019	1,193 (100%)	56 (4.7%)	408 (34.2%)	566 (47.4%)	163 (13.7%)
2020	75 (100%)	8 (10.7%)	26 (34.7%)	28 (37.3%)	13 (17.3%)
2021	52 (100%)	11 (21.1%)	25 (48.1%)	9 (17.3%)	7 (13.5%)
2022	1,097 (100%)	57 (5.2%)	522 (47.6%)	277 (25.2%)	241 (22.0%)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54면.

▶▶▶ [그림 2-2-2] 귀휴자 집행률별 인원구성비(2013년~2022년)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54면.

귀휴자 집행률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집행형기 80% 미만이 522명(47.6%)으로 과반수에 가깝고, 그 다음으로 집행형기 90% 미만이 277명(25.2%), 집행형기 90% 이상이 241명(22.0%)으로, 귀휴자 대다수의 집행형기는 8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귀휴는 수형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집행률도 높은 수형자에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2)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가

가족만남의 날 행사는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준비해 온 다과와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가족과의 유대 강화와 수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형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⁴¹⁾

▶▶▶ [표 2-2-13]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현황(2013년~2022년)

(단위: 명, %)

연도	구분	1일 평균 수형자 인원	참가 인원	수형자 인원 대비 참가 비율
2013		30,181	11,578	38.4%
2014		31,027	11,855	38.2%
2015		32,473	12,755	39.3%
2016		33,651	14,393	42.8%
2017		34,949	11,095	31.7%
2018		34,300	8,891	25.9%
2019		33,813	9,004	26.6%
2020		33,377	59	0.2%
2021		33,548	0	0.0%
2022		32,610	24	0.1%

주) 1일 평균 수형자 인원 : 노역수 제외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55면.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현황을 살펴보면, 참가 인원은 2013년 11,578명(38.4%), 2014년 11,855명(38.2%), 2015년 12,755명(39.3%), 2016년 14,393명(42.8%), 2017년

41)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54면.

11,095명(31.7%)으로 1천 명 이상이었으나, 이후 2018년 8,891명(25.9%, 2019년 9,004명(26.6%)으로 1천 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2020년 59명(0.2%), 2021년 0명(0.0%), 2022년 24명(0.1%)으로,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거의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 [표 2-2-14]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형기별 현황(2013년~2022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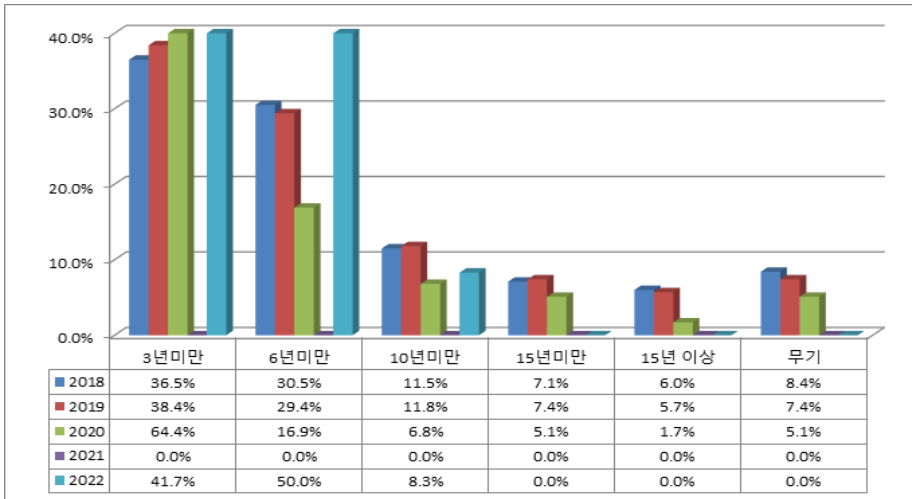
구분 연도	계	3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무기
2013	11,578 (100%)	4,409 (38.1%)	3,113 (26.9%)	1,151 (9.9%)	990 (8.6%)	839 (7.2%)	1,076 (9.3%)
2014	11,855 (100%)	4,368 (36.8%)	3,452 (29.1%)	1,334 (11.3%)	926 (7.8%)	797 (6.7%)	978 (8.2%)
2015	12,755 (100%)	4,830 (39.7%)	3,801 (29.8%)	1,377 (10.8%)	967 (7.6%)	744 (5.8%)	1,036 (8.1%)
2016	14,393 (100%)	5,642 (39.2%)	4,172 (29.0%)	1,514 (10.5%)	1,023 (7.1%)	851 (5.9%)	1,191 (8.3%)
2017	11,095 (100%)	4,528 (40.8%)	3,264 (29.4%)	1,129 (10.2%)	705 (6.4%)	592 (5.3%)	877 (7.9%)
2018	8,891 (100%)	3,246 (36.5%)	2,711 (30.5%)	1,023 (11.5%)	633 (7.1%)	531 (6.0%)	747 (8.4%)
2019	9,004 (100%)	3,454 (38.4%)	2,644 (29.4%)	1,065 (11.8%)	669 (7.4%)	510 (5.7%)	662 (7.4%)
2020	59 (100%)	38 (64.4%)	10 (16.9%)	4 (6.8%)	3 (5.1%)	1 (1.7%)	3 (5.1%)
2021	0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22	24 (100%)	10 (41.7%)	12 (50.0%)	2 (8.3%)	0 (0.0%)	0 (0.0%)	0 (0.0%)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56면.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형기별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2년의 경우 가족만남의 날 행사참가 인원은 전체 참가인원 24명 중 6년 미만이 12명(50.0%)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3년 미만이 10명(41.7%), 10년 미만 2명(8.3%)이다. 즉, 가족만남의 날 참가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수형자보다는 비교적 단기수형자의 참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2-2-3]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형기별 인원 구성비(2013년~2022년)

(단위: %)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56면.

3)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만남의 집 이용은 교정시설에 별도로 마련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에서 수형자와 그 가족이 1박 2일 동안 숙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수용생활로 인하여 단절되고 소원해진 가족관계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것이다.⁴²⁾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만남의 집 참가 인원의 경우 2013년 1,261명(4.2%)에서 2019년 1,908(4.6%)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2020년 27명, 2021년 0명으로 0%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거의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 [표 2-2-15]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현황(2013년~2022년)

(단위: 명, %)

구분 연도	1일 평균 수형자 인원	참가 인원	수형자 인원 대비 참가 비율
2013	30,181	1,261	4.2%
2014	31,027	1,338	4.3%

42)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57면.

50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Ⅰ)

구분 연도	1일 평균 수형자 인원	참가 인원	수형자 인원 대비 참가 비율
2015	32,473	1,361	4.2%
2016	33,651	1,431	4.3%
2017	34,949	1,583	4.5%
2018	34,300	1,913	4.6%
2019	33,813	1,908	4.6%
2020	33,377	27	0.1%
2021	33,548		0.0%
2022	32,610		0.0%

주) 1일 평균 수형자 인원 : 노역수 제외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57면.

▶▶▶ [표 2-2-16]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형기별 현황(2013년~2022년)

(단위: 명, %)

구분 연도	계	3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무기
2013	1,261 (100%)	386 (30.6%)	341 (27.0%)	153 (12.1%)	132 (10.5%)	115 (9.1%)	134 (10.6%)
2014	1,338 (100%)	423 (31.6%)	369 (27.6%)	169 (12.6%)	100 (7.5%)	117 (8.7%)	160 (12.0%)
2015	1,361 (100%)	452 (33.2%)	412 (30.3%)	168 (12.3%)	94 (6.9%)	100 (7.3%)	135 (9.9%)
2016	1,431 (100%)	485 (33.9%)	439 (30.7%)	154 (10.8%)	90 (6.3%)	106 (7.4%)	157 (11.0%)
2017	1,583 (100%)	536 (33.9%)	467 (29.5%)	183 (11.6%)	99 (6.3%)	108 (6.8%)	190 (12.0%)
2018	1,913 (100%)	650 (34.0%)	580 (30.3%)	225 (11.8%)	130 (6.8%)	97 (5.1%)	231 (12.1%)
2019	1,908 (100%)	628 (32.9%)	632 (33.1%)	175 (9.2%)	118 (6.2%)	98 (5.1%)	257 (13.5%)
2020	27 (100%)	11 (40.7%)	8 (29.6%)	5 (18.5%)	- (0.0%)	2 (7.4%)	1 (3.7%)
2021	0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22	5 (100%)	0 (0.0%)	0 (0.0%)	0 (0.0%)	2 (40%)	0 (0.0%)	3 (60%)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58면.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형기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3년 미만이 628명(32.9%)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6년 미만 632명(33.1%), 10년 미만 175명(9.2%), 15년 이상 98명(5.1%), 무기 257명(13.5%)으로, 형기 3년 미만과 6년 미만 수형자가 과반이상을 차지하였고, 예외적으로 무기수의 가족만남의 집 이용도 10% 이상을 차지하였다.

4) 가족접견

가족접견은 가족과의 유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 차단막이 없는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등이 교정시설에서 느낄 수 있는 위압감을 최소화하고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운영하고 있다.⁴³⁾

▶▶▶ [표 2-2-17] 가족접견 실시 수형자 현황(2017년~2022년)

(단위: 명, %)

연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일 평균 수형자 인원	34,949	34,300	33,813	33,377	33,548	32,610
이용 인원	2,001	4,144	4,295	158	859	1,454
수형자 인원 대비 이용 비율	5.7%	12.0%	12.7%	0.5%	2.6%	4.5%

주) 1일 평균 수형자 인원 : 노역수 제외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59면.

2017년 2,001명에서 2018년 4,144명, 2019년 4,295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158명 급감하였으나, 2021년 859명, 2022년 1,454명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43)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59면.

5)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형자에게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⁴⁴⁾

▶▶▶ [표 2-2-18]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 현황(2013년~2022년)

(단위: 명, %)

연도	구분	1일 평균 수형자 인원	참여 인원	수형자 인원 대비 참가 비율
2013		30,181	4,245	14.1%
2014		30,517	4,417	14.5%
2015		32,473	4,322	13.3%
2016		33,651	4,991	14.8%
2017		34,949	5,080	14.5%
2018		34,300	4,850	14.1%
2019		33,813	4,859	14.4%
2020		33,377	134	0.4%
2021		35,548		0.0%
2022		32,610		0.0%

주) 1일 평균 수형자 인원 : 노역수 제외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60면.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245명(14.1%), 2014년 4,417명(14.5%), 2015년 4,322명(13.3%)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 4,991명(14.8%), 2017년 5,080명(14.5%)까지 증가하였고, 2018년 4,850명(14.1%), 2019년 4,859명(14.4%)으로, 수용자 인원 대비 참가 비율은 약 14%대를 유지하였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134명으로 급감하였고, 2021년 0명, 2022년 11명으로 거의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44)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60면.

▶▶ [표 2-2-19]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 형기별 현황(2013년~2022년)

(단위: 명, %)

구분 연도	계	3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무기
2013	4,245 (100%)	2,900 (68.3%)	814 (19.2%)	245 (5.8%)	126 (3.0%)	100 (2.4%)	60 (1.4%)
2014	4,417 (100%)	2,813 (63.7%)	1,008 (22.8%)	299 (6.8%)	126 (2.9%)	127 (2.9%)	44 (1%)
2015	4,322 (100%)	2,689 (62.2%)	926 (21.4%)	215 (5.0%)	349 (8.1%)	120 (2.8%)	23 (0.5%)
2016	4,991 (100%)	3,316 (66.4%)	902 (18.1%)	260 (5.2%)	298 (6.0%)	206 (4.1%)	9 (0.2%)
2017	5,080 (100%)	3,481 (68.5%)	1,019 (20.1%)	290 (5.7%)	161 (3.2%)	126 (2.5%)	3 (0.1%)
2018	4,850 (100%)	3,299 (68.0%)	1,047 (21.6%)	237 (4.9%)	188 (3.9%)	71 (1.5%)	8 (0.2%)
2019	4,859 (100%)	3,262 (67.1%)	1,016 (20.9%)	360 (7.4%)	148 (3.0%)	67 (1.4%)	6 (0.1%)
2020	134 (100%)	40 (29.9%)	27 (20.1%)	4 (3.0%)	28 (20.9%)	35 (26.1%)	- (0.0%)
2021	0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22	11 (100%)	0 (0.0%)	8 (72.7%)	3 (27.3%)	0 (0.0%)	0 (0.0%)	0 (0.0%)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161면.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 형기별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형기 3년 미만 3,262명(67.1%)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6년 미만 1,016명(20.9%), 10년 미만 360명(7.4%), 15년 미만 148명(3.0%), 15년 이상 67명(1.4%), 무기 6명(0.1%)이다.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역시 중장기수형자보다는 비교적 단기수형자의 참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라. 중간처우시설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두고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 일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다.⁴⁵⁾ 이러한 중간처우 시설로 개방교도소, 소망의 집, 희망센터가 있다.

45) 형집행법 제57조 제4항

1) 개방교도소

개방교도소는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는 교정시설이다⁴⁶⁾.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방교도소는 천안개방교도소 한 곳이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신장된 국력과 교정행정의 발전으로 교정의 사회화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교정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8년 11월 30일 중간처우시설의 하나로 천안개방교도소가 개청하였다.⁴⁷⁾ 이후 천안개방교도소는 과실범 개방처우 중심에서 중·장기 수형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훈련을 특성화하여 다양한 사회생활 체험훈련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 9월 천안개방교도소 사회적응훈련원으로 개원하였다.⁴⁸⁾

종래 천안개방교도소는 남성수형자 개방교정시설이었으나, 현재는 여성수형자의 증가로 여성수형자 개방교정시설로 전환되었다.

천안개방교도소(사회적응훈련원)의 목적은 ① 자치제를 통한 사회적응능력을 함양시키고, ② 개방처우를 통하여 사회복귀능력을 회복하도록 하고, ③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립심 및 자기존중의식을 배양하여 중·장기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한다.⁴⁹⁾

▶▶▶ [표 2-2-20] 개방교도소 현황

(단위: 명, %)

	개관	작업 구분	협력 기업	정원
		외부통근, 구외작업		240명
수용 대상자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별표2] - 중간처우 대상자로 중간처우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내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 석방이 가능한 자 - 형기 3년 이상(2범 이하) 원칙 개방처우급/확대 완화경비처우급			

출처: 교정본부 자문회의 내용(2023.11.1.)

46)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57면.

47) 천안개방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20년사, 2008, 3면.

48) 천안개방교도소 내부 자료(2018.8).

49) 천안개방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20년사, 2008, 4면.

천안개방교도소는 청사, 수형자 생활관 3개동, 작업장, 수양관, 취사장 및 식당, 체험관, 잔디운동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⁵⁰⁾ 천안개방교도소 생활관에는 일반 교정 시설과 달리 모든 거실 창문에 쇠창살이 없고, 야간에도 생활관의 출입문만 폐쇄되고, 생활관 내부에서는 불침번의 관리하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일반 교정시설과 달리 천안개방교도소 생활관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각 층 복도에 별도로 마련되어 위생적이다.⁵¹⁾ 또한, 일반 교정시설과 달리 천안개방교도소 수형자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공동식사를 하고, 수저는 플라스틱이 아닌 일반 금속 수저를 사용한다.⁵²⁾

신입수용자 생활관을 제외하고 모든 생활관에는 침대(2층 침대 또는 1인용 침대)가 구비되어 있고, 침대 옆에 개인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취침 시 완전 소동의 경우에도 개인 독서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각 생활관에는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개인 공중전화카드로 외부와 전화통화가 가능하며, 휴게실에서 TV를 시청하고, 독서실에서 신문이나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⁵³⁾

천안개방교도소에서는 자치제를 시행하여 수형자들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을 회의하고 결정하는 등 자치활동을 한다.⁵⁴⁾

2) 소망의 집

소망의 집은 교정시설 주벽 밖에 설치된 개방시설로서 수형자의 출소 후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기숙사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며, 구외공장 출퇴근, 외부통근 작업 등 단계별 사회 적응 증심으로 운영을 특성화한 시설이다.⁵⁵⁾

소망의 집은 일정한 감시 하에 수형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구금기간동안 지역사회

50) 권수진·권창모·오영근,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71~72면.

51) 일반 교정시설과 달리 천안개방교도의 침실과 분리된 화장실, 샤워실 등 위생공간에 대한 수형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권수진·권창모·오영근,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71~72면, 144면).

52) 권수진·권창모·오영근,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85면.). 이에 대해 수형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144면).

53) 권수진·권창모·오영근,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71면.

54)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자치회 조직).

55) 정진수·하태훈·최군용·김광호,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88면.

회와의 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수형자가 출소할 때 사회에 대한 이질감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⁵⁶⁾

소망의 집은 2009년 안양교도소 소망의 집을 시작으로 창원교도소와 순천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춘천교도소에 각각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다.⁵⁷⁾

» [표 2-2-21] 소망의 집 현황

(단위: 명, %)

구분	안양교도소 소망의 집	춘천교도소 소망의 집	청주여자교도소 소망의 집	순천교도소 소망의 집
개관		2009년	2009년	2009년
작업구 분	외부기업통근 개방지역작업장	외부기업통근 개방지역작업장	외부기업통근	개방지역작업장
작업내 용	자동차 세차 조경보조 LED 등 제작	도로재료(시멘트 재료 등), 3M장갑 제작	자동차 부품 (전기배선 SET) 조립	창호 제작 수출용 장갑 제작
정원	10명	10명	20명	10명
수용 대상자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 중간처우 대상자로 중간처우 개시일로부터 9개월 내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 석방이 가능한 자 - 형기 3년 이상(1범 이하) 원칙 개방처우급/확대 완화경비처우급			

출처: 교정본부 자료회의 내용(2023. 11. 1.)

우리나라 최초의 소망의 집인 안양교도소의 경우, 일반주택형으로 2인 1실의 생활실(침실), 주방, 응접실, 다목적실, 샤워장, 화장실, 세탁실 등 공동시설, 직원 사무실인 사회복지지원센터 등이 있다. 각 수형자 생활관에는 책상, 옷장 등 개인 가구류가 구비되어 있으며, 주방에는 식탁, 싱크대,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응접실에는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TV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가정과 유사하다.⁵⁸⁾

수형자들은 소망의 집에서 생활하며 평일에는 교정시설 외부에서 작업하는 구외작업과 외부통근작업에 취업하고 있다.⁵⁹⁾

56) 노용준,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 ‘소망의 집’ 소개”, 한국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110호, 2009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면.

57) 이중 현재 창원교도소 소망의 집은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운영을 중지하였다.

58) 권수진·권창모·오영근,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97면.

59) 권수진·권창모·오영근,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101면.

3) 희망센터

현재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가 임박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중간처우를 하고 있으며, 특히 모범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사회 내 중간 처우시설(희망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출소를 앞둔 모범수형자를 민간 기업체에 취업시키고, 수형자들은 해당 기업체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형태로, 평일에는 직원의 계호없이 수형자가 기업체로 자율 출퇴근하며, 야간 및 휴일에는 직원이 기숙사 내 생활관에서 상주하고, 수형자들은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 사용, TV 시청 등 자유로운 활동을 한다. 또한, 출소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업체에 취업도 가능하다.⁶⁰⁾

» [표 2-2-22] 희망센터 현황

(단위: 명, %)

구분	밀양희망센터	아산희망센터	평택희망센터
개관		2016년	2023년
협력기업	- (주) 한국카본 (경남 밀양시 부북면) - 탄소섬유 및 보냉제 생산	- (주) 광성정밀 (충남 아산시 음봉면) - 자동차 제동부품류 생산	- (주) 금강방화문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 방화문 철구조물 창소 생산
운영기관	밀양구치소 (희망센터와 거리 500m, 도보 7분)	천안개방교도소 (희망센터와 거리 15km, 차량 30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희망센터와 거리 34km, 차량 40분)
정원	10명	20명	20명
수용대상자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 중간처우 대상자로 중간처우 개시일로부터 9개월 내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 석방이 가능한 자 - 형기 3년 이상(1범 이하) 원칙 개방처우급/확대 완화경비처우급		

출처: 교정본부 자문회의 내용(2023. 11. 1.)

60) 교정본부 자문회의 내용(2023. 11. 1.)

제3절 |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

1. 근거 법령

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종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법무보호, 갱생보호⁶¹⁾)에 관하여 1961년 제정된 「갱생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보호관찰’과 ‘법무보호’는 범죄인의 사후관리와 재범방지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강화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취지에서 1995년 「갱생보호법」은 폐지되고 법무보호 관련 규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에서도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출소자 사후관리법령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범방지업무 추진기반을 조성하며, 보호관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갱생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여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⁶²⁾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출소자의 법무보호(갱생보호)에 관한 내용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함) 제5장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부터 제6장 ‘벌칙’의 제101조(과태료)에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각 사업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주요 내용

1)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먼저, 보호관찰법 제5장 갱생보호 중 제65조부터 제66조는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65조는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61) 보호관찰법에서는 일본식 용어인 ‘갱생보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62) 법률 제4933호, 1995.1.5., 전부개정 이유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후관리, 그 밖에 갇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등 갇생보호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66조는 갇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갇생보호 대상자와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갇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갇생보호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갇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및 정지

보호관찰법 제67조부터 제70조의 2까지는 갇생보호사업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7조는 갇생보호사업이 법무부장관의 허가사항임을 규정하고 있고,⁶³⁾ 제68조에서는 갇생보호사업의 허가의 기준으로 갇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갇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갇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⁶⁴⁾을 규정하고 있다. 제69조는 사업계획과 전년도 회계상황 및 사업 실적의 법무부장관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70조는 갇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규정으로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갇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갇생보호사업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갇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갇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갇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제69조(보고의무)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⁶⁵⁾ 또한 제70조의2는 제7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63) 보호관찰법 제67조(갇생보호사업의 허가) ① 갇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갇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64) 보호관찰법 제68조(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갇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갇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2. 갇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3. 갇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65) 보호관찰법 제70조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법 제71조부터 제93조까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71조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제72조는 공단의 법인격을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3조는 공단사무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74조는 공단의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기금, 임직원, 이사회, 업무, 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정관의 변경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⁶⁾ 제76조는 공단의 임원 및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7조는 임원의 직무, 제78조는 임원의 결격사유, 제79조는 임원의 해임, 제80조는 이사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82조는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나열하고 있는데, 갱생보호,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제86조는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7조는 그 기금의 재원으로는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으로 한다⁶⁷⁾고 재원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66) 보호관찰법 제7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지소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7) 보호관찰법 제8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3.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4)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94조부터 제98조까지는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9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해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제96조는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자인 사업자 또는 공단이 그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7조는 감독에 관한 내용으로서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8조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5) 벌칙

제99조부터 제101조는 벌칙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먼저 제99조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갱생보호사업 명목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자, 제70조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제100조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제101조는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가. 조직 및 인원

1) 조직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김천에 본부(5부 1실)를 두고 있으며, 오산에 1개 교육원이 있으며, 전국에 19개 지부와 7개 지소, 총 26개 지부(소)를 운영하며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⁶⁸⁾

서울동부지부는 여성 법무보호대상자 전문생활관으로 운영 중이고, 서울서부지소, 전남동부지소, 광주남부지소에서는 청소년 전문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⁶⁹⁾

2) 인원

공단에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 정원 388명 중 370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은 취업지원직, 행정지원직, 조리직, 환경방호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⁷⁰⁾

3) 예산

공단의 예산은 일반회계(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특별회계(갱생보호기금 특별회계, 퇴직금 특별회계 등)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회계 수입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는 44,038,000,000원인데, 국고보조금 38,919,000,000원이고, 자체수입이 6,202,000,000원이다.⁷¹⁾ 갱생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갱생보호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의 운용 수익(이자, 기금증식사업), 공단수입, 기부금으로 구성되는데, 2022년 갱생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369,528,000원, 퇴직금 특별회계 2,094,025,000원이다.⁷²⁾

6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31~33면.

6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4면.

7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34~35면.

7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36~37면.

7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36~38면.

나. 주요 사업

1) 생활지원

가) 숙식제공

숙식제공사업은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일정 기간(최대 2년) 공단 생활관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의·식·주를 제공하여 출소 후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⁷³⁾

공단은 2018년부터 생활관 자치운영제도를 도입하여 대상자 인권 및 자립 의식 함양을 도모했다. 자치운영제도는 직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법무보호대상자가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운영 방식이다.⁷⁴⁾

또한 공단은 2019년부터 숙식제공 대상자의 사생활 존중과 쾌적한 거주 환경을 위해 전국의 생활관을 기존 다인실에서 1인 1실 생활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하였다.⁷⁵⁾

» [표 2-3-23] 최근 5년 숙식제공 실적

(단위: 명)

년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 적	1,846	1,568	1,634	1,494	1,419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5면.

최근 5년간 숙식제공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1,846명에서 2022년 1,419명으로 숙식인원은 점차 감소하였다.

7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4~45면.

7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4~45면(2018년 10월 서울지부, 경기남부지부, 경남서부지소가 생활관 자치운영제도를 시범적으로 시작했고, 2022년 현재 청소년 생활관인 서울서부지소, 전남동부지소, 광주남부지소 3곳을 제외한 23개 지부(소)에서 자치운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75) 부산지부가 1인 1실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2022년 기준 서울동부지부, 경기남부지부, 강원동부지부, 강원지부, 전북지부, 서울지부, 대전지부, 충북지부, 광주남부지소 총 10곳에서 1인 1실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4~45면).

나) 긴급지원

긴급지원사업으로는 기초지원, 학업지원, 일반지원이 있다. 기초지원은 생활관에 입소한 법무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기초생활지원, 직업훈련기관에 입교한 법무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직업훈련장려지원, 취업한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활동장려지원으로 구분된다. 학업지원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및 청소년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학비, 급식비, 학용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지원은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⁷⁶⁾

긴급지원은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소유재산·금융재산 등을 확인하여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3회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가족 구성원 및 지원내용에 따라 10~30만 원으로 상이하고, 현금 지급기준과 상당한 수준의 현물 또한 지원 가능하다.⁷⁷⁾

▶▶ [표 2-3-24] 최근 5년 긴급지원 실적

(단위: 명)					
년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 적	6,139	7,033	7,619	8,457	9,402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6면.

최근 5년간 긴급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6,139명에서 2022년 9,402명으로 숙식제공과 달리 긴급지원은 크게 증가하였다.

다) 기타 자립지원

기타자립지원의 종류에는 결연 보호, 법률구조, 주민등록 재등록 의료지원, 여비지원, 건강검진 등이 있다.⁷⁸⁾

7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5~46면.

7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5~46면.

7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6면.

» [표 2-3-25] 최근 5년 기타 자립지원 실적

(단위: 명)

년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 적	13,159	14,425	17,201	19,163	19,163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6면.

최근 5년간 기타 자립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13,159명에서 2022년 19,16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 가족지원

가) 주거지원

공단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무주택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법무보호대상자 중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이며, 20평형 전후 매입 임대주택(다가구주택)을 지원하며 최초 2년을 기준으로 4차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생활이 가능하다.⁷⁹⁾

동 사업은 2001년 경남지부에서 해피홈 3호를 시범 운영하며 최초 실시하였다. 이후 2005년 6월 법무부(공단), 건설교통부(주택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보호대상자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실시하였고, 동년 8월 공단 주거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교통부의 「매입 및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5년 11월 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임대 14호를 공급받아 공단 주거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하였다. 2020년 8월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 입주(연장)심사 시 주택소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개월의 임대료를 미리 납부하는 자립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2021년

7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6면.

2월 신규입주(본부 심사위원회), 재입주(지부(소) 심사위원회)로 이원화되어있던 입주 심사를 지부(소)심사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⁸⁰⁾

» [표 2-3-26] 최근 5년 주거지원 실적

					(단위: 명)
년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 적	152	220	110	156	154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7면.

최근 5년간 주거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152명, 2019년 220명, 2020년 110명, 2021년 156명, 2022년 153명이다.

나) 가족희망

공단은 가정해체 위기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가족관계 회복과 미성년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2014년 경기도 오산시에 가족희망센터를 건립하여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전국 지부(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⁸¹⁾

가족친화 프로그램은 가족교육, 가족캠프, 문화체험으로 구분된다. 가족교육은 가족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강사 등이 진행하는 강의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가족캠프는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 마련된 1박 이상 숙박형 캠프 프로그램이다. 문화체험은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체험활동으로 공연 및 스포츠 관람, 테마파크 체험 등이 있다.⁸²⁾

[표 2-3-27] 최근 5년 가족친화 프로그램 실적

					(단위: 명)
년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 적	238	36	493	568	1,313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8면.

8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6~47면(주거지원사업은 공단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2021년 고객만족도 점수의 전체 평균 88.8점 대비 4.1점 이상 높은 92.9점으로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8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7면.

8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7면.

최근 5년간 가족친화 프로그램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238명에서, 2019년 36명으로 급감하였으나, 2022년 493명, 2021년 568명, 2022년 1,31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공단에서는 2020년부터 경제적 빈곤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수형자 접견에 어려움을 겪는 수형자 가족에게 접견을 위한 일정 비용과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비용은 수형자 가족에게 접견 1회당 10~2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동행 서비스는 공단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차량을 이용해 수형자 가족과 동행하여 접견 장소까지 인솔하는 서비스이다.⁸³⁾

▶▶ [표 2-3-28] 최근 5년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 프로그램 실적

(단위: 명)

년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 적	-	-	279	421	498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8면.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 프로그램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279명, 2021년 421명, 2022년 49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 학업지원

공단은 2014년부터 양육자의 수감으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거나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가정 경제의 몰락과 빈곤으로 학업에 큰 지장을 받는 법무보호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의 학습 환경개선을 위해 학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업지원사업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학습교재, 학용품, 교복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금지원, 공단에 소속된 대학생 법무보호위원들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을 상호 매칭하고 결연을 맺은 후 학습지도 및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학습지원이 있다.⁸⁴⁾

특히 2022년에는 청소년 보호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트북 등 학습기기를 추가 구비하고, 신규 입소자에 대한 학습 수준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개인별 수준별 학습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요과목 정교사 자격 소지자의 비율을 확대하였다.⁸⁵⁾

8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8면.

8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8면.

» [표 2-3-29] 최근 5년 학업지원 실적

(단위: 명)

년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 적	1,280	1,418	1,651	2,287	2,880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9면.

최근 5년간 학업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1,280명, 2019년 1,418명, 2020년 1,651명, 2021년 2,287명, 2022년 2,88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라) 결혼지원

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보호대상자 부부들에게 예식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합동결혼식의 대안으로 시차결혼식, 각 가구별 결혼식 등으로 진행하였다. 공단은 1982년부터 40년간 총 3,111쌍의 결혼식을 지원하였다.⁸⁶⁾

» [표 2-3-30] 최근 5년 결혼지원 실적

(단위: 쌍)

년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 적	99	103	100	112	121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9면.

최근 5년간 결혼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99쌍, 2019년 103쌍, 2020년 100쌍, 2021년 112쌍, 2022년 121쌍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3) 취업지원

가)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법무보호대상자의 희망,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필요한 기능 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 직업훈련,

8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9면.

8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49면.

허그(HUG) 직업훈련, 직영직업훈련이 있다.⁸⁷⁾

일반 직업훈련은 법무보호대상자의 폭넓은 훈련 희망 종목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훈련 집중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단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외부 훈련기관에 훈련생의 위탁 입교를 통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이다.⁸⁸⁾

▶▶ [표 2-3-31] 최근 5년 일반 직업훈련 지원 실적

(단위: 건)

년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 적	897	1,322	963	998	924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0면.

최근 5년간 일반 직업훈련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897명, 2019년 1,322명, 2020년 963명, 2021명 998명, 2022년 924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꾸준히 실시하였다.

허그 직업훈련은 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2단계 프로그램인 직업능력개발과정으로, 공단 자체 지원훈련과 계좌제(HRD) 훈련, 취업매칭반(교정, 소년원) 훈련이 있다.⁸⁹⁾

▶▶ [표 2-3-32] 최근 5년 허그 직업훈련 지원 실적

(단위: 건)

년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 적	2,148	2,420	2,645	2,334	2,442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0면.

최근 5년간 허그 직업훈련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2,148건, 2019년 2,420건, 2020년 2,645건, 2021년 2,234건, 2022년 2,442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꾸준히 실시하였다.

8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0면.

8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0면.

8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0면.

직영훈련은 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7개 기술교육원에 개설된 직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것이다. 공단은 2012년 인천기술교육원을 설립하여 2022년 용접(인천, 울산), 기계가공(경남 창원), 영농(전북 전주), 자동차 정비(충남 홍성, 조리·미용 등(서울), 전기기능(경북 예천) 총 7개의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⁹⁰⁾

» [그림 2-3-1] 공단 기술교육원



용접



기계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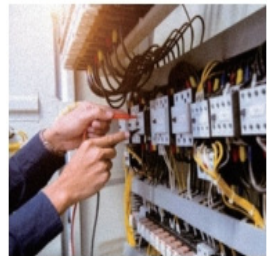
영농



자동차정비



한식조리 등



전기기능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1면.

나) 취업알선

공단은 취업을 필요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취업 준비 기간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알선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즉시 취업이 필요한 법무보호대상자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취업처 연계 시에는 법무보호대상자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고용협력기업 및 공단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이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⁹¹⁾

9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0~51면.

9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1면.

▶▶ [표 2-3-33] 취업알선 지원 현황

(단위: 명)

년 도	계획인원	취업인원		
		합 계	일반취업	허그취업
2018	4,146	3,687	735	2,952
2019	4,271	3,864	744	3,120
2020	4,490	4,659	924	3,735
2021	4,659	5,122	951	4,171
2022	4,845	5,374	712	4,662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2면.

최근 5년간 취업알선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취업과 허그취업을 합쳐서 2018년 3,687명에서 2022년 5,37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8년 일반취업 735명, 허그취업 2,952명이었는데, 2022년 일반취업 712명, 허그취업 4,662명으로 일반취업에 비해 허그취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은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단순한 취업알선만 지원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와 1:1 매칭을 통해 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의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통합 지원지원서비스이다.⁹²⁾

▶▶ [표 2-3-34] 단계별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지원 내역

① 단계 취업설계	② 단계 직업능력개발	③ 단계 취업성공	④ 단계 사후관리
- 초기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 - 취업활동 계획수립	- 공단 지원훈련 - 직영훈련(기술교육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 취업매칭반 훈련	- 취업정보제공 - 동행면접 - 이력서, 클리닉 - 면접 클리닉	- 취업자 직장 적응 - 미취업자 취업지원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 단, 출소예정자는 미지급	□ 교육비 최대 300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000원) ※ 취업매칭반 훈련 20만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 면접참여수당 1회 20,000원~50,000원(최대 5회)	□ 취업성공수당 - 고용보험 가입자 최대 200만원 - 고용보험 미가입자 최대 150만원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3면.

9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2면.

단계별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1단계 취업설계에서는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취업활동 계획수립을 하는데, 참여수당은 최대 15만원에서 25만원이다. 2단계 직업능력개발단계에서는 공단 지원훈련, 직영훈련(기술교육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매칭반 훈련을 하는데, 교육비 최대 300만원,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000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이다. 3단계 취업성공단계에서는 취업정보제공, 동행면접, 이력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을 집행하며, 참여수당 1회 2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최대 5회까지 제공된다. 제4단계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취업자 직장 적응, 미취업자 취업지원을 실시하는데, 취업성공수당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 [표 2-3-35]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지원 실적 - 참여 현황

(단위: 명, %)

연도	참여자	교정 대상자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출소자		본인 희망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8	5,726	3,893	68.0	499	8.7	110	1.9	1,224	21.4
2019	6,117	4,062	66.4	737	12.0	104	1.7	1,214	19.8
2020	6,605	3,829	58.0	790	12.0	84	1.2	1,902	28.8
2021	7,019	4,016	57.2	919	13.1	111	1.6	1,973	28.1
2022	7,729	4,211	54.5	953	12.3	200	2.6	2,365	30.6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4면.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2018년 총 참가자는 5,726명으로 이중 교정 대상자는 전체 참여자의 68%, 보호관찰 대상자는 8.7%, 소년원 출소자는 1.9%, 본인 희망은 21.4%였다. 2018년부터 참여자는 계속 증가하여 2022년에는 총 7,729명이 참가하였으며, 이 중 교정 대상자는 전체 참여자의 54.5%, 보호관찰 대상자는 12.3%, 소년원 출소자는 2.6%, 본인 희망은 30.6%이다.

▶▶▶ [표 2-3-36]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지원 실적 - 수료 및 취업 현황

(단위: 명, %)

구분	참여자	수료자	수료자 중 취업자	수료자 취업률	고용보험 취업자	고용보험 취업률
2018	5,726	4,915	2,630	53.5	1,608	61.1
2019	6,117	4,904	3,144	64.1	1,773	56.4
2020	6,605	5,037	3,354	66.6	1,845	55.0
2021	7,019	5,211	3,548	68.0	2,072	58.4
2022	7,729	2,643	2,205	83.4	1,279	58.0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4면.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수료 및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참여자는 5,726명이고 수료자는 4,915명이었다. 2022년에는 참여자가 7,729명이고, 수료자는 2,643명에 그쳤다. 참여자가 2018년 대비 2022년에 2,003명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료자는 2,643명으로 2018년 대비 2022년에 2,272명 감소하였다.

다만, 수료자 취업률의 경우에는 2018년 53.5%, 2019년 64.1%, 2020년 66.6%, 2021년 68.0%, 2022년 83.4%로 수료자 중 취업자는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표 2-3-37]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지원 실적 - 취업자 근속 현황

(단위: 명, %)

구분	취업자	3개월 이하	3개월~6개월 이하	6개월~1년 이하	1년 이상
2018	2,630	537	681	668	744
2019	3,144	707	810	872	755
2020	3,354	742	807	927	878
2021	3,548	759	860	1,196	733
2022	2,205	954	768	483	-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5면.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취업자 근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취업자 2,630명 중 3개월 이하 근속자가 537명,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근속자가 681명, 6개월 이상 1년 이하 근속자가 668명이,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74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21년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 근속자가 1,196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근속자가 860명이었다.

▶▶▶ [표 2-3-38]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지원 실적 - 수당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직업훈련교육비		취업성공수당		면접참여수당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8	1,410	366,421	3,190	574,222	1,505	1,538,673	3,601	1,701,400	706	18,216
2019	1,661	420,044	3,449	715,111	1,712	1,977,480	4,881	2,109,178	969	27,525
2020	3,197	463,831	3,796	693,163	1,556	1,658,175	5,774	2,508,899	888	29,822
2021	2,727	418,570	3,863	543,292	1,018	2,179,198	6,154	2,538,824	1,008	29,532
2022	2,674	456,716	2,733	349,887	1,314	1,254,699	2,358	785,811	712	19,774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5면.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수당 지원 현황을 2018년과 2022년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참여수당 1,140명에서 2,674명으로, 훈련참여수당 3,190명에서 2,733명으로, 직업훈련교육비 1,505명에서 1,314명으로, 취업성공수당 3,601명에서 2,358명으로, 면접참여수당 706명에서 712명으로 참여수당 지원인원을 제외하고 네 부문에서 수당 지원자가 모두 소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수당 지원액의 경우, 참여수당 366,421,000원에서 456,716,000원으로, 훈련참여수당 574,222,000원에서 349,887,000원으로, 직업훈련교육비 1,538,673,000원에서 1,254,699,000원으로, 취업성공수당 1,701,400,000원에서 785,811,000원으로, 면접참여수당 18,216,000원에서 19,774,000원으로 참여수당과 면접참여수당 부문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라) 창업지원

창업지원은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 중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구 휴면예금관리재단)은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을 활용한 창업지원의 지원금 협약을 체결하여 시작되었다. 창업지원 금액은 2010년 최대 4천 만원이었다가 최대 5천 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창업지원 기간은 2016년 최대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하였고, 저렴한 이율(2022년 기준 연이율 2.5%)로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8명에게 81억 4,355만원을 지원하였다.⁹³⁾

▶▶ [표 2-3-39] 창업지원자 업종 현황

(단위: 명, %)

업종분류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제조업	기타	합계
인원	18	38	19	92	15	26	208
비율	8.6	18.3	9.1	44.2	7.3	12.5	100.0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6면.

창업지원자 업종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업이 92명(4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 38명(18.3%), 기타 26명(12.5%), 서비스업 19명(9.1%), 건설업 18명(8.6%), 제조업 15명(7.3%) 순으로, 음식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4) 상담지원

가) 사전상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 이후의 두려움 해소와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1987년부터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출소 예정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출소 1개월 전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범유발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개별 혹은 집단상담을 진행하여 출소 전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다.⁹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평균 29,066명 상담을 완료하였고, 2022년 사전상담 인원 중 16,813명과 법무보호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허그일자리가 3,694명(40.4%), 긴급지원 3,615명(39.6%), 심리상담 880명(9.6%) 순으로 집계되었다.⁹⁵⁾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정기관 내 집합교육이 중단되는 등 사전상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단은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교정·보호직원이 먼저 사전상담을 실시한 후 공단으로 사전상담기록서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였다. 2021년에는 장기화되는 팬데믹 국면 속에서 비대면 사전상담 추진에 내실화를 기했으며, 분기별로 실시하는 공단·교정·보호관찰 3자 협의회를 통해

9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5~56면.

9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7면.

9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7면.

지속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2021년 사전상담자는 29,467명으로 계획 대비 90.7%를 달성하였으며 2020년 대비 26.7% 상승하였으며, 2022년에는 31,847명으로 계획 대비 109.9%를 달성하게 되었다.⁹⁶⁾

» [표 2-3-40] 최근 5년 사전상담 지원 실적

(단위: 명)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적	30,630	32,052	21,332	29,467	31,847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7면.

최근 5년 사전상담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30,630명, 2019년 32,052명이었지만 2020년 21,332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 29,467명, 2022년 31,847명으로 증가하였다.

나) 심리상담

심리상담은 상담주제에 제한 없이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들의 심리적 호소 및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것으로 1:1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으로 이루어진다. 공단은 2012년부터 법무보호대상자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혜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이다. 2017년부터는 법무보호대상자 취업동기 및 역량강화를 위해 취업지원 직원과 협업하여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도 집단 심리상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⁹⁷⁾

» [표 2-3-41] 최근 5년 심리상담 실적

(단위: 명)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적	11,759	12,694	12,669	13,816	14,923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9면.

9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7면.

9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8면.

최근 5년 심리상담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11,759명, 2019년 12,694명, 2020년 12,669명, 2021년 13,816명, 2022년 14,923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다) 사후관리 및 멘토링

공단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법무보호사업을 종료한 때부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숙식제공, 직업훈련, 주거지원 대상자 등 현재 법무보호사업에 참여 중인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진로, 교육, 상담, 생활지도 등 멘토링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공단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면담, 통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주로 선행유지, 불량한 자와의 교제 금지,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사후관리 기간은 1년이며,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 [표 2-3-42] 최근 5년 사후관리 및 멘토링 실적

(단위: 명)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적	15,144	17,148	19,172	22,812	25,310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60면.

최근 5년간 사후관리 및 멘토링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15,144명, 2019년 17,148명, 2020년 19,172명, 2021년 22,812명, 2022년 25,310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라) 사회성 향상 교육

사회성 향상 교육은 법무보호대상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복귀하도록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으로, 기초소양교육, 체험교육, 봉사활동, 심리치료 등을 실시한다. 공단은 다양한 사회성 향상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으로 실시되고 있다.⁹⁸⁾

9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60면.

» [표 2-3-43] 사회성 향상 교육 종류

구분	내용
기초소양교육	주민행정, 생활·산업현장의 안전 수칙, 신용 회복 및 서민금융, 보건 상식, 생활법률 등의 안내 및 교육
체험 교육	유적지·산업현장 등 견학, 공연 관람, 운동경기 관람 등의 체험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및 농촌·수해·재해 지역 등에서의 봉사
심리치료	집단상담, 미술·원예·웃음 등을 통한 심리치료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60면.

사회성 향상 교육의 종류에는 주민행정, 생활 및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보건 상식 등 일상적인 부분부터 신용 회복 및 서민금융, 생활법률 등의 안내 및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소양교육이 있다. 또한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유적지나 공연, 운동 경기 등의 관람을 내용으로 하는 체험 교육, 사회복지시설이나 농촌 지역 등에서의 봉사활동, 집단상담이나 미술·원예·웃음 등을 통한 심리치료 등이 있다.⁹⁹⁾

» [표 2-3-44] 최근 5년 사회성 향상 교육 실적

(단위: 명)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적	3,671	3,674	3,716	4,202	4,421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60면.

최근 5년간 사회성 향상 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3,671명, 2019년 3,674명, 2020년 3,716명, 2021년 4,202명, 2022년 4,421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3. 민간기관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가. 민간 갱생보호법인

우리나라에서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은 교정본부 및 교정시설, 법무부 산하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주로 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에서도 출소자의

9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60면.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민간기관으로 민간 갱생보호법인이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하면, 갱생보호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무의탁 출소자에 대한 숙식 제공 등 갱생보호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¹⁰⁰⁾ 또한, 민간 갱생보호법인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으며,¹⁰¹⁾ 법무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¹⁰²⁾ 2023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민간갱생보호법인은 총 8개이다.

1) 허가, 취소 및 정지

민간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①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②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어야 하며, ③ 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이어야 한다.¹⁰³⁾

민간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① 명칭, ② 갱생보호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방법, ③ 발기인 또는 설립자의 성명·주소·경력 및 자산상황과 경영책임자의 자산상황, 경영조직 및 회계처리기준, ⑤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 및 구조와 그 사용권, ⑥ 경영책임자 및 갱생보호업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성명 및 경력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¹⁰⁴⁾

10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①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0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

10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10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3. 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104) 제68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갱생보호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방법
3. 발기인 또는 설립자의 성명·주소·경력 및 자산상황과 경영책임자의 자산상황
4. 경영조직 및 회계처리기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민간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법무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사유로는 ① 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④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⑤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⑥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 이 중에 ①과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법무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한다.¹⁰⁵⁾ 다만, 법무부 장관은 위의 사유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¹⁰⁶⁾

2) 지원 및 감독

민간 갱생보호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¹⁰⁷⁾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민간 갱생보호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¹⁰⁸⁾ 이에 더해 민간 갱생보호법인 역시 공단과 마찬가지로 갱생보호사업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¹⁰⁹⁾

5.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 및 구조와 그 사용권

6. 경영책임자 및 갱생보호업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성명 및 경력

1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69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10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10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민간 갱생보호법인에 대해서도 지휘·감독한다.¹¹⁰⁾ 민간 갱생보호법인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되어, 임원 취임, 정관 변경, 상근직원 임명, 기본 재산 변경 등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¹¹¹⁾ 그리고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민간 갱생보호법인은 법무부에 매월 실적보고 및 매년 사업계획, 전년도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¹¹²⁾

법무부는 국고보조금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상황 상시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법인별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을 통해 입소자 관리실태,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감독 및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¹¹³⁾

나. 민간 갱생보호법인 현황

현재 우리나라 민간 갱생보호법인은 서울에 한국교회복지재단, 세계교회갱보협회, 담양선교회, 경기도 부천에 열린 낙원, 경상북도 칠곡에 바스카교회복지회, 전라북도 전주에 양지뜸, 충청북도 청주에 뷰티플 라이프,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에 굿라이프로 전국 총 8개가 있다. 이들 기관은 예산의 약 60%를 국고에서 재정지원을 받고,¹¹⁴⁾ 나머지는 일반인 및 단체의 후원금 등 자체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10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수익사업)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111)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자문회의 자료(2023. 4. 14.), 2면.

1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보고의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자문회의 자료(2023. 4. 14.), 2면.

114) 법인 전체 예산 중 국고보조금 비율이 59.9%이고, 2022년 1,759백만원, 2023년 1,698백만원 이 보조금으로 민간 갱생보호법인에 국고지원되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자문회의(2023.4.14)).

» [표 2-3-45] 민간 갱생보호법인 현황

법인명		한국교 화복지 재단	세계 교화갱 보협회	담안선 교회	바스카 교화 복지회	양지뜸	뷰티플 라이프	열린 낙원	굿라 이프
구분									
설립년도		1985	1991	1985	1997	2004	2005	1996	2020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파주시	서울시 중랑구	경북 칠곡군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경기도 부천시	전북 전주시
운영인력(42명)		4	7	11	4	5	3	3	5
정원(190명)		10	20	100	10	15	10	10	10
숙식현원(179명)		9	16	106	6	11	9	14	9
시설		임차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임차	자체
예산 (단위 : 백만원)	전체 (국고)	194 (129)	401 (189)	1,181 (706)	234 (129)	277 (169)	206 (158)	251 (158)	189 (121)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자문회의 자료(2023. 4. 14.), 3면 재구성

1) 한국교화복지재단

재단법인 한국교화복지재단은 1985년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갱생보호기관으로, 생활관은 관악생활관과 은평생활관 두 곳이며, 생활관의 입소 대상자는 남성이다. 한국교화복지재단은 법무보호 대상자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귀주여비 지급, 생업조성금 지급, 장학금 지급, 사전면담, 영치금전달, 기타 법무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 외에 한국교화복지재단은 법무보호 대상자에게 재사회화 프로그램, 정서함양 프로그램,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 의사표현향상 프로그램, 자원체계연결 프로그램 등을 교육하여 이들의 사회적응을 촉진한다. 또한 한국교화복지재단은 법무보호 대상자에게 직업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운전면허 교육 및 전문직업교육을 위탁함으로써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아이디어와 기술 창업 지원, 창업절차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화복지재단은 서울 중랑구에 어린이집(60명)을 운영하여 소득 취약 계층 자녀에 대한 보육육아 서비스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¹¹⁵⁾

115) 재단법인 한국교화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pici.co.kr/sh_page/page34.php 2023. 11. 1. 최종검색)

2) 세계교화갱보협회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는 1996년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갱생보호기관으로 경기도 파주시에 남자생활관인 금성의 집(정원 20명), 서울시 은평구에 여자생활관인 다비타 여성쉼터(정원 10명)와 가족생활관(4세대)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관에는 정신장애인과 전자감독 대상자도 입소할 수 있다. 세계교화갱보협회 생활관에서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을 하고 있다. 직업훈련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적성, 경력, 희망사항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전문학교, 일반 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알선은 기업을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 후원회원, 기타 독지가 중 기업 경영자와 연계하여 법무보호대상자가 취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자립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위탁알선, 호적 취적 및 주민등록 재등록, 의료시혜 등 법무보호 대상자가 자립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¹¹⁶⁾

3) 담안선교회

사단법인 담안선교회는 1985년 개칭되어 기독교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다. 담안선교회는 정원 100명으로 민간 갱생보호법인 중 최대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의 98.96평의 대지로 이루어진 남성과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관(성애원)과, 연립주택형 가족생활관(살롬의 집, 12세대)을 운영하고 있다. 담안선교회는 법무보호 대상자에게 숙식제공,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 경제적인 기반 마련을 도와 이들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¹¹⁷⁾

4) 열린낙원

1996년 설립된 사단법인 열린낙원은 기독교 기관으로 2005년 3월에 진주교도소, 2009년 12월에 청주교도소와 자매결연을 맺어 해당 시설에서 출소하는 이들을 지원

116) 세계교화갱보협회 홈페이지 (<http://www.aftercare.or.kr/biz/biz1.html> 2023. 11. 1. 최종검색)

117) 담안선교회 홈페이지 (http://www.daman.co.kr/introduction/info1_03.htm 2023. 11. 1. 최종검색)

하고 있다. 열린낙원은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출소자 중 남성 대상 공동생활관(정원 20명)을 운영하고 있다. 열린낙원은 보호관찰대상자와 무의탁 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제공, 의료지원, 학비 지원, 취업알선,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열린낙원은 대상자들의 입원 및 수술치료 지원 사업, 정신과 진료 사업, 의료진 촉탁 사업을 포함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¹¹⁸⁾

5) 빠스카교화복지회

사단법인 빠스카교화복지회는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교정·교화 사업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소자들의 교정·교화 활동과 출소예정자들의 구직활동 등 사회복귀를 위한 재사회화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¹¹⁹⁾ 빠스카교화복지회에서는 무의탁 출소자들에 대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소규모 창업지원 등을 하고 있다. 빠스카교화복지회의 지원대상은 남성 출소자와 전자감독 대상자이며, 빠스카교화복지회에서 운영 중인 수익사업체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경상북도 칠곡군에 위치한 생활관에 입소하여 생활하는데, 최대 2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빠스카교화복지회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수익사업 허가를 받아 두부 및 도토리묵을 생산, 판매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¹²⁰⁾

6) 양지뜸

2004년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양지뜸(천사의 집)은 소년원을 퇴원한 후 생활할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거주할 곳을 제공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파견된 수녀님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양지뜸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 15명이고, 보호처분을 받은 남자 청소년이 입소 대상이다. 양지뜸은 대상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118) 열린낙원 홈페이지 (<http://열린낙원.org/> 2023. 11. 1. 최종검색)

119) 사단법인 빠스카교화복지회 (<http://cafe.daum.net/pascha9722664/8z4c/10> 2023. 11. 1. 최종검색)

120) 사단법인 빠스카교화복지회 (<http://cafe.daum.net/pascha9722664/8z4c/9> 2023. 11. 1. 최종검색)

제공하고,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정규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성 및 경험을 충족하기 위한 특별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직업 교육, 인성교육 및 심리치료,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 수용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상담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에게 일탈 청소년 상담과 법원 보호감호 상담을 통해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진 청소년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있다.¹²¹⁾

7) 뷰티플 라이프

2007년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뷰티플 라이프는 수녀 출신 원장이 운영하기 시작한 곳으로 연고자가 없는 출소자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의식주를 제공하고 갇혀 지도를 하며, 사회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알선, 사회정착자금 마련 등을 제공한다. 뷰티플 라이프는 충청북도 청주에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관은 원룸 형태의 다세대주택 공동생활관으로 알콜중독, 마약, 조직폭력, 습관성 사기 등을 제외한 성인 남성만 입소 가능하다. 뷰티플 라이프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에서 운영 중인 빠스카복지회의 두부공장 운영 경험으로 출소자들에게 일정 수입을 보장하고 단합 활동을 제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뷰티플 라이프는 2005년부터 택배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¹²²⁾

8) 굿라이프

사단법인 굿라이프는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 전라북도 전주에 설립되었다. 굿라이프 생활관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있으며, 총 10개실 1인 1실로 운영되고 있다. 최대 수용 정원은 10명이며, 남성 출소자가 거주 대상이다.¹²³⁾

굿라이프는 장기출소자와 북한이탈주민 출소자들이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여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출소

121) 양지뜸 홈페이지 (<http://www.1004home.co.kr> 2023. 11. 1. 최종검색)

122) 뷰티플 라이프 홈페이지 (<http://bt-life.co.kr/> 2023. 11. 1. 최종검색)

123) 굿라이프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goodlife2020> 2023. 11. 1. 최종검색)

자 복지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출소자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기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과 각종 사회 교화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¹²⁴⁾

굿라이프는 수용자 가족들에게 장의용품 생산 판매 시설 운영, 키조개 양식장 운영, 버섯 종균 및 재배장 운영으로 출소자와 수용자의 가족들의 자활을 적극 돕고 있다. 또한 출소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상담,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향상 교육, 멘토링 및 사후관리, 숙식 제공, 주거지원 및 취업·창업지원과 각종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¹²⁵⁾

다. 주요 사업

1) 주요 사업 내용

민간 갱생보호법인의 사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민간 갱생보호법인은 무의탁 출소자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지원, 심리상담, 재사회화 프로그램, 원호지원 등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²⁶⁾

출소자 또는 관계기관이 민간 갱생보호법인에 보호의뢰를 신청하면, 민간 갱생보호법인은 대상자의 범죄경력, 가정환경,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입소자 자립계획서에 따라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심리치료, 재사회화, 원호지원 등 입소자별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¹²⁷⁾

또한, 민간 갱생보호법인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이 희망할 경우 면접, 통신, 방문 등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¹²⁸⁾

124) 굿라이프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goodlife2020> 2023. 11. 1. 최종검색)

125) 아시아뉴스전북, “(사)굿라이프 이사회, 출소자 자활·범죄예방 활동에 최선” (<https://www.mjeonbu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3>

2023. 11. 1. 최종검색)

12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자문회의 자료(2023. 4. 14.), 1면,

12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자문회의 자료(2023. 4. 14.), 2면,

12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자문회의 자료(2023. 4. 14.), 2면,

» [그림 2-3-2] 갱생보호 지원 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자문회의 자료(2023. 4. 14.), 1면.

2) 주요 사업 현황

2022년 민간 갱생보호법인에서 실시한 갱생보호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3-46] 2022년 갱생보호사업 현황

(단위: 명)

계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심리치료	재사회화	긴급원호	기타
7,235	406	160	103	707	2,656	239	2,964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자문회의 자료(2023. 4. 14.), 2면.

2022년 갱생보호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235건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사업이 2,964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재사회화 사업이 2,656건, 심리치료가 707건, 숙식 제공이 406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 [표 2-3-47] 최근 3년간 법인별 사업실적

(단위: 명)

법인명 구분	계	한국교 화복지 재단	세계교 화갱보 협회	담안선 교회	빠스카 교화복 지회	양지뜸	뷰티플 라이프	열린 낙원	굿라 이프
2020년	5,131	364	767	834	216	2,177	350	423	
2021년	10,223	477	792	6,310	313	1,406	566	231	128
2022년	7,235	586	796	2,416	259	1,707	753	462	256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자문회의 자료(2023. 4. 14.), 2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법인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총 5,131건인데, 이중 양지뜸이 2,177건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2021년에는 총 10,223건인데, 이중 담안선교회가 6,310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에는 총 7,235건인데, 이중 담안선교회가 2,416건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담안선교회가 규모가 제일 큰 만큼 사업실적도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절 | 소결

1. 교정시설 입·출소, 재복역률 현황

2013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인 2020년까지는 일반적으로 교정시설에 매년 약 5만 명 이상 입소하고, 약 5만 명 이상 퇴소하였다. 즉, 교정시설 수형자 중 매년 약 5만 명 이상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교정시설 수형생활 중 범법행위를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는 출소자도 있으나, 그렇지 못해 사회복귀에 실패하거나 다시 재범으로 이어지는 출소자도 있을 수 있다.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성공적인 사회정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 회복, 취·창업 등을 통한 기본 생계유지 및 경제활동, 문화활동, 종교활동 등 기타 사회활동, 재범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중 출소자의 재범 여부는 출소자의 사회정착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출소 후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재복역률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출소자 중 재복역 인원 및 재복역률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였으나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출소자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수형자 교정교화,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방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현행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의 재범률은 평균 0.3%~0.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출소자의 재복역률(25% 내외)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복지 서비스는 출소자가 자의로 신청하여 제공받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의 재범률이 현저히 낮고,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 출소 전 사회복귀 지원

우리나라 출소자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을 위한 준비는 교정단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형자의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 성공적인 사회정착,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관계 법령인 형집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등에 근거하여,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작업과 직업훈련, 사회적 처우(귀휴,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 집 이용, 사회봉사 및 사회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출소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느냐 재범으로 나아가느냐는 출소 후 자립을 위한 생계유지와 관계가 깊다. 이런 점에서 교도작업 후 수형자에게 지급되는 작업장려금은 출소 후 사회정착을 위한 준비금으로서 중요하다. 따라서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교도작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작업장려금의 점진적인 상향 노력도 필요하겠다.¹²⁹⁾

사회적 처우인 귀휴,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가족만남의 집 이용, 사회견학, 사회봉사는 수형자들이 출소 전 가족 등 사회 구성원을 만나고 사회를 경험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한 연결망이 강할수록, 가족 및 외부의 지지가 많을수록, 지역사회결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출소 후 사회정착 준비를 적극적으로 한다.¹³⁰⁾ 따라서 사회적 처우는 출소자 사회복귀에 중요한 경험이 되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사회적 처우는 중장기수형자보다는 비교적 단기수형자에게 실시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사회 단절 기간이 긴 중·장기수형자에게도 귀휴, 사회봉사, 사회견학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간처우시설로는 개방교도소(1개), 소망의집(4개), 희망센터(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청별로 각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¹³¹⁾ 특히, 이러한 중간처우시설은 기업

129) 징역(懲役)은 엄연한 형벌이며, 형벌로서 역(役)을 수행하는 것으로 수형자의 교도작업은 사회인의 근로생활과 구별되면, 수형자의 작업장려금 역시 사회인의 임금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이유로 수형자에게 지급되는 작업장려금은 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며,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준할 수는 없다. 다만, 작업장려금은 수형자의 수형생활 비용과 사회정착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권수진·권창모·오영근,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438~439면.)

130) 특히,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정도는 수형자가 출소 후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신연희, “출소 후 재범 예방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1호(통권 제73호, 2008-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202~204면)

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중간처우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각 교정시설의 개별 노력이 아니라 지역청별로 협력기업 발굴이 필요하다.¹³²⁾

3.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

출소 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정착에 관한 근거 법률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가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숙식제공, 취업알선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¹³³⁾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출소 준비는 출소 시점이 아니라 교정시설 입소 시부터 준비하는 것이 효과가 더 높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 출소(예정)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수행자에게 이와 같은 다양한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제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단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제도가 출소 후 또는 출소 임박한 시점보다는 적어도 출소 몇 개월 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교정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겠다.¹³⁴⁾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회복, 취·창업, 지역사회 편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단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제도는 주로 관 주도하에 이루어지지만 사회의 민간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 취·창업을 위한 지원 및 민간 협력기업의 확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력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131) 권수진·권창모·오영근,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432~434, 454~458면.

132) 권수진·권창모·오영근,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437~458면.

133) 공단의 주요 지원사업은 생활지원(숙식제공, 긴급지원, 기타 자립지원), 가족지원(주거지원, 가족희망, 학업지원, 결혼지원), 취업지원(직업훈련, 취업알선,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상담지원(사전상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멘토링, 사회성 향상 교육)이 있다.

134) 권수진·탁희성·박선영·오병두,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84~88면의 외국 사례 참조.

제 3 장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1)

출소(예)자 심층면접 분석 결과

박 성 훈

제3장

출소(예)자 심층면접 분석 결과

제1절 | 선행연구의 검토

1. 출소자의 재범요인 관련 연구

출소자의 재범은 일반적으로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출소 전과 비교하여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출소 이후 2~3개월 사이에 다시금 유혹과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출소자를 향한 주변의 시선이 냉담하고, 불신에 가득하며, 꺼릴수록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¹³⁵⁾ 따라서 출소 이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은 경험이 야말로 재범 억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소자들은 오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관련 지식이 부족할 경우 낯선 세상에 홀로 자립해 나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출소자들 가운데 보호요인이 부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기술이 없는 경우 당장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가속하는 요인에는 수형생활 동안 알게 된 사람들의 불법적인 제안도 포함될 것이다. 또한, 출소 이후의 가족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배우자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 측에서 이혼을 요구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는 경우에 출소자들은 더욱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다.¹³⁶⁾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전과자의 자녀라는 낙인이 자녀의 삶에 부정적인

135) 정진연, 효율적인 갇생보호사업의 방향-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23, 2004, 188~190면.

136) 정진연, 효율적인 갇생보호사업의 방향-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23, 2004,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출소자는 가족으로부터도 소외 당할 가능성이 높다. 누범자일 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출소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 관점 즉, 개인의 내적 위험 요인과 사회·환경적 외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내적 위험 요인에는 낮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곤란으로 인한 문제, 사회적 지체로 인한 개인 적응상의 문제, 타인과의 소통 기술의 부재, 생계를 위한 소득 창출 기술의 문제가 포함된다. 사회·환경적 외부 요인에는 출소자를 위한 제도, 법, 서비스 등의 부족, 사회적 냉대 및 편견, 취업 및 진로의 어려움, 주변 인물 및 유해 환경의 영향, 빈곤한 가정환경 등을 지적할 수 있다.¹³⁷⁾

많은 출소자가 현실의 높은 벽에서 좌절감을 경험하고, 사회적 낙인의 효과로 인해 이웃,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냉대를 경험한다. 특히 출소자라는 낙인은 사회적응을 위한 기본적 조건인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어렵게 만들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¹³⁸⁾ 취약한 생활기반과 얇은 수준의 직업기술과 능력으로는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수 출소자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출소 이후 빠른 취업이 출소자의 재범욕구를 크게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일반시민들은 출소자로부터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출소자를 멀리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¹³⁹⁾ 이러한 문제는 출소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고용주들 역시 출소자로 인해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고용을 선호하지 않으며, 실제로 출소자를 고용했다는 응답은 6.6%밖에 되지 않았다.¹⁴⁰⁾ 설사 고용하더라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지인의 소개로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취업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90~192면.

137) 이신영,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갱생보호사업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38, 2008, 139~161면.

138) 최인섭·김지선,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1994; 배임호,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발전방향, 교정연구 60, 2013, 119면.

139) 이윤호 외,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2006, 35면.

140) 김대권, 기업고용주의 전과자 채용에 관한 인식연구, 경찰학논총 6(1), 2011, 141면.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곧 성공적 사회정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사회적응은 출소자의 재범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응이란 범죄자가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 등 넓은 범위를 의미한다.¹⁴¹⁾ 출소자들의 재범이 증가하는 이유는 독신자, 이혼, 구직 실패와 같은 사회와의 결속력 붕괴, 범죄의 종류, 낮은 교육수준 등을 들 수 있다.¹⁴²⁾ 이러한 요인은 출소자의 재범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응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적응은 다양한 재범요인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응은 출소자뿐 아니라 약물, 마약, 도박 등 중독을 경험한 사람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로 복귀할 때 사용하는 개념 중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출소자가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데 있어 사회적응은 출소자와 가족의 유대를 회복함으로써 출소자 가족의 삶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간 유대를 회복하지 못한 출소자는 사회적응보다 사회부적응을 경험하며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금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¹⁴³⁾

출소자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문제뿐 아니라 사회부적응의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많이 거론되는 또 다른 요인은 취업이다.¹⁴⁴⁾ 출소자의 취업은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문제와 결합되어 재범에도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자 보호요인이 되고 있다.¹⁴⁵⁾ 선행연구에 따르면, 출소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 취업을 통한 고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고용으로 인해 출소자의 재범이 억제되는 것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억제 과정 자체가 강화될 수 있다는 논의에 기인한다. 고용이 출소자의 인생에 하나의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어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⁴⁶⁾ 국가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출소자의

141) 양혜경·서보람,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3, 2014, 117면.

142) 이현희, “재범요인에 관한 인과적 분석 : 형벌과 사회적 결속”, 교정연구 24, 2004, 97~122면.

143) 양혜경·서보람,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3, 2014, 115~144면.

144) 민원홍·원일,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47, 2014, 1~19면.

145) 양혜경·서보람,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3, 2014, 117면.

146) Giordano, P. C., Cernkovich, S. A., & Rudolph, J. L., Gender, crime, and desistance: Toward a theory of cognitive transform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4),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재범억제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⁴⁷⁾

출소자의 재범억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의 강한 유대감 역시 출소자의 사회 재통합에 영향을 미친다.¹⁴⁸⁾ 지역사회와의 친사회적 유대감은 출소자의 감정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하여 낙인효과를 감소시킨다.¹⁴⁹⁾ 출소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잡적이거나 출소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수준이나 소외된 대인관계를 극복하고 낙인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유대는 재범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진다.¹⁵⁰⁾

출소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 종교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수형자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연구에서는 구금기간 종교 활동이 죄의식과 상실감을 회복시키고, 삶의 의미와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도록 하며, 외부인은 물론 다른 수형자들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¹⁵¹⁾ 종교 활동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난 수형자들은 교정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출소 후에도 회복된 자아존중감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¹⁵²⁾ 여성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종교가 없다가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 출소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주변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¹⁵³⁾

2002. 1021면.

147) 민원홍·원일,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47, 2017, 1~19면.

148) Petersilia, Joan., When Prisoners Come Home: Parole and Prisoner Reentry, 2003.

149) LeBel, Thomas P., Ros Burnett, Shadd Maruna, & Shawn Bushway. (2008). “The ‘Chicken and Egg’ of Subjective and Social Factors in Desistance from Crime.”,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5(2): 130~158면.

150) 김정현·공정식, “범무보호사업에 대한 교정전문가의 중요도와 출소자의 선호도 비교연구: IPA 기법 적용”,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11), 2019, 392~400면.

151) Clear, T. R., Hardyman, P. L., Stout, B., Lucken, K., & Dammer, H. R. (2000). The value of religion in prison: An inmate perspective.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16(1), 53~74면.

152) Roman, C. G., Wolff, A., Correa, V., & Buck, J. (2007). Assessing intermediate outcomes of a faith-based residential prisoner reentry program.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7(2), 199~215면.

153) 김인숙, “여성출소자들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6, 1992, 9~31면.

▶▶ [표 3-1-1] 출소자의 사회정착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연구방법
정진연 (2004)	· 연구목적: 갱생보호사업의 현황파악과 활성화 방안 모색 · 재범의 원인 - 출소자의 일반적 환경과 재범 위험성 : 사회적응의 실패(사회변화), 낙인과 냉대(communitary lag), 생활기반 취약, 범죄적 관계 - 가족 및 주변인과의 관계 약화 및 단절 - 사회의 배타적 분위기와 고정관념 - 출소자의 자립갱생 의지 부재	문헌연구
이신영 (2008)	· 연구목적: 지역사회 중심의 효율적 갱생보호사업을 탐색해 재범 방지·출소자 복지를 증진 · 이론적 배경: 출소자 사회복귀 과정상 발생하는 어려움의 극복 실패 시 재범 가능성 상승 → 재범 관련 요인 - 심리·사회적 지체, 관계형성 기술 부재, 자아 정체감, 사회적인 냉대, 취업, 유해한 환경, 가족결속력 - 범죄경력, 범죄성향 욕구, 반사회적 행동, 사회적 성취, 나이, 성별, 인종 - 재정적 지원 및 정서적 지지	문헌연구
신연희 (2008)	· 연구목적: 출소자의 사회적응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굴 · 이론적 배경 :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관계망 -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자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얻게 되는 이익 · 분석자료 - 수형자 233명 - 종속: 출소 후 대비정도, 자기효능감 - 독립: 외부접촉정도, 가족의 지지, 지역사회유대에 대한 태도 · 분석결과 - 수형자의 가족지지, 지역사회유대가 높을수록 출소 후 대비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	양적연구
최영신 (2009)	· 연구목적: 수형자의 사회복귀 과정과 관련된 처우의 문제점 파악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연계 방안 제언 · 미국 OJP Reentry Partnership Initiatives(RPI) 모델 - (1단계) 구금시설 내 단계: 범죄자의 위험, 필요, 능력에 대한 타당·체계적 평가에 기초하여 개별처우 계획을 개발 및 실행 - (2단계) 구조화된 사회복귀 단계: 사회복귀 시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계획과 지원망 구축, 지역사회 초기 연계 - (3단계) 지역사회 재통합 단계: 사회복귀 계획 재확인 및 유지, 사례관리에 서 모든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기반 두도록 토대 제공 - 한국은 구금시설 단계(1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 내 처우와 체계적 연계 미흡	문헌연구
오재돌 (2010)	· 연구목적: 직업훈련교육의 실태 파악 및 출소 후 생계수단으로써 활용도 제고 방안 논의 · 직업훈련교육의 문제점 - 직업훈련시스템과 사회시스템 간의 괴리 존재: 2000년 이후 교정시설 내	문헌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연구방법
	직업훈련 내실화를 목표로 IT 직종이나 고급직종 훈련을 강화하였으나, 대다수 고용주는 출소자에게 고급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요구와 동떨어진 교육이 오히려 출소 후 취업률을 낮추는 실정 - 직업훈련 시스템 경직성: 직업훈련 시스템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특정 기간 집체교육만 받는 구조이나, 이러한 정형화된 시스템은 선택의 폭을 좁히고 기술 숙련과정이 배제되며 자격취득 이외 효과는 미미한 결과를 초래 - 단기수형자는 직업훈련 교육 시기가 맞지 않아 참여가 어려움	
배임호 (2013)	· 연구목적: 국내 갇혀살아온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 모색 · 이론적 배경: 회복적 사법 - 관계 회복을 통한 사회복귀: 관계 회복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며, 출소자 자신과의 관계, 출소자 가족과의 관계,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실천되는 것 - 관계회복을 위한 각 대상의 욕구와 특성 ①출소자: 심리적 취약성, 괴리감, 낙인효과, 사회적 냉대 등으로 취업과 사회생활이 제한되어 재범의 유혹에 빠지기 쉬움 ②출소자 가족: 가족관계의 와해와 기능적 결손으로 피해 혹은 가해에 취약한 환경 조성 ③지역사회: 출소자에 대한 불안, 불신, 두려움으로 고용위축 및 포용 지양	문헌연구
양혜경 외 (2014)	· 연구목적: 출소자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위한 방안 모색 · 이론적 배경: 생태체계이론 - 적응: 자신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 - 사회적응: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규범이나 규칙을 따르고, 가족 및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직업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성원으로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 · 연구대상: 경기도 소재 한 교도소 내에 수감 중인 수형자 6인 · 연구방법: 심층면접 및 질적 내용분석 · 연구결과 - 가족의 지지와 유대가 중요하지만 가족 해체나 단절이 심각한 상황. 가족 관계 회복은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연결되기 때문에 실용적인 가족 프로그램 필요 - 외부환경에 대한 정보나 현실감이 떨어짐. 외부환경 탐색 및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 취업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통한 욕구 반영 - 출소 전과 후를 연속성 있게 도와주는 교정사회복지사 도입	질적연구
양남미 외 (2016)	· 연구목적: 출소자의 취업과 취업유지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 · 연구대상: 출소자 취업지원 담당자 11명 · 연구방법: CQR · 연구결과 - 취업지원 시 중요한 것: 출소자와의 전문적 관계 형성 및 지지, 출소자의 자립 의지, 현실적 눈높이에 맞는 업체 매칭,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출소자 취업에 도움요인: 출소자의 의지와 마음가짐, 출소자에 대한 취업지원관의 심리적 지지, 출소자를 위한 취업처 확보와 정보제공, 구직지원,	질적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연구방법
	경제적 지원, 현실적 감각교육과 일자리 매칭, 상담 및 사후관리, 수당 - 취업지원관이 경험하는 어려움: 업무과중, 출소자 무의지, 업무 자체의 어려움, 선입견, 출소자의 재범 - 출소자 취업의 어려움 해결 방안: 출소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 출소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지원 필요, 출소자 후원업체에 대한 보상 - 효율적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질: 전문적 심리상담기술, 직업상담에 대한 전문적 자질, 업무 추진력과 적극적 영업 능력 - 출소자가 취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사회적 낙인, 신분노출의 두려움 - 출소자 취업 유지에 필요한 것: 공단의 사후관리 및 정서적인 지지, 수당 등 경제 지원	
이동훈 외 (2016a)	· 연구목적: 상담자의 눈을 통해 출소 후 가족관계 회복 과정 이해 · 연구대상: 공단 본부와 지역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출소자와 그 가정의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심리 전문가 8명 · 연구방법: 심층면접 및 CQR · 연구결과 - 대부분 출소자는 가족이 부재한 어린 시절을 보냄. 부모와의 유대,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구조적, 기능적 결손 경험 - 출소자 가족 중 배우자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사실을 숨김으로써 가족 비밀이 있다는 점 - 가족에 대한 출소자의 책임감, 가족 간 원활한 의사소통, 가족 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은 출소 후 가족관계의 성공 요인 - 가족에 대한 의존감, 출소자에 대한 가족의 회피와 거부, 가족 성원으로서 존재감 상실은 가족관계의 실패 요인 - 강간, 폭력, 살인, 알코올 중독 등 범죄유형에 비해 사기, 횡령 등 경제사범의 가족관계 회복이 원활한 편 - 상담자들은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휴식을 중요하게 인식	질적연구
이동훈외 (2016b)	· 연구목적: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가 경험하는 삶과 가족관계 경험에 대한 현상을 탐색하고 그 의미와 본질을 이해 · 연구대상: 공단에서 주거 및 교육지원을 받는 여성출소자 10명 · 연구방법: 심층면접 및 질적 분석 · 연구결과 - 참여자 진술에서 12개 구성요소와 32개 하위 구성요소 도출 - 구성요소: 엄마의 수감으로 상처 입은 자녀를 향한 염려, 수감 된 자신이 자녀에게 죄인이 됨,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한 고민, 살아갈 이유로서 자녀, 출소 이후 엄마의 수감이 자녀에게 남은 잔재를 확인, 출소 후 다시 시작하는 엄마의 모습, 출소 후 새로운 출발선에서의 경험, 출소 후 내 앞에 놓인 가족 갈등, 비운 뒤 굳은 땅, 엄마의 부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 준 국가의 출소자 지원 서비스, 향후 국가 및 사회에 기대하는 영역 - 여성 출소자는 자녀들의 주 양육자로서 자녀양육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각하고 있으나, 수감생활과 출소 후에 자녀와의 관계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경험 - 출소 전후로 어머니로서 자녀와 관련된 물리적, 심리적 고통을 느끼면서 여성 출소자의 고유한 경험을 고려한 지원방안 갈급	질적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연구방법
민원홍 외 (2017)	· 연구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특성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확인 · 이론적 배경: 사회통제이론, 사회자본이론(Lin, 2001) -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효과에 집중 · 연구대상: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참가대상자 491명 · 연구방법: 이항로지분석 - 종속: 재범 - 독립: 취업 전 상담횟수, 취업여부(중도탈락, 기간만료, 취업성공) · 연구결과 - 중도탈락 대비 기간만료와 취업성공이 재범가능성이 낮음	양적연구
이동훈 외 (2017)	· 연구목적: 교정전문가와 상담자 인식을 통한 출소자 사회적응 경험 탐색 · 연구대상: 교정전문가, 교정상담사, 판사, 교수, 연구원 등 18명 · 연구방법: 심층면접 및 내용분석 · 연구결과 - 5개 영역, 15개 차원, 36개 범주, 77개 의미단위 발견 - 교육: 기본소양 및 사회적 교육이 보호요인. 취업 관련 교육 지나친 집중, 스트레스 해소나 감정대처 장기교육, 이성관계 교육, 직업의식 교육 필요 - 심리치료: 신체 및 매체를 활용한 활동적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음. 범죄유형별로 다른 접근법 필요. 삶의 의욕이나 변화 동기 낮은 출소자는 지속력 짧음. 맞춤형 심리치료를 통한 공감과 정확한 정보 기반의 심층 상담 필요 - 취업 및 구직 활동: 안정적 직장생활과 동료의 따뜻한 관심은 보호요인. 경제관념 부족 및 비현실적인 급여 기대는 장애요인. 출소자 고용기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민간단체와 연계 강화, 사회적 기업 활성화 - 봉사·문화·여가 활동: 여가활동이나 자발적 사회참여는 사회성 발달 및 자존감 향상에 도움. 여가에 대한 개념 미흡. 폐쇄적 교도소 문화 및 공간 개선 필요 - 사회·국가적 지원: 사회적 낙인 예방 활동이나 주거 지원은 보호요인. 출소자와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불이익 야기. 사회적 인식개선과 수용자 및 출소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시설, 인력확충, 관련 빅데이터 구축 필요	질적연구
공정식 외 (2018)	· 연구목적: 출소자의 삶의 질과 낙인이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이론적 배경: 삶의 질, 낙인, 회복탄력성 · 연구대상: 공단의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종료자 216명 · 연구방법 - 종속: 지역사회적응(일상생활에서 사회통합, 지역자원의 활용, 지역사회 참여, 가족 및 친구와의 원만한 만남) - 독립: 삶의 질, 낙인 - 매개: 회복탄력성(긍정성+사회성) · 연구결과 - 출소자의 삶의 질과 낙인의 영향은 지역사회적응에 직접적이지 않지만, 삶의 질과 낙인의 효과는 출소자의 회복탄력성을 통해서 지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침	양적연구

2. 출소자 관련 연구 방법

가. 양적 연구

신연희 연구는 국내 9곳 교도소(안양, 의정부, 춘천, 대전, 청주, 청주여자, 대구, 청송, 군산) 수형자 가운데 2년 이상 형을 선고받고 잔여형기(또는 출소예정일)가 6개월 이내인 233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출소 후 사회적응 가능성과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사회자본은 사회적 연결망과 지역사회결합에 대한 태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연결망은 외부접촉정도(지난 1년간 서신 정도와 접견 정도를 합한 값), 가족의 지지정도(6개 문항, 4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하고, 지역사회에 결합에 대한 태도는 출소 후 복귀과정에서 지역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회복 가능성에 대한 수형자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출소 후 사회적응 가능성은 출소 후 대비정도와 수형자의 자기효능감으로, 출소 후 대비정도는 수형자들이 보고한 출소 후에 대한 우려사항 또는 출소 후 직면하게 될 문제로 측정하였다.¹⁵⁴⁾

이현희 연구는 1993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재소자 450명(전국 13개 교도소)의 범죄경력에 관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교도소별로 범죄유형과 교도소의 입소횟수를 기준으로 층화표집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범죄유형으로는 절도, 강도, 폭력, 사기, 강간과 기타범죄로 구분하였다. 자료수집은 공식기록에 대한 조사와 수형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공식기록조사는 교도소에 보관되어 있는 재소자에 대한 신분장을 이용하여 수형자의 범죄유형, 범행일시, 체포일시, 범행시 연령, 처벌 유형, 구금 기간 등 범죄관련 정보와 인구사회 특성을 수집하였고, 설문조사는 수형자의 사회심리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소득, 가구소득, 직업, 혼인상태 등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생존분석을 적용하여 재범관련 요인이 위험에 노출된 이후 얼마나 천천히(혹은 빨리)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는 재범이 발생한 행위, 사건이 해당하며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재범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재범으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는 체포

154) 신연희, “출소 후 재범 예방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 제73호, 2008-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91 ~213면.

일을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경찰의 체포가 범행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발생하므로 시간적 오차를 줄일 수 있고, 체포일에 대한 기록이 누락이 적어 분석을 위한 사례수 확보에 용이했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는 형벌의 종류(구금형과 비구금형), 범죄경력(이전 범죄횟수)을 사용하였다. 그 외 교육수준, 혼인상태, 개인소득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¹⁵⁵⁾

이윤호 등은 일반시민 211명(대학생과 학부모), 형사사범 종사자 161명(경찰, 교정 공무원, 보호관찰관), 기업인 137명(업체 대표, 경영자, 인사담당자), 보호관찰을 받는 가석방 대상자 109명(수용자 330명도 포함)을 조사하였다. 일반시민과 형사사범 종사자에게는 출소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특히 형사사범 종사자에게는 전과경력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형사사법기관의 활동과 범죄자 처리에 있어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업체 관계자에게는 범죄경력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고용경험, 고용조건, 고용촉진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출소자(수용자 포함)에게는 사회복귀 과정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과 차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취업관련 경험, 사회적 차별 인식, 일상생활 어려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등을 질문하였다.¹⁵⁶⁾

민원홍·원일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허그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491명을 설문조사하였다(모집단은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의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참여인원 4,376명). 종속변수는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의 재범여부로 재범의 기준은 지부별로 담당직원에게 의해 기재된 참여자의 현황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조사대상의 재범 측정은 2016년 1월 기준으로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간 중(중도탈락)이거나 참여종료 후(기간만료 또는 취업성공)에 발생한 경우로 특정하였다. 독립변수는 허그일자리지원사업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성하였는데, 취업 전 상담횟수는 평균 이상을 실시한 경우와 평균 미만으로 실시한 경우로 구분하고, 취업 여부는 중도탈락, 기간만료, 취업성공으로 구분하였다. 그 외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원수, 가구주와의 관계, 수급여부,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를 고려하였고, 범죄관련 특성은 수감기간과 범죄경력으로 구성

155) 이현희, “재범요인에 관한 인과적 분석 : 형벌과 사회적 결속”, 교정연구 24, 2004, 97~122면.

156) 이윤호 외,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2006.

하였다. 수감 기간은 2년 이상인 경우와 2년 미만인 경우로 나누고, 범죄경력은 1범, 2범, 3범 이상으로 구분하여, 이항로짓을 활용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특성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¹⁵⁷⁾

공정식·김정현 연구 역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17개 지부에서 보호대상자 및 보호종료자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출소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7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였다. 출소자의 낙인정도는 낙인에 대한 범죄자의 인식 척도를 사용하고, 출소자의 회복탄력성은 회복탄력성 척도 중에서 긍정성과 지역사회 적응(재범 유혹 포함)을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분석은 출소자의 삶의 질과 낙인이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회복탄력성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모형에 기반하여 영향요인의 직접·간접효과와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하였다.¹⁵⁸⁾

Berg와 Huebner 연구는 2000년 중서부 주에서 가석방된 401명의 남성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재범 추적 관찰은 2004년 10월까지 진행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한 재범의 조작적 정의는 출소 이후 다시 체포되는 날짜의 일자 기준으로 재범기간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약 66%(264명)가 46개월 안에 다시 체포되었다. 평균적으로 619일(약 20개월) 생존 기간을 나타냈다. 출소 후 취업상태도 분석하였는데, 약 46%(184명)가 출소 이후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로는 연령, 인종, 교육수준, 과거 범죄경력, 과거 직장 경험을 비롯하여 출소 이후 변수로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사회적 연결성, 주거 상황, 알코올 및 마약 여부를 고려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해서 사회적 유대 및 고용 상태와 재범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Cox 비례 모형에 근거한 생존분석을 적용하여서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예측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밖에 여타 독립변수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부모나 친척들과의 사회적 유대가 출소 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¹⁵⁹⁾

Visher 등은 2004년부터 2006년 미국 내에서 6개의 교도소 가석방 대상자(1,697명)

157) 민원홍·원일,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47, 2017, 1~19면.

158) 공정식·김정현, “출소자의 삶의 질과 낙인이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5), 2018, 3~32면.

159) Berg, M. T., & Huebner, B. M., Reentry and the ties that bind: An examination of social ties, employment, and recidivism. Justice quarterly, 28(2), 2011, 382~410면.

를 대상으로 출소 30일 전에 수행된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사전 정보(사회적, 경제적, 법적 지위, 가족 구성,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 등 인적사항, 교도소 내에서 받은 교육, 상담, 직업훈련 등 관련 정보), 그리고 출소 후 9년 동안 추적한 재범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소 전·후 제공되었던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출소 후 9년 동안의 재범 기록에 기초하여 체포까지의 시간과 체포된 횟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출소자의 특성, 범죄 유형, 교도소 내에서 수행한 12가지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출소 이후관련 프로그램(SVORI: Serious and Violent Offender Reentry Initiative) 참여 여부를 고려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연령, 성별, 인종, 교육수준, 범죄경력, 가족과의 관계 등 추가 정보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은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하여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SVORI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재범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재범율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¹⁶⁰⁾

Fahmy와 Mitchel 연구는 LoneStar 프로젝트(텍사스 주 교정시설에서 매주 출소 예정인 남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프로젝트로 사회복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를 통해 출소 1주 전, 출소 1개월 후, 출소 10개월 후 등 각 시점에서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는 약 8개월 가량 이어졌고, 면담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조사대상의 95%는 일반 보안 수준의 출소(예정)자이며, 5%는 고위험군 출소(예정)자로 이루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참여자에게 별도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참여율은 95%로 높았다. 연구자들은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 외에도 공식기록을 통해 얻은 자료도 함께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재체포 여부로 관련 데이터는 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의 재체포 관련 기록과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에서 제공한 출소 이후 3년 이내 재범으로 인한 체포까지 기간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연령, 인종, 지능, 직업이력, 교육수준,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 약물사용, 범죄경력,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였다.¹⁶¹⁾

160) Visher, C. A., Lattimore, P. K., Barrick, K., & Tueller, S., Evaluating the long-term effects of prisoner reentry services on recidivism: What types of services matter?. *Justice Quarterly* 34(1), 2017, 136~165면.

161) Fahmy, C., & Mitchell, M. M., Examining recidivism during reentry: Proposing a holistic model of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Criminal Justice* 83, 2022, 1~13면.

나. 질적 연구

양혜경과 서보람은 경기도 소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6명의 수형자를 심층면접으로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수형자의 범죄 경험, 범죄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 경험, 출소 이후 사회적응에 관한 생각, 재범자의 과거 출소 사회적응 경험을 파악하였다.¹⁶²⁾

▶▶ [표 3-1-2] 수형자 대상 심층면접 질문지

구분	질문 내용
1	귀하는 언제 처음으로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현재 가족들은 귀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3	처음 교도소에 수감된 후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4	교도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자격증 포함)에 참여했습니까? 그 프로그램은 귀하가 퇴소 후 사회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5	출소 후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날 것입니까? 귀하가 사회적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6	출소 후 어떤 직업을 가질 것입니까?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소 후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7	교도소 수감 기간 동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귀하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교도소에서 귀하가 사회적응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제공해 주길 원하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실제 출소 후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양혜경·서보람, 2014, 125면.

이은경과 동료들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출소자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취업지원관 11명(업무 경력 최소 6개월 이상, 출소자가 취업에 성공하고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사례가 있는 실무자, 최근 3년 이내 해당 업무 담당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이들은 참여자의 경험 가운데 공통적이고 일관성 있는 내용을 파악하여 평정자 간 합의를 통해 결과를 산출하는 ‘합의에 의한 질적 분석(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활용하였다. CQR은 연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162) 양혜경·서보람,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3, 2014, 115~144면.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동질적 집단에서 공통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험을 표집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영역별 범주에 적절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 간에 반복적인 의사소통과 합의를 통해 자료를 해석하기 때문에 편향되거나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료를 해석하지 않고 노력을 막는데 유용한 방법이다.¹⁶³⁾

▶▶ [표 3-1-3] 출소자 취업지원관 대상 심층면접 질문지

질문 내용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출소자들의 일반적인 취업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 과정에서 선생님은 어떤 일(경험)을 하시나요?	
[출소자의 취업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1	출소자의 취업지원 업무를 하면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출소자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일을 하시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지원적인 측면에서)
4-1.	출소자 취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소자 대상 훈련과 교육면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요?
4-2.	출소자 취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소자 대상 정책과 행정면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요?
5	일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되나요?
6	(취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에서)
6-1.	출소자 취업 지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취업관들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6-2.	출소자 취업 지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7	출소자들의 취업 지원 업무를 하시면서 드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인가요?
[출소자의 취업과 취업유지와 관련해서]	
1	출소자들이 취업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2	출소자들이 취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3	출소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4	출소자들이 취업을 유지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5	출소자들이 취업 유지 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6	출소자가 취업 유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7	출소자의 취업 및 취업 유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것이 있나요?

출처: 이은경·양난미·이건화·송미경, 2016, 483면.

163) 이은경·양난미·이건화·송미경, “출소자 취업지원관의 경험에 대한 연구: 취업지원 업무, 출소자의 취업과 취업유지”, 상담학연구 17(3), 2016, 477~502면.

이동훈과 동료들 역시 합의적 질적 방법(CQR)을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출소자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숙식 및 주거 지원, 심리 지원, 자녀 학업 지원을 담당하는 상담심리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은 출소자의 특성, 출소 후 사회적응과 가족관계 회복 과정에 대한 개인의 내적 경험, 신념, 태도 등을 파악하였다.¹⁶⁴⁾

» [표 3-1-4] 상담심리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질문지

주제	질문 내용
심리사회적 특성	출소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가족/자녀의 의미	출소자의 사회 적응 과정에서 가족과 자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가족복귀 장벽 및 성공요인	출소자들이 가족 관계 회복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복귀에 성공(실패)한 출소자의 특징	출소 후 가족 복귀에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출소자 유형별 가족복귀 과정의 특성	출소자들의 유형(성별/수형기간/재범여부/범죄유형)별 특성이 가족복귀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까?
범죄유형별 상담 개입 및 지원방안	출소자의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 및 상담적 개입에 있어 범죄의 유형별 차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소자 가족관계 회복 지원을 위한 내용 요소	출소자의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 및 상담적 개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출처: 이동훈·강수운·지승희, 2016, 601면.

이동훈 등은 눈덩이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교수, 판사, 교정시설 종사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정상담가 등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출소자의 사회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경험을 교정 전문가 및 교정상담자 시선에서 분석하기 위해 교정전문가와 교정상담자가 정서적, 교육적, 경제적, 제도적 측면에서 출소자의 사회재적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러한 인식이 출소자에 대한 이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자들은

164) 이동훈·강수운·지승희,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복귀 경험에 관한 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4), 2016a, 595~622면.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을 범주화, 개념화하여 사회재적응을 보호요인, 장애요인, 정책지원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교육, 심리치료, 취업 및 구직활동, 봉사·문화·여가 활동, 사회·국가적 지원 등 5가지 영역에서 15개 차원을 도출하였다.¹⁶⁵⁾

이동훈과 동료들은 후속 연구에서도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들은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출소자 대상 면접 결과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여성지원센터 소속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 또는 교육지원을 받는 여성출소자 10명이 참여하여, 비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수감생활 및 출소 후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결혼생활, 수감횟수, 수감 이유, 배우자, 자녀, 가족 관계 등을 질문하였고, 수감기간 가정생활, 수감 전후 부부관계 변화, 자녀관계, 자녀에게 수감사실 공개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참여자가 응답한 내용에서 의미있는 문장이나 어구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일반적이고 추상적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며, 범주화를 통해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방식이다. 연구자들은 참여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원자료와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면서 참여자의 언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추상적인 진술을 도출하고 의미 있는 단위를 구성하였다. 이후 수정을 거쳐 도출된 자료를 수감생활과 출소 이후에 대한 주제로 구분하여 참여자의 경험 구조를 설명하였다.¹⁶⁶⁾

Gonzalez와 동료들은 집행 유예 중인 범죄자 또는 출소자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복귀 관련 종사자와 이들이 지원하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복귀 관련 종사자도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가족이나 친구가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소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는 사회복귀 관련 종사자의 경험과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165) 이동훈·조은정·양순정·양하나, “교정전문가 및 교정상담자가 인식하는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7), 2017, 303~319면.

166) 이동훈·신지영·조은정·김진주,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 경험”,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1(1), 2016b, 81~108면.

어떻게 출소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탐색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질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코딩하고, 관련 있는 주제를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¹⁶⁷⁾

167) Reingle Gonzalez, J. M., Rana, R. E., Jetelina, K. K., & Roberts, M. H., The value of lived experience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 qualitative study of peer re-entry specialist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3(10), 2019, 1861~1875면.

제2절 | 조사의 설계

1. 조사 목적

이번 연구는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교정기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에 대해 과거 출소를 하였으나 재범을 저질러 다시 복역하고 있는 출소예정자, 그리고 출소하여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을 받는 출소자의 경험, 생각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출소 이후 삶을 위해 준비했던 과정,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게 된 과정,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경험, 출소 이후 도움을 받았던 경험 등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듯이 출소자 연구는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접근방법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경험이나 생각에 대한 어떠한 가설을 세워 검증하는 것보다 질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출소자가 경험하고 느꼈던 주관적 현실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였다. 이러한 질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과거 출소자, 현재 출소자가 출소 이후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출소 이후 재범을 저지르게 된 사건과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출소자 지원을 위한 국가의 개입과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등을 출소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출소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현실은 객관적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소 이후 재범예방과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정기관 담당자, 그리고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생활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을 대상으로도 자료회의와 워크숍을 실시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였다.

2. 조사 방법

이번 연구의 대상 중 출소예정자는 교정본부의 협조를 받아 과거 출소한 경험이

있는 출소예정자 3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비록 질적연구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범죄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5개소), 강원권(1개소), 충청권(3개소), 경상권(5개소), 전라권(3개소) 등 17개 교정시설을 선정하였고, 『교정통계연보』 수형자 죄명을 참조하여 재산범죄(절도),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폭력), 교통범죄(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경제범죄(사기·횡령), 풍속범죄(도박, 공연음란, 음란물제작 등), 마약범죄(마약류) 등 6개 범죄유형을 고려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진 2명이 교도소를 방문하여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1명당 1시간~1시간 30분가량 면접을 하였다.¹⁶⁸⁾ 면접은 출소자 지원 및 출소 준비 과정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질문을 자연스레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설문 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비록 면접을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면접과정에서 참여자의 몰입이나 반응에 따라 연구자가 새로운 질문을 던지거나 추가 질문을 병행하였다. 참여자의 면접태도는 대체로 협조적이었으며, 추가 면접 요청에도 상당수가 동의를 나타냈다.

또 다른 연구 대상인 현재 출소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협조를 받아 5개 공단지부에서 10명을 섭외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교도소 조사와 마찬가지로 연구진 2명이 공단지부를 방문하여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1명당 1시간~1시간 30분가량 참여자와 개별면접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의 내용은 대체로 출소예정자와 유사하게 진행하였으나, 출소 이후 경험과 공단의 지원에 대해 더 자세히 질문하였다. 출소자에 대해서도 면접 시 참여자의 몰입이나 반응정도에 따라 질문을 바꾸거나 추가하였다.

출소예정자 및 출소자에 대한 심층면접에 더하여 이 연구에서는 출소자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정공무원과 공단직원과도 자문회의 혹은 워크숍 형식을 빌어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였다. 여기에는 교정본부 및 교도소에서 사회복지 및 직업훈련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 9명, 그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에서 보호정책 및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직원 6명이 참여하였다.

168) 17개 교도소 외에 연구진은 교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희망센터 1곳을 방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희망센터에 거주하는 출소예정자는 해당 기업에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 시간을 내어 심층면접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점심 휴식시간을 이용해 연구진은 4명의 출소예정자와 40분가량 집단면접을 할 수 있었으나, 아쉽게도 집단면접 시 녹음이 허락되지 않아 그 내용을 상세히 답을 수 없었다.

» [표 3-2-5] 조사의 설계

구분	출소예정자		출소자	교정공무원	공단직원
협조기관	17개 교도소	1개 희망센터	2개 공단지부	교정본부 및 교도소	공단본부 및 지부
조사방법	개별면접	집단면접	개별면접	자문회의 및 워크숍	자문회의 및 워크숍
조사규모	36명	4명	10명	9명	6명
조사기간	2023.07.~08.	2023.09.	2023.10.~11.	2023.07.~10.	2023.10.

3. 조사 내용

출소예정자 및 출소자에 대한 심층면접의 내용은 과거 출소 시절의 경험, 출소 이후 삶에 대한 계획, 출소 이후 삶을 위한 준비, 출소 이후 삶에서 겪는 어려움, 가족과의 관계, 지인(친구 포함) 관계, 출소 이후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 출소 이후 도움을 받고 싶은 것 등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이렇게 반구조화된 질문은 유동적 이어서 성별, 연령, 범죄유형 등에 따라 혹은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세부적인 질문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표 3-2-6] 출소예정자 및 출소자 대상 심층면접 질문지

주제	질문 내용
과거 혹은 현재 출소 경험	• 출소하고 처음 만났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 출소 이후 마주쳤던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나요? • 출소 이후 이루었던 의미 있는 성취는 무엇이었나요? • 출소 이후 재범을 저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소 이후 삶의 준비 및 계획	• 출소 이후 공단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과거 출소 때와 이번 출소 때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교도소에 가기 전에 하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 출소 이후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날 계획인가요? • 출소 이후 사회적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나요?
출소 이후 겪은 어려움	• 이번 출소 이후 정신적(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이 되리라

주제	질문 내용
	예상이 되나요? • 출소 이후 일이나 직장을 구할 때, 범죄경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나요? • 출소자가 취직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사회에서 출소자에 대한 인식은 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나요?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 현재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가족들은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나요? • 출소자가 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족, 친구,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한 것 같나요?
출소 이후 도움 경험이나 필요한 것	• 출소 이후 처음 도움을 요청한 기관(사람)은 누구이며, 그 도움이 얼마나 유용했나요? • 출소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공단과 같이 출소자를 위한 기관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출소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자신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4. 참여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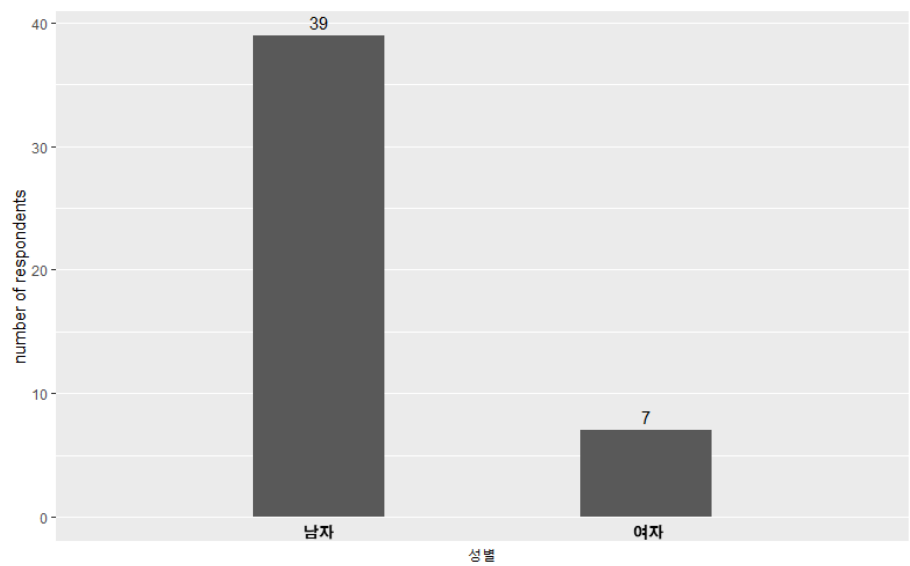
심층면접 참여자는 출소예정자 36명, 출소자 10명 등 모두 46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이 39명, 여성이 7명이고, 연령별로는 20대 4명, 30대 13명, 40대 14명, 50대 12명, 60대 1명, 70대 2명이다.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수용자 중 남성이 92.4%, 여성이 7.6%이고, 연령별로는 20세미만 0.7%, 20대 17.4%, 30대 18.1%, 40대 22.6%, 50대 24.4%, 60대이상 16.7%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면접참여자의 성별 분포가 전체 수용자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연령별로는 20대와 60대 이상이 전체 수용자에 비해 적은 반면 30대는 다소 많은 편이기는 하나, 양적 조사에서 의미하는 표집설계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수용자의 연령 분포에 어느 정도 부합되게 표본이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력범죄 12명, 교통범죄 10명, 풍속범죄 8명, 재산범죄 6명, 경제범죄 6명, 마약범죄 4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는 대부분 2회 이상 범죄경력이 있는 재범자들로 면접 참여에 대한 의향을 확인한 후 동의를 얻어 면접을 진행하였다. 출소까지 잔여형기 기준으로는 1년 이상 4명, 1년 미만 8명, 6개월 미만 9명, 3개월 미만 11명, 1개월 미만 4명이었고, 출소자 경우에는 출소한지 1년 미만 5명, 1년 이상 5명이었다.

» [표 3-2-7]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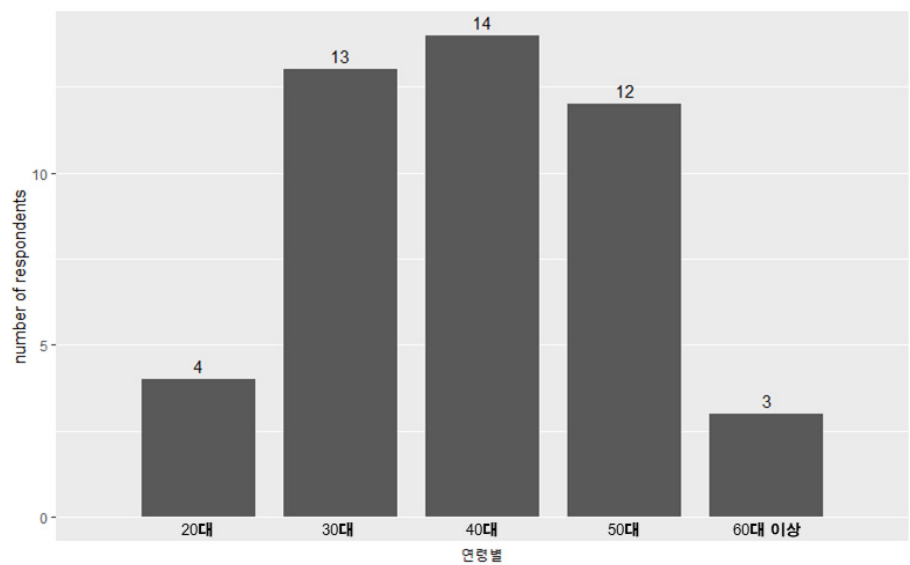
아이디	성별	연령	범죄유형	범죄경력	비고
#01	남성	20대	재산범죄	2회	잔여형기 1개월미만
#02	남성	40대	재산범죄	2회	잔여형기 1개월미만
#03	남성	50대	재산범죄	2회	잔여형기 6개월미만
#04	남성	30대	마약범죄	11회	잔여형기 3개월미만
#05	남성	40대	마약범죄	3회	잔여형기 3개월미만
#06	남성	30대	마약범죄	6회	잔여형기 6개월미만
#07	남성	30대	강력범죄	3회	잔여형기 3개월미만
#08	남성	40대	강력범죄	2회	잔여형기 3개월미만
#09	남성	70대	강력범죄	10회	잔여형기 3개월미만
#10	남성	30대	풍속범죄	2회	잔여형기 1개월미만
#11	남성	40대	풍속범죄	3회	잔여형기 6개월미만
#12	남성	30대	교통범죄	2회	잔여형기 6개월미만
#13	남성	30대	교통범죄	2회	잔여형기 1년미만
#14	여성	20대	강력범죄	3회	잔여형기 1년미만
#15	여성	40대	재산범죄	2회	잔여형기 1년이상
#16	여성	30대	마약범죄	3회	잔여형기 1년이상
#17	남성	40대	풍속범죄	2회	잔여형기 3개월미만
#18	남성	50대	교통범죄	2회	잔여형기 6개월미만
#19	남성	50대	교통범죄	3회	잔여형기 3개월미만
#20	남성	30대	경제범죄	4회	잔여형기 1년미만
#21	남성	40대	경제범죄	3회	잔여형기 6개월미만
#22	남성	50대	교통범죄	8회	잔여형기 1년미만
#23	남성	40대	교통범죄	4회	잔여형기 1년이상
#24	남성	50대	강력범죄	6회	잔여형기 1년미만
#25	남성	50대	강력범죄	2회	잔여형기 6개월미만
#26	남성	40대	교통범죄	3회	잔여형기 3개월미만
#27	남성	40대	교통범죄	2회	잔여형기 3개월미만

아이디	성별	연령	범죄유형	범죄경력	비고
#28	남성	20대	풍속범죄	3회	잔여형기 6개월미만
#29	남성	30대	풍속범죄	2회	잔여형기 1년미만
#30	남성	40대	풍속범죄	1회	잔여형기 1개월미만
#31	남성	50대	경제범죄	3회	잔여형기 3개월미만
#32	남성	40대	경제범죄	5회	잔여형기 6개월미만
#33	남성	30대	풍속범죄	1회	잔여형기 1년이상
#34	남성	30대	풍속범죄	5회	잔여형기 3개월미만
#35	남성	30대	강력범죄	2회	잔여형기 1년미만
#36	남성	20대	강력범죄	5회	잔여형기 1년미만
#37	남성	30대	재산범죄	3회	출소기간 1년미만
#38	남성	50대	강력범죄	4회	출소기간 1년미만
#39	남성	60대	강력범죄	2회	출소기간 1년미만
#40	여성	50대	교통범죄	3회	출소기간 1년이상
#41	여성	50대	강력범죄	1회	출소기간 1년이상
#42	여성	50대	재산범죄	2회	출소기간 1년미만
#43	여성	40대	재산범죄	4회	출소기간 2년이상
#44	남성	50대	강력범죄	3회	출소기간 1년미만
#45	남성	30대	교통범죄	3회	출소기간 1년이상
#46	남성	70대	재산범죄	3회	출소기간 2년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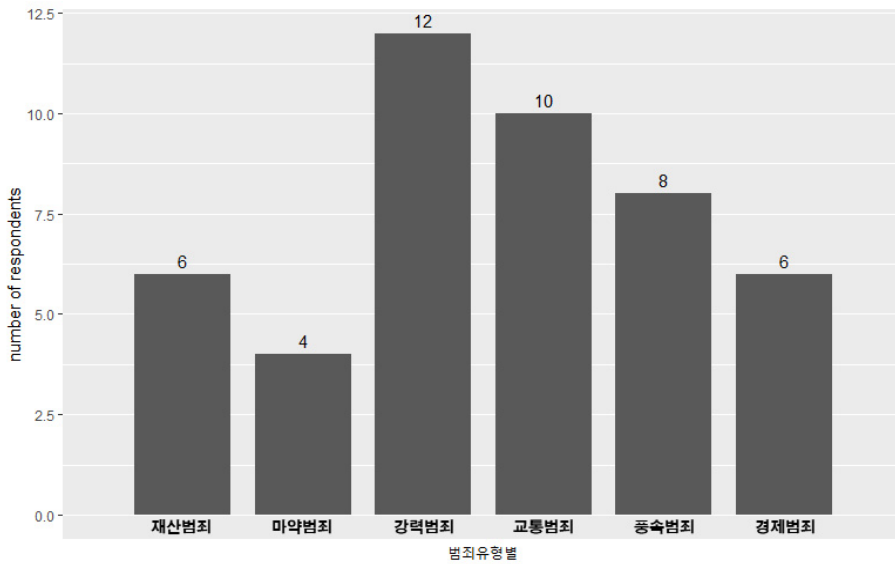
▶▶ [그림 3-2-1] 심층면접 참여자의 성별 분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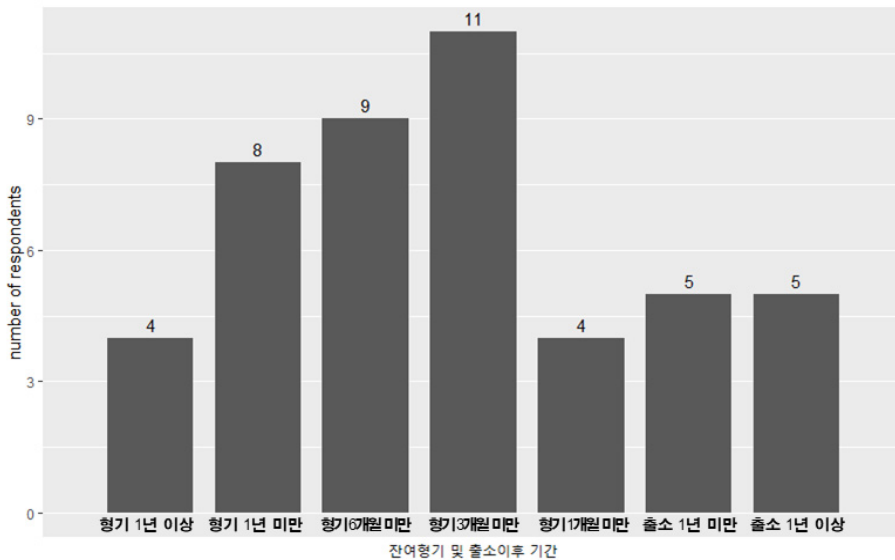
▶▶ [그림 3-2-2] 심층면접 참여자의 연령 분포(명)



» [그림 3-2-3] 심층면접 참여자의 범죄유형 분포(명)



» [그림 3-2-4] 심층면접 참여자의 잔여형기 및 출소기간 분포(명)



제3절 | 심층면접 결과

1. 출소 준비 및 계획

» [표 3-3-8] 출소 준비 및 계획

영역	범주	사례
과거 출소와 다른 점	달라진 생각과 습관	#4 #07 #14
	가족, 지인에 대한 미안함	#05 #03 #22
	재범중단 다짐과 구체적 계획	#03 #22 #23 #27
	가족이나 개인적 상황의 변화	#07 #16 #17 #24
	여전히 막막함	#08 #27 #37
출소 이후 계획	가족과 만남, 도움요청	#01 #02 #06 #10
	구직, 자격증 준비	#07 #09 #10 #12 #16
	주거 마련, 재혼 준비	#21 #26
	단약, 금주, 치료	#03 #06 #13 #14
	교정 선고	#15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의 교류 유지	#02 #05 #12 #13 #19
	가족과의 관계 단절	#04 #07 #09 #16 #17 #26

가. 과거 출소와 다른 점

1) 달라진 생각과 습관

참여자 중 일부는 이번 출소를 앞두고 지난 출소 때와는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문자 술을 끊겠다든지,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든지, 과거 출소에 비해 마음이 편안하다든지, 과거와 달리 출소 후 삶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나이가 많은지 몰랐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나이가 많이 든 것을 느꼈다.
(그 전이나) 다 똑같은데 술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나가면 술은) 입에 안 대고 기술이나 배우면서 일하려고 한다.

#17

지난 번에도 마약으로 들어와서 정신적으로 그때는 약에 취해 있었고 정신과 약도 많이 먹고 잠도 못자서 수면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약 같은 거 안 먹고 있다. 직원들이 말할 정도인데 지금은 직원분들이 (내가) 다른 마약사범들이랑 좀 틀리다고 한다. 나도 그런 말을 듣다 보니 그런 부분을 지키고 싶어서 모범적으로 지내려고 하는 거 같다. 그때에 비해 마음가짐의 준비가 되어 있다.

#04

지난 번과 비교해서 지금이 좀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니까 지금이 속이 더 편해요. 이게 설명하기 참 그런데 복합적으로 그래요.

#07

지난 번 그냥 1년 살았을 때는 솔직히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또 첫째이기도 해서 (나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요즘에는 그냥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14

2) 가족, 지인에 대한 미안함

달라진 생각 중에는 가족과 지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예전 출소 때보다 지금 더 미안하다든지,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된다든지, 자녀나 주변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하였다.

여기 와서 1년이 지나고 몸도 안정되고 그러다보니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부모님에게 죄송하고 아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교도소에 있다보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과거를 돌아볼 일이 많아요.

#05

첫 번째 징역 종료 이후에는 더 이상 실수 안 해야겠다고 다짐했었다. 내가 잘못했다. 술 먹고 그랬다. 그때보다 지금 더 미안하다. 병상에 있는 와이프, 자식들, 주변 사람들 모두 다 미안한 마음이 예전보다 커졌다.

#03

내가 왜 그렇게 생활을 했을까. 지금은 나이가 3살, 4살 먹을수록 그게 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 그게 내 마음이... 내가 진짜 그렇게 안 하고 이것만 안 했어도 이렇게 좀 어머니 얼굴도 보고 불효자가 아니었을 텐데 이게 좀 마음이.. 내가 이렇게 이 기간만 해도 안 들어오고 잘 사는 모습을 보였으면 너무 제 마음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구속되고 세상을 힘들게 했다는 내 자신이 너무 마음에 그게.. 그게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 나이에는 사람이 술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막 기분 좋아서 음주운전을 해서 그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진짜 이제 진짜 올바르게 출소하면 진짜 그거는 내 자신과 싸움인데 진짜 이제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생각을.

#22

3) 재범중단 다짐과 구체적 계획

재범중단과 관련해서는 재범을 저지르게 된 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출소 이후 상담을 받겠다든지, 음주량을 줄이겠다든지, 나이 든 사람을 돕겠다든지, 신용 회복 절차를 밟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다짐과 계획을 언급하였다.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나가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밖에 있을 때 싸우기도 하고 싫은 소리도 정말 많이 했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인 것 같다.

#03

이제 (술을) 줄이려고 생각을 굳게 먹고 있어요. 많이 좀 먹어도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막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22

아버지 나이대 어르신들 보면 그게 이제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공장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많이 도와주고 싶죠. 그렇습니다. (정적)

#23

일단 저번에는 처음이고 하니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생각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미결로 형이 확정인 안 돼서 나가서 상담도 받을 것도 없었고 아무 대책 없이 무작정 나가서 술에만(의지했고) 공황장애도

있었고. 지금은 그 앞이랑 비교해서 제 기준으로 치면 하루가 멀다하고 가족하고 통화하고 안부도 물을 수 있고 밖에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정보를 들을 수도 있고. 제가 8개월 있었는데, 신용이 떨어져 있다 보니 회복 절차도 공단 통해서 듣고 앞선 출소 때보다는 더 준비해서 나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당장 월요일날 나가서 보호관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나름대로 계획 잡아서 나가니까.

#27

4) 가족이나 개인적 상황의 변화

지난 출소 때와 달리 이번 출소에서 크게 달라진 것으로 아버지의 사망, 자녀의 출산 등 가족과 관련한 상황이 바뀌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아버지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고 돈(전세보증금)이 들어오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 빼고는 사실... 그렇죠(차이가 없죠).

#07

예전에는 책임져야 할 가족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가족이라고 책임져야 할 아기가 생겨서 이제 그 애기한테 또다시 또 혼자 남겨지고 어디로 보내고 그런 거를 해주고 싶지 않아요.

#16

일부 참여자 중에는 어느 덧 나이가 들어버린 자기의 모습을 새삼 깨닫게 되거나 고령화로 인해 날로 쇠약해지는 신체적 변화를 체감한다고 하였다.

(지난 복역 때는) 나이가 많은지 몰랐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 나이가 많이 든 것을 느꼈다.

#17

2년 좀 넘었는데 이쪽(왼쪽) 눈이 나빠지니까 오른쪽도 많이 나빠졌어요. 낮에는 좀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데 밤이 되면 앞예밖에 안 보여요. 옆은 안 보이더라고요. 눈도 많이 나빠지고 간헐 있으니까..

#24

5) 여전히 막막함

출소 경험이 첫 번째가 아니지만 여전히 출소를 앞두고 막막하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참여자 37에 따르면, 교도소 안에서부터 출소를 앞두고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6년을 복역했던 과거와 4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지금을 비교할 때) 비슷한거 같다. 나가면 뭘 어떻게 해야할지 그때도 막막했다. 50일 정도 남았는데 뭘 해야할지 진짜 막막하다. 2번째인데. 만일 이번에 나가서 또 잘못해서 다시 들어오면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형 누나들한테도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정신 똑바로 차려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 막막하다.

#08

걱정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둘 다 대학교 4학년이에요. 아들은 제대하고 복학해서 돈 많이 드는 상황이 돼 가지고. 올해 졸업반인데. 아, 이거 나가 가지고 내가 계획한다고 이게 될란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간다고 좋다고 하지만. 당장 막막해요.

#27

근데 이게 뭐 저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 안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대충 웃고는 있는데 다들 막 나갈 날짜가 다가오면 막 그런 고민거리를 많이 주고받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막 나가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37

나. 출소 이후 계획

1) 가족과 만남, 도움 요청

출소자 중 많은 이들이 출소 후 가장 먼저 만났거나 만날 사람으로 가족을 꼽았다.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을 언급하거나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참여자가 있었다. 일부 참여자는 처갓집 어른을 찾아간다고도 하였다.

과거에 나가서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가족과 친구들이었다. 이번에도 출소하면 아마 부모님을 가장 먼저 만날 것 같다.

#01

어머니 사시는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버지는 저랑 이야기를 거의 안 하시고 어머니랑만 (대화를) 합니다.

#10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고를 많이 쳤어요. 누나 3명이 있는데 다 결혼했어요. 출소 후 만날 사람은 첫째 누나예요. 출소 후에 같이 살 예정이고 조카도 있습니다.

#02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 안 하고 수산업 하다가 들어왔는데 장인 장모님이 수산업을 하시거든요 배를 타면서 수산물 유통업을 했거든요. 나가면 그 일 하겠다고 장인, 장모님한테 말하려고요. 출소하면 장인, 장모님한테 바로 갈 겁니다. 와이프랑 애들은 따로 살아요.

#06

2) 구직, 자격증 준비

출소 이후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예전에 일하던 직장애 다시 가서 일을 구하겠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배 관련 자격증이랑 운전면허 자격증이요.

#07

마트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서 그쪽으로 일하려고요. 운전면허도 딸 생각입니다.

#10

저는 미혼모 센터에 일단 입소를 할 거예요.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좀 따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랑 적성 그런 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간병이라는 걸 해보고도 싶고.

#16

제가 옷 만드는데 회사에서도 일했습니다. 동대문시장에서 청바지, 애기옷 같은 거 했었습니다. 지금도 의류 만드는데 출역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나가서도 그런 게 있다면 밥값이라고 별지 않을까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될지는.

#09

어쨌든 예전에 다녔던 회사를 지금 나온 상태인데 그 회사에서 다시 와줬으면 하고요. 제가 나오긴 했지만 거기도 괜찮고 아니면 새로 구해도 되고요.

#12

3) 주거 마련, 재혼 준비

참여자 26은 출소 후 주거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집 근처로는 가지 못할 것 같다고 하였고, 참여자 21은 현재 교제하는 사람과 재혼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후배 집 근처에서 원룸 구해서 살 예정이에요. 집으로 갈까 생각 했는데 (아빠로서)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딸이 지금 21살 둘째도 다 컸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 동생도 연락하는데 자식 없이 어머니랑 살고 있습니다. 동생한테 연락해서 (아이들한테) 내 복역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식들이 이미 아는 눈치라고 했습니다.

#26

재혼할 생각이 있어요. 지금 교제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애들한테는 얘기를 못했어요. 드러내놓고 결혼하고 싶은데. 차마 애들한테 밝히지는 못하겠고. 만난 지는 오래됐어요. 이혼하고 만났으니까 한 2~3년.

#21

4) 상담, 단약, 금주

교도소에서 경험한 심리교육 혹은 심리상담에 만족한 경우 출소 이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심리상담을 지원받고 싶다. 출소 후 스스로를 추스리는게 가장 어려워요. 교도소에서 심리교육을 듣고 있는데 정말 만족스러워요. 집단교육도

듣는데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일주일에 3번 정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출소 후에도 개별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가족들에게 분노를 표출한 경험이 많아요. 지금 받는 심리교육이 도움이 많이 돼요. 과거에는 자살할 생각도 있었고 시도도 할 뻔했는데 이래 저래 나쁜 생각들에 대해서 심리교육을 들으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집사람한테 말했는데 출소 후에 같이 정신과에 가자고 약속했어요.

#03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또 들어오면 어떡하지 고민도 되고 해서 아빠한테 그걸로 그냥 심리상담 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이번에 나가면 상담받고 그러려고요.

#14

교도소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 단약이나 금주에 대한 의지가 생긴 참여자들은 출소 이후 주변 사람에게 투약 사실이나 음주 문제를 알려서 도움을 받겠다고도 하였다.

애들 엄마도 마약으로 구속된지 몰라요. 그 전에 대포차를 했었는데 대포차 안에 마약이 팔려 있어서 오게 되었다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했죠. 전에는 막연하게 내 의지로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교육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아내한테) 털어 놓아야겠다 나가서 애들 엄마한테 사실대로 얘기하자. 이게 끊기 되게 힘들어요. 끊는 걸 도와달라고 말할 겁니다. 단약을 하신 분이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단약을 했다고 하니 저도 얘기를 하려고요.

#06

나가면 절대 술 끊고 운동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13

5) 교정 선교

참여자 중에는 교도소에서 자신이 종교적 체험을 통해 변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수형자들에게 종교적 믿음을 전하고 싶다는 계획을 언급하였다.

사람은 안 바뀐대요. 그런데 평생을 누르고 사면 그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꿈꾸는 것이 교정 선교사. 여기 안에 들어와서

내가 겪은 일 내가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새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15

다. 가족과의 관계

1) 가족과의 교류 유지

출소를 앞둔 참여자 중에는 가족과 지속하여 교류하면서 여전히 가족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가족으로는 누나, 여동생 등 여자 형제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참여자는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자녀들이 자신을 얼마나 이해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도 하였다.

가족 간에 신뢰는 좋다고 생각해요. (가족들과) 연락은 잘하면서 지내고 있다. 물론 연락하면 나더러 잘 책임지고 살라 하지만 (지난 출소 때에도) 보면 나와서 만나면 서로 잘 지내요. 면회는 큰누나만 왔는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멀기 때문에.

#02

제가 장남이고 친동생 한 명이 있는데 장남으로서 부모님한테 못 볼 꼴을 보였고 특히나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과는 지금 매우 잘 지내고 있어요. 통화하면 항상 단약 얘기하고. 동생이 딸 낳았다고 해요. 나만 정신 차리면 가족이 평안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길 많이 해요.

#05

가족들이 당장에 급한 채무나 그런 부분을 도와주었고 동생이 핸드폰도 살려두었어요. 핸드폰이나 관리비 이런 걸 동생이 다 처리해 주는 게 항상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닐까. (동생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매제가 이런 범죄 사실을 다 알아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동생하고 편지를 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12

여동생이 많이 도움을 주는데 부모님 대신 집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보고 싶은 책이라든지 (보내주고) 전화도 하고. 부모님은 일을 하셔서 자주 보진 못해요.

#13

자녀들과는 아주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이제 나갈 때 됐으니까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애들이 이해를 하는지는 몰라도 아빠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그런 상태에서 내가 또 이제 술 먹고 이렇게 됐으니까.

#19

2) 가족과의 관계 단절

반면, 참여자들 중에는 반복된 재범과 수형생활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번 재범으로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7살 때 간경화로 사망하셨고 어머니는 11살 때 재혼했어요.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들어오기 전에는 (어머니를) 명절 때 뵈었는데 들어오고 나서는 연락 끊겼어요.

#17

들어오기 전에는 한번씩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누나가 골이 깊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일로 둘이 골이 깊어져서 계속 따로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들어오기 전에 한두 번 통화했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돼요.

#04

일부 참여자들은 재범으로 가족 중에서도 특히 형제자매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26은 아버지 장례식 이후 누나와 관계가 단절되면서 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된 계기는 동생놈이 크쵸. 동생들하고 친했거든요. 집안 선산이 있는데 그걸 장난치려다가 꺼지라고. 내가 나갈 때까지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친척이란 것도 연락 안 한 지 15년 되었는데 찾아 오더라구요. 가라고 했어요. 산이 있는데 어떻게든 뜯어 먹으려고 해서 가라고 했쵸. 친척이든 가족이든 안 믿으려고요. 차라리 그게 속 편할거 같더라고요.

#07

없다고 봐야쵸. 제 나이면 친구도 거반 다 죽고 그래요. 저는 수명이 길어서 살아있는데 주위에 살아 있는 친구도 없고. 이 나이 먹도록 도와

줄 사람이 없어요. 형제가 있어도 서로 떨어진 지 오래됐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 찾아가도 옛날처럼 형제지간에 우애 그런거 없어요. 차라리 안 가는 것만 못해요.

#09

이번에 교도소에 들어온 것도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오빠가 (지난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진짜 오빠 성격상 안 볼 것 같았고. 그리고 3년 받을 줄 몰랐어요. 많이 받아봤자 1년 6월 정도일줄 알았는데. 그 정도면 (오빠가) 연락 안 해도 내가 다시 연락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었고. 애기 낳은 것도 모르세요. 저도 구속돼서 임신사실을 알았으니까. 작은 오빠만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작은 오빠도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연락을 안 한 거죠. 아예 못하겠더라고요.

#16

A.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라고 믿었는데 아버지의 전 와이프가 있었는데 (누나가) 그 딸이더라고요, 배다른 누나인걸 아버지 돌아가시고 알았어요. 누나가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나랑 다시는 볼 일 없다고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26

2. 출소 이후 기대와 우려

▶▶ [표 3-3-9] 출소 이후 기대와 우려

영역	범주	사례
출소 이후 우려되는 것	주거·생계에 대한 우려	#07 #17 #24 #25
	취업에 대한 우려	#01 #09 #11 #12
	사회부적응에 대한 우려	#01 #08 #10 #23
	전자발찌에 대한 우려	#10 #13
	재범에 대한 우려	#03 #05 #06 #12
출소자에게 필요한 지원	숙식 지원	#09 #20 #29
	심리 지원	#02 #08 #30
	취업 지원	#03 #09
	의료 지원	#02 #03 #19
	청소년·정신질환 출소자 지원	#14 #26

영역	범주	사례
출소 이후 사회적 낙인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	#01 #03 #06 #11 #13 #19 #24 #38 #40
	가족, 지인과 출소사실 공유	#04 #11
	출소자 스스로 가지는 심리적 부담	#02 #05
	사회적 낙인의 평가 절하	#02 #10 #17 #21 #25 #28 #29

가. 출소 이후 우려되는 것

1) 주거·생계에 대한 우려

출소 이후 우려되는 점에 대해 일부 참여자들은 주거와 생계를 우선으로 꼽았다. 이들은 과거 출소 때와 달리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고 당장에 생활할 공간이 여의찮다는 점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렵다 그런 건 아니고 우려가 돼요. 지금은 다른거 없이 나가면 어떻게 자리 잡고 살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면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따로 방법이 없더라고요.

#07

(이번에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친한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선배. 나가면 거래처가 있는지 없는지가 걱정이지. 생계 부분만 걱정이지. 대인관계는 걱정되지 않아요.

#17

영치금도 지금은 끝졌는데 이제 나가면 지난 번하고 상황이 너무 틀리죠. 막막해요. 지금 생각해도 계획이 없으니까. 갱생공단에 들어가는거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긴급지원 받으면 고시원이라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 방법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24

나가면 제일 걱정되는 건 집이지 집.

#25

2) 취업에 대한 우려

다른 참여자들은 출소 이후 거주할 공간보다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우선 걱정하는 경향을 보였고, 구직 과정에서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였다.

회사에 취업하는건 당연히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장기수들은 사회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적응하는데 어려우니 직장 구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범죄자 꼬리표가 있다보니 일자리 구할 때 자기 스스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회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일자리를 구해주는 사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1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게 주택 관계예요. 교소도는 벌어둔게 있으니 풀칠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일을 해야 해요. 일이 없으니까 그게 아주 죽을 맛이예요. (나가면) 취직이 안 되잖아요. 늙은 사람 오면 사용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이렇게 버림받고 저렇게 버림받고 하니 가슴만 아프죠.

#09

일이 수감 전과 같아야 하는데 현장에서 나를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 현장이 없으면 어쩔지 솔직히 몸이 예전처럼 받쳐줄지 모르겠어요.

#11

(이력서에) 공백이 너무 길면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는 어쨌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몇 년이 아니고 몇 개월이라면 아프든 뭐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솔직하게 말해서 (이번에 나가면) 직장을 구할 자신은 없을 것 같아요.

#12

3) 사회부적응에 대한 우려

참여자 중에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거나 취업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랜 수감생활 때문에 빔어질 일상생활의 부적응을 우려하였다. 이들은 출소자가 경험하는 사회부적응을 ‘현타’, ‘응어리’ 등으로 표현하였다.

주변에서 출소 후에 반겨줘도 혼자 있을 때 갑자기 현타가 밀려오기도 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접할 때 현타가 밀려와요. 사회가 내 생각과는 다르지 않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실패가 반복되니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사회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힘들어요.

#01

저 들어올 때랑 (비교해서) 4년 사이에 많이 바뀐 거 같던데. 그런게 많이 걱정돼요.

#08

사실 나가면 그런 건 있어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두려움도 있어요. 지금 만기출소자라고 해서 오늘 당장 나갈 때는 좋죠. 부럽기도 하고. 자기들은 좋다고 내색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응어리가 있어요. '나가서 진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갈 데 없는 사람은 더 힘들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재범률이 높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사회에 적응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밖에서 가족이라든지 동료가 감싸주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진짜 사회에 격리되어 가지고 몇 년씩 살다 나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또 들어왔는데 그 틈이 생기다 보니까 또 나갔는데 그게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힘들어요. 진짜 적응하기 힘들다고 봐요.

#23

참여자 10과 같은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여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자신은 출소 이후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출소 이후) 계획은 없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돼요. 성과 관련한 범죄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거리감이 있어요. 조심스러워져요.

#10

4) 전자발찌에 대한 우려

특정 범죄를 저질렀거나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참여자들은 전자발찌 착용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자발찌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사회적 낙인 등을 걱정하였다.

출소하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전자발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돈보다 전자발찌가 더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

#10

퇴직은 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데 직장을 잡게 된다면 전자발찌를 차는 가석방 기간 동안 예전에 하던 일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나 동생이 있는데 그쪽에서 전자발찌 차는 기간만 잠깐 일을 하고 그러다 다시 제 본업으로 돌아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

5) 재범에 대한 우려

일부 참여자들은 출소 이후 재범 혹은 누범기간 발생할지 모를 재범을 우려하였다. 이미 재범을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재범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과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시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걱정으로 이어졌다. 재범에 대한 우려는 특히 마약사범에게 높았고, 음주운전 위반자에게도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는 자신의 성격을 조절하지 못해서 발생할 재범을 걱정하기도 했다.

출소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일대일로 붙어요. 출소해서 마약 하는 사람 잡으려고. 형사들이 붙어서 바로 잡아간다고 들었어요. 걱정되는건 사회에 나가면 하고 싶은걸 할 수 있으니 갈망이 왔을 때 잘 버틸 수 있을까 출소해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마약에 손떨까봐 (걱정이다). 마약은 그 기분을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갈망은 계속 올거예요.

#05

마약으로 구속되다 보니 재범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 교도소에 있어 보니 제가 본 결론으로는 마약사범들이 재범 확률이 높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정이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고 맹목적으로 안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쉬웠으면 그게 쉬웠으면 재범이 없었겠죠.

#06

제가 이제 다시는 음주를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잘못을 안 하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의지와 다르게 예를 들어 누군가와 교제를 하거나 이성 문제가 있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쨌든 이런 누범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항상 이제 무섭게 계속되겠죠. 저의 잘못이 아닌 것도 저의 과거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12

내 성격이 제일 두렵죠. 건들지만 않으면 되는데 건드니까.

#03

나. 출소자에게 필요한 지원

1) 숙식 지원

일부 참여자들은 출소자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숙식제공을 언급하였다. 숙식지원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전과가 많을수록, 무연고자일수록 더 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숙식이 해결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LH에서 (교도소에서) 나오는 사람들 (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식주 해결이 엄청나게 힘들습니다. 이 안에 있으니 시간 되면 밥 주고 계절 되면 옷 바꿔주고 걱정이 안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막말로 교도소만도 못하죠. 의식주만 되면 정신상태 바꾸고 하고 싶은거 하겠다는 거죠.

#09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숙식제공밖에 없습니다. 판 가는 자격증 따라고 해도 안 할 것 같고 크게 해줄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숙식제공밖에 없어요. 누울 데라도 있으면 마음의 안정은 되거든요. 일자리 이런 거야 자기의 마음가짐이 없으면 뭐 크게 도움은 안 되니까요.

#20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조건 필수죠. 40~50대 노숙자 양반들 보면 집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교도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가족이 없고

숙식이 제일 필요하겠죠.

#29

2) 심리 지원

참여자 중 일부는 출소 이후 심리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출소 이후 사회적 낙인을 깨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기 위해, 재범이 반복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심리상담인 것 같아요. 제가 전과가 있다보니 보통 아는 데만 일자리를 내게 돼요. 과거에 일 잘한다는 소리 들은 데만 내는데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출소자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으니까. 그러다보니 자기 스스로 간혀 있어서 이런 걸 깨기 위해서라도 심리상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2

나가면 원래 연락하던 친구들 다 떠나고 연락되는 친구도 있긴 한데.. 출소하면 사회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고 이것저것 상담 같은 것도 받고 싶어요. 나가서 지금 내 정신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고 싶어요.

#08

그러니까 재범이 발생하고 이분들 나누는 거지만 3급에 4범 5범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런 분들은 진짜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

3) 취업 지원

다른 참여자들은 재범예방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주거와 생계를 위해서 취업 알선 등의 지원이 우선되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출소 이후 자신이 거주할 근처로 적절한 취업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근처에는 허그일자리가 연계된 직장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과) 가까운 거리에 연계된 일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3

없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잠자는 겁니다. 잠자리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자리. 자기가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런 쪽에 취업을 알선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취업을 알선해 주면 범죄율 많이 줄어들고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09

4) 의료 지원

참여자 중에는 오랜 수감생활로 인해 악화된 건강의 회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이들 중에는 의료 지원을 통해 말소된 건강보험이 회복되어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출소해서 타이밍이 안 맞으면 사회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정기 검진을 못 받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혹시나 이상은 없는지 궁금해요. 10월에 출소했는데 1달 만에 입소하고 이감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 악순환이죠.

#02

현재 허리 디스크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커서 의료 지원을 받고 싶어요. 자립에 크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03

여기 오래 있는 사람들은 그제(건강보험) 다 말소됐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나가 보면 공단 같은 데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걸려요. 그 기간을 애들이 못 기다려.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제 없다 보니까 또 나쁘게 사는 친구도 있고.

#19

5) 청소년·정신질환 출소자 지원

참여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교도소에는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범죄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정신질환자, 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신질환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랑은 다른 걸 알기 때문에 약간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 약을 먹어도 가끔 부작용 같은 거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14

여기에서도 지적장애인을 몇 번 봤어요. 방에 소수 인원이고 인원이 넘치다 보니 일반방에 지적장애인을 배정하는데 주임들이 와서 이런 애가 있는데 케어가 되겠냐고. 내가 보내라고 해서 보내면 보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지적장애인데 미용실 지갑 절도로 들어왔는데 아버지랑 여동생 둘이 있는데 어릴 때 (자기를) 시설에 버렸대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재혼해서 사는데, 이 친구 장애 수당 통장에 나오는 것도 뺏어서 쓴대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만 나와도 애가 미쳐버려요. 그걸 보니 정신장애인 출소자 지원이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 바꾸면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같은 경우 관념이 너무 안 좋게 바뀌는 거 같아요. 우리 둘째 딸 아이랑 나이가 같은 애가 있어요. 여기서 청소년으로 있다가 기절됐는데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청소년은 보니까 말의 앞뒤도 안 맞고 뭐가 맞는 말인지 내용이 없어요. 여기 와서 그런 친구들 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갱생보호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드린 거예요.

#26

다. 출소 이후 사회적 낙인

1)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

참여자들은 대체로 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참여자 3은 주변 사람들에게 출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말뿐이었다고 하였고, 참여자 40은 주변 사람들의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가 신경 쓰여 수감기간 동안 멀리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이해를 시켰다고 하였다.

일반사람들이 다 색안경을 끼고 봐요. 나는 나름대로 안에서 열심히 생활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좋게 보지를 않아요. 나는 또 (교도소에) 가기 싫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대놓고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알겠단 했지만.. 결국은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03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한테 이제 나오면 그렇게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이 호의적이지는 않죠.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그렇다고 느꼈죠. 하긴 저 같은 경우도 여행 갔다 온 줄 알지 (교도소에) 갔다온지는 모르고 있으니까. 만약에 갔다 온 걸 안다면 (저도) 사회생활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40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사회적 공백 기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당황스러움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말하고 다닌 것에 대한 서운함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친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5년 동안 술자리에 나타나지를 않았으니 가끔 어떤 친구들이 왜 안보였냐고 질문하면 답을 잘하지 못했어요. 결혼을 빨리하고 싶은데 혹시나 누구를 만나서 잘 살다가 결혼할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전과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해요. 말 안 하고 있다가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먼저 말해버리면 큰일나니까 속일수는 없을 것 같아요.

#01

주변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제가 (교도소에) 들어오고 나니까 한 6개월 비어 있는 사이에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다 퍼뜨렸더라고요.

#24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면회를 왔더라고요. 이만저만 해서 나를 고발을 해야 자기들이 문책을 덜 당하니까 고발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시라고 했죠. 하시라고. 자기도 벌금 내고 나도 내고. 그러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저 없어지고 나서 그랬대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빚을 지고 도망갔다는니 그 돈 흠쳐서 어디 갔다는니. 완전히 이상한 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선입견일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 사람들)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19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마약범죄, 성범죄 등 특정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참여자일수록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참여자는 자신이 성범죄자와 같이 취급받을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고, 일반인이 갖는 부정적 시선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단이 소개한 허그일자리 참여 기업마저

범죄사실이나 복역기간에 관해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마약사범에 대한 주변의 안 좋은 시선이 있죠. 사실 여기서도 파란 명찰을 차야 하는데 교도소 안에도 분명히 (안 좋은 시선이) 있거든요. 저 자신부터 마약인 걸 정말로 감추고 싶어요. 마약사범이 되기 전에는 저도 마약사범 하면 정신병자, 포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들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할 이유가 없죠.

#06

당연히 안 좋죠. 나 같은 경우(성범죄자)는 더 그렇죠.

#11

저는 사실 음주운전이고 이렇게 잘 지내서 빨리 나가는 사람인데 오히려 저를 성범죄자로 볼까봐 신경이 쓰이는 게 더 사실이죠.

#13

그런 (출소자 지원) 제도를 알면서 굳이 죄명이 뭐냐 얼마나 살고 나왔냐 뭐 그런 핵심적인 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일반인이 거기 갔다 오면은 저 같아도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차피 자기네들은 그 일 때문에 범무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금도 받고 혜택도 주고 하는 조건으로 해놓고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38

2) 가족, 지인과 출소사실 공유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보다는 자신의 출소 사실을 가족, 지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유했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피시방 사장님은 나중에 아신거고 당시는 몰랐지만 제가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다닐 때 사실대로 말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증식당 사장님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의) 가정사도 많이 알고 있고 방황하지 말고 식당에 있으면 배 안 풀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 않냐 여기 장사 잘되는 건 아니지만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데 취직하게 도와주겠다고 말해주셨어요. 이 안에 구속되었을 때도 신경 써 준 사람도 이 두 분이예요.

#04

가까운 사람에게는 알렸어요. 직장 동료들에게도 말했어요. 최근까지도 그분들이 아버지께 연락을 주고 했어요.

#11

3) 출소자 스스로 가지는 심리적 부담

일부 참여자들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부정적 시선은 자기가 굳이 알리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출소자 스스로 가지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았다.

심리치료를 받고 싶은게 사실은 내 마음 스스로 출소자라는 낙인을 갖고 있지 세상 사람들이 알 방법은 없지 않나요? 스스로 심리적 부담감을 갖는게 문제인데 결국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02

저 스스로는 괜찮다 하고 살고 싶은데 지금은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상처받고 막상 나가서 누가 마약사범이래 그런 소문 들으면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솔직히 자신은 있는데 막상 그런 얘기 들으면 쉽지 않을거 같아요. 솔직히 두렵긴합니다. 나가서 마약사범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텐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05

4) 사회적 낙인의 평가 절하

참여자 중에는 자신이 출소 사실을 숨기거나 알리지만 않으면 출소 경험이 취업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과거 출소한 이후에도 자신이 별다른 불이익이나 낙인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같은 곳은 (불이익이)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불이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뭐 전과기록을 별도로 제출할 일이 없었습니다.

#02

예전 직장에서 전자발찌 등으로 거부당한 적이 없었어요. 상관없어요.

#10

(출소자도) 중소기업은 다 들어가요. 나이가 문제지. 기술만 배워서 그거 맞춰서 살면 되지 않을까? 자기가 얘기 안 하는 이상 모르잖아요. 복역 사실은 일자리 구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17

제 생각이지만 남한테 그렇게 크게 피해를 주고 그런 범죄는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나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직장생활 같은 건 안 해봐서 직장생활을 할거라면 그런 게 좀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장생활은 안 해봤거든요.

#21

복역했다는 사실이 취업에 불이익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말만 안 하면 그냥 똑같은 거 같은데. 내가 말만 안 하면 그 사람들 모르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25

일부 참여자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출소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나 생활의 위축은 없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출소 이후 스스로 떳떳하게 생활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사회적 낙인을 애써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문은 좀 났었어요. 교도소 왔다 갔다는 소문. 처음 나갔을 때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때는 들어온 거 자체를 숨겼는데 여자친구랑 애들이 놀다 보니까 또 거기에 다른 수용자 접견 온 친구들이 만나 가지고 제 비밀을 아는 애들이랑 술 먹다가 얘기 나오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근데 (소문이 난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28

나가면 저는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요. 나가서 제가 잘 살면 되지 뭐 남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절대 신경 안 써요. 어차피 다 징역 산 사람들이고 다 거기서 거기인 놈들인데 뭐 제가 딱히.

#29

3. 재범에 대한 인식

» [표 3-3-10] 재범에 대한 인식

영역	'범주	사례
재범의 원인	돈이나 생활고	#01 #02 #09 #20 #26
	술	#11 #22
	성격이나 기질	#12 #25
	무료함, 외로움	#02 #04
	낙인과 차별	#01 #16 #21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	가족의 도움	#06 #11 #16 #21
	멘토의 도움	#03 #04 #10 #28
	관련기관의 도움	#02 #05 #15
	출소자의 변화의지	#04 #20 #37 #40

가. 재범의 원인

1) 돈이나 생활고

재범의 원인으로 일부 참여자는 돈이나 생활고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우선으로 꼽았다. 이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으로는 출소 직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버티기 쉽지 않다고 보았다.

과거 소년원에서 한식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현재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긴 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렵긴 해요. 사업을 하면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경제적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피비우스의 띠처럼 재범의 악순환이 반복되는거 같아요.

#01

재범은 금전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긴급생활지원금 기껏해야 50만원 받아봐야 결국 돈 때문에 재범하게 되는데.. 시설에 가면 의식주 해결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물론 100% 재범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02

수용자 중에 나이 먹은 분들은 저랑 같은 심정일 겁니다. 첫째는 의식주 해결입니다. 여기 살다가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보증금 200~300만원

정도는 모을 수 있어요. 그게 안되면 수급비로 의지해야 되는데 50~60만원 요선인데 그거 갖고서는 생활이 안 돼요. 방세 30~40만원 주고 나면 돈 20만원 남는데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또 범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9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돈이 제로에서 스타트하는 거 하고 그래도 바깥에서 여유 자금이 있고 주변에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모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하루 노가다해서 14~15만원 벌어서 술 먹어버리고 밥 먹고 그거 돈 3~4만원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20

참여자 중에는 아내와 사별 후 쌓여가는 빚과 힘겨운 생활고 때문에 범죄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다고도 하였다.

와이프랑 사별하는 바람에 사별하면서부터 었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부터 뇌종양이 있었어요. 15년 정도 버티다가.. 돈에 쪼달리고 아내까지 죽고 빚만 잔뜩 있는데 너무 힘든 상태로 문자 한 통 받았어요. 통장 빌려주면... 그거라도 진짜 너무 아쉬우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어서 (재범을 저질렀다).

#26

2) 술

출소를 앞둔 대다수 참여자에게 술은 의존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일부 참여자는 과거 경험을 떠올리면서 술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한 후회, 출소 이후 술로 인해 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일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였다.

술을 마시면 조절이 되지 않아요. 예전에 20대 때는 술을 마시면 헌팅, 나이트, 원나잇 등을 즐겼어요. 나이 먹으면 안 그래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옆 테이블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고 길거리에서 본 여자한테 추근대요.

#11

정신을 차리자. 그런데 2년 만에 또 내가 너무 술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술 때문에 너무 내 인생이 술 때문에..

#22

3) 성격이나 기질

참여자 중에는 교도소 생활을 통해 만난 다른 수형자들에게서 빈곤과 같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성격이나 기질 같은 내적인 요인이 재범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재범의 원인이 술과 더불어 자신의 성격에서 기인한 것 같다고도 하였다.

같이 있어 보면서 느낀게 사회적인 그런 거보다는 본인의 그런 거에서 나오는거 같아요. 같이 24시간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만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보고 억울한 일도 있거어요. 아무래도 초범일 때는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재범은 실수가 아닌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2

또 성격 나올 것 같아서 솔직히 걱정은 돼요. 요즘 많잖아요. 막 칼부림 사건 이런 거. 제가 술을 먹으면 진짜 조절이 안 돼요. 이것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조심하겠지만서도 이게 또 옛날 버릇이 나온다고. 알코올 치료 이런 걸 좀 받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치료받는다고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주량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성격) 컨트롤도 잘해야 되고.

#25

4) 무료함, 외로움

일부 참여자는 자기가 저지른 재범이 아무런 할 일 없이 지냈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라며 일로 인해 바쁘고 집중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출소 이후 무료함과 외로움은 특히 마약사범에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술 먹고 충동적으로 문이 열려 있는 차 안에서 돈하고 물건을 털었어요. 친구들 다 집에 보내고 그런거 같아요. 일할 때는 아무 잡생각이 안 나고 일만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판생각을 하게 돼요. 일할 때는 문제를 안

일으켜요. 이전 회사 그만둘 때도 계속 다녔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전 출소 때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일에) 몰입하다보면 판생각이 안 나서 판짓을 안 했어요.

#02

같이 범죄 했던 친구가 처음 마약 알려준 친구인데 그 친구랑도 골이 깊어졌어요. 개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약으로 구속되다 보니 모임을 피하게 되고 그렇게 혼자 있다보니 다시 생각난게 마약이에요. 사람들 만나고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다가 보면 그런거는 생각할 여유가 없는데.

#04

5) 낙인과 차별

일부 참여자에 따르면, 출소 이후 무료함과 외로움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한 결과처럼 보인다. 이들은 낙인과 차별이 출소자가 직장을 구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설사 직장을 구하더라도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로 인해 사회적응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참여자 중에는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받은 낙인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험을 토로하였다.

출소 이후에 할게 없으니까 다시 재범하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포용해주는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나가서 적응하는데 희망을 품지 않겠나. 우리나라는 재판 중에 취업제한 걸리고, 전자발찌 청구당하고. 그러다보니 수형자 스스로 부정적인 인식에 갇혀버려요. 가석방하더라도 전자발찌 차면 사람들이 나를 성범죄자로 오해하는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어요.

#01

저뿐 아니라 주변에도 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직장이든 간에 제가 만약에 직장이나 공장을 다녔으면 아마 더 많이 부딪혔을 것 같아요. 평범한 일을 했다면. 왜냐하면 전과 조희가 아무리 비밀이지만 다 알잖아요. 그거는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회사 사장이거나 뭐 그런 거라 해도, 많이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차라리 다른 죄명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검찰 조사받을 때도 계장님이나 검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마약하는 것 같다고 자꾸. 이제 진짜 하지도 않는데 정말로 난 떳떳하고 안 하는데도 하잖아 하잖아 그러니까.

#16

참여자 중에는 누범 제도의 무지로 인한 발생한 재범 경험을 거론하면서 출소자에 대한 누범 적용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 누범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람은 무조건 조만한 거 가지고도 또 실형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거는 이중 처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과자들을 오히려 막 더 양성시키고.

#21

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

1) 가족의 도움

출소 이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참여자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아내와 자녀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주요한 동기가 된다는 참여자도 있었고, 부모님을 언급한 참여자도 있었다. 이들은 부모, 아내, 자녀와 같은 가족이야말로 재범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였다.

솔직히 가족이 없었더라면 와이프랑 애들이랑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아요. 지금도 마약 안 해야겠다 생각하는게 와이프랑 애들. 모든 결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06

(교도소에 오기 전에) 혼자 살았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통제할 사람이 없었어요. 일하는 시간 외에 함께 있을 사람이 집이든 어디에든 있다면 재범 확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친구나 부모님이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11

예전에는 책임져야 될 가족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가족이라고 책임져야 될 아기가 생겨서 그 애기한테 또다시 또 혼자 남겨지고 어디로

보내고 그런 거를 해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16

어머니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편이죠. 나이 이렇게 먹어 가지고 좀 창피한데 그래도 어머니가 좀 많이 품어주시는 편이에요. 지금 식당 같은 경우에도 억지로 어머니님 하실 상황은 아닌데 혼자서 그냥 그렇게 문 닫아 놓으면 안 된다 문이라도 열어놔야 한다고 해서 지금도 혼자서 하고 계신 거예요.

#21

2) 멘토의 도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가족과의 유대가 약한 경우 대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멘토를 언급한 참여자도 있었다. 이들은 멘토가 출소 후 의지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흔들릴 때 자기를 옆에서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재범을 예방하거나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안에 있다보면 생각할 시간이 많아요. 안에서는 술도 안먹지 담배도 안피지 그러다보면 몸도 좋아져요. 앞으로 (나가면) 주변에 날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과자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봐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3

도움이 필요하면 마약이다 보니 심리치료나 멘토분들이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도 통화로 도움받을 수 있다면 좋을거라고 생각해요.

#04

멘토링에 참여할 거예요. 그래야 적응도 하고 사고도 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된다면 꼭 하고 싶어요.

#10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좀 생각이 달라지고 하니까.

#28

3) 관련기관의 도움

가족이나 멘토와 같은 비공식적 유대보다는 교도소, 한국법무복지공단,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은 전문기관, 종교기관 등 출소자를 돕는 기관들의 도움이 재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참여자도 있었다.

출소 전에 심리교육이나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출소하면 차비도 없고 낮에는 일 해야되는데 그 시간에 (공단에 가서) 상담받기는 어려워요.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돼야 심리상담이나 치료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개인상담은 받고 싶어요.

#02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부에서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걸 해주면 저는 받을 의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05

결국에 교정 교화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 표현. 그리고 종교 집회 같은 거 많이 적극적으로 사회랑 연계해서 도와주면. 저 지금 가족이 안 와요.

#15

4) 출소자의 변화의지

일부 참여자들은 가족, 멘토, 관련 기관 등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소자 스스로의 변화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출소 이후 더 이상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은 약 같은거 안 먹고 있어요. 직원들이 말할 정도인데 지금은 직원분들이 (내가) 다른 마약사범들이랑 좀 틀리다고 해요. 나도 그런 말을 듣다 보니 그런 부분을 지키고 싶어서 모범적으로 지내려고 하는거 같아요. 그때에 비해 마음가짐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04

매번 그렇죠. 매번 출소를 하면 주위에 친구들은 이제 부류가 나뉘지니까 정상적인 친구들은 전부 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냥 부자는 아니더라도 평범하게 사는데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은 조금 그런 쪽에 있는 친구들은 다 어렵게 사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주변이 문제고 제 마음가짐이 문제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냥 허영심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쉽게 뭐 큰돈 벌라 하고 나쁜 짓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이제 나쁜 짓 해서 큰돈 만져보면 씹씹이도 커지고. 일자리 이런 거야 자기 마음가짐 없으면 뭐 크게 도움은 안 되니까.

#20

이미 출소한 참여자 중에서도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변화 의지와 내면의 인식 변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출소 이후 경험하는 어려운 현실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려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게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일단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도 술 먹고 운전을 했잖아요. 솔직히 원래는 말하고 그냥 갔어야 했는데.

#37

좀 뭐랄까 이제 생각이라든가 이런 내면이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그냥 즉흥적으로 내 기분의 감정에 따라서 좀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한 번씩 갔다 와서 약간 좀 나 자신과 대화를 좀 하자.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이야 뭐 이런 거라든가.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40

4. 출소자 지원정책 인식

▶▶ [표 3-3-11] 출소자 지원정책 인식

영역	범주	사례
교정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교육에 대한 불만	#04 #11 #18
	교육에 대한 만족	#03 #15 #20 #23
	직업훈련의 개선점	#12 #21 #23 #30 #37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마움	#02 #04
갱생보호제도 및	갱생보호제도 및 기관 불신	#01 #02 #07 #09 #37 #38

영역	범주	사례
기관에 대한 인식	갱생보호지원 무관심	#12 #20 #37
	사전상담 및 교육내용 어려움	#14
	심리상담에 대한 갈등	#02 #23
	여성출소자에 대한 배려	#16
	공단직원에 대한 신뢰	#04
	출소 후 공단을 찾은 이유	#37 #38 #39 #40
	공단의 지원 경험과 바람	#37 #38 #39 #40 #41

가. 교정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1) 교육에 대한 불만

교정시설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자 중 일부는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교육 내용이 이미 알고 있는 평이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교정 직원이 진행하는 교육과 비교하여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이 덜 준비된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안(교도소)에서 하는 마약 교육은 솔직하게 도움이 안 돼요.

#04

저 같은 경우에는 윤창호법 외에도 그전부터 음주 관련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육을 두어 번 받았을 걸요. 그런데 그냥 보편적인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 근데 그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제일 편한 걸 제일 빨리 잊어버린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습관처럼 들어와 있는 걸 (고치자는) 교육인데 다 아는 얘기이니까 듣다가 보면 지치고 졸리죠. 솔직히 말하면 몸에 와닿지는 않아.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내용이고 또 특이한 거라면 인식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편한 얘기니까.

#18

교도소 직원들은 열심히 잘 교육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강사들은 준비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교도소라고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11

2) 교육에 대한 만족

반면, 다른 참여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언급한 것은 집단으로 진행되는 심리교육, 음주교육으로 교육을 통해 과거 경험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을 좋았던 경험으로 꼽았다.

교도소에서 심리교육을 듣고 있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평소 말 못하는 것을 공유하는 경험이 좋았어요.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경험이에요. 특히 나랑 비슷한 주변 사람들 생각을 들어보는 게 좋았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식으로 사람이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걸 느꼈다. 밖에 있을 때도 술 마시고 분노를 표출하면 나 스스로 '아,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라고 느꼈던 순간이 많았다. 그때마다 그냥 살던대로 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심리교육을 통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03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동영상을 보면서 이번에 저도 술먹고 운전했지만 제가 만약에 술을 먹고 저렇게 사고가 났으면 지금 어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23

교정시설에서 진행하는 교육 중에 인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강사가 자신들을 이해해 주고 공감할수록 인성교육이 '마음에 와닿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지금 여기서 인성 교육하잖아요.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인성교육이면 다 눈물이 터져요.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강사분들이 되도록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강사 이름난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감대 없는 강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사라서 '너희들은 일단 학력이 낮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굉장히 수준이 낮아' 하는걸 베이스에 깔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살았던 경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증명해주는 강사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아, 나도 될 수 있겠구나, 누구나 이럴 수 있구나' 하는 위로와 동시에 마음 문이 열리면서 굉장히 따라하고 싶은 거야. 저렇게 해보자 해보자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밖 와 닿으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15

인성교육 받아봤죠.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고.

#20

3) 직업훈련의 개선점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에 대해 일부는 복역기간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만일 자기의 복역기간이 길다면 직업훈련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의견, 직업훈련이 장기수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으나 떨어진 경험 등을 언급하였다.

저는 이제 교육적인 부분은 다 받았는데 어쨌든 나이가 나이고 사회인인 만큼 이제 나가면 직장으로 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길게 여기서 살게 되었다면 그런(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가장 우선시켰을 것 같아요. 화성에 여러 가지 직업훈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소 2년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12

직업훈련이나 그런 걸 신청하기에는 기간이 좀 짧죠. 짧아서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초단기도 있다고는 하는데 3개월짜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보통 6개월 아니면 1년 과정 이렇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당연히 우선권은 장기수들 위주로 뽑겠죠. 한 2~3년 이상 남아 있는 사람들이 (먼저죠). 뽑는 기간도 이게 중요해요. 매번 뽑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4월인가 5월에 신청을 받아서 6월에 뭐 이렇게 하고 또 한 11월에 신청받아서 12월에 결정 나서 이송한 다음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연초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두 번 하다 보니까 그거 안 맞으면 못 가는 거죠.

#30

신청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지게차하고 이런 거 했는데 제가 친형님이 건설하고 계셔 가지고. 이제 제가 용접공이라 외지로 용접하러 다니는데

중장비를 따려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하고 여주(교도소)에다가 중장비 지게차하고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안 땀어요.

#23

어렵게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출소 이후 자신이 배운 기술이나 취득한 자격증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참여자들 중 일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거쳐가는 사람이 저거 한 6개월 1년 배웠다 해가지고 나가서 그냥 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직군이라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무기수 같은 경우도 작년인가 나와 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쪽에 일을 하고 있고. 15년 있던 사람도 인테리어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년밖에 안 배웠는데 이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7~8년 배워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자격증 따가지고 징역 1~2년 받은 사람이 그걸로 밖에 나가서 취직한다? 실질적으로 백에 한두 명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도 그렇고 거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1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소개를 받거나 이렇게 광고를 내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럼 자격증은 웬만하면 다 있어요. 용접할 수 있냐, 뭘 할 수 있냐고 하면 다 한데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 하고, 학원에서 기술을 배워서 판거 하고는 천지차이예요.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현장에서는 내가 몸으로 접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용접을 한번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학원에서는 어려운 실습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상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서 와도 투입해서 일을 시키면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확실히 나요. 그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23

근데 이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교도소에서 있을 때는 뭐 용접도 종류별로 있잖아요. 전기 용접도 있고 가스 절단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나와보니) 배웠던 걸 다 쓰지 않고 Co2 용접하고 가스 절단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37

4)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마움

교정시설에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일부 참여자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이들이 받은 도움으로는 수용생활 중 겪는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조언, 수용 이후 알게 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직원들이 베풀어 준 배려와 호의 등이었다.

(교도소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루는 동안 반성하고 있다. 특히 교도관들이 많이 도와준다. 면담신청을 하면 잘 들어준다. 거실에서 다른 수형자랑 같이 생활하는데 이래저래 싸울 일이 많이 생기는데 현재까지 잘 피해가고 있다.

#03

총무과 계장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정말 감사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애기 낳았다고 연락드렸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거기 가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야기용품도 막 이런 것도 다 챙겨주시고 병원에 보호자 대신해서 다 해주시고. 너무 고마웠죠.

#16

나. 갱생보호제도 및 기관에 대한 인식

1) 갱생보호제도 및 기관 불신

참여자 중 일부는 교정시설 프로그램에 비해 갱생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이나 프로그램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갱생보호시설이 통제가 심하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으며 차라리 갱생보호보다는 교정기관에 세금을 더 쓰는 것이 낫다고도 하였다.

허그일자리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 일자리 자체를 구해주기보다는 자격증 취득과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교도소)안에도 자격증 취득과정이 있긴한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아요. 자격증을 취득해도 인정 기간이 밖에서 따는거랑 안에서 따는거랑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취업할 수 있는 조건 중 일부일 뿐 활용도는 낮은 것 같아요. 주변에 허그일자리 통해서 실제로 취업한 사례를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나이든 분들은 대부분 노가다해요. 노가다는 누구 눈치 안보니까. 안전이수증만 있으면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01

공단이 소개해주는 직장은 내가 출소자인거 알고 들어가는 것이 싫어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거 못봤어요. 아는 사람은 새벽 4:30에 출소했는데 새벽 5시에 교도소 앞에서 차 태워서 데려갔다고 해요. 이걸 뭐 잡혀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나 스스로 찾는 게 더 나아요.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일 못한다는 소리 들은 적 없어요.

#02

그건(갱생보호) 그렇게 좋게 안 봐요. 그런 데 세금 쓸 바에는 교정기관에 써야된다고 생각해요, 막돼먹은 사람들도 있는데 (출소 후) 치우 관련해서 좀 그래요. 그거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면 모르겠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될까 싶어요. 솔직히 연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생활 자체도 안되는 데 나가서 그러면 뭐가 도움되겠나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야지.

#07

공단과 같은 갱생보호기관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 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참여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참여자는 교도소 내에서 공단에 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 출소 후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자기도 갱생보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저는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갱생보호소에 가서 신고하지 않습니까? 거기 갱생보호소에서 해주는게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와서 살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보니 갱생보호소 가도 담당직원이 슬금슬금 돌리니까 짜증나니까 안 가게 되죠.

#09

여기(공단) 있으면 너무 간섭도 많고 이제 좀 제약이 있고 또 제재가 들어오고 일단 술 먹으면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그런 제약들이 있는 게 많이 불편하다 이제 식사 같은 경우 뭐 이제 형편이 없다는 말이 들었죠.

#38

공단에서 지내고 있는 참여자 37은 교도소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에게 공단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권유하였으나, 그 역시 과거 자신처럼 공단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출소 후 따로 주거지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제가 후배한테 ‘너도 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지내는 건 어떠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개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든 단체생활 같은 걸 했는데 여기서도 단체생활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통제를 많이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안 오더라고요.

#37

2) 갱생보호지원 무관심

갱생보호지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는 참여자가 있는가 하면, 애초부터 갱생보호제도나 기관에 대해 무관심한 참여자도 있다. 이들은 교도소에 처음 들어온 초범일수록 갱생보호지원에 무관심하며, 공단이 지원하는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알선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초범일 때는 다들 사회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시다. 근데 이제 재범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 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도 (보라미) 방송을 보게 되고 (공단에 대해) 인지를 하게 되고.

#12

자격증이나 그 생각은 들거든요? 마음이나 이제 머리로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제가 자격증을 따서 거기에 맞는 업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별로 안 가게 되더라고요.

#20

바빠서 그 교육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종이라도 주는데 거기에 적혀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지원들이 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좀 몇 가지는 적혀 있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가면 열심히 살 거니까 난 안 같거나 이러면서 솔직히 (안내지를) 버렸어요. 그 당시에.

#37

3) 사전상담 및 교육내용 어려움

참여자 중 일부는 공단에 대한 관심이 있어 사전상담에 참여하였는데,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다가가기 쉽지 않다고도 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들어는 봤는데 거기는 별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14

» [그림 3-3-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지원 및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안내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Korea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 (단,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 초과 지원불가)

구분	연간 최대 지원금액	6개월 최대 지원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지원 조건
공단이 운영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한 기업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개월 이상 참여자 중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개월 미만 참여자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실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기술교육한 취업훈련 제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신청 방법
기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정지원과)를 통해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koreha.or.kr ☎ 1670-7004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국번없이) 1350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안내

사업개요
지원대상 | 출소예정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

지원내용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1단계 “취업실감” → 2단계 “직업능력개발” → 3단계 “취업성공” → 4단계 “사후관리”에 이르는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단계	내용	기간
1단계 취업실감	- 상담 및 취업 원로 설명 - 상담대상 1:1 상담실습 3회 및 집단상담 실시 - 개인 취업실감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 -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지급(단, 출소예정자 미지급)	1개월 내외
2단계 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 지원 - 교육비 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 - 훈련장여수당월 최대 254,000원, 훈련장여금월 최대 116,000원 지급	6개월 내외
3단계 취업성공	- 취업 성공을 위한 지원 - 구인정보 제공, 동행안전 지원 등 - 면접장여수당(1회 20,000원 ~ 50,000원, 최대 5회)	3~6개월
4단계 사후관리	- 취업 후 재발 등 지원 - 취업 후 재발 예방 지원 및 미취업자 취업 지원 - 근속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지급 (12개월 근무시 최대 150 ~ 200만원)	3~12개월

신청방법
신청자 소재지 관할 관할 병원을 통해 신청
-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는 교정 및 보호관찰소 담당자 추천을 통해 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문의 koreha.or.kr ☎ 1670-7004

4) 심리상담에 대한 갈등

공단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일부 참여자는 참여하고 싶지만 당장에 먹고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먼 거리까지 찾아가기 쉽지는 않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심리상담을) 받아본 경험은 없다. 건너 건너 듣기만 했고 세부 절차에 대해서 아는건 없지만 받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쁘게 출근하고 그러면 시간이 안 맞을거 같아요. 사회봉사명령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데 그러면 낮에는 일을 못해요. 주 5일 내내. 주머니에 여유가 있어야 참여가 현실적으로 되는데 돈도 없는데 차비도 없어요. 사실 먹고 사는게 급선무인데 의식주가 먼저 해결되어야 이후에 심리상담도 가능한데 의식주가 해결이 안되면 심리상담을 받을 여유가 없고 여건도 안돼요. 나한테 너무 부담이 돼요.

#02

그것(상담)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시간대가 제가 확실하게 해서 그때그때 제가 시간이 맞으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시간대를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3

5) 여성출소자에 대한 배려

참여자 16은 과거 공단에 도움을 받고자 집단 상담에 간 적이 있으나 그곳에서 숙식하는 남성들과 함께 교육받아야 하는 상황이 다소 불편하고 우려되기도 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또 공단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에는 공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로 갔죠. 갔더니 이제 거기에서 집단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별 1차 상담이 끝났으니까 2차 집단 상담을 받아야 했는데 제가 집단 상담은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단에서 하니까 이제 거기서 숙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전 여잔데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는 저밖에 없고 좀 얼굴이 조금 팔린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같이 범죄자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또 무슨 일이 만들어질 것만 같은 그런.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며칠을 못 채웠어요. 며칠을 못 채워서 계속 연장 연장이 됐던 거예요. 근데 공단에서 그 300만원 배움카드를 받으려면 집단 상담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걸 못 끝냈죠.

#16

6) 공단직원에 대한 신뢰

과거 출소 때 공단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공단 직원의 안내와 상담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특히 자신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조차 상담을 할 정도로 공단직원을 신뢰했다고 하였다.

이전 출소 때 참여했어요. 그때는 취업목적으로 허그일자리 교육받고 취업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연락처 받고 밖에 나와서 연락을 계속했어요. 회사 같은데 면접도 같이 가고 그랬죠. 그때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 허그일자리 면접 다닌 분들이 공단직원이었던거 같아요. 자세히 기억은 못하는데 그쪽인거 같아요. 그분 덕분에 취업한건 아니지만 계속 도움 주려고 해서 사적으로 통화도 많이 하고. 제가 범죄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걸 알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은 아니라서 터놓고 이야기했죠.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04

7) 출소 이후 공단을 찾은 이유

출소 이후 공단을 찾은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서 숙식 등 생활지원을 받는 참여자들은 출소 이후 독립해서 살아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여의치 않아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주거문제가 해결되면서 심적인 안정을 찾았다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의견은 면접참여자 대부분이 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이기 때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공단을 찾는 여러 동기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원래는 부모님한테 가서 이제 좀 잘못했다 이런 걸 더 말하는 게 맞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한 서너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자각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아버지랑도 몇 번 부딪혔어요. 그러다보니깐 이번에 출소했을 당시에는 찾아뵙고 이제 이렇게 일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심지어 제가 도박을 해서 돈을 다 날려먹다보니깐 (부모님께) 가서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을 좀 더 찾게 된 것 같아요.

#37

거기(공단)에서 오셔서 이제 거기가 ○○교도소를 관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하다가 이제 제가 살았던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있기도 좀 뭐하고 해서 이제 누님이 있는 쪽으로 알아보는데 집을 알아보니 너무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너무 자금이 없다 보니까 월세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뭐 낼 게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들은 게 있으니까 여기(공단) 와서 상담을 했죠.

#38

여기저기 전전했죠. 방도 얻어서 지내고. 아주 허름한 방들. 그 전에는 애들 있는 집에도 있었고요. 갔다 나오면 가족들 간에 트러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있을 때 (공단을) 알기는 알았는데 저한테는 좀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게를 하다가 가서 사업자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혜택이 전혀 해당이 안 됐어요. 누구나 다들 (공단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저는 이제 나와서 그걸 서류상으로 말소하고 들어온거죠.

#40

참여자 39는 대표적인 무연고자로서 교도소에서 공단에 직접 연계하여 생활지원을 받게 되었다. 무연고자로서 출소 후 막막한 현실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쪽 교도소에서 이쪽(공단)으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왔어). 가석방돼서 나온건데 (나오기가) 싫었어. 만기까지 나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거주지가 확실치 않으니까 이쪽 소개해 줄 테니까 나가서 생각하시라고.

#39

8) 공단의 지원 경험과 바람

공단이 제공하는 생활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참여자들은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다. 이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숙소나 식사에 대해 만족하면서 가능하면 기간 연장을 통해 더 오래 머물기를 희망하였다. 이들은 공단의 생활시설을 ‘호텔’, ‘혜택’ 등으로 표현하면서 만족을 나타냈고, 참여자 38은 공단의 숙식제공이 더 확대되고 제대로 홍보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하였다.

너무 만족하죠. 너무 만족하고. 여기 직원분들 하나하나가 진짜 진실 어린 마음으로 일일이 다 대해 주시고 뭐 그런 내색도 전혀 안 하시고 진짜 가족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지나가는 말이라도 식사하셨냐 어떻게 지내냐 아프신 데는 없냐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걸 받으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얘기 들던 거하고 여기서 제가 직접적으로 느껴본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런 게 많이 홍보돼서 이런 지원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38

(이번에는 공단 외에는 정말 갈 곳이 마땅치 않았었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내가 나오기 싫다고 했던 게 그거였어요.

(막상 공단에서 생활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생각 외로 마음이 편해졌어. 저처럼 연고지가 없는 사람은 여기 완전 호텔이지 뭐.

#39

좋아요. 저도 여기 있는데 좋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만도 지금 큰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밥 있고 김치 있고 이러면 되는데 요즘 애들은 그거는 아니에요. 맨날 사 먹더라고요. 여기 방 안에 있는 사람 10명 중에 물어보면 5명 이상이 뭐 다 불만이라고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잠도 잘 자고 이래서 괜찮아요. 예민한 사람은 뭐 잠도 맨날 못 자고 시끄럽고 한데 저는 그렇지 않고.

#40

다만, 일부 참여자들은 다른 출소자들과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물품 절도, 쓰레기방치, 낭비 등)를 언급하면서 생활시설 내에서 어느 정도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근데 여기 있으면 뭐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은 항상 드시고, 그리고 또 이제 어지르는 거를 꼭 치우는 사람만 치우고 막 쓰레기도 갖다가 버리고 그냥 가고 화장실 뒤처리도 잘 못하고 너무 이 생활하는게 공동생활하는 게 직원분들 문제가 아니라 저희끼리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게.

#38

너무 개인의 자유 막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무방비로 놔두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애는 계속 물 틀고 그냥 막 삼푸

계속 쓰고 그 환경 낭비 막 그런 건데 너무 제재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약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거 딱 제재가 좀 있어야 하는데 요즘에 너무 개인의 자유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하긴 뭐 자유가 중요하죠.

#40

공단이 제공하는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 참여자는 담당 교사의 실력과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며 만족을 나타냈다.

이런 뭐 가르쳐주는 거. 그다음에 나와서 걱정거리 많은데 이런 시기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 그런 거 자체가 괜찮긴 한 것 같아요. 원래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하고 오후에는 1시부터 3시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오전 9시에 출근하셔서 만약 더 하고 싶거나 그러면 일찍 와도 뭐라 안 하시고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하는 거를. 일단 그런 거 보면 이제 엄청 잘하시고. 이제 제가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 막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봐라 이러면서 방식이나 그런 거를 좀 많이 (지도) 해주시더라고요. 자주 이렇게 코치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37

공단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취업 알선을 지원받은 참여자는 공단이 소개한 일자리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맞지 않았다는 경험을 이야기하였고, 다른 참여자는 공단이 지원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교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공단의 지원이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길 희망하였다.

한두 군데 소개를 해 주시긴 했어요. 근데 약간 그거 뭐였지? 청소, 미화! 미화쪽이고 이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죠. 아직 미화를 하기에는 나이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딱 맞는 일자리가 이렇게 딱딱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40

시험은 매번 있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공부를 하다가 떨어지고 지금 이번 달까지 2개월 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시험 봐야죠. 근데 그냥 해주신대요. 선생님이 도와주신대요.

(조리사 자격증을 따면 그걸로 뭘 하실 생각이세요?)

그걸로 취직하더라도 땀땀하게. 제가 전에 무슨 알바를 했었냐면 뷔페. 토요일 일요일 강남에 뷔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자격증 없는 사람은 그냥 최저로 취급받잖아요. 근데 자격증 있는 사람은 일하는 것도 약간 더 편하고 페이도 좀 더 높잖아요.

#41

제4절 | 소결

1. 주요 결과

이번 연구는 출소예정자 및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과거 출소 시절의 경험, 출소 이후 삶에 대한 계획, 출소 이후 삶을 위한 준비, 출소 이후 삶에서 겪는 어려움, 가족과의 관계, 지인(친구 포함) 관계, 출소 이후 도움을 받은 경험, 출소 이후 필요한 도움 등 출소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주관적 실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출소를 앞둔 시점에서 출소 준비 및 계획 관련 내용은 과거와 달라진 점, 출소 이후 계획, 가족과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과거와 달라진 점으로는 금주, 단약, 삶에 대한 태도 등 달라진 생각과 습관, 부모님, 자녀 등 가족과 지인에 대한 미안함, 재범중단의 다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심리상담, 사회봉사, 신용회복 등 구체적인 계획, 수감 이후 아버지의 사망, 자녀의 출산 등 가족의 변화된 상황과 나이들에 대한 인식, 반복되는 재범의 굴레 속에서 출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느끼는 막막함을 언급하였다. 출소 이후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우선 가족을 만나고 도움을 요청, 구직이나 자격증 취득, 주거 마련, 재혼 준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상담, 단약, 금주 실천, 교정 선고 등 종교 활동을 언급하였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교류가 유지되는 참여자와 그렇지 못한 참여자로 나뉘었다. 관계가 지속되는 가족은 주로 누나, 여동생 등 여자 형제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는 대부분 잦은 재범과 오랜 수형생활로 가족뿐 아니라 친구, 동료 등 다른 사회적 유대도 크게 나빠진 상태였다.

둘째, 출소 이후 예상되는 기대와 우려와 관련해서는 출소 이후 우려되는 것, 출소자에게 필요한 지원, 출소 이후 사회적 낙인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출소 이후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은 참여자일수록 주거·생계를, 구직을 생각하는 참여자일수록 취업을 우려하였고, 주거나 취업보다 사회부적응 자체를 걱정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출소 후 차게 될 전자발찌와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한번

실망을 안기고 자기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재범 또한 우려의 대상이었다. 출소자에게 필요한 지원으로는 숙식지원, 심리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이 언급되었고, 특히 나이가 어린 청소년 출소자와 점차 증가하는 정신질환 출소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보았다. 출소 이후 겪었거나 겪게 될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시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참여자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참여자로 나뉘었다. 후자의 경우 사회적 낙인을 출소자 스스로 가지는 심리적 부담으로 여기거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재범에 대한 인식은 출소자가 생각하는 재범의 원인, 그리고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재범의 원인으로는 부족한 돈이나 힘겨운 생활과 같은 경제적 문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극복해야 할 술, 낮은 자기통제나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와 같은 성격이나 기질, 출소 이후 찾아오는 무료함과 외로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차별과 답답함이 거론되었다. 재범예방을 위해 출소자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모, 아내, 자녀와 같은 가족의 도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가족과의 유대가 약한 경우 대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멘토의 도움, 출소자를 돕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언급되었고, 일부 참여자는 재범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소자 스스로의 변화의지(마음가짐)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출소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인식은 교정시설 프로그램과 갹생보호제도 및 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참여자는 긍정적으로, 다른 참여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 소통의 기회,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의 계기, 강사의 공감 능력을 들었는데 특히 심리교육, 인성교육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평이한 내용, 강사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복역기간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는 점, 출소 이후 자신이 배운 기술이나 취득한 자격증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으로 대표되는 갹생보호와 관련해서는 갹생보호제도에 대한 불신이나 무관심한 참여자가 있는가 하면, 출소 후 생활지원을 제공받고 있는 참여자들은 공단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공단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상담

교육의 내용이 어렵고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 심리상담 지원이 출소자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여성출소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 생활시설의 규율이 약하다는 점, 공단의 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은 개선사항으로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직원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 공단을 기반으로 삶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 정책 시사점

가. 교정시설 프로그램

1) 인성교육 확대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크게 집중 인성교육, 학과교육, 석방전교육으로 구분한다. 집중 인성교육은 준법교육 및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학과교육은 검정고시 및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석방전교육은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1317호)에 따라 형기종료 2개월 내외의 자,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절차, 신용회복절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안내 등으로 이루어진다.¹⁶⁹⁾ 심층면접 결과에서는 이 가운데 인성교육을 언급하면서 인성교육이 다른 수형자와 소통의 기회 제공,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 계기, 수형자에 대한 강사의 공감과 격려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정시설에서 인성교육을 확대하되 일부 외부강사의 경우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콘텐츠와 강사섭외 등 인성교육에 대한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석방전교육 내실화

석방전교육은 형기종료를 2개월 정도 앞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15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심층면접과 자문회의에서는 석방전교육이 출소예정자의 낮은 동기와 저조한 참여율, 교육 시간의 부족 등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16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교정본부 워크숍 자료에서 인용(2023.11.1.).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심층면접에서 드러나듯이 상당수 출소자는 출소 이후 삶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불안과 우려 속에서 출소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석방전교육이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고 교육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간처우와 연계하여 석방전교육이 지역사회 혹은 개방시설과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직업훈련제도 개선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은 출소자의 근로 동기와 취업 역량을 강화시켜 출소 후 구직활동 및 취업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제도이다. 현재 교정본부는 기술훈련을 학과교육과 연계하여 자격증 및 학위취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구인구직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중계를 활성화하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력하여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¹⁷⁰⁾ 그러나 심층면접과 자문회의에 따르면, 직업훈련교도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은 모든 수용자의 욕구를 채우기에 부족한 형편이며, 교정시설에서 취득한 자격증이나 수료증은 출소 이후 현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숙련도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출소자에게 오히려 좌절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교정당국도 인지하고 있는 현실이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¹⁷¹⁾ 따라서 교정시설에서부터 출소자에게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 현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취업동기나 근로의식이 높은 수용자를 선별하고 출소 후 관련 분야의 취업 및 고용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직업훈련 프로그램 선발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당락여부만 알릴 것이 아니라 사유 또한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작업장려금 활성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교정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화하여

17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교정본부 워크숍 자료에서 인용(2023.11.1.).

171) 교정시설 자문회의 내용에서 인용(2023.7.25.).

교정시설에서 일정 수준의 작업장려금을 모아서 출소 후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⁷²⁾ 이러한 작업장려금은 수감 기간 수용자가 국민연금 납부, 신용회복, 피해자기금, 가족부조 등에 사용하거나 출소 이후 생활비 명목으로 저축할 수도 있다.

나. 법무보호복지 서비스

1) 사전상담 개선

법무보호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는 보라미방송과 석방전교육을 통해 교정 시설에서부터 시작한다. 심층면접에서도 출소자의 상당수가 보라미방송을 통해 법무 보호복지제도와 공단의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석방전교육을 통해 진행하는 사전상담에 대해서는 많은 출소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어수선했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공단에 따르면, 1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사전상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⁷³⁾ 사전상담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교정시설에 공단직원이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수시로 사전상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법무보호 절차는 사전상담을 거쳐 출소 후 본인 신청 및 심사를 거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본인 신청이 각 지부에서 현장 신청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접수와 상담 과정에서 오해와 큰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¹⁷⁴⁾ 여타 사회서비스의 변화 추세에 맞게 법무보호복지 역시 온라인 서비스 전달체계로 점차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비서류 역시 상당히 간소화하였으나 여전히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복잡해 보일 수 있으므로 최소한 서류만 구비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받도록 법무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심층면접에 드러나듯이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출소자 대부분이 남성 중심이어서 여성 출소자에

17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교정본부 워크숍 자료에서 인용(2023.11.1.).

17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워크숍 자료에서 인용(2023.10.5.).

17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워크숍 자료에서 인용(2023.10.5.).

대한 배려도 필요해 보인다.

3) 심리상담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심리상담은 일대일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로 나뉘며 상담주제에 제한 없이 출소자와 그 가족을 상담하고 있다. 주요 호소 문제는 출소 이후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우울, 불안, 대인관계 위축, 가족 문제, 재범 충동, 각종 중독 문제이며, 심리상담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¹⁷⁵⁾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은 양적 팽창만큼이나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개인상담 3,293명, 집단상담 10,227명, 심리검사 4,197명으로 목표로 설정한 12,665명에 거의 근접하고 있으나, 상담회기로 치면 1인당 평균 1.4회에 불과하다.¹⁷⁶⁾ 이러한 현실은 각 지부에 소속된 임상심리사 등 심리상담 인력이 매우 부족한데 기인한다. 따라서 날로 수요가 높아지는 심리상담에 대한 출소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여러 지부에 분산된 심리상담 인력을 거점 기관을 두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임의적 서비스 개선

현행 법무보호복지업무는 법무부가 직접 수행하는 교정 및 보호관찰에 비해 공단과 민간사업자가 업무를 대행하고 법무부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¹⁷⁷⁾ 이에 법무보호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 보호관찰의 하위업무로 규정된 법률체계를 독자적 법률체계로 마련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법무보호복지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체계 마련에 더하여 현재 임의적 성격의 법무보호 서비스를 고위험군 혹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소자에게 부분적이거나 필요적 성격의

17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8면.

17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워크숍 자료에서 인용(2023.10.5.).

177) 권수진·탁희성·박선영·오병두,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211면.

서비스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¹⁷⁸⁾ 다만, 어떤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원할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심층면접에서 드러나듯이 공단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자원과 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다면 출소 이후 삶의 만족도 제고와 재범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17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워크숍 자료에서 인용(2023.10.5.).

제 4 장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1)

주요국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라광현·허 황·금융명

제4장

주요국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제1절 | 미국

1. 개관

미국에서는 1970년대 Richard Nixon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로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확대되고 1990년대 들어 삼진아웃제(Three-strikes law)가 확산되는 등 강력한 형사정책(get tough policies)이 한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강력한 형사정책은 구금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교도소의 과밀수용으로 이어져 왔다. 실제로 1970년대 중반까지는 약 20만 명 가량이던 미국의 교정인구는 2010년을 전후로 약 155만 명 가량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미국 학계에서는 재소자 수가 급증한 1970년대 중반 이후 과밀수용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¹⁷⁹⁾

교도소가 과밀하다고 하더라도 수형자들을 성공적으로 교화개선했어 사회로 내보낸다면 과밀수용 문제는 추가적인 교정시설 건립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교정시설에서의 수형생활은 재범예방 효과가 없거나,¹⁸⁰⁾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복귀

179) Ekland-Olson, Barrick & Cohen, 1983; Gaes, 1985; Pratt, 2018.

180) 교도소 수형(incarceration) 경험과 재범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Loeffler와 Nagin(2022)은 엄격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과자들의 재범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리뷰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수형 경험이 재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형 경험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일부 있었는데, 수형이 재범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들은 교화개선(rehabilitation) 프로그램을 강조한 세팅인 경우가 많았으며, 반대로 수형이 재범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은 교화개선을 강조하지 않은 세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범을 촉진할 수도 있다.¹⁸¹⁾ 실제로, 미국연방 사법통계국¹⁸²⁾에 따르면, 2005년에 출소한 미국 30개 주 출소자 중 83%가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한 번 이상 체포되었으며, 9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출소자는 17%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의 과밀화와 높은 재범률은 미국 형사사법 당국의 오랜 고민이었으며, 이러한 고민은 교정인구 감소 및 수형자들의 사회복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관심은 2007년에 Second Chance Act(SCA)의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2018년에는 연방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Formerly Incarcerated Reenter Society Transformed Safely Transitioning Every Person Act(First Step Act; FSA)가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은 출소자들의 재범률 감소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을 근거로 연방·주·지방 정부 및 민간조직에 상당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방 법무부가 주도하는 SCA나 FSA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연방 노동부 소관의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WIOA)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연루되었던 소년 및 성인들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들도 추진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교정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통계를 검토하고, SCA, FSA, 및 WIOA를 중심으로 수형기간 및 그 이후의 출소자 사회정책 지원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출소자 현황

가.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입·퇴소 현황

[표 2-1] 및 [그림 2-1]은 최근 10년간 미국 연방 및 주 교도소의 입·퇴소 현황을 나타낸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입소자와 퇴소자 모두 60만 명 초반대를 유지하였으며 2013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퇴소자가 입소자보다 많았으며, 이는 교정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입소자 수는 코로나가 본격화한 2020년도의 경우 약 35만 명으로 2019년도에 비해 20만 명 이상 감소하였으나, 2021년도에 소폭

181) Pratt, 2018.

182)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Alper, Durose, & Markman, 2018.

반등하여 약 42만 명이 입소하였다. 퇴소자의 경우 2020년도에 약 55만 명으로 입소자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적었으며, 2021년도에도 재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퇴소자 추세 변화는 미국 교정인구의 감소로 이어졌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0년도의 경우, 입소자에 비해 퇴소자가 20만 명 이상 많았다. 이에, 2009년에 155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미국의 재소자 수는 2021년도 116만 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것은 물론이며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¹⁸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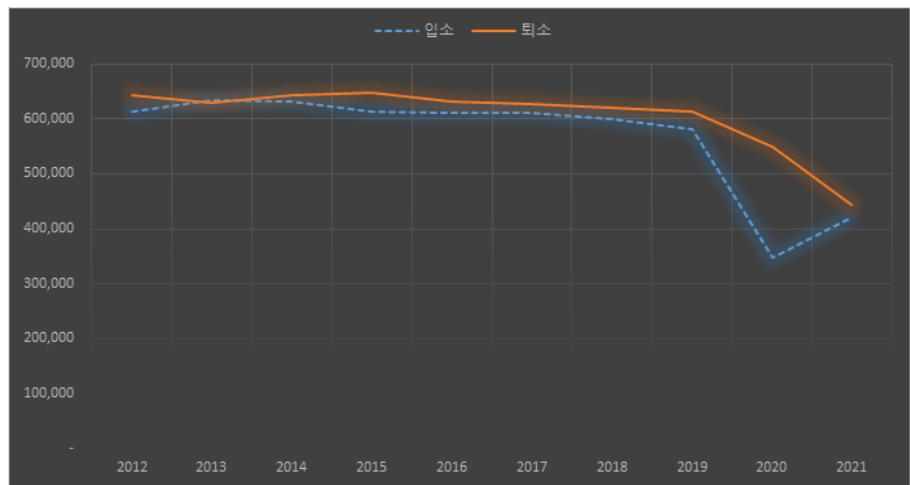
▶▶ [표 4-1-1] 미국의 교도소 입·퇴소 인구 추세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입소	613,337	634,244	630,762	612,952	610,561	611,187	600,195	580,708	346,461	421,006
퇴소	642,820	629,949	641,961	646,881	630,656	627,612	620,337	614,051	549,622	443,740

출처: <https://csat.bjs.ojp.gov/freq-requested-charts>; Carson, 2022, p.8

▶▶ [그림 4-1-1] 미국의 교도소 입·퇴소 인구 추세



출처: <https://csat.bjs.ojp.gov/freq-requested-charts>, Carson, 2022, p.8

183) Carson, 2022.

나. 연방 및 주 교도소 수용 현황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교정인구는 주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체 입·퇴소자의 90% 가량이 주 교도소에서 발생한다. 2021년도의 경우 미국 교도소 전체 입소자는 약 42만 명이었으며 이 중 약 38만 명이 주 교도소 입소자였다. 퇴소자도 마찬가지로 전체 44만 명 중 40만 명이 주 교도소 퇴소자이다. 즉,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주 교도소로 볼 수 있다.

▶▶▶ [표 4-1-2] 연방 및 주 교도소 입·퇴소 현황(2021년)

(단위: 명)

	전체	연방	주
입소	421,006	42,174	378,832
퇴소	443,740	39,394	404,346

출처: Carson, 2022

다. 연방 및 주 교도소 석방 유형

퇴소자의 경우 다수는 보호관찰(parole) 등을 조건부로 하여 석방된다. 조건부석방은 퇴소자의 지속적인 감시와 지도를 통하여 효과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할 수 있는데, 2021년도의 경우 퇴소자 중 약 80%가 보호관찰 등이 부과된 조건부 석방(conditional release)이었다. 연방 교도소 퇴소자의 경우 99%가 비조건부 석방(unconditional release¹⁸⁴⁾)으로 통계치가 발표되었다. 즉,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없이 사회로 복귀한다는 것인데 이는 형사절차 내지는 통계처리 상의 문제이며,¹⁸⁵⁾ 실제로는 연방 교도소의 비조건부 석방자들 중 다수가 다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184) 비조건부 석방자의 대부분은 만기출소자(expiration of sentence)일 것으로 추정되나, 감형(commutations) 및 다른 형태의 비조건부 출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 비조건부 석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85) 미국 연방 교도국(Bureau of Prisons)이 출소자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연방교도소 수형자들은 비조건부로 출소를 하지만, 이후 연방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에서 출소자에 대한 감독을 하며,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출소 후 감독(postcustody supervision)을 받게 된다(Carson, 2022, p.19).

▶▶▶ [표 4-1-3] 연방 및 주 교도소 석방자 현황(2021년)

(단위: 명)

	전체	조건부석방	비조건부석방	사망
전체	431,964	312,870 (72%)	113,887 (26%)	5,207 (1%)
연방	37,844	144 (0%)	37,290 (99%)	410 (1%)
주	394,120	312,726 (79%)	76,597 (19%)	4,797 (1%)

출처: Carson, 2022

라. 재범률 관련 통계

미국 연방법무부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은 2005년에 30개 주의 교도소 출소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¹⁸⁶⁾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출소자들의 누적체포율은 출소 후 1년 차에 43.9%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며, 2년차에 60.1%로 절반을 넘고, 7년차에는 81.1%로 4/5를 넘어선다.¹⁸⁷⁾

이러한 결과를 집단 별로 나누어 볼 때, 여성이나 중년 이상의 출소자, 공공질서범(public order)의 경우 재범 속도가 다소 더디기는 하지만, 9년차까지 체포를 경험하지 않은 출소자는 집단을 불문하고 1/4 이하로 나타났다. 즉,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 교도소는 실제로 회전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¹⁸⁸⁾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표 4-1-4] BJS의 출소자 추적조사 결과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체포율	43.9%	37.7%	34.3%	31.9%	30.1%	28.0%	27.4%	25.9%	24.0%
누적 체포율	43.9%	60.1%	68.4%	73.5%	77.0%	79.4%	81.1%	82.4%	83.4%

출처: Alper, Durose & Markman, 2018

186) 이 조사는 2005년 30개 주의 1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았던 출소자 412,731명 중 70,878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수행되고 있다.

187) Alper, Durose & Markman, 2018.

188) Harrison, 2001; Padfield & Maruna, 2006.

3. 출소 전 사회복귀 지원

가. 근거 법령

수형자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출소 전 교정시설에서의 처우와 관련한 법률적인 근거는 2008년 제정된 Second Chance Act와 2018년 제정된 First Step Act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 법률은 여러 국내 문헌들을 통하여 빈번하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는 개략적으로 하며,¹⁸⁹⁾¹⁹⁰⁾ 이들 법률 및 여타 자원을 통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 Second Chance Act

미국 교정의 수형자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법률은 2008년 4월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그 해 12월 George W. Bush 대통령이 서명한 Second Chance Act(SCA)이다. SCA는 교정과 관련한 전례 없는 법률로서(first-of-its-kind legislation) 초당적 지지를 받고 법집행 기관 및 교정기관 등 형사사법 기관 및 교정교화와 관련한 다른 분야로부터의 지원을 받아 입법에 성공하였다.¹⁹¹⁾ 2018년 Second Chance Reauthorization Act를 통해 SCA는 재승인받고 지속되고 있다.¹⁹²⁾

이 법률은 재범 감소, 공공 안전 증대 및 교정 비용 감소를 위한 시책에 연방 정부의 투자를 가능케 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연방교도소, 주 교도소, 소년시설, 및 비영리 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교정 대상자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한 근거가 되고 있다(CSG Justice Center, 2018). 이 법률은 현재 교정 및 지역사회(corrections and community), 교육 및 고용(education and employment), 행동건강, 주거 및 가족 지원(behavioral health, housing, & family supports) 트랙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¹⁹³⁾

189) SCA에 대한 법제도적 논의는 조윤오(2023)의 연구 또는 정소영(2017)의 보고서 참조.

190) FSA에 대한 법제도적 논의는 박혜림(2020)의 보고서 참조.

191) CSG Justice Center, 2018.

192)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Second Chance Act FACT SHEET (<https://bja.ojp.gov/doc/sca-pay-for-success-fact-sheet.pdf> 2023. 11. 2. 최종검색)

193)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홈페이지 - SCA Program Tracks (<https://nationalreentryresourcecenter.org/second-chance-act/program-tracks> 2023. 11. 2. 최종검색)

2) First Step Act

미국의 Donald Trump 대통령은 2018년 12월 흔히 First Step Act(FSA)라 불리는 Formerly Incarcerated Reenter Society Transformed Safely Transitioning Every Person Act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연방 교도소 수형자들의 재범률 감소를 위한 법안이다.¹⁹⁴⁾ 이 법률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수형자들의 교화개선보다는 “공공 안전을 지키면서 연방 교정인구를 감소시키는 것”¹⁹⁵⁾이었으나, 이는 결국 수형자들의 교화개선 혹은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⁹⁶⁾

- 연방 교정국(Bureau of Prisons)의 위험성 및 욕구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정개혁(correctional reform via the establishment of a risk and needs assessment system at the Bureau of Prisons)
- 연방 형법 중 일부 범죄의 양형 조정을 통한 양형 개혁(sentencing reform via changes to penalties for some federal offenses)
- Second Chance Act of 2007의 재승인¹⁹⁷⁾

이 중 교정개혁 및 양형개혁의 주요 내용은 1) 재범감소 프로그램 개발, 2) 마약 범죄 형량 하향, 3) 모범 수형자에 대한 인센티브, 4) 가택 구금 확대, 5) 수형자에 대한 주거지 근거리 수감 및 임신부 보호조치 확대 등이다(박혜림, 2020).

나. 담당 조직 및 인력

1) 주 교정보호 조직

출소자의 사회정착 업무는 정부 기능 중 교정 및 보호관찰과 관련이 있다. 미국

194) 미국 연방 교정부 홈페이지 - FSA 소개 (<https://www.bop.gov/inmates/fsa/index.jsp> 2023. 11. 2. 최종검색)

19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1면.

19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197) 문헌에 따라, 2018년에 Second Chance Reauthorization Act가 승인되었다고 표현하거나 혹은 First Step Act를 통해 재승인받았다고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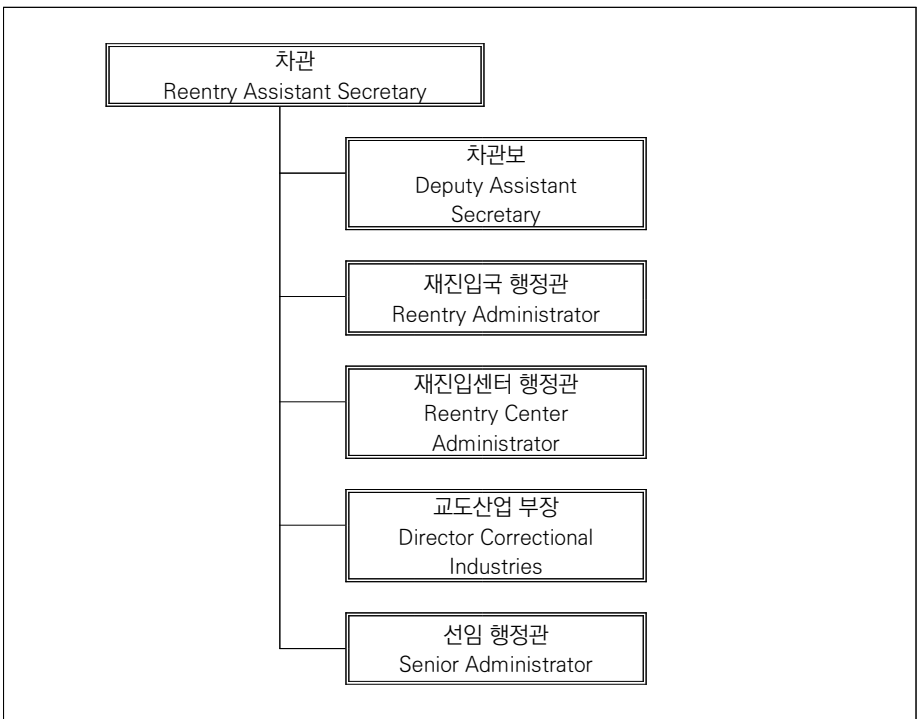
주들의 교정 전담 조직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를 사용한다. 보호관찰의 경우,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 교정보호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등의 명칭) 혹은 형사사법부(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등의 조직에서 교정 및 보호관찰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Indiana, Texas, California, New York, Washington 등), 별도의 보호관찰 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Arkansas, South Carolina 등)가 모두 존재한다.

이러한 교정 및 보호관찰 담당 조직에는 교육이나 치료 등의 처우 관련 부서 외에도 Reentry Services 및 Reentry Divisions(Arkansas, California, Washington 등) 등과 같이 수형자의 사회재진입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기도 한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04년에 교정 및 보호관찰 담당 부처 이름을 교정재활부(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CDCR)로 변경하는 등 조직의 명칭에서부터 재활 및 사회복귀를 강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워싱턴 주¹⁹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워싱턴 주의 경우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에서 교정, 보호관찰, 및 수형자 사회복귀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형자 사회복귀와 관련한 주요 사무는 부장관실(Office of the Deputy Secretary)의 소속 부서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부장관실에는 지역사회 교정국(Community Corrections Division), 보건서비스국(Health Services Division), 여성교도소국(Women's Prisons Division), 남성교도소국(Men's Prisons Division) 등과 더불어 재진입국(Reentry Division)이 편제되어 있다. 재진입국에서는 재진입 센터 관련 업무 및 교정산업(Correctional industries)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그림 4-1-2) 참조).

198) 미국 각 주의 조직 구성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있으나, 개별 교도소 조직의 구성은 대부분 공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워싱턴 중의 경우 개별 교도소 조직도 또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워싱턴 주의 교정보호 조직 및 개별 교도소의 조직도 특성을 검토하였다.

» [그림 4-1-2] 워싱턴 주 교정부 재진입국 조직도



출처: 워싱턴주 교정부 홈페이지¹⁹⁹⁾

2) 주립 교도소 조직

미국에는 90여 개의 연방교도소와 1,500개소 이상의 주립교도소 등 수천 개의 교정 시설이 존재하며,²⁰⁰⁾ 각 교도소 조직의 구성은 상이하다. 개별 교도소의 조직도는 대부분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교도소 조직의 형태 및 교도소 조직 구성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워싱턴 주의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주립 교도소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위한 조직 현황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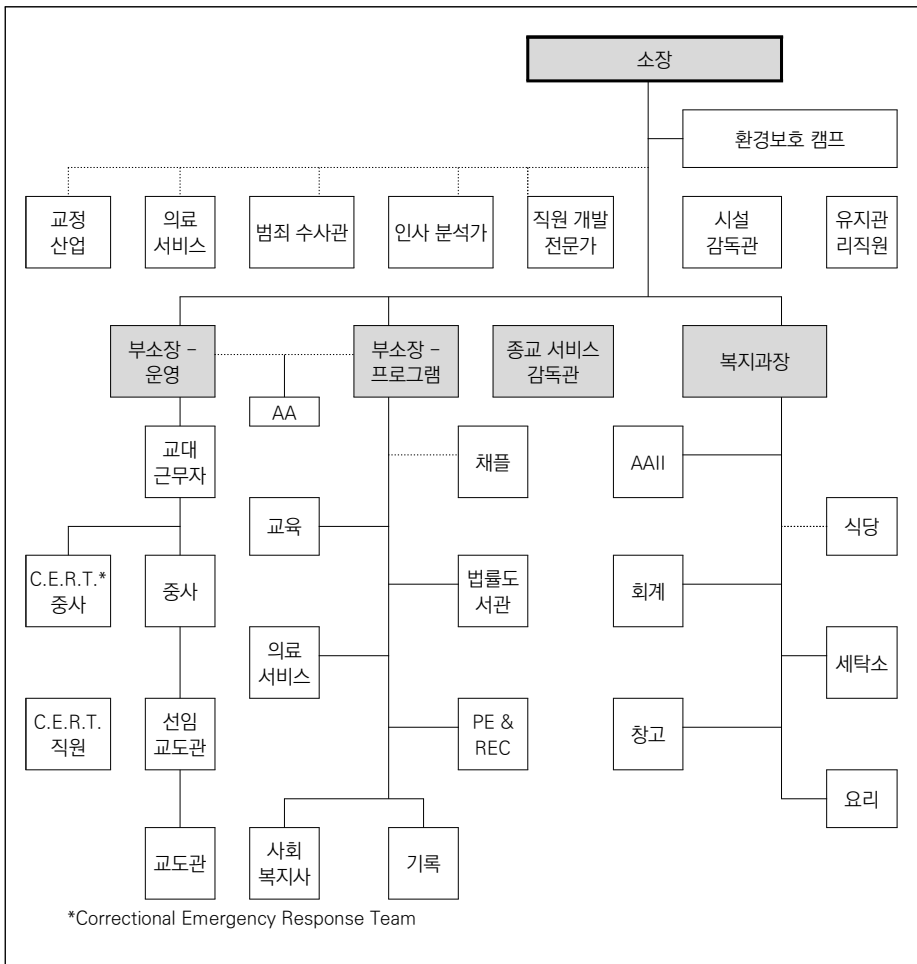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교도소 조직도에서는 사회복귀와 혹은 재진입과 같은 명칭은 찾기 어렵다. 다만, 조직도 중심부를 살펴보면, 사회복귀 내지는 재진입과 관련한 교육, 보건 등의 업무가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소장(Associate

199) 워싱턴주 교정부 홈페이지 - 조직도 (<https://www.doc.wa.gov/docs/publications/100-DG001.pdf> 2023. 11. 2. 최종검색)

200) Sawyer & Wagner, 2023.

Warden-Programs)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워싱턴 주의 12개 교도소 조직도를 검토한 결과 또한 교도소 수준의 조직은 운영(Operations), 프로그램(Programs), 시설(Facilities), 수사(Investigator), 프로그램(Program) 등으로 구분되며 프로그램 담당 부서장(Program manager) 소속으로 교육 및 교도소 내 각종 활동 관련 하위 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 [그림 4-1-3] 일반적인 교도소 조직도



출처: Peak, 2016, 233면

3)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국립범죄자재진입지원센터)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NRRC)는 SCA에 근거하여 설치된 수형자 사회 복귀를 위한 전문기관이다. NRRC는 미국 연방사법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과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의 사업으로서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AIR)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²⁰¹⁾ 다만, NRRC는 출소자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니며, 출소자 관련 현장실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지식 및 정보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²⁰²⁾

다. 관련 프로그램

1) Second Chance Act 관련 재정지원 프로그램

FSA와 SCA에 근거하여 미국 연방정부는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는 SCA를 통하여 연방정부, 주 및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조직 등에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재정 지원은 1) 교정 및 지역사회(corrections and community), 2) 교육 및 고용(education and employment), 3) 행동건강, 주거 및 가족 지원(behavioral health, housing, & family supports) 트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트랙별 재정지원사업²⁰³⁾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가) 교정 및 지역사회

- 지역사회 기반 재진입 프로그램(Community-Based Reentry Program; FY 2023):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재진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정부, 지자체, 비영리 조직 등을 지원하며, 종합적인 사례 관리 및 유관 조직 등과의 협업을 강조.

201)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홈페이지 - Contact (<https://nationalreentryresourcecenter.org/contact-national-reentry-resource-center> 2023. 11. 2. 최종검색)

202) AIR 홈페이지 -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소개 (<https://www.air.org/centers/national-reentry-resource-center> 2023. 11. 2. 최종검색)

203) 이하의 프로그램 내용은 재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며, 세부 프로그램은 재정지원 수혜기관이 개발함.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될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에는 사례 관리, 특정 성별 혹은 트라우마 기반 프로그램, 멘토링, 동료 지원, 교육 및 직업훈련, 약물 중독 및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신체 건강 서비스, 가족 회복 지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등이 포함됨²⁰⁴⁾

- 재진입 혁신 이니셔티브(Innovations in Reentry Initiative; FY 2021): 주 및 지방정부 등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특정 대상 집단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재범 감소를 위해 현재의 재진입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그램²⁰⁵⁾
- 스마트 보호관찰: 감독 혁신 이니셔티브(Smart Probation: Innovations in Supervision Initiative; FY 2021): 지역사회 교정기관들이 감독하는 개인들의 감독 성과(supervision outcomes) 개선이 목적이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 1) 재범률 특히 폭력범죄 재범 감소, 2) 감독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증거기반 정책 활용, 3) 폭력범죄 재범률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및 형사사법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4) 관련 기관 간 협력 증대²⁰⁶⁾
- 스마트 재진입 및 감독(Smart Reentry and Supervision; FY 2022): 재진입(reentry)과 감독(supervision)의 성공을 위하여 재진입 과정 혹은 감독 중에 있는 성인의 욕구를 다루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 및 실무의 개발, 실행 및 확장이 목적이며, 1) 스마트 재진입, 2) 스마트 감독, 3)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음²⁰⁷⁾
- 스마트 감독 프로그램(Smart Supervision Program; FY 2023): 보호관찰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9가지 목표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선택할 수 있음: 1) 직원 교육훈련, 2)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과학기술 적용,

204)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FY 2023 Second Chance Act Community-Based Reentry Program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funding/opportunities/o-bja-2023-171683> 2023. 11. 2. 최종검색)

205)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FY 2021 Innovations in Reentry Initiative: Building System Capacity & Testing Strategies to Reduce Recidivism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funding/opportunities/o-bja-2021-93002> 2023. 11. 2. 최종검색)

206)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BJA FY 21 Smart Probation: Innovations in Supervision Initiative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sites/g/files/xyckuh186/files/media/document/O-BJA-2021-93003.pdf> 2023. 11. 2. 최종검색)

207)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Smart Reentry and Supervision: Grants, Tools, and Technical Assistance to Facilitate Change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funding/O-BJA-2022-171302.pdf> 2023. 11. 2. 최종검색)

3) 성인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역량 개선, 4)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정, 5)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에 초점, 6) 리더십 및 직원 참여를 통해 재범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개선, 7) 직원 건강 및 복지 개선, 8) 유관 기관들 간의 협력 강화, 9) 실무자-연구자 파트너십을 통한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기록²⁰⁸⁾

- 주 단위 재범 경감 이니셔티브(Statewide Recidivism Reduction Initiative; FY 2018): 주 단위의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전략 계획의 추진을 위한 자원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1) 증거 기반 정책 추진을 도모하며, 2) 사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및 분석을 통해 재범 및 폭력범죄 감소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미국 전역에 확산하고, 3) 관련 분야의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²⁰⁹⁾

나) 교육 및 고용

- 성인 재진입을 위한 교육, 고용,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Adult Reentry Education, Employment, Treatment, and Recovery Program; FY 2021): 이 프로그램은 교정과 관련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교육 및 고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물질 사용 장애에 대한 교정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짐: 1) 교정 교육 개선, 2) 직업훈련 및 취업 서비스 3), 물질 사용 장애 치유 개선 ²¹⁰⁾
- 성인 재진입 및 고용을 위한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Adult Reentry & Employment Strategic Planning and Implementation; FY 2016): 이 프로그램은 Adult Reentry and Employment Strategic Planning Program과 Second Chance Act Technology Career Training Grant Program으로 구분되는데 전자

208)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FY23 Second Chance Act Smart Supervision Program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funding/O-BJA-2023-171505.pdf> 2023. 11. 2. 최종검색)

209)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Second Chance Act Statewide Adult Recidivism Reduction Strategic Plan Implementation Program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sites/g/files/xyckuh186/files/media/document/BJA-2018-13636.PDF> 2023. 11. 2. 최종검색)

210)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BJA FY 21 Second Chance Act: Adult Reentry Education, Employment, Treatment and Recovery Program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sites/g/files/xyckuh186/files/media/document/O-BJA-2021-98001.pdf> 2023. 11. 2. 최종검색)

의 목적은 재범 감소와 출소 이후의 고용 개선을 위한 종합적, 협력적, 다중시스템적 전략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며, 후자의 목적은 출소자들이 과학기술과 관련한 직군에 고용될 수 있도록 재진입 계획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²¹¹⁾

- 재진입 교육 및 고용 성과 개선 프로그램(Improving Reentry Education and Employment Outcomes; FY 2023): 이 프로그램은 재소 및 사회복귀 기간 동안 수형자들이 받는 교육 및 고용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짐: 1) 교정 교육 개선, 2) 고용 서비스 및 연계 강화.

다) 행동건강, 주거 및 가족 지원

- 욕구 기반 수형자 부모 및 연소자 자녀 지원 프로그램(Addressing the Needs of Incarcerated Parents and Their Minor Children; FY 2022): 이 프로그램은 재범 감소 및 수형자의 연소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으로, 1) 아동 친화적 공간 조성, 2) 수형자 부모를 방문하는 아동을 위한 안전 프로토콜 및 절차 개발, 3) 수형자 부모 및 자녀의 욕구를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음²¹²⁾
- 성인 재진입을 위한 교육, 고용,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Adult Reentry Education, Employment, Treatment, and Recovery Program; FY 2021)²¹³⁾
- 성인 및 소년을 위한 위기 개입 및 지역사회 재진입 개선 프로그램(Improving Adult and Juvenile Crisis Stabilization and Community Reentry Program; FY 2023):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정시설에서 정신질환이나 물질 사용 장애 등을 겪는 출소자에 대한 임상처우, 자살 방지 및 지속적인 회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²¹⁴⁾

211)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홈페이지 - Adult Reentry & Employment Strategic Planning and Implementation (FY 2016) 제안요청서 (<https://nationalreentryresourcecenter.org/second-chance-act/program-tracks/adult-reentry-employment-strategic-planning-and-implementation> 2023. 11. 2. 최종검색)

212) 미국 연방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 홈페이지 - OJJDP FY 2022 Second Chance Act Addressing the Needs of Incarcerated Parents and Their Minor Children 사업 소개 (<https://ojjdp.ojp.gov/funding/fy2022/o-ojjdp-2022-171233> 2023. 11. 2. 최종검색)

213) “(2) 교육 및 고용”에서 첫 번째 소개한 프로그램과 동일한 사업으로, “교육 및 고용” 그리고 “행동건강, 주거 및 가족 지원” 두 개의 트랙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214)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BJA FY 2023 Improving Adult and Youth Crisis Stabilization and Community Reentry Program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funding/O-BJA-2023-171525.p>

- 재진입 단계의 성인 수형자 대상 물질 사용 장애 치료 및 회복 성과 개선 프로그램(Improving Substance Use Disorder Treatment and Recovery Outcomes for Adults in Reentry; FY 2023): 이 프로그램은 물질 사용 장애를 가진 성인 출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개발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① 모든 입소자에 대한 물질 사용 장애 선별 스크린 실시, ② 수형자들에 대한 증거기반 치료 서비스 제공, ③ 미성년 자녀를 가진 수형자 및 임신/산후 여성을 위한 교도소 기반 물질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 제공, 4) 출소 전부터 출소 후까지 연결되는 회복 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²¹⁵⁾
- 물질 남용 및 정신질환 공동장애 성인 수형자의 재진입 개선 프로그램(Improving Reentry for Adults with Co-occurring Substance Use & Mental Health Disorders; FY 2019): 이 프로그램은 물질 남용 및 정신 질환을 동시에 겪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교정 시스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1) 모든 입소자들에 대한 정신 질환 및 물질 남용 스크린 절차 표준화, 2) 출소 이전에 정신 질환 및 물질 남용 평가 실시, 3) 재범 위험 요인을 다루기 위한 증거 기반 및 출소 전·후의 치료 프로그램 및 인지 행동학적 개입, 4) 재범 위험성 평가 및 물질 남용/정신 질환 평가 결과를 결합한 협력적이며 종합적인 사례 계획 개발, 5) 데이터 수집, 입력 및 분석 등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성과 측정 계획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²¹⁶⁾
- 성공을 위한 두 번째 기회법 지원 이니셔티브 (Second Chance Act Pay for Success Initiative; FY 2023): 이 프로그램은 출소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1) 보통 이상(moderate to high)의 재범 위험성을 가진 출소자에 대한 개별화된 재진입 서비스 제공 및 영구 주거 지원(permanent support housing)을 위한 성과 및 결과 기반 계약의 개선, 2) 데이터 및 보고서 수집, 정기적인 성과 및

df 2023. 11. 2. 최종검색)

215)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BJA FY23 Improving Substance Use Disorder Treatment and Recovery Outcomes for Adults in Reentry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funding/O-BJA-2023-171537.pdf> 2023. 11. 2. 최종검색)

216)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Improving Reentry for Adults with Co-occurring Substance Abuse and Mental Illness 제안요청서(<https://bja.ojp.gov/sites/g/files/xyckuh186/files/media/document/BJA-2019-15183.PDF> 2023. 11. 2. 최종검색)

결과 검토, 현장 및 외부 모니터링, 결과 확인 및 인센티브 지급 승인을 포함한 성과 기반 또는 결과 기반 재진입 서비스 또는 영구 주거 지원 계약 관리, 3) 성과 및 결과 기반 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 및 서비스 제공자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며, 1) 재진입 서비스를 위한 계약, 2) 영구 주거 지원을 위한 계약 유형으로 구분됨.²¹⁷⁾

2)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술한 재정지원 사업은 출소자 사회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각 재정지원 대상 기관이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이에 이하에서는 SCA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및 각종 문헌을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사례를 중심으로 수행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하에서는 수행자들의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과 관련한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이 중 California Prison Industry Authority는 NIJ가 교정기반 직업 훈련 프로그램 중 효과가 있을 것(promising)으로 분류한 프로그램이며²¹⁸⁾²¹⁹⁾, Career Navigators는 최근의 RAND 재단 보고서(Davis, Turner & Tolbert, 2022)에서 다루어졌던 출소 전 교정 마지막 단계에서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다.

가) (시스템) 캘리포니아 교정산업청(California Prison Industry Authority ;CALPIA)

NIJ가 우수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제시한 California Prison Industry Authority는 캘리포니아 주 CDCR 산하의 교정산업청으로서 하나의 단일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CALPIA는 재소자들에게 교도작업과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수행자들의 사회복귀를 고려한 우수한 교도작업 시스템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할

217)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BJA FY 2023 Second Chance Act Pay for Success Program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funding/O-BJA-2023-171523.pdf> 2023. 11. 2. 최종검색)

218) CrimeSolutions 홈페이지 - Corrections-Based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소개 (<https://crimesolutions.ojp.gov/ratedpractices/24#relatedprograms> 2023. 11. 2. 최종검색)

219) 미국 의회는 NIJ에 범죄 예방 예산의 효과성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500개 이상의 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10년 CrimeSolutions.gov가 개설되어,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19).

것이다.

CALPIA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수형자들이 출소일 이전 2~5년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최소 기본 교육 점수(minimum adult basic education score)를 충족해야 한다. CALPIA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원요건 충족자들에게 대한 교도작업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무기수(sentenced life without parole) 등의 참여는 제한되며,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등록 후 2년 이내에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검정고시(GED)를 취득해야 한다.²²⁰⁾

나) (취업연계) 미네소타 주의 커리어 네비게이터스(Career Navigators)와 임플로이(EMPLOY)

커리어 네비게이터스(Career Navigators)는 최근 교정에서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출소 직전의 수형자 및 출소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들의 흥미에 맞는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주들에서도 시행되던 기존 재진입 네비게이터스(Reentry Navigators)가 교도소를 떠나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커리어 네비게이터스(Career Navigators)는 그 이전 단계부터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²²¹⁾.

한편, 미네소타 주에서는 NJ가 효과가 있을 것(promising)이라고 분류한 임플로이(EMPLOY)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나 2020회계연도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²²²⁾ 이 프로그램은 출소 이후 최대 1년 동안 출소자들을 지원하며, 출소자들의 구직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훈련, 고용주와의 매칭 등을 포함한다.²²³⁾ 이 프로그램은 커리어 네비게이터스(Career Navigators)보다 먼저 시행되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직원이나 수형자들이 각 프로그램 간의 차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각 프로그램이 각각 고용주들을 접촉하는 등의 문제가 보고되기도 하였다.²²⁴⁾

다) (창업지원) 수형자에서 사업가 전환(Inmates to Entrepreneurs)

미국에는 Inmates to Entrepreneurs 및 Defy Ventures 등 민간 비영리 단체들을

220) CrimeSolutions 홈페이지 - California Prison Industry Authority (CALPIA) 소개 (<https://crimesolutions.ojp.gov/ratedprograms/1794#ar> 2023. 11. 2. 최종검색)

221) Davis, Turner & Tolbert. (2022)

222) MNINCOR, 2020.

223) MININCOR, 2017.

224) RAND, 2022.

중심으로 재소자 및 출소자들에게 창업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²²⁵⁾ 수형자에서 사업가 전환(Inmates to Entrepreneurs) 프로그램의 경우 1992년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North Carolina 주의 교정시설에서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소규모 사업 운영을 위한 마케팅, 재정 운용, 사업 개시 등의 커리큘럼을 포함하는 8주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²²⁶⁾

Defy Ventures는 2010년 뉴욕시에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로서, 수형자에 대한 프로그램인 CEO로서의 새로운 삶(CEO of Your New Life; CEO YNL)과 더불어,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 부트캠프(Entrepreneurship Bootcamp), 사업 엑셀러레이터(Business Accelerator)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EO YNL의 경우, 교도소 혹은 중간처우소에서 6~9개월 동안 자기 개발 및 창업 훈련(entrepreneurship training)을 제공한다. 기업가 정신 부트캠프(Entrepreneurship Bootcamp)는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창업을 희망하는 출소자를 위한 14주간의 프로그램이다. 사업 엑셀러레이터(Business Accelerator)는 창업 전후에 있는 출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창업 및 사업관리와 관련한 심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업한 출소자들은 Defy 사업가 네트워크(Defy Entrepreneur Network)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받는다.²²⁷⁾

3) 기타 프로그램

텍사스 주 Fort Bend 카운티의 상시 육아(Always Parenting) 프로그램은 SCA 지원 사업²²⁸⁾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수형자 가족 지원 사업이며, 연방 펠 장학제도(Federal Pell Grant)는 취약계층을 위한 미국 연방 정부의 대표적인 장학 프로그램으로서 수형자에 대한 지원이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펜실베이니아 Allegheny County의 재진입 협력 프로그램(Reentry Collaborative Program)은 NIJ가 효과가 있

225) Hwang, 2023.

226) Inmates to Entrepreneurs 홈페이지 - CORRECTIONAL FACILITY BOOT CAMPS 소개 (<https://inmatestoentrepreneurs.org/programs/eight-week-course/> 2023. 12. 15. 최종검색)

227) Defy Ventures 홈페이지 - 2021 Annual Report (<https://www.defyventures.org/static/uploads/files/2021-defy-ventures-annual-report-wfnvqjqrkzcg.pdf> 2023. 11. 2. 최종검색)

228) OJJDP FY 2022 Second Chance Act Addressing the Needs of Incarcerated Parents and Their Minor Children

다고 평가한 프로그램이자 SCA를 통한 지원사업 중 우수한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다.

가) (가족) 상시 육아: Fort Bend 카운티의 수형자 부모 및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Always Parenting: A Fort Bend County Program for Incarcerated Parents
and Their Children)

Fort Bend 카운티의 상시 육아(Always Parenting) 사업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형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텍사스주 Sheriff's Office와 Behavioral Health Services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Fort Bend 카운티 구치소에 아동친화적인 공간과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구축하며, 아동 방문과 관련한 안전 프로토콜 및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²²⁹⁾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크게 두 개의 단계(phase)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수형자 및 자녀들의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성과 확산 및 서비스 고도화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i) 서비스 관련 욕구를 파악하고, ii) 안전한 방문 환경을 조성하며(아동 친화적이며 안전한 방문시설, 방문 코칭, 가상 방문 등), iii) 직원 등에 대한 교육 개발(Mental Health First Aid, Trust-based Relational Intervention 등)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i) 카운티 전역에 서비스를 확산하고, ii) 수형자 및 자녀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사업 결과를 분류하여 사업의 대응성 증진에 초점을 둔다.²³⁰⁾

나) (학업지원) 연방 펠 장학제도(Federal Pell Grant)

미국 연방의 펠 장학제도(Pell Grant)는 고등 교육을 위한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이 공인된 교육기관에 등록할 때 받을 수 있는 교육 보조금 사업이다.²³¹⁾ 보조금은 상환의무가 없으며 과거에는 수형자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1994년 미 의회가 수형자들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2015년 Second Chance Act를 통해 수형자에 대한 Pell Grant 파일럿 프로그램

229) 미국 연방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 홈페이지 - Always Parenting: A Fort Bend County Program for Incarcerated Parents and Their Children 사업 소개 (<https://ojdp.ojp.gov/funding/awards/15pjd-22-gg-03098-coip> 2023. 11. 2. 최종검색)

230) FortBend County, 2022.

231) 캘리포니아주 CDCR 홈페이지 - 보도자료 (<https://www.cdcr.ca.gov/news/2023/07/06/incarcerated-students-now-eligible-for-federal-pell-grants/> 2023. 11. 2. 최종검색)

(Second Chance Pell Grant Pilot Program)이 실시되었으며,²³²⁾ 파일럿 프로그램은 8,000여 명의 수형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59개 학교에 약 3,5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²³³⁾ 2023년 7월부터 수형자들도 파일럿 프로그램이 아닌 기존의 Pell Grant를 수혜할 수 있게 되었다. 2023-2024학년도의 경우 최대 수혜 금액은 7,395달러이며, 수혜자의 학업 형태나 수업료 등에 따라 수혜 액수가 달라진다.²³⁴⁾

다) (종합지원) 펜실베이니아 주 Allegheny 카운티 재진입 협력 프로그램(Allegheny County (PA) Reentry Collaborative)

펜실베이니아 Allegheny County Jail Collaborative(ACJC)는 Allegheny County의 재진입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Allegheny County에서는 NIJ가 효과적(effective)이라고 분류한 Reentry 1²³⁵⁾2²³⁶⁾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NIJ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프로그램은 SCA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수행한 것으로 수형자의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돕고 재범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²³⁷⁾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유형과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구치소에서 출소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며, 두 번째 단계는 출소 이후 지역사회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이어지는 지원 서비스이다.²³⁸⁾ 한편, 대상자의 출소 전에 재진입 전문가(reentry specialist) 혹은 재진입 전담 보호관찰관(designated reentry Probation Officer)이 배정되는데 재진입 전문가가 배정되는 프로그램 유형은 Reentry1이며, 보호관찰관이 배정되는 프로그램 유형은 Reentry2이다. Reentry1에서 재진입 전문가는 구치소와 지역사회에서 대상자와 재진입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며, Reentry2에서 보호관찰관은

232) 미국 연방 교정부 홈페이지 - Pell Grant 소개 (https://www.bop.gov/resources/news/20230712_pell_grant.jsp 2023. 11. 2. 최종검색)

233)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9)

234) Federal Student Aid 홈페이지 - Pell Grant 지원방법 (<https://studentaid.gov/understand-aid/types/grants/pell#how-apply> 2023. 11. 2. 최종검색)

235) CrimeSolutions 홈페이지 - Allegheny County (Pa.) Jail-Based Reentry Specialist Program 소개 (<https://crimesolutions.ojp.gov/ratedprograms/494#relatedpractices> 2023. 11. 2. 최종검색)

236) Reentry 1 프로그램은 NIJ가 분류한 Jail-based reentry specialist program과 같은 프로그램이다.

237) (Willison, Bieler, & Kim, 2016)

238) CrimeSolutions 홈페이지 - Allegheny County (Pa.) Jail-Based Reentry Specialist Program 소개 (<https://crimesolutions.ojp.gov/ratedprograms/494#relatedpractices> 2023. 11. 2. 최종검색)

출소 전 단계에서 대상자와 함께 재진입 계획을 수립하고 출소 후에는 대상자를 감독하게 된다.²³⁹⁾

라. 지원 현황

SCA 재정지원 사업은 2009회계연도에 2천 5백만 달러로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2010회계연도에 예산이 1억 달러로 4배 증가하였으며, 이후 증감을 거듭하며 2023년도에는 1억 2천 5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등 SCA 재정지원 사업 예산은 첫 해와 비교하여 약 5배 증가하였다.²⁴⁰⁾

한편, 2009년에서 2017년까지 SCA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보조금 프로그램은 총 843건이며, 그 중 소년 혹은 소년사범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제외할 경우 728건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재정지원 사업 중 Adult Demonstration/Innovations in Reentry를 통한 프로그램이 173건으로 가장 많으며 Adult Mentoring 프로그램이 147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운영되었다.²⁴¹⁾

» [표 4-1-5] SCA 재정지원 사업 보조금 프로그램 현황

(단위: 건)

	빈도
성인 재진입 시범/혁신 프로그램 Adult Demonstration/Innovations in Reentry	173
성인 멘토링 Adult Mentoring	147
공존장애 프로그램 Adult Co-occurring Disorders	90
기타 보조 프로그램 Solicited/Supplemental	55
테크놀로지 직업훈련 Technology Career Training	43
보호관찰 혁신 프로그램 Innovations in Supervision	43
가족 기반 물질 남용 치료 Family-based Substance Abuse Treatment	41

239) Willison, Bieler, & Kim, 2014.

240) CSG Justice Center, 2018; National Association of Counties, 2023.

241) CSG Justice Center, 2018.

	빈도
주단위 성인 재범 감소 프로그램 Statewide Adult Recidivism Reduction	41
젊은 부모 프로그램 Young Fathers and Mothers	39
지역사회 기반 종합 성인 재진입 프로그램 Comprehensive Community-based Adult Reentry	28
재진입 법원 Reentry Courts	12
수형자 자녀 프로그램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3

출처: CSG Justice Center, 2018.

지원 대상의 경우, 주정부, 카운티 정부, 지방 정부, 고등교육기관, 비영리 조직 등이 대상이 되었다. 2019 및 2020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비영리 조직이 45개 재정지원 사업을 통하여 약 4천 8백만 달러를 지원받아, 사업 수와 지원 금액 모두 여타 지원 대상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카운티 정부와 주 정부는 각각 42개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카운티 정부는 약 3천 8백 3십만 달러, 주 정부는 약 3천 5백 5십만 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⁴²⁾

4.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

가. 근거 법령

출소 후 사회 내에서의 정착 지원은 전술한 Second Chance Act와 First Step Act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SCA의 경우 범죄자가 수형기간(incarcerated) 뿐만 아니라 출소 후(after reentry)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FSA의 경우 대체로 양형개혁이나 수형기간 동안의 처우와 관련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저위험 수형자에 대한 가택구금(Home confinement) 촉진과 같은 사회 내 처우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4년에 제정된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WIOA) 또한 출소자에 대한 지원 근거 중 하나이다. WIOA는 기존의 Workforce Investment

242)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22.

Act를 대체하는 법률로서, 노동 시장에서 구직자들이 고용, 교육·훈련, 지원 등의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용자의 원활한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²⁴³⁾

동 법률은 전과자(ex-offender)를 저소득자, 노인, 장애인 등과 함께 “고용에 고충을 겪는 개인(individual with a barrier to employment)”으로 규정하여, 구직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동 법률을 통해 수행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재진입 고용 기회(Reentry Employment Opportunities)로서 2023회계년도의 경우 115,000,000달러가 예산으로 책정되었다.²⁴⁴⁾

나. 공공기관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1) 담당기관

가) 형사사법 관련 공공조직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출소자의 사회정착과 관련한 공적인 노력은 출소 전후의 교정보호로부터 시작하며, 교정보호 조직이 중심이 되어 추진된다. 미국 주정부의 교정보호 조직의 구성은 앞서 기술하였기에 생략한다. 미국의 재진입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카운티 수준의 경찰에 해당하는 보안관서(Sherriff)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는 보안관이 카운티 구치소(county jail)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안관의 경찰 기능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교정보호 기관 외에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조직으로 재진입 법원(reentry court)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진입 법원은 교정 이후 출소자에 대한 감독 및 사례관리, 그리고 보호관찰 규칙 위반자에 대한 대응을 주 기능으로 한다. 가장 최근인 2012년 미국사법통계국이 문제해결형 법원(problem-solving courts)에 대한 센서스를 실시하였는데, 약물 법원(1,330개소), 정신건강 법원(337개소), 가정 법원(261개소) 등 여러 가지 문제해결형 법원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재진입 법원은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데, 기타 전체를 합해도 146개소에 불과하다²⁴⁵⁾는 점에

243)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WIOA 소개 (<https://www.dol.gov/agencies/eta/wioa> 2023. 11. 2. 최종검색)

244)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REO Fact Shee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reentry/pdf/REO-Fact-Sheet-5.15.23.pdf> 2023. 11. 2. 최종검색)

서 재진입 법원은 아직까지 널리 확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기타 공공조직

출소 후 사회 내 사회정착 지원의 근거법률로 제시했던 WIOA는 미국 노동부의 주도 하에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한 정책 추진체계의 하나는 American Job Center(AJC)이다. AJC는 구직자들에 대한 통합 서비스(one roof) 전달체계로서²⁴⁵⁾ 미국 전역에 약 2,400개가 설치되어 있다.²⁴⁷⁾ 일반적으로 AJC는 일반인과 더불어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정시설 내에 ACJ를 설치하여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미국 노동부에는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자 청소년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숙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Job Corp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Job Corps는 전술한 목적으로 미국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로서 각 주에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다.²⁴⁸⁾ Job Corps는 기본적으로 출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형사사법 시스템에 연루되었었다는 사실만으로 참여배제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²⁴⁹⁾ Burghardt와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재범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는 등 출소자들이 활용가능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2) 미국 노동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

한편, WIOA 및 FSA 등에 근거하여 미국 노동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재진

245) Strong, Rantala & Kyckelhahn, 2016.

246)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American Job Centers 소개 (<https://www.dol.gov/general/topic/training/onestop> 2023. 11. 2. 최종검색)

247) Career Onestop 홈페이지 - American Job Centers 위치 (<https://www.careeronestop.org/Veterans/JobSearch/FindOpenings/american-job-centers.aspx> 2023. 11. 2. 최종검색)

248)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Job Corps 소개 (<https://www.dol.gov/agencies/eta/jobcorps> 2023. 11. 2. 최종검색);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 주택당국 홈페이지 - Job Corps 설명 (<https://www.clearwaterhousingauth.org/wp-content/uploads/2021/06/Job-Corp-Flyer.pdf> 2023. 11. 2. 최종검색)

249)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Job Corps 자격기준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jobcorps/pdfs/Exhibit%201-1%20Job%20Corps%20Eligibility%20Requirements.pdf> 2023. 11. 2. 최종검색)

입 고용 기회 프로그램(Reentry Employment Opportunities Program; REO)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재정지원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가) 인력개발을 통한 재진입 기회 창출 프로그램(Partners for Reentry Opportunities in Workforce Development; PROWD)

이 프로젝트(initiative)는 출소자가 거주할 지역의 특정한 노동 수요에 적합한 직무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i) 연방 교도소 재소 기간, ii) 재진입 센터(중간처우소) 거주기간, iii) 출소 이후라는 세 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서비스가 제공된다. 프로젝트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i) AJC와 유사한 고용센터(employment labs)의 설치, ii) 지속적인 지도(job coaching), iii) 테크놀로지의 활용, iv) 동료 멘토링 등이 있으며, 기관 관(cross-agency), 시스템 간(cross-systems) 협력을 강조한다.²⁵⁰⁾

나) 성장 기회(Growth Opportunities; GO)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1) 청소년 및 청년으로 하여금 폭력을 회피하고 갈등 해결 기술을 개발시키며, 2) 대상자로 하여금 노동의 세계(world of work)를 소개하고 준비시키고, 3) 대상자의 진로 관심을 확인하고 기술을 익히게 하며, 4) 대상자에게 소득을 제공하여 생활임금을 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퇴학자 혹은 형사사범 연루 경험이 있는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혹은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혹은 교육적 목표와 관련이 있는 유급 근로 경험을 제공한다.²⁵¹⁾

다) 집으로 가는 길(Pathway Home; PH)

이 프로젝트는 출소 이후 재진입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사이의 시간적인 공백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소 전·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소 전 서비스로는 욕구 사정, 개별 계획 수립, 종합적 사례 관리, 구직 준비, 법적 지원, 상담

250)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PROWD Grant Fact Shee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youth/pdfs/2022-10_PROWD%20Grants%20Fact%20Sheet.pdf 2023. 11. 2. 최종 검색)

251)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GO Fact Shee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youth/pdfs/GO%20factsheet%205.11.2023.pdf> 2023. 11. 2. 최종검색)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출소 후에는 고용주 연계, 외부 서비스 제공자 연계, 수요가 있는 분야의 직업훈련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출소 전 서비스는 출소 예정일로부터 20~180일 사이에 시작되며, 출소 후에도 출소 전과 같은 사례 관리자를 통해 사회복지의 충격을 완화한다.²⁵²⁾

라) Young Adult Reentry Partnership (YARP)

이 프로젝트는 수혜 기관이 전문대학(communitary college)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출소한 청년들에게 IT, 의료 및 에너지와 같은 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견습 등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고용 중심의 서비스(employment-focused services), 교육, 사례 관리, 직업소개 서비스(job placement services), 법률 서비스, 기타 욕구-관련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²⁵³⁾

마) 재진입 프로젝트(Reentry Projects; RP)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기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형사사법에 연루되었다가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청소년 및 성인들의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을 도모한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1) 출소자를 고용 및 교육 등의 친사회적인 활동에 연루시켜 성공적인 재통합을 촉진하며, 2) 장기 고용을 유지하고, 3) 안정적인 거주를 지속시키며, 4) 약물남용 및 정신 건강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의 수혜 기관은 유연하게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으나, 참여자는 빈곤 및 범죄 문제가 심각한 지역(high-poverty, high-crime communities) 거주자로 제한된다.²⁵⁴⁾

바) 연방 보증 프로그램(Federal Bonding Program; FBP)

FBP는 출소자, 약물 치료 중인 자, 복지 수급자, 저신용자 등의 고용을 꺼려하는 고용주를 위한 것으로, 미국 노동부에 의해 1966년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출소자

252)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Pathway Home Fact Shee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youth/pdfs/Pathway%20Home%201234%20Fact%20Sheet.pdf> 2023. 11. 2. 최종검색)

253)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YARP Fact Shee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reentry/pdf/YARP_Fact_Sheet_7.29.21.pdf 2023. 11. 2. 최종검색)

254)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Reentry Project Fact Shee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reentry/pdf/Reentry_Projects_Fact_Sheet_4.9.2021.pdf 2023. 11. 2. 최종검색)

등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절도 및 횡령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5,000~25,000 달러의 지급을 보증한다.²⁵⁵⁾ 고용 후 최초 6개월은 지급보증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이 없으며, 6개월 이후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²⁵⁶⁾ 현재까지 5만 명 이상이 FBP를 통하여 취업하였고, 지난 해의 경우 1,000명 가량의 구직자들이 수혜를 받았다.²⁵⁷⁾

다. 민간기관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미국에는 수많은 비영리 민간조직들이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수의 경우 전술한 SCA나 WIOA 관련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원봉사단체 중 하나인 AmeriCorps도 재소자 및 출소자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²⁵⁸⁾ Vera Institute of Justice, RTI International과 같은 연구기관들도 연구조사 뿐만 아니라 재진입 서비스와 관련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²⁵⁹⁾

이하에서는 1972년 시카고에서 설립된 Safer Foundation에 대해 소개한다. Safer Foundation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과자(ex-offender)에게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출소자 사회정착 비영리 조직으로,²⁶⁰⁾ 2020회계연도의 경우 약 2천만 달러의 정부계약(government contracts) 수입을 올렸으며, 약 2천 6백만 달러를 프로그램(program services)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대규모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²⁶¹⁾

Safer Foundation은 현재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부(main office)를 두고 시카고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리노이주 사우스 홀랜드와 아이오와주 데이븐

255) The Federal Bonding Program 홈페이지 - FAQ (<https://bonds4jobs.com/about-us/faqs#1461691375774-2478a7ef-a7201461694227044> 2023. 11. 2. 최종검색)

256) The Federal Bonding Program 홈페이지 - FAQ (<https://bonds4jobs.com/about-us/faqs#1461691623739-499cbf0a-557d1461694227044> 2023. 11. 2. 최종검색)

257) The Federal Bonding Program 홈페이지 – About Us (<https://bonds4jobs.com/about-us> 2023. 11. 2. 최종검색)

258) (Broadus et al., 2016)

259)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홈페이지 - About (<https://nationalreentryresourcecenter.org/about-national-reentry-resource-center> 2023. 11. 2. 최종검색)

260) Finn, 1998.

261) Safer Foundation, 2022a.

포트에도 센터를 두고 있다.²⁶²⁾ Safer Foundation은 취업지원(job placement), 교육훈련(training + education), 재진입 지원 및 웰니스(Reentry Support + Wellness) 영역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²⁶³⁾

취업지원 서비스의 경우, 즉각 고용(immediate employment)과 장기 고용(long-term employment)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즉각 고용의 경우 출소자가 자립하기 이전에 생계를 유지하며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²⁶⁴⁾ 실제로 Safer Foundation (2022b)에 따르면, 2021년도 취업한 대상자의 고용유지율은 6개월 기준 70%, 1년 기준 64%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교육훈련은 교육(education)과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으로 구분된다. 교육 서비스의 경우 청소년 대상 고등학교 검정고시(High School Equivalency Diploma) 과정과 성인 대상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 및 튜터링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 출소 전·후의 대상자에게 직업훈련, 영업용 차량 면허 훈련 등을 제공하며, 구직 후 9개월 동안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²⁶⁵⁾ 직업훈련의 경우, 2021년도 기준, 448명이 등록하여, 331명(74%)가 수료하였으며, 225명(50%)가 훈련 받은 것과 일치하는 산업체에 고용되었다.²⁶⁶⁾

재진입 지원 및 웰니스 분야의 경우, 재진입 단계에 있는 출소자들에게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행동건강 관련 지원, 법률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²⁶⁷⁾ 2021년도를 기준으로 235명이 치료서비스(treatment services)를 제공 받았으며,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에서 600회, 성인 전환 센터(Adult Transition Centers) 기반 프로그램에서 757회의 상담 및 치료 세션이 진행되었다.²⁶⁸⁾

262) Safer Foundation 홈페이지 - 소개 (<https://saferfoundation.org/about-us/> 2023. 11. 2. 최종 검색)

263) Safer Foundation 홈페이지 (<https://saferfoundation.org/> 2023. 11. 2. 최종검색)

264) Safer Foundation 홈페이지 - 취업지원 (<https://saferfoundation.org/job-placement/> 2023. 11. 2. 최종검색)

265) Safer Foundation 홈페이지 - 교육훈련 (<https://saferfoundation.org/training-education/> 2023. 11. 2. 최종검색)

266) Safer Foundation, 2022b.

267) Safer Foundation 홈페이지 - 재진입 지원 및 웰니스 (<https://saferfoundation.org/reentry-support-wellness/> 2023. 11. 2. 최종검색)

268) Safer Foundation, 2022b.

5. 요약 및 시사점

미국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수형자 및 출소자 정책 및 프로그램은 근거법령, 교정시설의 운영주체(연방, 주, 카운티, 민영), 그리고 정책 및 프로그램 추진주체(주 정부, 교정시설, 민간조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 수준의 교정보호 관련 조직들 및 지역사회의 민간조직들은 일찍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방 정부의 경우도 FSA 제정을 통해 수형자 사회복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 수형자 및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정책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적 근거는 FSA, SCA, 그리고 WIOA이다. 이들 법령에 근거하여 주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조직 등으로 대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형자의 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최일선에 있는 미국의 교도소 조직에서는 재진입(reentry)에 특화된 부서가 드러나지는 않으나, 주 수준의 교정 시스템에서는 재진입과 관련한 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SCA 재정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 비영리 조직의 경우, 후원 및 SCA 등 재정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선 교정시설 및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소자들의 재범율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²⁶⁹⁾ 여전히 Martinson의 “nothing works”라는 레토릭이 유효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출소자들의 높은 재범률과는 별개로, 수형자 및 출소자들의 사회복귀 및 재활과 관련한 고등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등 개별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다.²⁷⁰⁾ 실제로, SCA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증거기반(evidence-based) 프로그램 추진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전술한 Allegheny County Jail Collaborative의 재진입 프로그램이나 Texas Juvenile Justice Department에서 추진하는 SCA 재정지원 사업들의 경우 그 효과가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²⁷¹⁾

다만, SCA 재정지원 사업은 주 정부와 카운티 정부 등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과 같은 민간조직의 수형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자원이

269) Alper, Durose, & Markman, 2018.

270) Weisburd, 2017.

271) CSG Justice Center, 2018.

되고 있으나, 재정지원 사업의 특성상 선정되지 못한 사업지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2019회계년도 및 2020회계년도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와 플로리다 주 등은 5백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았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와 네바다 주 등은 단 한건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²⁷²⁾ 즉, 경쟁을 통한 재정지원 은 사업 신청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교정당국은 공통적으로 과밀수용 및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출소자 개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이 필요하다. 실제로,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은 한국과 미국 교정당국이 공통적으로 지닌 중요한 목표이다. 이는 우리의 경우 교정 담당 조직의 직제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그리고 일선 교도소에 공히 사회복귀과가 편제되어 있으며, 수형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과 심리치료 등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CA 및 FSA 등의 법률이 제정되어 수형자의 사회재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및 실질적인 지원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2008년에 SCA를 제정함으로써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연방 교정과 관련된 FSA를 제정하는 등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 마련은 다시 관련한 재정적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경우 형사법과 관련한 개별 특별법의 증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나 유관 법률의 재정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일부 프로그램에서 출소의 충격을 경감하며 출소 전과 후에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들이 발견되고 있다. 예컨대, 펜실베이니아주 Allegheny County에서 실시하는 Reentry Collaborative 프로그램은 보호관찰관 혹은 재진입 전문가가 구치소에서 출소하기 전부터 대상자를 담당하여 출소 계획을 수립하며, 출소 이후에도 대상자를 감독한다. 미국 연방노동부의 Pathway Home 또한 출소

272)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22.

전·후에 걸쳐 같은 사례 관리자를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출소자가 출소 단계에서 시간적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 독일

1. 개관

여기서는 출소자의 사회정착에 관한 독일의 법과 제도를 살펴본다. 한국적 의미에서 출소자의 사회정착은 독일적 의미에서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사회화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사회화에 대한 기본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기본권은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결부된 제2조 제1항에서 도출되며, 국가는 형집행을 수형자가 자유롭게 장래 범죄없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에 맞추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동 재판소는 수감자보상(Gefangenenvergütung)에 관한 결정에서 입법자는 효과적인 재사회화 개념을 발전시키고 형집행을 그러한 개념 위에서 축조하는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념은 학문적 상태에 맞추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학문적으로 유도되고 평가되어야 하고 국가는 집행목표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재정적, 인적 자원을 갖추어야 하며 성공적인 재사회를 위해 상이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간별로(형집행 전·중·후) 다양한 기관에 의해(사법집행시설의 직원, 사회복지기관, 자발적 범죄자지원 등)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²⁷³⁾

이렇듯 하나의 헌법적 권리로까지 승격된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독일의 노력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해당 법과 제도를 발전시키는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가. 연구를 위한 전제로서 독일의 형집행제도의 이해

독일에서도 출소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였다는 것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영위한다는 것, 사회통합을 의미한다. 사회적 통합은 가족관계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취미,

273) “교도소영적상담넷” 홈페이지(<https://gefaengnisseelsorge.net/resozialisierungsgesetz> 2023. 11.1. 최종검색).

기타 영역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²⁷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방지 여부는 재사회화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출소자의 재범방지는 이미 형사법 전체 체계의 주된 목표였다. 즉 형사제재 및 절차의 주된 이념은 특별·개별예방의 관점, 즉 재범방지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형집행(Strafvollzug)단계에서 시작하여²⁷⁵⁾ 그 이후의 사후절차(Nachsorge)에서도 이어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형 집행 및 그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형자(Inhaftierte)와 출소자(Haftentlassene)의 재범방지에 관한 독일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자(Straffällige)의 재범방지의 노력은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시작된다. 따라서 문제된 범죄자에 의해 범죄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모든 범죄자에게 형벌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적지 않은 경우 형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사면과 같은 특별예방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통해 재판의 집행(Strafvollstreckung), 특히 자유형의 집행(Strafvollzug)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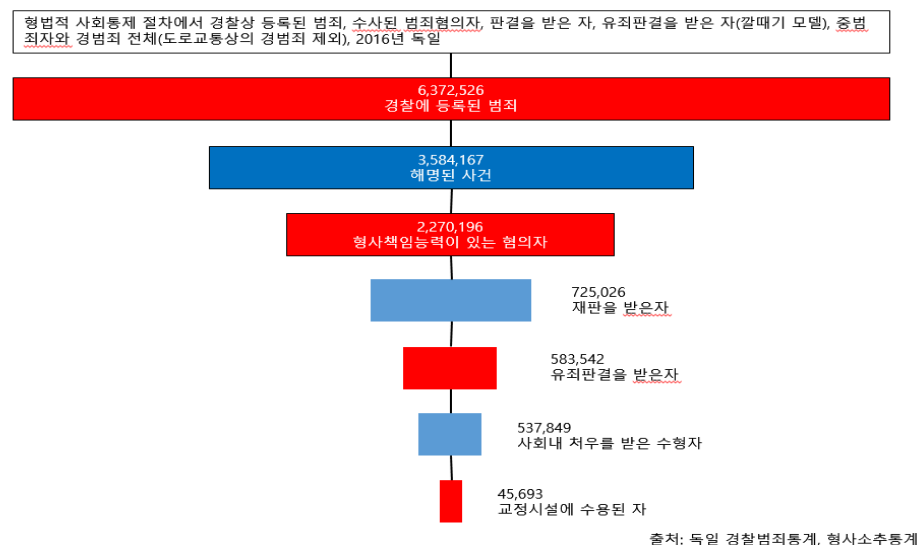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4-2-1]은 2016년 독일 경찰에 접수된 형사사건의 처리유형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각각 처리된 사건 숫자가 줄어든다(소위 깔때기 모델). 첫 번째 단계는 경찰에 접수된 전체 사건수를 나타내는데, 총 6,372,526건의 사건이 경찰에 알려졌다. 이 중 해명되지 못한 사건이 빠지면서 두 번째 단계에서 해명된 사건수가 3,584,167건이 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중범죄자와 형사책임무능력자의 수가 빠지면서 2,270,196명의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혐의자의 수만 남게 된다. 다음의 네 번째 단계를 위한 필터는 혐의가 충분치 않거나 형사소추의 이익이 없어서 기소되지 못한 범죄혐의자이다. 이들의 수를 빼면 725,026명의 재판을 받은 자(Abgeurteilte)가 남게 되고, 이들 중 583,542명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Verurteilte). 이 숫자가 다섯 번째 단계를 이룬다. 여섯 번째 단계는 이들 중 사회내 처우를 받은 수형자를 의미하며 그 수는 537,849명에 이른다. 마지막 단계의 45,693명이야 말로 비로소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들이다. 2016년 기준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

274) “교도소영적상담넷” 홈페이지(<https://gefaengnisseelsorge.net/resozialisierungsgesetz> 2023.11.1. 최종검색).

275) BVerfG, 2 BvR 1673/04, Urteil vom 31. 5. 2006.

을 받은 자 중 7.8%에게만 형의 집행이 이루어졌다.

» [그림 4-2-1] 경찰에 접수된 형사사건의 처리유형(갈매기 모형)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출소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형의 집행(Strafvollzug) 개념을 이해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자가 범죄로 인해 보호 관찰부 집행유예 없이 형벌을 선고 받았을 때에 이루어진다. 아래 [표 4-2-1]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독일 연방 전체에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의 수를 나타낸다.

» [표 4-2-1] 독일 연방 전체에서 수용자의 수

(단위: 명)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용자수	47,193	46,690	46,359	41,908	40,871	39,128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²⁷⁶⁾

276) 독일 연방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operation=abruf-tabelleBearbeiten&levelindex=2&levelid=1693230480984&auswahloperation=abruf-tabelleAuspraegungAuswaehlen&auswahlverzeichnis=ordnungsstruktur&auswahlziel=werteabruf&code=24321-0001&auswahltext=&werteabruf=Werteabruf#abreadcrumb> 2023.11.1. 최종검색).

이러한 형벌의 집행은 특별 사법시설(Einrichtung der Justiz)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마다 명칭이 약간씩 다르지만) 이를 통상 사법집행시설(Justizvollzugsanstalt: JVA)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다만, 주의할 점은 독일에서 “사법집행(Justizvollzug)”이라는 개념은 자유형 및 소년형, 보안감호구금, 구속 그리고 소년체포의 집행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사법집행시설에는 이러한 제재 및 처분 대상자 모두가 수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독일에서 1977년 1월 1일부터 자유형 및 자유박탈적 보안처분(특히 보안감호)의 법적 근거는 연방의 형집행법(Strafvollzugsgesetz: StVollzG)이었다. 그런데 2006년 연방주의개혁에 관한 헌법개정을 통해 형의 집행에 관한 입법권한이 연방에서 주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 각 주는 자체적인 입법을 통해 연방 형집행법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법률을 마련하지 못한 주는 연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 독일 연방 대부분의 주는 명칭과 내용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법 또는 형 집행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주가 연방 행형법의 기본 내용에 상응하는 개별적 행형관련 법률 및 행정규칙을 통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출소자를 지원한다고 한다.²⁷⁷⁾ 참고로 독일의 경우 범죄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은 형사소송법을 통해 연방 전체에 걸쳐 통일적으로 시행되지만 범죄예방을 포함한 경찰사무와 형집행은 주의 사무이다.

나아가 형집행 단계에서 수형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각 주의 노력은 소위 “전환관리(Übergangsmanagement)”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특징지워진다. 이는 석방을 앞둔 수형자에게 준비 없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 받게 되는 충격(이러한 충격은 다시금 재범으로 이어진다)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리고 형기를 다 채운 수형자는 출소 후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출소자(Haftentlassene)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후속배려(Nachsorge)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교정시설의 현황 - 니더작센주를 예로 들어

여기서는 독일의 교정시설 현황을 살펴보는데, 니더작센(Niedersachsen)주를 예로

277) 유수연, 독일의 출소(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15권 제1호(2015), 54면.

들어보기로 한다. 니더작센주는 독일 사민당(SPD)의 정치적 배경이 되어 진보적 성향이 강하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및 바이에른주만큼 크지는 않지만 비교적 전향적 정책을 많이 실시하는 주이다. 중부에 위치하고 많은 영역에 있어 평균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필자가 오랫동안 지냈던 곳이라 관심이 가는 주라 할 수 있다. 니더작센주는 앞서 언급한 형집행과 관련한 입법권한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²⁷⁸⁾ 2008년 1월 1일 이후 니더작센주는 고유한 형집행법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구속과 구금 그리고 소년형집행이 규율된다.²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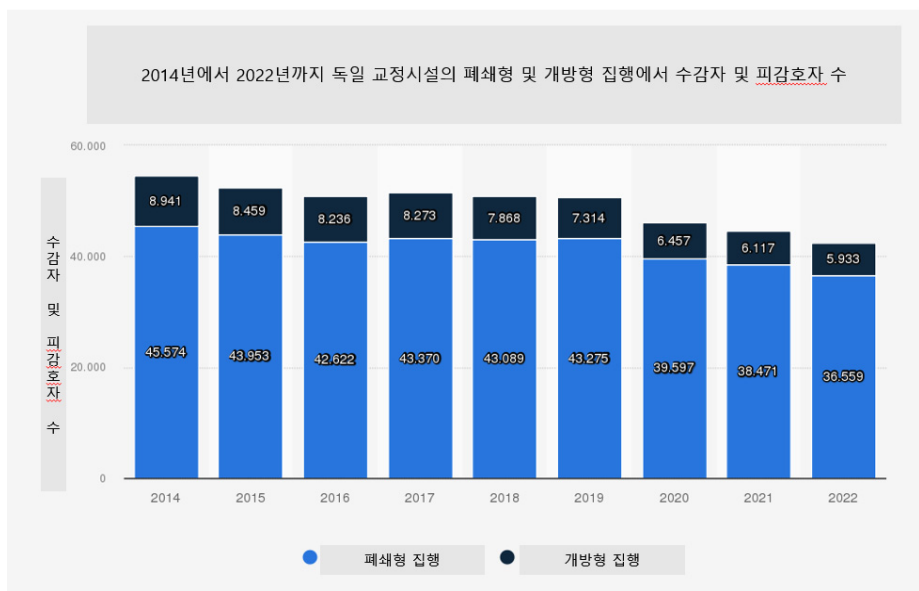
형집행에는 폐쇄형 집행(geschlossener Vollzug)과 개방형 집행(offener Vollzug)으로 나뉜다. 수형자가 초범인 경우에는 개방형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는데, 아침에 수용시설을 떠나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일과 후 저녁에 다시 시설로 돌아온다.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우리로 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개방시설과 유사하다. 이에 반해 폐쇄형 집행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수용시설에서 수형자가 생활해야 하는 데 대부분 재범을 저지르거나 도망의 위험이 있는 자들이 수용된다.

아래 [그림 4-2-2]는 독일 전체에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개방형 집행과 폐쇄형 집행의 수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검정색이 개방적 집행을, 파란색이 폐쇄형 집행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사법집행시설에 수용된 자의 수는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방형 집행을 많이 확대하려는 독일의 경우에도 자유형 집행의 대부분은 여전히 폐쇄형 집행임을 알 수 있다.

278) 니더작센주 사법포털(https://justizportal.niedersachsen.de/startseite/justizvollzug_und_ambulanter_justizsozialdienst/justizvollzug/justizvollzug_im_uberblick/justizvollzug-im-ueberblick-155604.html 2023.11.1. 최종검색).

279) 하노버 사법집행시설 홈페이지(https://www.justizvollzugsanstalt-hannover.niedersachsen.de/startseite/wir_uber_uns/menschen_im_vollzug/menschen-im-vollzug-82283.html 2023.11.1. 최종검색).

» [그림 4-2-2] 폐쇄형 및 개방형 집행에서 수감자 및 피감호자 수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²⁸⁰⁾

1) 하노버 사법집행시설 개관

좀 더 구체적 조망을 위해 니더작센주의 주도(州都)인 하노버(Hannover)의 사법집행시설을 살펴보자.²⁸¹⁾²⁸²⁾ 하노버 사법집행시설은 니더작센에서 가장 큰 교도소에

280) 독일 연방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operation=abruf&tabelleBearbeiten&levelindex=2&levelid=1693230480984&auswahloperation=abruf&tabelleAuspraegungAuswahlen&auswahlverzeichnis=ordnungsstruktur&auswahlziel=werteabruf&code=24321-0001&auswahltext=&werteabruf=Werteabruf#abreadcrumb>) 2023.11.1. 최종검색).

281) 하노버 사법집행시설 홈페이지(https://www.justizvollzugsanstalt-hannover.niedersachsen.de/startseite/wir_uber_uns/wissenswertes-82276.html) 2023.11.1. 최종검색).

282) 비교를 위해 노르트라인-베르스팔렌 주의 형집행 현황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숫자와 데이터는 2023년 현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다양한 행형에 관한 개관을 제공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는 36개의 독립적 교정시설(Justizvollzugsanstalten: JVA)과 5개의 부속시설이 있고, 여기서 약 18,9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약 17,600개는 남성, 약 1,300개는 여성을 위한 자리이다. 그리고 전체 수용자리 중 4,200여개는 개방형 형집행(offener Vollzug)을 위한 자리이고 14,700여개의 자리는 폐쇄형 형집행(geschlossener Vollzug)을 위한 자리이다. 평균적으로 13,800명이 구속·구금되어있다. 5개의 소년구금시설에는 235개의 자리가 있고 이 중 27개는 여성을 위한 자리이다. 남성 구금자를 분석하면 68%가 성인수형자이고, 17%는 구속수감자이며 6%는 소년형집행 중이다. 1%는 보안감호대상자이며 2%가 기타 자유박탈처분을 받은 자이다. 여성 구금자 중 5%는 성인구금자이고, 1%는 구속수감자, 1%이하는 소년형집행 대상자이다. 보안감호대상자는 없으며 1%미만이 기타 자유박탈처분의 대상

속한다. 약 6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여기에 연간 약 13,500명이 입소하고 출소한다. 9개의 집행부서를 가지는 주시설은 1963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주에서 가장 큰 구속부서를 찾을 수 있다. 매달 평균 50명의 신입 수감자를 고려하면 여기서만 매년 약 600명의 남성 수감자를 수용한다고 한다.

하노버 사법집행시설에 부속된 예측센터(Prognosezentrum)에는 살인죄, 폭행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위험한 수형자들이 특별한 자격이 있는 심리사로 구성된 팀에 의해 심사되어 이들을 위한 구금시설로 이송된다. 수많은 진단, 상세한 검사·상담, 수많은 심리조사를 통해 이미 입소단계에서 수형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서 수형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목표는 적절한 처우조치를 통해 재범위험을 낮추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것이다. 정신병적 이상을 보이는 수감자를 위한 부서에는 16명이 수용될 수 있다. 최근 마련된 사법집행시설에는 각종 교육시설 및 사회치료부서가 있고 여기에 51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랑엔하겐(Langenhagen)에 있는 부서는 2000년부터 강제송환구금을 담당하고 6명의 여성구금자와 42명의 남성구금자를 수용할 수 있다. 시설 외부에는 개방형 형집행에 적합한 수감자를 위한 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수감자는 잠만 자게 된다. 여기에는 38명이 잘 수 있다.

하노버의 사법집행의 한 유형으로서 구금(Strafhaft)은 처우(Behandlung)와 노동(Arbeit)으로 특징된다. 사회치료 외에 범죄 및 개성에 특성화된 조치, 예컨대 사회적 훈련, “폭력에 대한 대안” 프로젝트, 공격적 범죄자를 위한 집단상담 등이 제공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 “사법집행(Justizvollzug)”이라는 개념은 자유형 및 소년형, 보안감호구금, 구속 그리고 소년체포의 집행으로 이해되는데, 수형자 및 보안감호자를 구금하기 위해 니더작센에는 13개의 독립적 사법집행시설(여기에 하나의 소년시설이 있다)과 다합쳐 23개의 부속부서가 있다. 소년체포는 베르텐(Verden)의 독립적인 소년체포시설에서 4개의 부속부서에 의해 집행된다. 그 외의 니더작센 집행기구로 니더작센 사법집행 교육기관과 주운영기관인 “니더작센주 사법집행사업 행정(Justizvollzugsarbeitsverwaltung des Landes Niedersachsen: JVAV)”이 있다. 사

자이다. 전체 수감자 중 37%는 외국인이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법포탈 홈페이지[https://www.justiz.nrw.de/Gerichte_Behoerden/landesjustizvollzugsdirektion/statistik_und_forschung/zahlen_daten_und_fakten/index.php 2023.11.1. 최종검색]).

법집행시설에서 약 15%의 자리는 개방적 집행을 위해 정해져 있다. 시설이 집행유형, 성별, 연령에 따라 상이한 것은 집행임무충족을 위해 필수적이라 한다. 왜냐하면 각기 상이한 원호 및 안전수요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평균적으로 4,706명이 수감되었고 2000년에는 그 수가 6,550명였다고 한다. 전체 범죄발생 수의 감소와 더불어 사법집행시설의 수용자의 수도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니더작센주 사법집행법(Niedersächsisches Justizvollzugsgesetz: NJVollzG)도 개관해 볼 필요가 있다.²⁸³⁾ 이 법의 중점은 사법집행에서 그 대상자의 삶은 가능한 한 일반적인 생활관계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에 놓여 있다. 자유박탈의 해악적 결과는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행한 범죄의 불법에 대한 수감자의 인식과 그러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는 깨어나야 하고 촉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감자는 출소 후 자유의 삶으로 통합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제2조). 다시 말해 대부분의 수감자는 유기의 자유형을 복역하는데 따라서 그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다.

니더작센주 사법집행법 제5조는 자유형집행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동등한 목적(Vollzugsziele)을 추구한다. 수감자는 장래 사회적 책임하에서 자신의 삶을 범죄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자유형의 집행은 일반인이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보호되도록 기여해야 한다. 수감자들과의 노역을 통해 형집행은 수감기간을 넘어 국민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재사회화는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최고의 피해자보호이다. 집행시설에서 형집행의 양 목표를 조화하는 것은 니더작센주가 오래전부터 처한 도전이다.

2) 하노버 사법집행시설의 사회복지부(Der Soziale Dienst der JVA Hannover)

사법집행시설에는 석사(Diplom) 학위를 소지한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교육사 혹은 학사학위 졸업자가 고용되어 있다. 이들은 해당 규정의 범위에서 집행의 형성과 집행 목적달성 과정에서 협력하고 이들을 통해 수감 중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283) 니더작센주 사법포탈 홈페이지(https://justizportal.niedersachsen.de/startseite/justizvollzug_und_ambulanter_justizsozialdienst/justizvollzug/justizvollzug_im_uberblick/justizvollzug-im-ueberblick-155604.html 2023.11.1. 최종검색).

이들이 출소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담당한다.²⁸⁴⁾

사회복지사 및 사회교육사는 집행에서 먼저 집행부서 내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업무(klassische Sozialarbeit)” 분야를 다룬다. 여기에는 입소단계에서의 지원(수감자의 인격, 감정 및 생활 상태에 관한 첫인상을 얻고, 위기상황을 인식하며, 지원 및 조치를 제공한다), 형집행단계에서의 지원(위기상태에서의 개입, 상담, 단체업무 등), 출소준비를 위한 지원(주거, 직업, 생계보장,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다. 수감자의 경우 개인·가족·사회영역에서 문제가 있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민간복지시설과의 교류(예컨대 서류작성, 출소전단계에서 의사소통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사 및 사회교육사의 업무내용은 집행부서의 업무(입소부서, 출소부서, 외출·외박부서 등)에 따라 다르다. 그 밖에도 사회복지부는 집행단계에서 일하는 기타의 직업군과 함께 집행계획의 형성에 관여한다(사법집행법 제9조 제2항).

이러한 전통적인 업무 외에도 사회복지부는 시설전반에 걸치는 처우실행, 채무상담, 사회치료적 단체생활지도, 입소부서지도자, (고위 행정직 공무원 영역에서) 집행부서지도자, 전문영역지도자 임무를 맡는다.

사회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처우수단으로는 Anders Stark, Back on Track, 출소준비그룹(Entlassungsvorbereitungsguppe), 사회훈련(Soziales Training), NAIKAN, 수감자에 의한 청소년 지원(Gefangene helfen Jugendlichen), 아버지그룹(Vätergruppe)이 있다. Anders Stark는 수감자의 폭력성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여기서는 심리부와 사회복지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Back on Track은 운동부, 중독상담부, 사회복지부간의 협력에 의한 인내훈련(Ausdauertraining)으로서 다양한 달리기이벤트의 참여에 의해 보강된다. NAIKAN은 체계화된 침묵세미나(Schweigeseminar)로서 일주일(7박8일)간 진행된다. 참여자는 3가지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의 중요 관계자와 함께 논쟁한다. 자신의 과거를 반추하여 수감자는 체계적으로 과거를 따져보고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삶의 각 단계에서 관계를 검토해 보며, 성장상·관계상의 저해요인과 그 결과에서 자신의 지분을 알게 된다고 한다.

284) 유수연, 독일의 출소(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15권 제1호(2015), 55면.

2. 출소자 현황

아래의 [표 4-2-2]는 2015년을 기준으로 독일 전역의 사법집행시설과 그 수용능력 그리고 실제 수용된 자의 수를 주별로 보여준다.

▶▶▶ [표 4-2-2] 사법집행시설 현황(2015년 11월 30일 기준)

(단위: 수)			
연방주	사법시설	수용능력	수용
바덴-뷔르템베르크	19	7438	6264
바이에른	36	12062	11080
베를린	7	4573	3748
브란덴부르크	5	1810	1289
브레멘	1	724	511
함부르크	6	2001	1580
헤센	16	5441	4507
메클렌부르크-포퐁메른	5	1351	1028
니더작센	13	6024	4807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36	18588	15266
라인란트-팔츠	10	3403	3051
자아란트	2	973	733
작센	10	3959	3475
작센-안할트	5	1951	1600
슐레스비히-홀슈타인	6	1589	1134
튀링엔	6	2029	1664
독일 전체	183	73916	61737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operation=previous&levelindex=3&levelid=1696039045123&step=3#abreadcrumb> 2023.11.1. 최종검색)

한편, 2022년 독일 전역에서 사법집행시설에서 수형자 및 출소자 등에 대한 통계수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의 통계에는 수형자 및 출소자 뿐만 아니라 사법집행시설에서 수용된 자와 나간 자의 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나간다(Austritt)는 것은 수감자가 있던 사법집행시설에서 종국적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하여, 여기에는 출소뿐만 아

나라 하나의 시설내에서 개방형부서, 폐쇄형부서, 사회치료부서, 보안감호부서 간의 이동도 포함한다. 따라서 수용된다(Aufnahme)의 의미도 이러한 시설간 또는 시설내 부서간 변동도 포함한다. 수용된다는 것은 수용처분의 서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최초 수용은 피수용자가 그 전에 자유의 상태에 있거나 사법행정 외의 구금에 놓여져 있었을 때 인정된다.

》》 [표 4-2-3] 입소자 등의 통계

(단위: 명)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수용된 자 총수	12,252	10,816	12,171	11,404	12,866	13,112
처음으로 수용된 자	5,522	5,064	5,670	5,256	6,336	6,698
형기시작	2,136	1,762	1,882	1,838	2,531	2,743
스스로 입소하는 자	716	498	555	511	659	536
최초 형기시작	2,079	1,881	2,045	2,030	2,483	2,536

출처:독일연방통계청(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Justiz-Rechtspflege/_inhalt.html#_mt2ea9mvv 2023.11.1. 최종검색).

》》 [표 4-2-4] 출소자 등의 통계

(단위: 명)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나간 자 총수		11,989	10,882	12,211	11,656	12,933	13,113
출 소 자	형기만료	2,567	2,586	2,762	2,611	2,960	3,301
	마약법 제35조에 따른 집행정지	257	230	231	225	232	230
	형사소송법 제456조a의 강제송환에 따른 형집행면제	136	169	162	145	152	126
	가석방	540	508	586	532	531	575
	사면	1	2	2	1	0	0
	출소자 총계	15,489	14,375	15,952	15,169	16,808	17,345

출처: 독일연방통계청(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Justiz-Rechtspflege/_inhalt.html#_mt2ea9mvv 2023.11.1. 최종검색)

통계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지적으로, 독일에서 형사사법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통계를 작성하려면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독일의 연방입법자는 형사사법영역에서 자신의 입법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의 형사사법과 관련된 자세한 통계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고로, 독일에서 형사사법통계의 운영은(연방차원에서 통일적으로 맞춘) 행정명령 및 집행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해당 영역에서 관할 주사법행정에 의해 발부된다. 따라서 그러한 통계를 작성할 지는 연방 각 주가 결정한다. 이는 과거 주별로 상이한 시점에서 형사사법통계가 작성되었고 수시로 작성이 중단되는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²⁸⁵⁾

3. 출소 전 사회복귀 지원

여기서는 자유형의 집행단계에서 사법집행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한 출소 후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을 살펴본다. 우선 연방 및 (니더작센) 주 입법자가 마련한 형집행단계에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의 법적 토대를 살펴보고, 독일의 행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소위 전환관리를 개관해본다.

가. 근거 법령

먼저 시설 내 수용된 범죄자의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는 법률은 형(사법)집행법과 일련의 사회법(Sozialgesetzbuch)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형집행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은 그 운영소관이 연방에서 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방법인 자유형과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관한 법(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Strafvollzugsgesetz – StVollzG],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과 연방 각주의 형 또는 사법 집행법이라는 이원적 체계가 존재한다. 현재 11개주는 고유의 독자적인 법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²⁸⁶⁾ 연방 주의 범위에서는 형 또는 사법

285) Wolfgang Heinz, 58 Jahre Bewährungshilfe im Spiegel der Bewährungshilfestatistik. Ein Überblick über die Entwicklung von 1963 bis 2020 im früheren Bundesgebiet, Stand: Berichtsjahr 2020; Version: 1/2022, 1면 이하.

집행법과는 별도로 재사회화법을 마련해 놓은 주(대표적으로 함부르크주)도 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주 단위에서 출소자의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주된 근거 법률은 형 또는 사법집행법과 재사회화법이 된다.

이와 더불어 연방사회법도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실현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 법은 형집행중 또는 형기만료 이후 출소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급부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각종의 사회적 급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지원의 많은 경우 궁극적으로 이러한 범죄자와 사회복지국의 연결이 관건이다.

1) 연방 및 주의 행형법적 근거

우선, 독일의 연방과 주의 형집행법을 살펴보자. 독일의 형집행법은 사법집행시설에서 자유형과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집행을 규율한다(제1조). 집행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동법 제2조에 따르면 자유형의 집행에서 수감자는 장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범죄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형의 집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개별 규정들은 이미 범죄자의 출소후 재사회화, 즉 사회정착에 기여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형집행법의 많은 범조문 중 다음과 같은 범죄자의 출소 후 사회정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보인다. 다만, 여기서 구속, 자유박탈적 보안감호, 소년형·구금은 제외한다.

가) 집행의 완화

연방 형집행법 제11조와 니더작센주법의 해당 조문은 집행의 완화를 규정하고 있다. 보다 규율내용이 많은 니더작센주 사법집행법 제13조에 따르면 집행의 완화로써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감자의 동의를 얻어 수감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1. 시설외에서 집행기관 직원의 감시 하에 또는 감시 없이

286) 범죄자를 위한 연방복지공동체 홈페이지(<https://www.bag-s.de/vernetzung/links> 2023.11.1. 최종검색).

정기적으로 영업하는 행위(자유출입) 2. 일정한 주간 시간대에 집행기관 직원의 감시 하에 또는 감시 없이 외출하는 행위(외출) 3. 매 집행년에서 21일간 휴가. 이러한 완화는 수감자가 자유형 집행을 면탈하거나 범죄를 위해 남용하는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경우 집행기간과 이미 복역된 부분의 기간이 고려된다. 휴가는 수감자가 외출과 자유출입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인정된다.

그리고 무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이전의 구속과 기타의 자유박탈을 포함하여 10년의 집행기간을 경과한 후에나 또는 개방형 집행으로 이감된 경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외출과 자유출입을 위해서는 보통 8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이유에서 폐쇄형 집행시설에 기거하는 자는 개방형 집행으로의 완화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휴가기간에는 재판의 집행(*Strafvollstreckung*)이 정지되지 않는다.

나) 출소준비

니더작센주 사법집행법 제17조에 따르면 출소를 준비하기 위해 제13조의 요건하에 완화(*Lockerungen*)를 명한다. 그리고 개방형 집행으로 수감자를 이감하는 것이 출소 준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중지되어야 한다. 출소 전 3개월 이내에 출소준비를 위해 최대 일주일의 특별휴가를 허용할 수 있고 외부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자는 출소 전 9개월 내에 매월 6일간의 특별휴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연방 형집행법 제15조에서 찾을 수 있다.

다) 중요한 이유에서 휴가 및 외출

그리고 연방 형집행법 제35조는 별도의 휴가 및 외출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계기에서 시설장은 수감자의 외출을 허락하거나 최대 7일간 휴가를 줄 수 있고 생명이 위태로운 질병 또는 가족의 사망이 아닌 다른 계기에 따른 휴가는 매년 7일을 넘길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휴가는 정기휴가에 통산할 수 없다. 다만, 외출 또는 휴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시설장은 수감자를 데리고 나갈 수(*Ausführen*) 있다. 이를 위한 비용은 수감자가 부담한다. 이것이 처우 또는 통합에 방해가 된다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라) 작업, 교육 및 훈련

독일법은 형집행시 노동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독일

형법은 우리나라 형법과 같이 자유형을 징역과 금고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정시설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 수용자는 연방 평균상 시간당 1에서 3유로를 번다고 한다. 다만, 수용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얻지 못한다. 이들의 노동은 재사회화조치로 평가된다. 저축된 준비자금은 출소 후 최초 4주간의 생계를 보장하고 출소 시 지급된다.²⁸⁷⁾

연방 형집행법 제37조에 따르면 노동, 노동치료적 고용(Beschäftigung), 직업교육, 추가교육은 특히 출소 후 소득활동을 위한 능력을 갖추거나 촉진한다는 목적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수감자에게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작업을 부과하고 이 경우 수감자의 능력, 숙련도, 적성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적절한 수감자에게는 직업교육, 추가교육 또는 그 밖의 직업교육적 또는 추가교육적 수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일할 능력이 있는 수감자에게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일 또는 기타 수단으로의 참여가 부과될 수 없으면 그에게 적당한 고용을 부여한다. 그리고 수감자가 경제적인, 생산적인 일을 할 능력이 없다면 그는 노동치료적인 고용관계를 맺어야 한다.

동법 제38조는 수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절한 수감자가 중등학교 졸업을 마치지 못했다면 중등학교졸업으로 이어지는 과목의 수업 또는 특수학교에 해당하는 수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직업교육의 경우 직업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제공된다. 이는 추가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수업은 노동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직업교육 또는 직업연수 졸업장에는 참여자의 수감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제40조).

수형자가 구금중 직업교육(Ausbildung) 또는 수업(Unterricht)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들은 소위 직업교육지원(Ausbildungsbeihilfe)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적 지원은 수형자가 다른 곳에서 직업교육을 위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다. 직업교육지원비는 수형자가 일을 했더라면 받게될 임금만큼 받는다. 이는 보통 임금단계 III의 임금이다.²⁸⁸⁾

287) 중부독일방송국(Der Mitteldeutsche Rundfunk: mdr)의 인터넷기사, Wie der Soziale Dienst der Justiz Straftäter zurück ins Leben hilft, mdr, 12.11.2022.

(<https://www.mdr.de/nachrichten/sachsen-anhalt/halle/halle/perspektiven-nach-der-haft-sozialer-dienst-100.html> 2023.11.1. 최종검색).

288)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그 밖에도 형집행법 제39조에 의하면 수감자에게는 시설밖에서 자유로운 고용관계에 근거하여 노동, 직업교육 또는 추가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데(자유고용), 다만 이는 집행계획의 범위에서 출소 후 소득활동을 위한 능력을 갖추거나 촉진하는 목표에 기여하고 집행의 중대한 이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수감자에게는 자기 영업이 허용된다. 집행기관은 수감자를 위해 지불한 대금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마) 가교수당

연방 형집행법 제51조와 니더작센주 사법집행법 제47조는 가교수당(Überbrückungsgeld)에 대한 규정이다. 가교수당이란 범죄자가 출소 후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하여 책정된 것으로 최소 4주간의 생계비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 노동수당과 직업교육지원비의 일부가 가교수당으로 책정된다. 이러한 수당의 산정에서 수감기간과 직업활동으로 인한 수입, 가족부양 등이 고려된다. 이러한 수당의 청구권은 압류 또는 담보제공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출소 시 지급된다. 그러나 출소 후 독일민사소송법 제850d조 1항 1문에 의한 부양청구권 신청이 존재하면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출소자는 보호관찰관 또는 출소자 지원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²⁸⁹⁾

바) 사회치료 시설 및 부서

연방 형집행법 제123조는 집행을 위해 일반 집행시설과 구분된 사회치료시설의 설치를 명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서 다른 집행시설에 사회치료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서에는 사회치료시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리고 사회치료시설의 수용은 경우에 따라 수용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수용은 언제든지 취소된다. 수용된 자에 대한 집행조치는 직접적인 강제를 통해 실행될 수 없으며 신청에 따라 수용자는 지체 없이 석방된다(제125조). 형집행법 제126조에 따르면 사회치료시설을 위한 전문가의 수는 출소 후 처우가 다른 방식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한 수감자의 후속배려(nachgehende Betreuung)가 보장되도록 정해져야 한다.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14면 이하.

289) 유수연, 독일의 출소(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15권 제1호(2015), 57면.

사) 출소예정자 특별귀휴

연방 형집행법 제124조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감자에게 출소준비를 위해 최장 6개월까지 특별귀휴를 허락할 수 있다. 휴가자에게는 휴가 동안의 지시사항이 부과되어야 한다. 특히 시설이 정해진 후견인을 만나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짧은 시일 내 시설로 복귀해야 한다. 이러한 귀휴는 수감자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다면 취소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사회복귀과정을 통하여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형자가 출소 후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출소 이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한다.²⁹⁰⁾

아) 사회부조

일련의 연방 형집행법 규정은 시설내의 사회부조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감자는 개인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의 사회부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부조는 수감자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관리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부조는 수용시 수감자가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행하고 시설 외에서 자신의 재산을 보장하는 데에까지 이른다. 그리고 수감자는 사회보험의 유지에 관하여 상담받는다. 또한 수감자는 선거권을 행사하고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돌보며 범죄를 통해 야기된 손해를 처리하는 등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노력을 하는 데에 있어 부조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출소를 준비하기 위해 수감자는 자신의 사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용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담에는 사회급부 관할 기관의 지명도 포함된다.

자) 출소지원

니더작센주 사법집행법 제70조에 따르면 수감자는 자신의 수단이 충분치 않다면 일정 기준에 따라 여행비용에 대한 지원 및 가교보조(Überbrückungsbeihilfe)와 필요한 경우 충분한 의복을 받는다. 가교보조의 액수 산정의 경우 자유박탈의 기간, 수감자가 투입한 개인적 노동 그리고 형기동안 수감자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돈 및 주거금을 고려한다. 가교보조는 전부 또는 일부로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송금할 수

290) 유수연, 독일의 출소(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15권 제1호(2015), 57~58면.

있다. 그리고 여행경비지원에 대한 권리와 이미 지급된 여행지원은 압류할 수 없다. 연방 형집행법 제75조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차비, 숙박, 식비 등을 사회보장법 적용 대상자에 준하여 출소자의 직업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²⁹¹⁾

2) 주의 재사회화법

가) 주의 재사회화법 도입에 관한 찬반론

① 문제 제기

연방 각주에서 마련된 형 또는 사법집행법과는 별도로 재사회화법을 도입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여전히 논쟁이 있다. 재사회법의 핵심적 의의는 수형자 및 출소자가 사회적 지원, 특히 전환관리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② 찬성론

찬성론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한다. 출소 후 ‘파란색 가방’을 메고 유효한 신분증·건강보험·직업·수입도 없이 집이 없어 노숙자촌으로 가는 모습은 실패한 전환관리의 한 단면을 나타낸다.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문제는 사법당국이 출소날까지만 수감자를 관할한다는 것인데 사법당국은 교정시설에서 주거, 돌봄, 의료적 치료, 일을 마련해준다. 그러나 출소 이후에는 이러한 관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출소자는 주거, 일, 수입, 의료적 치료, 하루 일과, 가족관계, 여가활동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조직해야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전환관리도 중요하지만, 재사회화법도 의미 있다고 한다. 이러한 법은 다양한 기관과 관할을 상호 연계하고 협력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함으로써 내부와 외부간의 구조적 단절을 봉쇄한다. 이러한 단절은 실무상 자주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전환관리상 높은 장애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²⁹²⁾

③ 반대론

291) 유수연, 독일의 출소(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15권 제1호(2015), 58면.

292) “교도소영적상담넷” 홈페이지(<https://gefaengnisseeelsorge.net/resozialisierungsgesetz> 2023. 11.1. 최종검색).

한편 재사회법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은 사법당국의 인력부족과²⁹³⁾ 부담증가를 걱정한다. 그리고 연방 전체에 출소한 범죄자의 절반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 중 40%는 첫해에 수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한다.²⁹⁴⁾ 그리고 출소 후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이 계약이 아닌 법률에 의해 강제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그러한 입법권한을 주입법자가 가지는 지에 대한 회의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²⁹⁵⁾ 따라서 재사회화는 법률로써 다룰 것이 아니라 법규명령을 통해 실행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및 모델의 형태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나) 재사회화법의 도입

독일의 몇몇 연방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및 사법 집행법과 별도로 재사회화법을 제정하였다. 2015년의 자아란트주의 「시설외 재사회화와 피해자지원에 관한 법률(Gesetz zur ambulanten Resozialisierung und Opferhilfe: AROG)」,²⁹⁶⁾ 2019년 함부르크 주의 재사회화법(Gesetz zur stationären und ambulanten Resozialisierung und zur Opferhilfe[Hamburgisches Resozialisierungs- und Opferhilfegesetz: HmbResOG])과 2022년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재사회화법(Gesetz zur ambulanten Resozialisierung und zum Opferschutz in Schleswig-Holstein: ResOG SH) 등이 그것이다.

다) 법률에 담겨져야 할 내용

재사회화법에 담겨져야 할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²⁹⁷⁾ 보충성원칙(Ultima-Ratio Prinzip)은 첫 번째 원칙으로 채택되어야 하고 시설 외 제재가 우선한다. 재사회화법은 주 전역에 걸쳐 범죄자와 관계를 위해 통일적인 개념을 형성한다. 이는 재사회화에서 절차와 표준에 관하여 명확성을 제공한다. 이로써 어떠한 처우가

293) 독일 Welt지 인터넷기사, „Ein Gesetz allein ändert gar nichts“, Welt, 12.04.2019(<https://www.welt.de/regionales/hamburg/article191832745/Resozialisierung-Ein-Gesetz-allein-aendert-gar-nichts.html>: 2023.11.1. 최종검색).

294) 위의 인터넷기사.

295)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대담회 보고서(Podiumsdiskussion), „Brauchen wir Resozialisierungsgesetze?“(https://bag-s.de/fileadmin/user_upload/Podiumsdiskussion_BAG-S.pdf: 2023.11.1. 최종검색), 3면.

296) 위의 보고서, 6면 이하.

297) “교도소영적상담넷” 홈페이지(<https://gefaengnisseelsorge.net/resozialisierungsgesetz> 2023.11.1. 최종검색).

수감자에게 시행되는지, 어떠한 시설에 수감되는지는 우연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재사회화법은 수단과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이는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요건을 설정한다. 여기에는 직업 및 주거연계, 교육에서의 지원과 사회적 네트워크형성에서의 지원도 포함된다. 동법은 다양한 기관, 즉, 사법기관, 범죄자지원, 의료시스템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결을 촉진한다. 여기에는 기관과의 서비스 접근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도 포함된다(예를 들어 구금단계에서 신분증 발급, 사회적 주거지원 제공에의 접근 등).

재사회화법은 가능한 한 구금을 피하기 위해 대체 형벌수단과 제재를 위한 계기를 제공한다. 법률은 형집행과 시설 외 범죄자지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위한 표준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질적으로 높은 가치의 배려가 보장된다.

재사회화법에서 전환관리의 제도화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재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해당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 출소 전 적시에 어디서든 집을 구하고 실업의 경우 어떠한 급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반되는 것은 구속력 있는 조직과 관찰권에 대한 규율과 개인별 수요분석의 집중 그리고 처우의 지속가능성의 형성이다. 중요한 요소로 수감자,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를 위한 건강배려를 들 수 있다. 재사회화법은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의료적 지원을 위한 표준을 정하고 의료 전문인력의 확충을 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사회화법은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이로써 담당기관은 계획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급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재사회화의 기본권은 강제출국이 임박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러한 자는 장래 독일에 정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의 조치들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재사회화법은 피해자보호에도 기여한다.

3) 함부르크 재사회화법 주요 내용

여기서는 2019년에 신설된 함부르크 주의 재사회화법 내용을 발췌해서 살펴본다.

가) 목적, 적용범위, 개념정의

적규정에 따르면 동법은 범죄화된 의뢰자(Klientinnen und Klienten)의 재사회화에 기여하고 범죄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회복하며 구금을 피하거나 단축시키며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를 통해 파괴된 사회평가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복구하는데 기여한다(제1항). 재사회화의 목적을 위해 기존의 모든 지원(Hilfe)과 조치(Maßnahmen)와 별도로 통합적 전환관리(integriertes Übergangsmanagement)를 구현한다. 이러한 전환관리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 또는 출소하는 의뢰자와 공동으로 동화계획(Eingliederungsplan)을 전개한다(제2항). 의뢰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동화계획의 작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지원규정의 목적은 범죄예방을 위한 예방수단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다(제3항).

함부르크 재사회화법은 재사회화절차에 참여하는 기관의 임무와 협력, 개인별 동화계획에 따른 통합적 전환관리의 도입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규율한다. 이 법은 보안감호에는 적용되지만 보안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함부르크 형집행법 등에 따른 지원과 수단 그리고 사회법에 따른 지원과 수단은 이법에 우선한다(제2조 참조).

함부르크 재사회화법적 의미에서 의뢰자란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수감자, 보안감호자 또는 동법에 따른 수단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받거나 신청하는 출소자이다. 그리고 지원이란 급부(Leistungen)를 의미하며 이러한 급부를 통해 의뢰자가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도움을 받거나 범죄피해자가 조력을 받는다. 조치는 지원적 성격뿐만 아니라 감시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급부이다. 나아가 통합적 전환관리란 의뢰자와 모든 국가적, 사적 기관 및 추가적으로 재사회화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사이의 구조화되고 조직화되며 목적지향적인 협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사건관리(Fallmanagement)인데 이는 사회복지업무의 개념으로 제도 및 영역을 초월한 상담 및 조력을 통해 지원 및 기타 급부를 한데 묶어서 재사회화 절차를 촉진하는 것이다(제3조 참조).

나) 협력과 조정의 원칙 및 의뢰자의 협력

협력과 조정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사법집행시설과 시설 외 국가기관 그리고 자발적 범죄자지원기관은 동법을 근거로 해서 행장감독기관, 사회복지서비스 담당자, 다른 행정기관의 지원시설, 교회 그리고 기타 종교단체, 범죄자-피해자-조정 기관 및 의뢰자의 재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와 개인, 특히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개인과 함께 협력한다. 임무와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 각각 책임있는 국가의

범죄자지원부서가 개별 지원의 조정을 담당하고 구금기간 동안에는 소관 사법집행시설이 조정을 맡는다. 협력은 정보의 손실이나 배려의 흠결이 없도록 잘 조정되어야 하고 중첩적 지원은 그것이 전문영역에서 근거를 가질 때 가능하다(제4조 참조). 함부르크 재사회화법에서 의뢰자의 지원에 대한 요구는 자발적이지만,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와 행장감독의 명령과 같이 법정 협력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6조 참조).

다) 재사회화를 위한 지원 및 조치, 관할 기관

동법은 재사회화를 촉진하는 급부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1. 알파벳코스와 독일어코스를 포함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2. 직업적 동화·공공근로·노동치료적 조치, 3. 관리형 주거방식(betreute Wohnformen) 또는 주거마련지원, 4. 단기 구금에서 임대료대납, 5. 약물 중독 및 남용 치료 및 상담, 6. 심리치료적·심리학·정신병학적 개입, 7. 사회역량 개선과 폭력사용방지를 위한 트레이닝, 8. 채무자 상담과 채무관리 및 부양의무충족 지원, 9. 생계의 안정, 10. 건강보험가입, 11. 사회접촉의 유지 및 촉진, 12. 범죄결과의 보상, 13. 가정지원급부(제7조 제2항 제2문 참조).

또한 재사회화에 관할을 가지는 기관으로 법원공조, 소년법원공조, 사법집행시설, 성년보호관찰공조, 소년보호관찰공조, 공공근로 전문기관, 전환관리 전문기관, 범죄자-피해자-조정기관, 행장감독기관, 법원의 후속배려출장소(die Forensischen Nachsorgeambulanzen), 범죄자지원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민간기관, 기타 급부제공자가 있다(제7조 제3항).

라) 통합 전환관리

전환관리는 통상 출소 전 6개월에 동화계획작성과 함께 시작하고 통상 출소 후 6개월에 종료한다. 전환관리 전문부서(Fachstelle)는 동화계획작성을 목적으로 출소 전에 의뢰자를 접촉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집행시설은 전환관리 전문부서에 신원 및 집행서류 등과 같은 필수적 정보를 기간시작 전 적시에 전달한다.

의뢰자가 통합 전환관리에 받아들여지고 나면 전환관리의 사건매니저가 의뢰자를 담당한다. 사건매니저는 의뢰자를 접촉하는 경우 사법집행시설로부터 지원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얻는다. 사건매니저는 지원수요를 확인하고 지원을 위한 개별

급부법에 따라 급부를 상호 조율하며 구금에서 자유로운 삶으로의 전환이 유도되도록 보장한다. 출소 후 상담과 지원은 특히 기존의 법적 청구권으로 이어진다.

사건매니저의 수행임무는 적정한 사안의 경우 동화계획을 작성한 후 전환관리의 전문부서에서 민간단체로 이전된다. 이 경우 전문부서는 기획과 모니터링기능을 담당한다. 사건관리의 임무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또는 행장감독명령의 경우 보호관찰관이 넘겨받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건매니저에 의한 이관과 전환관리와 재사회화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만큼의 전환관리의 급부가 속행되어야 하는지 통지된다(제8조 참조).

마) 동화계획

전환관리를 시작할 때 동화계획이 작성된다. 이는 의뢰자의 생각과 동기를 고려하여 사건매니저에 의해 유관 사법집행시설의 참여하에 작성되고 본질적으로 출소 후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추구한다. 동화계획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의 정보를 담고 있다. 1. 신분증, 출입국관리법적 상태, 2. 사회적·가족적 상태, 3. 주거지 또는 거주지, 4. 건강과 중독, 5. 교육, 직업 및 자격, 6. 수입, 생계보장 및 채무, 7. 전과. 사건매니저는 의뢰자와 함께 사법집행시설의 소관 집행부서장이 참여한 상황에서 진전상태에 따라 동화계획을 추가적으로 작성한다(제9조 참조).

바) 평가

함부르크 재사회화법 시행 1년 후 동법에 대한 평가차원에서 함부르크 시의원 Richard Seelmaecker의 질문과 시참의원(Senat)의 대답이 있었다.²⁹⁸⁾

이에 따르면 전환관리 전문부서는 2019년 1,354명의 수감자에게 전환관리에 대해 서류 또는 구두로 알려주었다. 이들 중 360명의 의뢰자가 개인적 문제상황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고 해당 부서는 143건의 동화계획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전환관리 전문부서의 관할영역에서 240명의 의뢰인이 최초 상담이 진행되기 전에 출소하였다. 이들은 대체자유형을 복역하고 조기에 출소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주소를 알 수 있는 한 지원서비스를 통지하였다고 하였다. 상담제공에 대한 거절자는 2019년 총 230명에 달하였는데, 이들 중 10명은 상담 자체를 아예 거부하였다. 220명

298) BÜRGERSCHAFT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Drucksache 21/19816.

은 상담대화에서 지원필요가 없다고 밝혔으며 스스로 충분히 출소를 준비하였다고 하였다.

자체적인 평가에 따르면 특히 채무상담영역에서 의뢰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관리영역에서 높아진 문제의식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상담사례 숫자를 통해 알 수 있다. 5년 전인 2015년에는 상담건수가 1,247인 것이 2018년에 2,192건, 2019년에는 2,412건이었다.

전환관리 전문부서는 10개의 사회복지사 자리를 갖추고 있다.

2016년 이후 수행된 범죄자-피해자-조정의 수는 성년범죄자의 경우 2016년 172건, 2017년 211건, 2018년 214건, 2019년 125건에 달하였다. 2019년에 시작된 조정절차 중 많은 경우는 아직 종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9년도의 수치는 잠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2016년 이후 조정노력의무를 지는 범죄자의 수는 2016년 533명, 2017년 512명, 2018년 494명, 2019년 528명으로 나타났고 피해자편드를 통해 회복된 피해자의 수는 2016년 331명, 2017년 281명, 2018년 278명, 2019년 294명으로 드러났다.

4) 연방 사회법적 근거

한편, 헌법적 요청인 사회국가실현을 위해 독일 입법자는 일련의 사회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 약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의 수많은 사회적 급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경우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점하는 출소자와 그 가족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급부를 수령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법적 토대를 살펴본다. 경우에 따라 형 및 사법 집행법 또는 재사회화법에 관련 규정이 있기도 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형식 등은 사회법을 통해 보충된다.

가) 사회법 제2권(SGB II) - 실업급여(Arbeitslosgeld I, II)

먼저, 일자리를 구하지만 자신의 생계를 위해 충분한 자금이 없는 자는 보통 사회법 제2권에 따른 급부를 받는다. 이러한 급부를 Hartz IV라고도 한다. 그러나 생계능력이 있고 어느 곳에 완전히 정착한 자는 사회법 제2권에 따른 급부를 수령받을 권리가

없다. 정착한 자로 취급되는 자는 법원의 명령으로 구금, 체포, 치료감호소 또는 병원에 거주하는 자도 포함된다.²⁹⁹⁾

또한 구금휴가 동안 수형자는 이러한 사회법에 따른 급부청구권이 없다. 또한 2016년 8월 1일 이후 사회법 제2권의 개정을 위한 제9차 법개정에 의해 개방형 집행대상자(Freigänger im offenen Vollzug)도 더 이상 사회법 제2권에 따른 급부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개방형 집행대상자는 일정 요건하에 주간동안 교정시설 외부에서 일을 해도 되는 수형인이다. 저녁에는 교정시설로 복귀해야 한다. 그런데 휴가 또는 보안처분집행으로 일시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존재하고, 수형인이 아이를 교정시설에서 돌보고 아이가 사회법 제2권에 따른 급부를 받는다면 아이의 청구권은 계속해서 지급된다.³⁰⁰⁾

구금명령이 집행유예되면, 즉 구금명령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히 효력이 상실되면, 구금형이 병원 또는 금단치료소에서 중독치료를 위해 집행유예된다(치료는 예상컨대 6개월 이하로 지속된다.) 그리고 나서 구금형은 방문치료(ambulante Therapie)를 통해 계속되거나 나머지 형은 보호관찰부로 집행유예된다. 병원입원이 6개월 이상으로 지속되는 자는 수급권을 갖지 못한다. 사회법 제2권에 따른 급부는 일자리센터에서 신청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국에 문의해야 하고 이때 직원은 수형인에게 어떤 일자리센터가 관할을 가지는지 알려준다.³⁰¹⁾

나) 사회법 제4권(SGB IV) -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

사회법 제4권은 독일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공통의 규정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동법은 법정 건강보험, 법정 사고보험, 법정 연금보험, 사회적 요양보험, 부분적으로 노동촉진, 사회부조 그리고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험에 적용된다.

수형자가 구금 중 일을 하면 고용보험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후 수형인

299)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18면.

300)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18면.

301)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18면 이하.

은 출소 후 실업급여청구권을 가진다. 개방적 집행으로 외부에서 고용관계를 맺은 수형인은 일반인과 같은 사회보장을 받는다. 수형인에게 건강보험이 없다면 교도소내에서 의사가 치료하거나 수형인이 시설 외부에서 의사를 방문한다면 교도소가 비용부담한다. 다만, 수형자는 요양보험과 연금이 보장되지 못한다.³⁰²⁾

출소자의 건강보험도 문제다. 직업소개소(Arbeitsagentur (ALG I)) 또는 일자리센터(Jobcenters (ALG II))의 급부통보(Leistungsbescheid)가 있기 전에는 출소자는 건강보험을 받지 못한다. 뒤셀도르프에서 이러한 문제는 일년간 범죄예방자문위원회에서 다루어졌고 대형 보험회사 대표자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만족스러운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한다.³⁰³⁾

다) 사회법 제12권(SGB XII) - 사회보장(Sozialhilfe)

수형인은 구금 중 일을 하더라도 연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수입 중 일부는 연금보험을 위해 계상되지 않는다. 수형자는 사회법 제6권 제1조에서 말하는 노동의 대가로 고용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형인이 연령 또는 건강상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면 사회법 제12권 제4장에 따른 기초보장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가 있다. 경우에 따라 이들에게는 주거금도 지급된다. 수형인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거나 생계가 곤란하다면 사회보장을 신청할 수 있다.³⁰⁴⁾ 물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수형자는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 여기서 생계곤란이란 수형자가 질병 또는 장애를 이유로 불특정 기간 동안 하루 최소 3시간의 통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수형인의 수입과 기성 재산(5000유로 이상)이 심사시 고려된다. 수형인은 사회복지국에 신청한다. 수형인은 법정 연금에 추가하여 노령을 대비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회사연금과 사연금이 있다.³⁰⁵⁾

302)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19면.

303)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12면.

304)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20면.

일정 조건하에서 수형인은 국가보조금(staatliche Zuschüsse)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연금유형에 관한 정보는 사회복지상담을 행하는 상담소와 독일 연금보험(Deutschen Rentenversicherung: DRV)에서 얻을 수 있다.

라) 사회법 제6권(SGB VI)에 - 법정 연금

수형인이 보호의무자로서 일을 한다면 고용주는 매월 임금으로부터 보험료를 독일 연금보험(DRV)에 납부한다. 또한 누구나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연금보험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게 의미가 있다. 수형인이 자발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자가 되기 전에는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어떠한 위험은 없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상담을 구하는 것이 좋다. 수형인이 구금 전에 이미 연금을 수령하였다면 연금은 구금기간 동안에도 계속 지급된다. 수형인이 요양급부권이 있는지가 심사되어야 한다. 종종 구금시 요양단체를 확정할 수 없어서 청구권(예컨대 보행보조기)을 실현할 수 없다.³⁰⁶⁾

연금과 관련하여 참고로 2002년부터 국가에 의해 장려된 사적 연금이 있다. 이를 Riester-Rente라고도 한다. 해당 보험계약에서 납부된 금액은 사회법 제2권의 급부를 계산할 때 재산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수형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³⁰⁷⁾

나. 소위 전환관리(Übergangsmanagement)³⁰⁸⁾

1) 개념

전환관리는 사법 및 복지 기관에 의해 구축되었고 출소 6개월 전에 시작하여 출소

305)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20면.

306)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21면.

307)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21면.

308) "사회복지과정설계"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있는 문헌으로 유수연, 독일의 출소(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15권 제1호(2015), 58면.

6개월 후에 종료된다. 이는 주거마련, 행정업무 또는 구직의 경우 수용자와 출소자를 지원한다. 이들은 이를 통해 안정을 얻게 되고 동시에 재범을 방지한다. 전환관리의 경우 시설, 범죄자지원 및 법원지원을 위한 전문직 공무원 그리고 자발적 기관으로서 통합지원기관이 협력한다.³⁰⁹⁾

2) 법적 근거

과거 전환관리는 보통 연방 각주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최근 함부르크주와 같이 재사회화법을 마련한 주에서는 이러한 재사회화법이 전환관리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재사회화법 제11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 급부제공자에 대해 전환관리의 범위에서 직접적인 업무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내용

가) 전환매니저의 임무

형집행에서 전환관리의 업무를 위해서는 전환매니저(Übergangsmanager)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들의 임무는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다.

- 수행자를 전환관리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조언하고 동기부여한다.
- 개인별로 출소 후 지원인 후속배려의 수요를 전문적으로 평가한다.
- 개별처우계획에 기초하고 이를 확장하여 동화계획을 세운다.
- 집행시설 외부의 업무담당자와 자원봉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미 계획된 후속배려개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통합과정을 기록하고 평가한다.
- 공동의 절차규율, 프로젝트개발, 질적 보장을 위해 전환관리에 참여하는 협력파트너를 지역적으로 연계한다.

309) 함부르크시 공식 포털(<https://www.hamburg.de/bjv/justizvollzug/11078696/resozialisierung/>; 2023.11.1. 최종검색).

나) 전환관리의 절차

아래에서는 전환관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 실현은 전문자문위원회에 의해 보조된다.

A단계: 형집행으로의 수용

• 집행시설내의 수용팀 및 수용부서

수용팀은 새로 수용되는 자에게 최초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그 목적은 구금의 회피 또는 단축 혹은 형집행에서의 적응이다. 수용팀은 입소상담을 책임진다. 이러한 수용팀은 집행시설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있다.

• 표준화된 입소상담

입소상담은 주에서 통일적으로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입소상담을 통해 형집행에서 생활형성과 계속적인 집행계획을 위한 최초 개별상태의 확인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즉각적이고 필수적인 통지의 계기를 마련한다. 입소상담의 결과 계획과 재통합에 중요한 정보와 서류의 조달이 이루어진다. 상담의 결과는 지체 없이 서류에 편철되고 입소상담에 따라 추가적인 집행계획과 구속형성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진다.

• 구금시 체크사항

교정시설에 입소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처리해야 한다.³¹⁰⁾ 누가 월세를 내는가? 입소자는 월세를 계속지급하도록 사회복지국(Sozialamt)에 신청할 수 있다(임대료지속납부[Mietfortzahlung]). 사회복지국은 입소자가 현금이 없다면 자유형의 경우 1년간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는 사회법 제12권 제6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입소자는 범죄자지원의 문의처에 상담받을 수 있다. 또는 입소자는 2형 실업급여(Arbeitslosengeld[ALG] II)를 받는다면 일자리센터(Jobcenter)에 문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입소자 가족도

310)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7면 이하.

사회복지국 또는 일자리센터에 입대료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주택보조금(Wohngeld)과 아동수당(Kinderzuschlag)도 신청할 수 있다.

B단계: 집행 및 동화계획

- 동화의 관점에서 집행계획의 확장

집행시설을 떠날 때까지 시작되거나 이미 종료된 지원 및 조치의 유형과 결과는 전환매니저에 의해 기록된다. 장래 출소 후 추가조치(직업교육, 채무상당, 심리치료적 조치 등)의 수요는 참여한 전문가의 관점에서 정해진다. 수감기간 동안에도 사회 및 심리 서비스 또는 집행시설의 중독 지원 부서와 협력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구직과 주거마련에 도움이 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³¹¹⁾ 그리고 개별사안에서 중요하다면 상임 또는 비상임의 외부인이 집행 및 동화계획에 참여한다. 마지막 계획 업데이트의 경우 참여한 전문가의 관점에서 후속조치 실행에 적합한 상임 또는 비상임 외부인이 임명되고 조치의 시작이 기록된다.

- 집행 및 동화계획을 위한 정보의 표준화

동화계획은 안정적 주거 및 생활관계, 직업, (후속)직업교육, 직업종사, 중독상담기관 또는 치료기관, 가족 또는 혼인상당소, 신체적·심리적 상담 내지 치료기관과의 연계에 집중된다. 집행 및 동화계획은 신속하고 용이하게 작성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통합상 중요한 집행 및 동화계획의 개요를 관련된 협력파트너에게 전달된다.

- 표준화된 집행계획을 위한 IT 기반의 플랫폼

형집행에서 개별 집행계획 작성과 개선을 위해 법적으로 IT-전문어플리케이션 SoPart가 사용된다. 동화계획을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정보발송, 또는 상이한 권리시스템(Rechtesystem)을 경유하여 IT-전문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IT-전

311) 중부독일방방송국(Der Mitteldeutsche Rundfunk: mdr)의 인터넷기사, Wie der Soziale Dienst der Justiz Straftätern zurück ins Leben hilft, mdr, 12.11.2022.(<https://www.mdr.de/nachrichten/sachsen-anhalt/halle/halle/perspektiven-nach-der-haft-sozialer-dienst-100.html>: 2023.11.1. 최종검색).

문어플리케이션은 또한 출소 후 후속조치에 관한 보고를 위한 정보필드를 제공한다.

- 참고: 교정시설의 지급(Zahlungen der Justizvollzugsanstalt)의 정리³¹²⁾

① 노동대가(Arbeitsgentgelt/Lohn)

수형자가 구금단계에서 일을 한 경우 이들은 소액의 노동대가를 받는다. 노동대가는 임금이라 할 수 있는데, 다섯 단계의 임금이 존재한다. 임금의 대소는 노동의 유형에 따른다. 이러한 임금은 수형자가 실제로 일을 했을 때 지급된다. 수형자가 자유로운 고용관계에서 일을 한 경우 이들은 협정임금(Tariflohn)을 받는다. 자유로운 고용관계는 교정시설 외부에서의 유급 노동을 말한다. 협정임금으로부터 수형자는 구금비용액(Haftkostenbeitrag)을 지급해야 한다.³¹³⁾

② 용돈(Taschengeld)

수형자가 자신의 책임 없이 일을 할 수 없고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이들은 용돈을 받을 수 있다. 그 조건은 수형자가 구둣해야 한다. 즉, 수형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야 한다. 용돈은 교정시설로부터 지급되지만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형자가 용돈을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용돈은 하루당 1.88유로(서부) 및 1.74유로(동부)였다고 한다. 구속수감자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구금 중에 받는 금전에 대해서는 수형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고 금전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규정되어 있다. 금전은 주거금(Hausgeld), 가교수당(Überbrückungsgeld), 자비(Eigengeld)로 구분된다. 금전의 정확한 구분은 연방주의 행형법에서 규정된다.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어떤 목적을 위해 예정되어 있는지가 규정되어 있다.³¹⁴⁾

312)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14면 이하.

313)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18면 이하.

314)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15면.

③ 주거금(Hausgeld)

주거금은 일하는 수형자가 받고 시설 내에서 스스로 소비할 수 있는 임금의 일부분이다. 노동대가 또는 직업훈련지원비의 7분의 3(작센의 경우 10분의 6) 내지 용돈의 100%가 주거금으로 책정된다. 수형자가 교정시설 외에서 일을 한다면 임금의 해당 비율만큼 주거금으로 정해진다. 주거금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즉, 그 돈은 국가 또는 타인으로부터 수형인의 채무에 충당하기 위해 몰수될 수 없다. 교정시설도 이러한 돈을 뺏을 수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 수형인이 구금시설에서 야기한 손해는 주거금으로 배상된다. 수형인은 법원절차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형인이 주거금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명해질 수 있다.³¹⁵⁾

④ 가교수당(Überbrückungsgeld)

가교수당은 석방후 최초 4주간의 출소자와 가족의 생활비를 보장한다. 이는 수형자의 모든 수입으로부터 마련된다. 가교수당에 대한 규정은 그러나 개별 연방주마다 상이하다.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그, 브레멘, 헤센, 함부르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작센-안할트,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서는 가교수당 마련이 규정되어있다. 메클렌부르그-포포메른, 라인란트-팔츠, 자아란트, 튀링엔 주에서는 더 이상 가교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베를린, 브란덴부르그, 작센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수형자 스스로 가교수당 내지 통합자금을 마련할 지를 결정한다. 가교수당이 얼마나 되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구금기간 중에 수형자는 일을 할 수 없지만 친척으로부터 송금받을 수 있거나 입소시 돈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금전 또는 그 일부는 가교수당으로 책정된다.³¹⁶⁾

수형자는 가교수당에 대한 이자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자는 정산소(Zahlstelle)에 신청해야 한다. 가교수당은 일정한 액수를 넘어서 개인자금으로 편입될 때 담보로 잡힐 수 있다. 가교수당은 출소시 현금으로 지불되거나 보호관찰 또는 다른 출소자보

315)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15~16면.

316)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16면.

호기관에 송금될 수 있다.³¹⁷⁾

⑤ 자비(Eigengeld)

자비는 수형자가 가지고 왔거나 가지고 있었던 액수로 구성된다. 자비의 일부는 가교수당으로 계상될 수 있다. 가교수당의 증액으로 사용되지 않는 금전에 대해서는 담보를 잡을 수 있다. 수형인의 채무를 갚기 위해 자비는 압류될 수 있다.³¹⁸⁾

C단계: 출소준비를 위한 서비스 연계

•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사건상담

사건상담은 집행계획을 토대로 참여 기관 및 직원들과 함께 후속처우의 보장을 위해 이루어진다. 사건상담의 조직과 절차는 집행에 대한 법적 협력구성에 근거하여 보장된다. 그러한 상담의 결과는 정보보호법적 규정하에 집행기관과 참여한 외부인들에게 제공된다. 수용자의 구금으로부터 적절한 후속처우자의 서비스로의 전환은 사법전문가 또는 자발적 담당자에 의해 조직된다.

• 교정시설상의 네트워크사무실

네트워크사무실은 정규직원 및 외부의 자원봉사자가 수용자에게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사무실의 데이터뱅크는 후속처우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네트워크사무실은 해당 설비(전화, 팩스, 인터넷접근을 포함한 IT-설비, 주소파일 등)가 마련되어 있다.

• 조직을 초월한 협력구성체

시설단계에서 책임 전환매니저가 임명되고 전환매니저는 정규직원 및 외부 자원봉사자와 함께 사건상담의 집행과 네트워크 조직을 규정한다. 참여 조직들 간에는 출소

317)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17면.

318)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17면.

자의 석방/인계의 경우 선결 사항과 기대가능한 후속급부에 관한 구속력있는 합의가 규정되고 처우상 공백이 확정된다. 단체 내지 주의 수준에서 구금으로부터 외부인 서비스로의 전환보장을 위해 기본 가이드라인이 형성되고 이는 정기적인 협력모임의 범위에서 개선된다.

• 출소전 준비사항³¹⁹⁾

가능한 한 빨리 출소를 준비해야 한다. 연방 주의 모든 형집행법이 필요하다면 출소준비를 위한 집행완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시설이 한다. 시설은 수용자가 완화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완화된 범위에서 수용자는 적시에 중요한 서류를 구비하거나 교도소에서 정기적으로 노동을 하였으나 석방 후 일을 구할 수 없을 거 같으면 실업상태를 신고할 수 있다. 석방준비와 관련된 질문과 문제가 있으면 교도소의 사회복지사를 방문할 수 있다. 수용인은 또한 범죄자지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³²⁰⁾

수형자가 일찍 석방된다면 보통 수년간 보호관찰관이 보조한다. 출소자는 여기서 조력을 얻지만 또한 정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보호관찰기간을 성공적으로 보내면 가석방(Restfreiheitsstrafe)이 이루어진다.³²¹⁾

다) 실태 및 평가

함부르크 주에서 재사회법에 근거하여 운영된 통합 전환관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36명의 수감자에 대해 계획서가 작성되었고 62명의 수감자의 경우 6주의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나아가 이 기간 동안 371명의 의뢰자가 전환관리 전문부서에 신청하였고 이들 중 274명이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274명의 수감자가 동화계획을 받았

319)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38면 이하.

320)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38면.

321)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38면.

는지는 불분명한데 그 이유는 해당 법률의 발효 후 신빙성 있는 평가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³²²⁾

전환관리를 포함한 재사회화법의 운영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해당 법률을 실현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을 위한 공동의 업무지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체자유형이 집행되는 자의 경우 출소 전 6개월의 전환관리는 의미가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균 구금기간은 30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6개월까지 구금되는 단기자유형을 복역하는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개별 수형자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대체자유형을 부과받은 자는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서 생활해 온 상습범인 경우가 많고 이들을 위한 동화계획이 발전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³²³⁾

4.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

가. 의의 및 법적 근거

여기서는 독일에서 출소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금에서 가장 악한 것은 출소이다(Das Schlimmste an der Haft ist die Entlassung)”라는 말 있듯이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구금시설에서의 생활보다는 출소 후의 생활이 더욱 혹독할 수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로 나오게 되면 충격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고 따라서 다시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독일식 출소자에 대한 법무보호의 핵심은 이러한 충격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전환관리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독일은 입소단계의 전환관리를 통해 출소 후의 출소자에 대한 재사회화문제까지 예정하고 그 해결을 위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형집행단계와 출소 후의 단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이미 형집행단계에서도 범죄자지원을

322) 독일 Welt지 인터넷기사, „Ein Gesetz allein ändert gar nichts“, Welt, 12.04.2019(<https://www.welt.de/regionales/hamburg/article191832745/Resozialisierung-Ein-Gesetz-allein-aendert-gar-nichts.html> 2023.11.1. 최종검색).

323) 독일 Welt지 인터넷기사, „Ein Gesetz allein ändert gar nichts“, Welt, 12.04.2019 (<https://www.welt.de/regionales/hamburg/article191832745/Resozialisierung-Ein-Gesetz-allein-aendert-gar-nichts.html> 2023.11.1. 최종검색).

위한 민간단체가 개입할 수 있고 출소 후에도 사법당국에 의한 지원과 통제가 일정기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독일 연방 주에서 주법으로 재사회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출소자에 대한 재사회화는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가성을 가지는 연방 주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주입법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어쨌든 출소한 자에 대해서는 출소 후 일정기간 출소자 본인의 재사회화와 재범으로부터의 사회보호라는 목적에서 국가는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한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출소자는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신의 삶을 범죄 없이 영위하거나 그것이 힘들다면 자발적 범죄자지원기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자발적 범죄자지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본다.

국가의 사법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집행(Strafvollzug)과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범죄자지원(Straffälligenhilfe)이다. 물론 이미 형집행 속에 범죄자지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엄격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범죄자지원은 총체적 개념으로 범죄와 관계에서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범죄자 가족과 무죄로 구속 또는 형집행을 당하는 자에 대한 조력도 포함된다.³²⁴⁾ 그리고 범죄자지원의 목적은 개인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범방지이다. 물론 양자의 임무는 실무상 동시에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³²⁵⁾

제도적으로 범죄자지원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보호관찰지원(Bewährungshilfe), 법원지원(Gerichtshilfe), 소년법원지원(Gerichtshilfe)이 있고 범죄자-피해자-조정(Täter-Opfer-Ausgleich), 행형단계에서 여가시간 및 상담 제공, 출소준비, 출소자 주거지원, 대체자유형방지를 위한 공익사업의 조직, 채무상담, 중독상담, 성폭력범죄자치료와 같은 자발적 범죄자지원(Freie Straffälligenhilfe)도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출소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의 법적 근거는 행집행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324) Heinz Cornel, Geschichte des Strafens und der Straffälligenhilfe. In: Arbeitskreis der Hochschullehrer und Hochschullehrerinnen Kriminologie/Straffälligenhilfe in der Sozialen Arbeit(Hrsg.), Kriminologie und soziale Arbeit. Ein Lehrbuch. Beltz Juventa, Weinheim/Basel 2014, 32면.

325) Heinz Cornel, Geschichte des Strafens und der Straffälligenhilfe. In: Arbeitskreis der Hochschullehrer und Hochschullehrerinnen Kriminologie/Straffälligenhilfe in der Sozialen Arbeit(Hrsg.), Kriminologie und soziale Arbeit. Ein Lehrbuch. Beltz Juventa, Weinheim/Basel 2014, 33면.

로 연방 각주의 형집행법과 재사회화법 그리고 각종 연방 사회법이다. 이러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이미 앞서 살펴보았다. 그 밖에도 사회법 제12권 제67조에 따르면 생계가 특별한 사회적 곤란과 결부되어있는 자는 자력으로 그러한 곤란을 극복할 수 없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급부를 제공한다.

나. 범죄자지원 주체

1)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자지원

독일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자지원은 이미 형집행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집행시설내에서의 범죄자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형집행은 이미 앞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형집행기간 동안 시설의 처우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형집행종료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자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을 먼저 살펴본다. 여기서 이들 기관은 지원기능 뿐만 아니라 감시·통제의 기능도 담당한다.

가) 보호관찰지원(Bewährungshilfe)

독일에서 보호관찰지원은 형사사범의 세 번째 기둥에 속한다. 형법 제56조d는 법원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적당하다면 보호관찰기간 보호관찰관의 감시와 지도에 따르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지원하거나 돌봄으로써 보조한다. 보호관찰관은 법원과의 협조 범위에서 부담·지시·제의·약속의 충족을 감시하고 법원이 정한 기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생활에 관하여 보고한다. 부담·지시·제의·약속에 대한 중한 또는 계속된 침해는 법원에 보고된다.

법원에 의해 임명된 보호관찰관과 달리 보호관찰지원은 하나의 조직이다. 보호관찰지원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대한 의무를 지고 정규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지원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보호관찰지원을 통해 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배우게 되고 위법한 행위를 예방한다. 수많은 전문단체에서 시설 외 범죄자지원의 제도들이 조직되어 있다.

나) 법원지원(Gerichtshilfe)

독일 형사소송법 제463조d에 따르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에 관한 사후적 결정 등을 준비하기 위해 법원 또는 집행기관은 법원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함부르크 재사회화법에 따르면 법원지원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함부르크 사면법 규정에 따라 검찰, 법원 또는 사면기관의 요청에 의해 개입할 수 있고 다른 법원지원기관에 대해 업무공조한다.

법원지원은 대부분의 연방주에서 사법기관의 사회복지부에 속한다. 법원지원의 본질적 업무영역은 벌금납부 또는 형사소송법 제153조a에 따른 절차중지의 경우에 인정되는 공공근로의 연계 및 감시이다. 그 밖에 법원지원은 검찰의 수사기관으로 기능한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수형인의 개인적 사정을 조사한다(형사소송법 제160조 제3항). 이는 구속, 집행유예 또는 사면에 있어 중요하다. 그러한 조사는 증인 또는 범죄피해자까지 확장될 수 있다. 종종 법원지원은 범죄자-피해자-조정 of 집행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법원지원은 전적으로 성년형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³²⁶⁾

법원지원은 오직 검사의 명을 받은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고 오로지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정상만 조사된다. 이는 주거 및 직업 관계가 될 수 있고 형사절차를 위해 중요한 사회적 관계 또는 문제상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그 가족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다. 조사결과는 조사보고서에 정리되어 검찰로 전달된다.³²⁷⁾

과거 법원지원은 검찰청에 소재했지만 사법기관의 사회복지부의 개편의 일환으로 보호관찰지원, 법원지원, 행장감독은 대부분의 주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편입되었다. 법원지원자는 따라서 종종 보호관찰지원과 행장감독의 임무를 수행한다. 법원지원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나아가 범죄자-피해자-조정 영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영역에서의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326) 독일 위키페디아의 설명(<https://de.wikipedia.org/wiki/Gerichtshilfe> 2023.11.1. 최종검색).

327) 독일 위키페디아의 설명(<https://de.wikipedia.org/wiki/Gerichtshilfe> 2023.11.1. 최종검색).

다) 행장감독(Führungsaufsicht)

행장감독이란 소위 자유박탈이 아닌 보안처분으로서 그 대상은 형벌 또는 치료감호를 완전히 복역한 후 석방되는 범죄자이다.³²⁸⁾ 출소 후 범죄자의 사회적 통합은 다양한 이유에서 위태롭게 보이고 따라서 범죄자는 개선과 안전상의 이익에서 특별한 정도로 보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면, 행장감독은 범죄자의 후속적 배려를 보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자신의 통제 및 재사회화임무 범위에서 부정적 불분명한 징후를 보이는 범죄자에게 전환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행장감독은 법률에 의해 최소 2년의 자유형을 완전히 복역하거나(특정 성범죄의 경우 1년의 자유형을 복역해야 한다), 보호관찰부로 정신병원 또는 금단치료소의 감호 혹은 보안감호가 유예되거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보안처분감호로부터 석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된다. 행장감독은 유죄판결을 내린 법원에 의해 판결시에 명해질 수 있다.

행장감독기간은 2년에서 5년까지 이른다. 5년이 아닌 보다 짧은 기간은 관할 법원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구금, 감호, 도망은 행장감독시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특정 사안에서 법원은 무기한의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행장감독 기간 동안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지시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참여, 교육, 근로, 여가활동과 관계될 수 있는 지시는 그 침해시 처벌이 뒤따르지 않고 일정한 경우 무기한의 행장감독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침해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지시는 예컨대 특정 인물 또는 단체와의 접촉금지, 장소이탈금지, 알코올 및 마약복용금지 등과 관계한다. 접촉 및 출석 지시는 예컨대 구인명령을 통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행장감독부서에 구속된다. 법원은 행장감독 기간 동안 항상 보호관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행장감독부서와 법원에 정기적으로 생활관계와 지시의 준수여부 또는 경우에 따라 발견된 새로운 범죄에 관해 보고한다.

328) 니더작센주의 외래 사법사회복지부 홈페이지(https://ajsd.niedersachsen.de/wir_ueber_uns/unsere_aufgaben/fuehrungsaufsicht-im-ajsd-96884.html 2023.11.1. 최종검색).

2) 자발적 범죄자 지원

가) 의의

19세기 범죄자 지원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자만 있었고 1950년 이후 비로소 전문적인 사회복지업무가 범죄자지원의 구성부분이 되었다.³²⁹⁾ 독일의 출소자의 재사회화 업무에서 자발적 범죄자지원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단체의 활동은 19세기 초반부터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직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공공기관 및 법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독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대표적 민간단체로는 독일민간사회(복지)사업협의회(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Freien Wohlfahrtspflege), 독일민간보호관찰전문연합(DBH-Fachverband für soziale Arbeit,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와 독일민간범죄자지원연합(Bundesarbeitsgemeinschaft für Straffälligenhilfe) 세 개의 단체가 연결되어 일하고, 각 주에 최소한 한 개의 지소 또는 다른 민간단체와 연계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연방정부는 매년 이들 단체의 출소자 및 수형자 프로그램 개발과 실무 진행에 협력하고, 일정 부분 재정을 담당한다.³³⁰⁾ 이들 기관은 공익법인으로 구성되는데, 2015년 기준으로 이들 중 35%는 공동복지협회(Paritätischen Wohlfahrtsverband), 13%는 종교단체(Diakonischen Werk), 17%는 자선기구협회(Caritasverband) 그리고 5%는 노동자복지기구(Arbeiterwohlfahrt)로 구성되었다고 한다.³³¹⁾

나) 법적 근거

자발적 범죄자지원 단체의 조직과 활동은 사적 영역이어서 이러한 단체를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는 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함부르크주의 재사회화법 제22조에

329) Informationsdienst Straffälligenhilfe der BAG-S: Ehrenamt in der Freien Straffälligenhilfe (<https://www.der-paritaetische.de/alle-meldungen/informationsdienst-straffaelligenhilfe-der-bag-s-ehrenamt-in-der-freien-straffaelligenhilfe/> 2023.11.1. 최종검색).

330) 유수연, 독일의 출소(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15권 제1호(2015), 55-56면.

331) Heinz Cornel, Der Resozialisierungsbeitrag der freien Straffälligenhilfe. Präsentation, Alice Salomon Hochschule Berlin, 8. Oktober 2015, Folie 11 (https://www.dbh-online.de/sites/default/files/doku/vortraege/cornel_resozialisierungsbeitrag-der-freien-straffaelligenhilfe_verzahnung_damp-09-2015_0.pdf: 2023.11.1. 최종검색).

따르면 이 법에서 규정되는 한 범죄자 및 피해자 지원의 자발적 담당자는 임무수행에 참여할 수 있다. 자발적 범죄자지원기관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임무수행이 이관될 수 있는데, 이는 이것이 전문적으로 요구되고 자발적 단체가 임무수행을 위한 전문적 요건을 충족하며 참여 또는 이관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 그러하다. 그리고 자아란트주 재사회화법 제22조는 범죄자업무와 피해자지원의 자발적 단체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 각종 지원단체

▶▶▶ [표 4-2-5] 민간시설 현황(2015년 11월 30일 기준)

(단위: 수)

연방주	지역, 종교, 비영리 단체
바덴-뷔르템베르크	19
바이에른	36
베를린	7
브란덴부르크	5
브레멘	1
함부르크	6
헤센	16
메클렌부르크-포퐁메른	5
니더작센	1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36
라인란트-팔츠	10
자아란트	2
작센	10
작센-안할트	5
슐레스비히-홀슈타인	6
튀링엔	6
독일 전체	183

출처: 유수연, 독일의 출소(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15권 제1호(2015), 56면.

①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undesarbeitsgemeinschaft für Straffälligenhilfe: BAG · S)는 관련 전문기구이다. 이는 공익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조직으로 범죄를 저지

른 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이 단체는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범죄자지원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 단체는 1990년 설립되었고 베를린에 주소지를 둔다. 다수의 복지단체와 사회적 근로, 형법, 형사정책을 위한 전문단체(Fachverband für Soziale Arbeit,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 (DBH) e. V.)도 여기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독일적십자는 탈퇴하였다. BAG·S는 연방노동복지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의 지원을 받는다. BAG·S는 주로 연방정부의 지원, 회원단체의 기부금, 출판 및 스폰서에 의한 수입에 의해 재정을 확보한다.

이 단체는 범죄자의 통합과 재사회화에 유리하게 공적 인식을 강화하고자 한다. 여기서 단체는 담당기관과 언론에 대해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출판,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사를 통해 알려준다. 또한 현안 문제에 대한 언론대담회, 포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 단체는 사회 및 형사 정책적으로 수형자의 소외와 차별을 반대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위해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개혁안을 제출하기도 한다. 1년에 3번에 걸쳐 1300부의 Informationsdienst Straffälligenhilfe라는 소식지를 발행한다.

이 단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는 수감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 지급과 노동내용 그리고 교육기회를 개선하고 장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를 높이며, 범죄자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경감하고, 수감자가 장래 사회보험법적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수형자에 대한 연금보험의 확대적용은 이 단체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동 단체는 2011년 5월 수형자에 대한 연금보험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의회청원의 첫 번째 서명자중 하나였다. 2018년 법무부장관회의는 베를린 주의 제안에 따라 수형자와 보안감호자를 연금보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의미있다고 선언하였다.

② 평등협회(Der Paritätische Gesamtverband)

이 단체는 독일 연방에 있는 여섯 개의 주요 자발적 복지사업단체 중 하나이다. 이는 상위연합체로서 사회 및 보건 영역에서 10,000개 이상의 자립적 공익조직을 이끈다. 15개의 주단체와 280개 이상의 하부조직으로 평등단체는 자

신들의 구성원이 업무를 보조한다. 세부영역에서 구성조직을 지원하고 법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대변한다. 고유한 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하며 조직과 제도를 새로이 신설하는데 기여한다.³³²⁾

사회내 병약자를 위한 로비활동과 더불어 이 단체는 급부제공단체이다. 단체의 구성조직은 전문적, 법적, 조직적 질문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재정상의 지원을 얻는다. 나아가 직업교육 및 후속교육영역에서 유급 또는 무급의 직원을 위한 코스, 커리큘럼, 세미나가 있다.³³³⁾

평등단체는 범죄자지원 영역에서 구성조직과 현장상담소와 함께 범죄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이들의 상담에 관한 법적 권리와 지원을 실현한다. 여기서 평등단체는 사회정책적으로 서비스와 제도·설비를 위한 양질의 안정적인 기본조건을 위해 노력한다.³³⁴⁾

③ 사회복지, 형법 그리고 형사정책을 위한 전문연합(DBH - Fachverband für Soziale Arbeit,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

이 단체는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사회복지, 형법 그리고 형사정책을 위해 독일전역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연합형태의 단체이다. 여기에는 범죄자지원과 보호관찰지원 그리고 범죄자-피해자-조정 영역에서 일하는 약 6천명의 구성원을 거느린 연합 및 단체가 속해 있다. 이 단체는 67년 이상 독일 전역에서 형사사법 및 형사정책을 위해 활동하고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와 유럽보호관찰연합(Confederation of European Probation: CEP) 그리고 회복적 사법을 위한 유럽포럼(European Forum for Restorative Justice: EFRJ)의 구성원이다. 동 단체의 전신은 1951년에 설립된 독일 보호관찰단체(Verein „Deutsche Bewährungshilfe“)이고 이는 독일 형법에 보호관찰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계획의 주체였다.³³⁵⁾

DBH-Fachverband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이 단체는 법치국가적, 사회적

332) 평등협회 홈페이지(<https://www.der-paritaetische.de/verband/> 2023.11.1. 최종검색).

333) 사회복지, 형법 그리고 형사정책을 위한 전문연합 홈페이지(<https://www.dbh-online.de/fachverband/ueber-uns> 2023.11.1. 최종검색).

334) 사회복지, 형법 그리고 형사정책을 위한 전문연합 홈페이지(<https://www.dbh-online.de/fachverband/ueber-uns> 2023.11.1. 최종검색).

335) 사회복지, 형법 그리고 형사정책을 위한 전문연합 홈페이지(<https://www.dbh-online.de/fachverband/ueber-uns> 2023.11.1. 최종검색).

형사사법의 실무와 개혁 그리고 휴머니즘적인 범죄자지원을 촉진하고 범죄의 원인, 발생형태 그리고 후속문제를 제거하고 완화하며 범죄자-피해자-조정과 회복적 사법을 지지한다. 그리고 수감자의 재통합을 지원하고 범죄예방에 기여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상담파트너, 중재자, 여론형성자로 이해된다. 사회복지업무와 형법 및 형사정책 분야의 다양한 활동단체들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한다. 이는 이론과 실무간에도 마찬가지로이다. 이 단체는 범죄와 사회정책의 이익을 옹호하며, 또한 범죄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대안적 접근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³³⁶⁾

여기서도 다루는 업무는 국가적 범죄자지원 실무, 민간의 범죄자지원 실무, 범죄자-피해자-중재 및 회복적 정의, 사회사업 및 형법, 사회 및 형사정책이다. 그리고 단체의 정관목적은 1. 형사사법영역에서 본업으로 또는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자와 기타 관심을 갖는 자를 위한 직업교육 및 추가교육, 2. 사법정책, 사회정책, 법무실무 및 민간단체 간의 접촉, 3. 프로젝트 및 모델프로그램, 4. 출판물, 5. 공공사업, 6. 학문연구의 진흥을 통해 달성된다.³³⁷⁾

DBH-Fachverband는 직업교육 및 추가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형사사법영역에서 정규직원 및 자원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기타 관심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개발에 대한 정보, 새로운 접근방식의 개발 및 테스트, 경험의 교환, 상담 및 실무 연구를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다.³³⁸⁾

해당 단체는 성공적인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델테스트 및 프로젝트의 운영자이자 창시자이다. 1992년 연방 정부와 연방 의회의 결정에 따라, 범죄자-피해자-조정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서비스사무소(Servicebüro für Täter-Opfer-Ausgleich und Konfliktschlichtung)는 범죄자-피해자-조정 촉진을 위한 초국가적인 중앙사무소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TOA 서비스사무소는 범죄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범죄자-피해자-조정은 당사자들에게 분쟁에 대한 만족스러운

336) 사회복지, 형법 그리고 형사정책을 위한 전문연합 홈페이지
(<https://www.dbh-online.de/fachverband/ueber-uns> 2023.11.1. 최종검색).

337) 사회복지, 형법 그리고 형사정책을 위한 전문연합 홈페이지
(<https://www.dbh-online.de/fachverband/ueber-uns> 2023.11.1. 최종검색).

338) 사회복지, 형법 그리고 형사정책을 위한 전문연합 홈페이지
(<https://www.dbh-online.de/fachverband/ueber-uns> 2023.11.1. 최종검색).

해결을 위해 제3자의 참여와 함께 법정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이 단체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 자원 봉사자들을 촉진하고 지지하기 위한 LOTSE 프로젝트의 운영자였다.³³⁹⁾

다. 범죄자지원 내용

1) 실업수당 및 일자리 제공

범죄자가 출소 후 구직을 신청하거나 질병과 장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면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사회적 급부라고도 한다. 그러한 권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다양한 조건에 따른다. 이는 기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에서 사회급부권은 일정한 순위가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순위에 따라 어떠한 사회급부가 지급되는지 검토된다. 이 경우 가장 많은 급부부터 시작한다. 먼저, 출소자가 실업급여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가 검토된다. 이러한 권리가 없다면 실업급여 II (Hartz IV)가 있는지가 심사된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하루 3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자는 소득능력이 없는자이다. 이러한 자는 사회부조(Sozialhilfe)의 권리를 가진다. 출소자가 난민신청급부법(Asylbewerberleistungsgesetz)에 따라 급부수령권한이 있는 자에 속하면 실업급여 II 또는 사회부조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난민신청급부를 신청해야 한다.³⁴⁰⁾

대부분의 출소자는 실업급여 I의 청구권이 없고 일자리센터에 실업급여 II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부터 첫 번째 지급까지 시간이 경험상 6주에서 8주가 걸린다. 그때까지 생필품쿠폰, 경우에 따라 약간의 선불이 존재한다. 상담소를 찾은 출소자의 대략 90%는 학교졸업장 또는 직업경력이 없다고 한다.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회사지원서 많은 경력상 공백시간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잡

339) 사회복지, 형법 그리고 형사정책을 위한 전문연합 홈페이지

(<https://www.dbh-online.de/fachverband/ueber-uns> 2023.11.1. 최종검색).

340)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44면.

또는 공공일자리만 찾을 수 있다.³⁴¹⁾

직업을 구하고자 한다면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소자가 노동청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면 일자리센터가 관할한다. 개인적 구직절차는 통합합의(Eingliederungsvereinbarung)에서 확정된다. 노동청에서 통합합의(사회법 제3권)는 원칙적으로 사회법 제2권에 따른 통합합의와 구별되지 않는다.³⁴²⁾

2) 교육

범죄자는 출소 후 교육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사회급부권을 가진다. 이 경우 직업교육과 학교교육이 구별된다. 출소자가 공인된 전문기능직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직업교육수당이 생계비에 충분치 않다면 사회법 제3권 제56조에 따른 직업교육지원(Berufsausbildungsbeihilfe: BAB)을 신청할 수 있다.

출소자가 출소 후 학교교육(10 학급부터)을 받거나 대학을 졸업하고자 한다면 연방교육진흥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BAföG)이 문제된다. 중요한 것은 교육기간 동안 연방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진흥의 경우 출소자는 보조금으로서 절반만 수령하고 나머지 절반은 졸업후 상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연방교육진흥법 및 직업교육지원에 따라 지원받는 자는 사회법 제2권과 사회법 제7권의 급부로부터 배제된다. 그러나 수많은 예외가 있다.³⁴³⁾

3) 주거

준비없이 출소한 자는 임시숙소(Übergangswohnheime)의 대기기간으로 인해 일단은 야간숙소(Nachtunterkunft)에서 숙박을 해야 한다. 최근 수년 출소자 개인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점점 쉽지 않다고 한다. 이로써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341)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정기간행물 Informationsdienst Straffälligenhilfe (<https://www.bag-s.de/materialien/infodienst> 2023.11.1. 최종검색), Heft 2/2013, 6면.

342)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90면.

343) 위의 안내책자, 83면 이하.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종종 2년까지 이르기기도 한다.³⁴⁴⁾

돌봄형 주거(Betreutes Wohnen)는 노령, 장애, 정신병 기타 이유로 일상적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한 주거지원의 한 형태이다. 돌봄형 주거의 목표는 거주자의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능력을 강화하여 가능한 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지원은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힐링 트레이너, 가족보호사, 교육치료사, 교육자, 치료사, 간병인에 의해 보장된다. 다양한 연방주에서 도움을 주는 자를 사회보조인(Sozialbeistand)으로 표현된다. 법적 돌봄은 돌봄형 주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요약 및 시사점

독일에서 형기를 마친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관한 논의는 꽤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었고 무기자유형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유기자유형을 선고 받은 자는 언젠가는 다시 사회로 돌아가야 하고 사회속에서 정착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규범적 사실 속에서 출소자의 재사회화 및 재범방지의 노력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발전 중이다.

범죄자 재사회화의 대한 논의를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실형을 살아야 하는 지점부터 살펴본다면 이는 독일에서 형집행과 집행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법제도를 살피는 것이 유의미하고 독일 연방 형집행법과 연방 각 주의 형 및 사법집행법 그리고 몇몇 주에서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시도 중인 재사회화법, 여기에 더해 각종 사회법은 중요한 연구자료가 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독일식 재사회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독일의 경우 형집행은 연방주의 사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의 특성에 맞는 형집행업무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라도 자신의 고향과 가까운 시설에 수용되기 때문에 형집행단계에서건 출소 이후이건 재사회화라는 관점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집행은 국가의 사무로 법무부가 소관부처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겠으나 출소자의 재사회화라는 관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물론 지역간의 격차가 심한

344)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정기간행물 Informationsdienst Straffälligenhilfe (<https://www.bag-s.de/materialien/infodienst> 2023.11.1. 최종검색), Heft 2/2013, 6면.

우리나라의 실정하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형집행 및 교정업무를 맡기는 것이 현실적 일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수형자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복역하는 것이 장래 사회정착을 위해서 유리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교정시설과 관계하여 형집행은 개방형 집행과 폐쇄형 집행을 구별하면서 독일은 개방형 집행의 활용도가 비교적 높다는 것이다. 잠만 교정시설에서 자고 낮에는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형기만료시 겪게 될 수 있는 충격을 차단할 수 있다. 이는 독일식 형집행의 모토가 가능한 한 구금을 막자는 데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형집행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방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천안개방교도소 뿐이고, 2022년 여성 전용 시설로 전환되어 남성 수용자의 개방 교도소는 없다고 한다.³⁴⁵⁾ 따라서 우리나라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방시설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독일식 전환관리라는 개념을 통해 입소단계부터 범죄자의 출소 후의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전환이라는 의미는 구금에서 자유로의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단계에서의 전환 즉 자유에서 구금으로의 전환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입소단계부터 개인별로 적합한 처우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전문 인력(사회복지사, 사회교육사, 채무상담사 등)과 처우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형집행법 제56조에 의거 소장은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독일에서 특징적인 것은 교정시설(사법집행시설)에 고용된 전문인력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사법집행시설의 사회복지부).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집행단계에서 외부전문가의 협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특히 독일은 민간기관인 자발적 범죄자지원 단체의 체계적·구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새롭다. 이들 단체는 수형자가 석방된 이후에도 끊어짐 없이 해당 범죄자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전환관계 개념에

345) 이연미·백진, '단계별 처우 차별화 전략(Progressive Treatment)'에 따른 개방 교정시설 건축 계획 연구 - 일본 이치하라 형무소와 우리나라 천안 개방 교도소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2023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43권 제1호(통권 제79집) 2023. 04. 26 ~ 04. 28, 1면.

상당히 부합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독일의 일부 주는 형집행법과 별개로 재사회화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수형자 및 출소자에게 재사회화를 위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재사회화에 대한 기본권이다. 상당히 전향적이어서 독일에서도 아직까지 논란중이지만 점차 이를 제정하려는 주가 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법제를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독일적 의미에서의 재사회화법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겠다. 그러나 적어도 형집행법에서라도 재사회화법의 취지를 살려 수형자 및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보다 내실 있게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독일에서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범죄자지원이라는 개념이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는 형집행단계와 출소 후 단계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국가에 의한 범죄자지원, 민간에 의한 범죄자지원, 본업인 자에 의한 범죄자지원, 자원봉사자에 의한 범죄자지원으로 구별할 수는 있다. 함부르크 재사회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통합적 전환관리는 이러한 범죄자지원과 관련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낭비 없이 그리고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경우 기원적으로 자발적 범죄자지원이 먼저 생겨났다는 점에서 연유하고 우리나라의 정부주도의 민간참여와는 차이가 있겠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재사회화를 위한 중요한 노력은 범죄자 또한 사회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치국가의 원리와 더불어 사회국가의 원리는 독일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이에 걸맞게 일찍부터 각종 사회법이 발달하였고 사회보장의 대상자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서 범죄자는 비록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사회 구조적 결함에 의해 범죄로 나아가게 된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사회보장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증가분은 재범방지를 통해 상쇄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따라서 범죄자와 그 가족은 각종 사회적 급부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러한 급부권을 놓치지 않도록 형집행단계부터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제3절 | 일본

1. 개관

일본은 2012년 7월 20일 범죄대책각료회의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6년 「재범방지 등 추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호)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어서 2017년 제1차 '재범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재범방지추진계획 가속화계획', 2023년 '제2차 재범방지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재범방지추진계획에서는 5가지 기본방침³⁴⁶⁾을 수립하고, 7가지 중점과제³⁴⁷⁾를 설정하는 등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정착의 성공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편, 「재범방지 등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범방지추진법'이라 한다.)은 2016년 법률 제104호로 제정되어 공포 즉시 시행되었다. 동 법률은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가운데 범죄를 한 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에 의한 재범방지가 범죄대책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재범방지 등에 관한 시책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재범방지 등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이로써 국민이 범죄에 의한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안심하며 사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346) ① '단 한사람이라도 남겨지지 아니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국가·지방공공단체·민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확보하여 재범방지시책의 종합적 추진, ②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단락 없는 지도 및 지원 실시, ③ 범죄피해자 등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범죄를 한 자 등에게 범죄의 책임과 범죄피해자 등의 심정 등을 이해시켜 사회복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시, ④ 범죄 등의 실태, 효과검증·조사연구의 성과 등을 포함하여 사회정세 등에 따른 효과적 시책의 실시, ⑤ 재범방지의 대응을 홍보함으로써 널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양성(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재범방지 시책에 관한 기초자료 2013년 1월 27일, 9~10면.)

347) ① 취업·주거의 확보, ②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이용의 촉진, ③ 학교 등과 연계한 학업지원, ④ 특성에 따른 효과적 지도, ⑤ 민간협력자의 활동촉진, 홍보·계발활동의 추진, ⑥ 지방공공단체와의 연계강화, ⑦ 관계기관의 인적·물적 체제의 정비(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재범방지 시책에 관한 기초자료, 2013년 1월 27일, 10면)

2. 출소자 현황

가. 형법범 검거자 중 재범자 및 재범자율

형법범 검거자 가운데 재범자 수는 2007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21년은 85,032명이었다. 재범율은 초범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도 있고, 최근 상승 경향에 있었으나 2021년은 48.6%로 전년도보다 0.5% 감소하였다.³⁴⁸⁾

▶▶ [표 4-3-1] 형법범 검거자 중 재범자 및 재범자율

(단위: 명, %)

연도	형법범 검거자	재범자 및 재범자율	
		재범자 ³⁴⁹⁾ 수	재범자율 ³⁵⁰⁾
2003	379,602	135,295	35.6
2004	389,027	138,997	35.7
2005	386,955	143,545	37.1
2006	384,250	149,164	38.8
2007	365,577	145,052	39.7
2008	339,752	140,939	41.5
2009	332,888	140,431	42.2
2010	322,620	137,614	42.7
2011	305,631	133,724	43.8
2012	287,021	130,077	45.3
2013	262,486	122,638	46.7
2014	251,115	118,381	47.1
2015	239,355	114,944	48.0
2016	226,376	110,306	48.7
2017	215,003	104,774	48.7
2018	206,094	100,601	48.8
2019	192,607	93,967	48.8
2020	182,582	89,667	49.1
2021	175,041	85,032	48.6

출처 :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46면.

348)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46면.

349) 재범자는 형법범으로 검거된 자 중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을 제외한 범죄로 검거된 적이 있고, 재차 검거된 자를 말한다.

350) 재범자율은 형법범 검거자 수에서 차지하는 재범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나. 신수형자 중 재입자 및 재입자율

신수형자 중 재입자는 형법범 검거자 중 재범자와 같이 최근 감소경향에 있고, 2021년은 9,203명이었다. 재입자율은 최근 58-59%로 추이하고 있는 바, 2021년은 57.0%로 전년(58.0%)보다도 1.0% 감소하였다.³⁵¹⁾

▶▶ [표 4-3-2] 신수형자 중 재입자 및 재입자율

(단위: 명, %)

연도	신수형자 ³⁵²⁾ 수	신수형자 중 재입자 ³⁵³⁾ 수	
		재입자 ³⁵³⁾ 수	재입자율 ³⁵⁴⁾
2017	19,336	11,476	59.4
2018	18,272	10,902	59.7
2019	17,464	10,187	58.3
2020	16,620	9,640	58.0
2021	16,152	9,203	57.0

출처 :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47면.

다. 출소 수형자 중 2년 이내 재입자 및 재입율

출소 수형자의 2년 이내 재입자는 2008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20년 출소자에서는 2,863명, 최근 2년 이내 재입자가 가장 많았던 2005년 출소자(6,519명)과 비교하여 2분의 1 이하였다. 만기석방자의 재입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추진계획 가속화 계획’(2019년 범죄대책각료회의 결정)에서 2022년까지 2,000명 이하로 한다고 하는 수치목표³⁵⁵⁾를 설정하고 있는 바, 2020년에는 더욱 1,749명까지 감소하였다.³⁵⁶⁾ 또한, 출소수형자의 2년 이내 재입률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향한 종합계획’(2012년 7월 20일 범죄대책각료회의의 결정)에서 2021년까지 16% 이하로 하는 수치목표³⁵⁷⁾를

351)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47면.

352) 신수형자는 재판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받기 위해 각 연도중에 새롭게 입소한 수형자 등을 말한다.

353) 재입자는 수형을 위해 형사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2회 이상인 자를 말한다.

354) 재입자율은 신수형자 수에서 차지하는 재입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355) 재범방지추진계획가속화계획의 수치목표 : 과거 5년(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만기석방자의 2년 이내 재입자 수의 평균(2,726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2022년까지 20% 이상 감소하도록 하여 2,000명 이하로 하는 것(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49면.).

356)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49면.

설정하고 있는 바, 2019년 출소자에서는 15.7%가 되어 당해 목표를 달성하였고, 2020년 출소자에서는 더욱 15.1%까지 감소하였다. 그리고 모든 출소년에서 만기석방자³⁵⁸⁾의 2년 이내 재입률은 가석방자(10.0%)보다도 높고, 2020년은 22.6%였다.³⁵⁹⁾

▶▶▶ [표 4-3-3] 만기석방과 가석방 출소자의 2년 이내 재입자 및 재입률

(단위: 명, %)

연도 출소	출소	수형자 수		2년 이내	재입자 수 ³⁶⁰⁾	
		만기석방	가석방		만기석방	가석방
2003	28,170	12,386	15,784	5,835(20.7)	3,903(31.5)	1,932(12.2)
2004	29,526	12,836	16,690	6,236(21.1)	4,155(32.4)	2,081(12.5)
2005	30,025	13,605	16,420	6,519(21.7)	4,434(32.6)	2,085(12.7)
2006	30,584	14,503	16,081	6,380(20.9)	4,536(31.3.)	1,844(11.5)
2007	31,297	15,465	15,832	6,409(20.5)	4,661(30.1)	1,748(11.0)
2008	31,632	15,792	15,840	6,372(20.1)	4,687(29.7)	1,685(10.6)
2009	30,178	15,324	14,854	6,044(20.0)	4,424(28.9)	1,620(10.9)
2010	29,446	14,975	14,471	5,649(19.2)	4,140(27.6)	1,509(10.4)
2011	28,558	13,938	14,620	5,533(19.4)	3,944(28.3)	1,589(10.9)
2012	27,463	12,763	14,700	5,100(18.6)	3,487(27.3)	1,613(11.0)
2013	26,510	11,887	14,623	4,804(18.1)	3,173(26.7)	1,631(11.2)
2014	24,651	10,726	13,925	4,569(18.5)	2,928(27.3)	1,641(11.8)
2015	23,523	9,953	13,570	4,225(18.0)	2,709(27.2)	1,516(11.2)
2016	22,909	9,649	13,260	3,971(17.3)	2,470(25.6)	1,501(11.3)
2017	21,998	9,238	12,760	3,712(16.9)	2,348(25.4)	1,364(10.7)
2018	21,032	8,733	12,299	3,396(16.1)	2,114(24.2)	1,282(10.4)
2019	19,953	8,313	11,640	3,125(15.7)	1,936(23.3)	1,189(10.2)
2020	18,923	7,728	11,195	2,863(15.1)	1,749(22.6)	1,114(10.0)

출처 :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0면.

357) 재범방지를 향한 종합대책에서의 수치목표 : 과거 5년간(2006년부터 2010년)의 2년 이내 재입율의 평균치(형무소에 대해 20%)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2021년까지 20% 이상 감소하도록 하는 것. 출소수형자의 2년 이내 재입율에 대해서는 2020년 출소자에 대해 16% 이하로 하는 것이 수치목표가 된다(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0면.).

358) 만기석방은 출소수형자 출소사유 중 만기석방 및 일부집행유예의 실행부분의 형기종료를 말하고, 만기석방자는 만기석방 및 일부집행유예의 실행부분의 형기종료에 의해 형사시설을 출소한 자를 말한다.

359)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0면.

라. 중요 죄명·특성별 2년 이내 재입율

1) 죄명별(각성제단속법 위반, 성범죄, 상패·폭행, 절도)³⁶¹⁾

약물사범자는 범죄를 한 자인 동시에 약물의존증 환자인 경우가 많다. 2020년 출소자(각성제단속법 위반)의 2년내 재입자는 776명으로 그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654명이 같은 죄명으로 재입한 것으로부터 각성제 의존의 강력함이 보인다. 그 때문에 약물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선갱생을 위한 지도 뿐만 아니라 의존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치료와 지원을 계속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에서는 효과검증을 실시해가면서 전문프로그램의 개선 등을 도모하는 외에 약물사범자를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등에 적절하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³⁶²⁾

성범죄의 2년 이내 재입율은 2020년 출소자에서 5.0%로 출소자 전체(15.1%)와 비교하면 낮으며 재범율이 높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한편 성범죄는 ‘영혼의 살인’이라고 말해지듯이 피해자의 존엄을 매우 짓밟는 행위로 그 심신에 장기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범율의 높고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절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고, 성범죄의 재범방지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³⁶³⁾

▶▶ [표 4-3-4] 범죄유형별 2년 이내 재입자 및 재입율

(단위: 명, %)

출소 연도	각성제단속법 위반		성범죄 ³⁶⁴⁾		상해 ³⁶⁵⁾ ·폭행		절도	
	출소 수형자	2년 이내 재입자 ³⁶⁶⁾	출소 수형자	2년 이내 재입자	출소 수형자	2년 이내 재입자	출소 수형자	2년 이내 재입자
2016	6,144	1,149 (18.7)	674	54 (8.0)	1,238	199 (16.1)	7,608	1,695 (22.3)
2017	6,134	1,061 (17.3)	643	53 (8.2)	1,065	164 (15.4)	7,265	1,663 (22.9)

360) 2년 이내 재입자는 각 년도 출소수형자 중 출소해를 1년째로 하고, 2년째(다음 해) 말까지 재입소한 자의 인원을 말한다.

361)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0면.

362)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2면.

363)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면.

출소 연도	각성제단속법 위반		성범죄 ³⁶⁴⁾		상해 ³⁶⁵⁾ ·폭행		절도	
	출소 수형자	2년 이내 재 입자 ³⁶⁶⁾	출소 수형자	2년 이내 재입자	출소 수형자	2년 이내 재입자	출소 수형자	2년 이내 재입자
2018	5,982	957 (16.0)	653	55 (8.4)	1,057	176 (16.7)	6,770	1,477 (21.8)
2019	5,367	846 (15.8)	630	40 (6.3)	955	146 (15.3)	6,663	1,450 (21.8)
2020	5,008	776 (15.5)	536	27 (5.0)	943	116 (12.3)	6,441	1,290 (20.0)

출처 :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0면.

2) 특성별(고령, 여성)³⁶⁷⁾

신수형자 중 고령자와 장애를 가진 자의 비율은 증가경향에 있다. 또한, 고령자의 2년 이내 재입률은 최근 5년간 20.0% 전후로 추이하고 있으며, 출소자 전체(2016년 출소자 17.3%, 2020년 출소자 15.1%)와 비교하여 일관하여 높고 지적장애를 가진 수형자는 재입자 전체와 비교하면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일관해서 높고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도 비교적 짧으며 형사시설에 입소횟수도 높은 경향이 있다.³⁶⁸⁾

형사시설에서의 각종 지도는 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성을 염두에 두고 그 대책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여성수형자는 남성수형자와 비교하면 죄명이 각성제위반인 자, 고령자(65세 이상), 정신장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의 비율이 높은 등 특유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최근에는 여성수형자 등의 특유한 과제에 착안한 지도·지원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³⁶⁹⁾

364) 성범죄단 강제성교 등, 강간, 강제외설(모두 동 치사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65) 상해란 상해치사를 포함한다.

366) 2년 이내 재입자는 각연도 출소수형자 중 출소년을 1년째로 하고, 2년째(다음 해) 연말까지 재입소한 자의 인원을 말한다.

367)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0면.

368) 법무성통합연구소 연구보고 52, 지적장애를 가진 범죄자의 실태와 처우에 따름(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16면).

369)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22면.

▶▶▶ [표 4-3-5] 고령자와 여성 출소 수형자의 2년 이내 재입자 및 재입율

(단위: 명, %)

출소 연도	고령(65세 이상)		여성	
	출소 수형자	2년 이내 재입자	출소 수형자	2년 이내 재입자
2016	2,990	617(20.6)	2,196	312(14.2)
2017	2,910	650(22.3)	2,195	260(11.8)
2018	2,781	566(20.4)	2,046	239(11.7)
2019	2,762	549(19.9)	1,886	214(11.3)
2020	2,692	557(20.7)	1,892	208(11.0)

1. 전형 출소후 범죄로 재입소한 자로 전형 출소사유가 만기석방 또는 가석방자를 계상함
 2. 특성별(고령) 연령에 대해서는 전형 출소시 연령에 의한 재입자의 전형 출소시 연령은 재입소시 연령 및 전형 출소년부터 산출한 추계치임
 3. ()내는 각 연도 출소수형자 수에서 차지하는 2년 이내 재입자 수의 비율이다
- 출처 :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0면.

3. 출소 전 사회복귀 지원

가. 근거 법령

1) 형사수용시설법

형사수용시설법은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법으로 교정처우와 관련하여 작업(제92조-제102조), 각종지도(제103조-제105조), 외출 및 외박(제106조-제109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통근작업(제96조), 개선지도(제103조)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개선지도와 관련하여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에 대해 범죄의 책임을 자각시키고, 건강한 심신을 배양하도록 하며 또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및 생활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제103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시설내에서 처우의 목적이 출소후 재범방지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2) 재범방지 등 추진에 관한 법률

2016년 법률 제104호로 「재범방지 등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범방지 등에 관한 시책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확하

게 하는 한편, 재범방지 등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범방지추진법의 기본이념은 범죄를 한 자 등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다시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 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를 한 자 등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시설에서의 적절한 수용 및 처우를 위한 시책과 직업 및 주거의 확보에 관련된 지원을 포함하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면서 관계행정기관의 상호 밀접한 연계하에 총합적으로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3조). 그리고 재범방지 등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제4조), 재범방지추진계획(제7조), 법제상의 조치 등(제9조) 등을 정하고 있다.

3)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2013년 법률 제105호)은 일반 기업 등에의 취업이 곤란한 범죄를 한 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이 가능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취업준비 지원사업과 취업훈련사업에 의해 개개의 상태상에 맞는 개별지원을 하고 있다.

나. 수형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준비

1) 담당조직 및 인력

가) 교정국 등

법무성 교정국 보안과내 작업계, 교정관구 제2부, 각 시설 처우부에는 작업담당 수석교정처우관을 두고 있다. 작업담당 수석교정처우관은 작업기획, 입안 및 지도, 직업훈련, 작업에 관한 시설 및 물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나) 취업지원스텝

법무성은 교정시설에서 취업지원체제의 충실을 위해 2006년부터 비상근 직원인 취업지원스텝³⁷⁰⁾을 배치하고, 2019년부터는 상근직원인 취업지원 전문관³⁷¹⁾을 배치

370) 취업지원 스텝이란 캐리어 컨설팅 등의 전문성을 가진 비상근 직원. 수형자 등에 대한 면접지

하고 있는 외에 2022년부터는 취업지원에 필요한 통괄교정처우관(취업지원담당)³⁷²⁾을 새롭게 배치하였다.

2020년부터는 취업확보 및 직장정착에 곤란을 가지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 교정관서(여기서는 교정관구 및 형사시설을 말한다.) 및 갱생보호관서(지방갱생보호위원회 및 보호관찰소는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연계하여 추적조사에 근거한 교정처우, 생활환경의 조정 및 취업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포괄적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³⁷³⁾

다) 교정취업지원정보센터(코레워크)

법무성은 전국 8개 교정관구에 교정취업지원정보실³⁷⁴⁾(통칭 ‘코레워크’)를 설치하고 각 교정관구가 관할하는 지역의 고용정세 등에 따른 보다 상세한 지원체제 등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

코레워크에서는 수형자 등의 귀주예정지³⁷⁵⁾와 취득자격 등이 정보를 일괄관리하여 출소자 등의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상담에 응하고, 사업자의 수요에 적합한 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을 소개하는 등을 하고 있다. 2021년에는 사업자로부터의 상담수는 2,908건(전년도 1,715건), 채용내정건수는 289건(전년도 118건)이었다.³⁷⁶⁾

도 외에 할로워크와 사업주와의 연락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4월 현재 형사시설 75청(전년 76청)에 배치되어 있다(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4면).

371) 취업지원 전문관은 캐리어 컨설팅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근직원이다. 취업지원 대상자 중 특히 배려를 필요로 하는 수형자 등에 대한 면접·지도 외에 취업지원 스텝 등에 대한 조언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4월 현재 형사시설 18청(전년 13청)에 배치되어 있다(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4면).

372) 통괄교정처우관(취업지원담당)은 형사시설 내에서 취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직원이다. 취업지원스텝과 취업지원 전문관을 지도·감독하는 외에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연락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에는 형사시설 12청에 배치되어 있다(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4면).

373) 2022년 4월 현재 사포로형무소 카와고에소년형무소, 나고야형무소, 카고가와형무소 및 후쿠오카형무소의 5곳을 실시청으로 지정하고 있다(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4면).

374) 코레워크 관계자료는 https://www.moj.go.jp/KYOUSEI/CORRE-WORK/pdf/CORRE-WORK_pamphlet.pdf. 2023. 11. 1. 최종검색)

375) 귀주예정지란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가 석방된 후에 거주할 예정주거의 소재지를 말한다.

376)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70면.

라) 취업지원팀

법무성 및 후생노동성은 보호관찰관, 공공직업안정소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취업지원팀을 설치하고 장애인, 생활곤란자도 포함하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공공직업안정소 직원이 ‘취업지원강화 교정시설’로 지정된 형사시설에 상담원으로 주재하여 지원을 실시하는 대책도 개시하고 있다. 이 대책에서는 형사시설에 주재하고 있는 공공직업안정소 직원이 수형자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친 직업상담, 직업소개 등을 실시하는 한편, 수형자 본인의 귀주예정지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직업안정소와도 연계하는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심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2022년 형사시설 35개소).³⁷⁷⁾

2)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가) 형무작업

형무작업은 수형자의 개선갱생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정처우의 한 기동으로 수형자에게 규칙바른 노동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의욕을 양성하며, 규칙있는 생활태도 및 공동생활에서의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도록 하는 한편 직업적 지식 및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형무작업은 전국 76의 형사시설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각자의 적성 등에 따라 목공, 인쇄, 양재, 금속, 가죽공 등 각종 업종에 지정되어 취업하고 있다. 형무작업의 종류는 생산작업, 사회공헌작업, 자영작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공헌작업은 노무를 제공하는 작업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수형자가 자각함으로써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형사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교정국장이 인가한 작업이다.³⁷⁸⁾

법무성은 2020년부터 후쭈(府中)형무소에서 고령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나 심신질환 등을 가지는 자에 대해 작업요법사 등 전문적 평가와 어드바이스를 얻어

377)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72면.

378) 法務省矯正局, 矯正の現状, 2017년 12월, 41면.

가면서 신체기능과 인지장애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단계적으로 일반적인 생산작업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복귀를 위한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기능향상작업을 시행개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국 10곳에서 실시하고 있다.³⁷⁹⁾

그리고 지적능력에 제약이 있거나 또는 집중력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취업이 곤란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교정시설 재소 중에 사회복귀에 필요한 인지기능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취업이나 직장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9년부터 히로시마(廣島)대학과 연계하여 작업요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히로시마형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³⁸⁰⁾

나) 직업훈련

법무성은 형사시설에서 형무작업의 일환으로 수형자에게 직업에 관한 면허와 자격을 취득시키거나 또는 직업상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건설기계과, 개호복지과, 용접과, 비즈니스스킬과 등 합계 56과목(전년도 53과목)의 직업훈련이 실시되었으며 11,440명(전년도 11,827명)이 수강하였다. 그 중 용접기능자, 자동차정비사, 개호직원실무자연수수수료 등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자는 연인원 6,413명(전년도 6,249명)이었다.³⁸¹⁾ 또한, 직업훈련이 출소 후 취업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유효구인배율과 기업으로부터의 수형자 고용에 관련한 상담견수, 내정율, 충족율을 고려하면서 사회의 수요에 따른 훈련과목 등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 이어 건설·토목에 관련한 직업훈련을 일부 집약·종합하고 동일시설에서 보다 폭넓은 분야의 자격을 습득시키는 등 훈련내용의 보다 충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 특별개선티도

특별개선티도란 개선갱생과 원활한 사회복귀에 지장을 가져오는 수형자의 개별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도를 말한다. 특별개선티도는 약물의존이탈지도, 폭력단이탈지도, 성범죄재범방지지도, 피해자의 시점을 반영한 교육, 교통안전지도, 취

379)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0면.

380)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0면.

381)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6-67면.

업지원지도가 있다.³⁸²⁾

그중에서 형사시설에서는 수형자에 대해 특별개선지도로서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 기술과 매너를 습득시키는 동시에 출소 후 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지도를 실시하고 있다.³⁸³⁾ 2021년 수강개시인원은 2,900명(전년도 2,952명)이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수형자에게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갱생,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원청소작업 등 사회공헌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형사시설 31청(전년도 25청)이 45개소(전년도 26개소)의 사업주체와 협정을 체결하여 실시하였다.³⁸⁴⁾

한편, 형사시설에서는 수형자 등의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취업의욕을 환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협력고용주 등의 출소자 고용경험이 있는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에 관한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라) 출소자 등 종합적 취업지원대책

법무성 및 후생노동성은 2006년도부터 형무소 출소자 등이 취업의 확보를 위해 형무소출소자 등 종합적 지원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활동은 교정시설 재소자에 대해서는 공공직업안정소와 교정시설이 연계하여 본인의 희망과 적성 등에 따라 직업 상담, 직업소개, 사업주와의 채용면접 및 직업강연 등을 실시하는 등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공직업안정소와 보호관찰소가 연계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취업지원의 방법을 검토한 가운데 직업상담·직업소개를 하는 것이다. 2021년도에는 합계 6,221명(전년도 6,947명)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였고 합계 3,130건(전년도 3,194명)의 취직에 연결되었다.³⁸⁵⁾

마) 취·창업교육 및 지원

382) 林眞琴, 北村篤, 名取俊也 저, 안성훈, 금융명 책임번역, 축조해설 일본행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86-490면.

383) 취업지원지도의 목표는 사회복귀후에 직장에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일을 오랫동안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직장에 적응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양식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한편 직장 등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예정한 대응의 구상, 취업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 및 기능 등을 습득시키는 것이다(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4면).

384)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4면.

385)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9면.

2018년도부터 이미지와 실제 취업환경과의 괴리를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출소후 취업지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형사시설 재소 중 내정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업종에서의 취업을 체험하는 직장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감염이 확대한 2021년도에는 1청에서 1명(전년도 2청 2년, 전전년도 13청 35명)이 직장체험을 실시하는 데 그쳤다.

바) 가족지원, 경제지원, 상담 및 치료

법무성은 형사시설에서 수형자의 개선갱생과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우며 되도록 수형자와 친족 그리고 협력고용주와의 외부교통(접견, 편지수발 및 전화 등에 의한 의사연락)의 적절한 운용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교정시설 재소자 중 장애 등으로 취업이 곤란한 자에 대해 사회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리플렛을 배포하고 있다.³⁸⁶⁾

후생노동성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범죄를 한 자가 근로의욕과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취업이행지원사업, 취업계속지원 A형사업, 취업계속지원 B형사업, 취업정착지원사업에 활동하고 있다.³⁸⁷⁾

그중 장애복지서비스 사무소가 교정시설 출소자와 의료관찰법에 근거한 통원의료 이용자 등인 장애자를 인수하는 데는 ① 매우 세심한 병상관리, ② 다른 사람과의 교류장면에서의 배려, ③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등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지원 특별가산’에서 훈련계, 취업계서비스(취업정착지원사업을 제외한다.) 사업소가 정신보건복지사 등의 배치에 따라 교정시설 출소자 등인 장애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 또는 병원 등과 연계에 따라 정신보건복지사 등이 사업소를 방문하여 교정시설 출소자 등인 장애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진료보수상 평가하는 것으로 인수의 축진을 도모하고 있다.³⁸⁸⁾

386) 2021년에는 2,257부(전년도 3,885부) 배포.

387)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0면. 장애인 종합지원법의 취업관계 장애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요는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0면 참조.

388)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0면.

▶▶▶ [표 4-3-6] 형사시설의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복지전문관 배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회복지사	70	69	69	69	68
정신보건복지사	8	8	8	8	8
복지전문관	48	56	58	58	57

※ 형사시설은 PFI방법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출처 :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0면.

나아가 복지사무소가 설치된 지방공공단체의 임의사업인 취업준비지원사업에 대해 그 실시를 노력의무로 하는 외에 대상자의 연령요건을 폐지한 65세 이상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하는 등에 의해 다양화한 취업지원요구를 반영한 사업의 실시를 도모하고 있다.³⁸⁹⁾

사) 개방처우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 석방 후 주거 또는 취업지 확보 등을 위해 인수인과 고용주 등을 방문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때는 외출 또는 외박을 허가하였다.³⁹⁰⁾ 게다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가 있는 때는 형사시설 밖에서 민간기업의 사업소 등에 통근시켜 작업을 하도록 하는 외부통근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1년말 시점에 17청 21개소의 목공, 금속, 농업 등의 외부사업소가 있다.³⁹¹⁾

특히 개방교정시설 4곳을 운영하고 있다. 개방교정시설이란 수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또는 조치를 일부 설치하지 않거나 강구하지 않는 형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것이다.³⁹²⁾ 개방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에 대한 강한 신뢰를 전제로 하여 일반 사회의 생활에 가능한 한 가까운 처우가 실시되어 있으며, 일반 형사시설과는 다른 처우를 통해 수형자의 자발성·자율성을 함양하고, 사회 적응을 시키며,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³⁹³⁾ 현재 이치하라(市

389)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0면.

390) 2021년도에는 외출 19건(전년도 20건), 외박 0건(전년도 0건)(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7면).

391)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7면.

392) 형사수용시설법 제88조 제2항

393) 형사수용시설법 제30조

原)형무소, 마쓰야마(松本)형무소 오오이(大井)작업장, 오노미찌(尾道)형무지소 아리이(有井)작업장, 아바시리(網徒)형무소 후타미가오까(二見ヶ岡) 농장 등 4개의 개방처우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³⁹⁴⁾

아) 중간처우

중간처우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외출·외박제도와 외부통근작업이다.

외부통근작업은 형사시설의 직원이 계호를 하지 않고 수형자의 자주적인 행동규제를 신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수형자의 자율심과 책임감 함양,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한다. 이와 더불어 형사시설 내 작업에서는 취득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일반사회의 취업형태를 통해 정상적인 근로생활의 의의와 가치를 수형자에게 충분히 느끼게 하고, 사회인으로서 중요한 작업집단 내에 있는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얻게 하여 일반사회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효과가 있다.³⁹⁵⁾ 현재 외부통근작업과 관련하여 구외작업으로 형사시설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구외작업장에서 실시하는 형태와 민간의 사업소에 통근이나 숙박시키면서 하는 형태가 있다.³⁹⁶⁾

외출·외박제도는 하루 가운데 정해진 시간 내에 수형자가 형사시설 직원의 동행없이 시설 밖에 나가는 외출제와 7일간을 한도로 일정한 기간 수형자가 형사시설 직원의 동행없이 외박하는 것을 인정하는 외박제를 운용하고 있다.³⁹⁷⁾

외부통근작업 및 외출·외박의 운용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는 형사시설의 장이 외부통근작업 및 외출·외박의 조건으로 수형자에게 GPS기기를 휴대 또는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형사수용칙 제57조의2, 제65조의2).³⁹⁸⁾

394) 일본의 개방교정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수진·권창모·오영근,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05-422면 참조.

395) 林眞琴, 北村篤, 名取俊也 저, 안성훈, 금용명 책임번역, 축조해설 일본행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01면.

396) 일본의 개방교정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수진·권창모·오영근,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05-422면 참조.

397) 일본의 개방교정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수진·권창모·오영근,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01~405면 참조.

398) 川出敏裕, 金光旭, 刑事政策[第2版], 成文堂, 2018년 5월 1일, 188면.

자) 기타

고령·장애 등의 이유로 원활한 사회복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해 첫째, 기본적 생활능력, 사회복귀제도에 관한 지식, 그 밖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및 능력을 몸에 익히게 하는 것과 둘째, 출소 후 필요에 따라 복지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보내기 위한 동기부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자는 특별조정 등의 복지적 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현재 복지적 지원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밖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함으로써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예상되는 자이다. 실시방법은 그룹워크, 역할연기, 시청각 교재, 강의 등이며 실시횟수는 1단위 60분의 총 18단위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다.³⁹⁹⁾

법무성은 코레워크에서 형무소 출소자 등의 고용에 관심이 있는 기업에 대해 형무소출소자 등의 고용에 관한 제도 등에 관해 설명하는 고용지원세미나와 교정시설 견학을 세트로 한 스터디투어를 개최하는 등 형무소출소자 등 고용에 관한 작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2021년에는 2,036건(전년도 2,630건)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⁴⁰⁰⁾

한편, 법무성은 2015년부터 법무성이 발주하는 교정시설의 소규모공사의 조달에 대해 협력고용주로서의 형무소출소자 등의 고용실적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방식에 의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갱생보호관서가 소액의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견적을 요구하는 사업자의 선정에 있어 당해 계약조건에 적합한 협력고용주를 포함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그 결과 갱생보호관서가 발주한 공공조달에 대해 협력고용주가 수주한 건수는 2021년도는 28건이었다. 또한, 2021년 12월말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중 171(전년도 159)의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실사를 할 때 68(전년 64)의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종합가격낙찰방식의 평가 시 각각 협력고용주로서의 형무소 출소자 등의 고용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다.⁴⁰¹⁾

그리고 형사시설에서 출소후의 사회생활에 즉시 필요한 지식의 부여 등을 목적으로

399)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91면.

400)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73면.

401)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77면.

강연과 개별면접 등에 의한 석방전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적당한 귀주지를 확보할 수 없는 등 석방 후의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 예상되는 만기석방자에 대해서는 형사시설에 배치된 복지전문관이나 비상근 사회복지사 등이 개별면접을 실시하는 등 수형자 본인의 니즈를 파악하면서 갱생긴급보호⁴⁰²⁾ 제도나 사회보장 등의 사회의 각종 절차에 관한 지식을 부여하고 필요한 지원에 연결하기 위한 작용을 하고 있다.

3) 구체적인 지원현황

가) 형사시설에서의 특별개선지도

형사시설에서는 입소 시부터 출소 시까지 범죄 등에 따라 일반개선지도와 특별개선지도가 실시되고 있다. 일반개선지도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자각시키고, 건강한 심신을 배양하며, 사회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생활태도를 습득시키는 지도를 말한다. 특별개선지도는 개선갱생과 원활한 사회복귀에 지장을 초래한 수형자의 개별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도로 약물의존이탈지도, 폭력단이탈지도, 성범죄재범방지지도, 피해자의 시점을 반영한 지도, 교통안전지도, 취업지원지도의 6종류가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된 특별개선지도 수강개시인원은 아래와 같다.⁴⁰³⁾

402) 갱생긴급보호란 갱생보호법(2007년 법률 제88호) 제85조에 따라 보호관찰소가 만기석방자, 보호관찰이 딸리지 아니하는 전부집행유예자 및 일부집행유예자, 집행유예자 등에 대해 석방 시부터 원조와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지원된 원조와 보호만으로는 개선갱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자의 신청에 따라 식사·의류·여비 등을 급여하고, 숙박장소 등의 제공을 갱생보호시설 등에 위탁하거나 생활지도·생활환경의 조정 등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상의 절차에 의한 신체구속을 벗어난 후 6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추가로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나아가 2022년 6월에 성립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2년 법률 제67호)에 의한 개정후의 갱생보호법에서는 갱생긴급보호 대상자에게 처분유보로 석방된 자 중 검찰관이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추가되었다. 또한, 갱생긴급보호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형사상 절차 또는 보호처분에 의한 신체구속이 해제된 후 6월의 범위내라고 하는 원칙적인 기간을 추가하고, 갱생긴급보호 조치 중 금품의 급여 또는 대여 및 숙박장소의 제공에 대해서는 추가로 6월,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1년6월(통산 2년)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나아가 교정시설 수용중의 단계에서부터 갱생긴급보호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서는 2023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8면).

403)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144면.

[표 4-3-7] 형사시설에서의 특별개선지도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약물의존이탈지도	10,989	9,728	8,751	7,707	7,493
폭력단이탈지도	553	694	557	551	383
성범죄재범방지지도	504	797	563	424	433
피해자의 시점반영지도	804	793	696	538	468
교통안전지도	1,703	1,863	1,804	1,659	1,583
취업지원지도	3,638	3,526	3,664	2,952	2,900

출처 :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144면.

나) 종합적 취업지원대책의 대상자 중 취업한 자

형무소출소자 등 종합적 취업지원대책에서는 출소수형자 수가 최근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수의 지원 대상자를 계속 확보하고 있다. 대상자 가운데 취업한 자의 수(취직건수)는 최근 증가 경향에 있었지만 코로나19가 확대한 2020년도 이후는 감소하였고, 2021년도는 3,130건이었다. 한편, 취직한 자의 비율은 2021년은 50.3%로 전년도(46.0%) 보다도 4.3포인트 상승하였다.⁴⁰⁴⁾

▶▶ [표 4-3-8] 종합적 취업지원대책의 대상자 중 취업자 수 및 비율

(단위: 명, %)

연도	지원대상 ⁴⁰⁵⁾	교정시설 재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	취직 건수			비율 ⁴⁰⁶⁾
					교정시설 재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	
2017	7,794	4,539	3,255	3,152	1,029	2,123	40.4
2018	7,690	4,593	3,097	3,521	1,264	2,257	45.8
2019	7,411	4,355	3,056	3,722	1,498	2,224	50.2
2020	6,947	4,056	2,891	3,194	1,156	2,038	46.0
2021	6,221	3,745	2,476	3,130	1,167	1,963	50.3

출처 :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2면.

404)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2면.

405) 지원대상자 수란 교정시설 또는 보호관찰소로부터 할로워크에 대해 협력의뢰가 행해지고, 지원을 개시한 수를 계산한 것이다.

406) 비율이란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직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다) 지방재범방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

재범방지추진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한 지방 재범방지추진계획을 수립한 지방공공단체⁴⁰⁷⁾에 대해서는 재범방지추진계획 가속화 플랜(2020년 12월 23일 범죄대책각료회의 결정)에서 2021년도말까지 100 이상으로 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바, 2021년 4월에 188단체가 되어 당해 목표를 달성하였다. 2021년 이후도 증가하고 있고, 2022년 4월 1일 현재 광역자치단체 47단체, 지정도시 18단체, 그 밖의 기초자치단체(특별구를 포함한다.) 306단체로 합계 371단체가 되었다.⁴⁰⁸⁾

▶▶ [표 4-3-9] 지방재범방지추진계획 수립 지방공공단체

(단위: 명, %)

연도	수립 지방공공단체 수(수립 비율)		
	도도부현	지정도시	그 밖의 시정촌(특별구 포함)
2018	1/47	0/20	0/1,727
2019	15/47	0/20	4/1,727
2020	31/47	6/20	32/1,727
2021	42/47	16/20	130/1,727
2022	47/47	18/20	306/1,727

출처 :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1면.

다. 평가

일본은 형사시설에 수용시부터 출소 후 사회정착을 위해 각종 처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출소자 보호와 관련된 국가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출소자의 재범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주지 확보와 취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위해 형사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출소자의 사회복귀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와 특성에 대한 출소자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407) 지방재범방지추진계획을 수립한 지방공공단체에 관한 최신의 정보는 '지방재범방지 추진계획', URL : https://www.moj.go.jp/hisho/saihanboushi/hisho04_00022.html, 2023.11.1. 최종검색).

408)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1면.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출소 후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마약 등 약물범죄자, 여성범죄자, 소년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니즈에 맞는 실효적인 지원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출소자의 사회정착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4.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

가. 근거 법령

1) 갱생보호법

2000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자에 의한 중대범죄가 잇달았기 때문에 보호관찰의 방법에 대한 비판이 높아져 2005년 7월에 ‘갱생보호 방법을 생각하는 전문가회의’가 구성되었으며, 다음 해 6월에 동 회의에서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을 정리한 보고서⁴⁰⁹⁾가 공표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2006년 집행유예자 보호관찰법의 일부개정을 거쳐, 2007년에는 집행유예자 보호관찰법과 범죄자 예방갱생법을 정리·통합하였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정리 및 충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환경정비의 충실, 가석방 심리에의 피해자 관여 등을 도모한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2013년 형법 등의 일부개정에 의해 형의 일부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는 등과 갱생보호법의 개정에 의해 사회공헌활동이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도입되었다.⁴¹⁰⁾

2) 재범방지 등 추진에 관한 법률

재범방지추진법은 갱생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는 범죄를 한 자 등의 숙박장소 확보 및 개선갱생에 도움이 되도록 갱생보호시설 정비 및 운영에 관해 재정상 조치,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원조를 위해 국가는 범죄를 한 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자립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곤란을 가지는 자 및 약물 등에 대한 의존이 있는 자 등에

409) 법무성 보호국, “갱생보호제도 개혁의 제언 - 연전·안심하는 국가만들기, 지역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갱생보호의 본연의 모습을 생각하는 유식자 회의 관계자료집, 부록, 2007년 8월 29일.

410) 川出敏裕, 金光旭. 刑事政策[第2版], 成文堂, 2018년 5월 1일, 242-243면.

대해 심신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료, 보건, 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는 관계기관의 체제정비 및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당해 관계기관과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및 민간 단체와의 연계의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또한 재범방지 관계시설의 정비를 위해 국가는 재범방지 관계시설⁴¹¹⁾이 재범방지 등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재범방기관계시설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제19조), 국가는 재범방지 등에 관한 시책의 효과적인 실시에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이 보유하는 재범방지 등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공유하고, 재범방지 등에 관한 시책의 실시상황 및 그 효과를 점검하고, 범죄를 한 자 등의 재범방지 등을 도모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처우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검토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제20조).

나. 공공기관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1) 담당기관

가)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전국 50개소의 지방재판소의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 외에 33개소의 지역에 주재관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소관사무는 보호관찰 실시, 범죄예방을 위한 여론조성 및 사회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활동촉진, 생활환경 조정, 갱생긴급보호 실시, 의료관찰 실시 등이다(갱생보호법 제29조).

보호관찰소에서는 수형자 등의 출소 후 생활환경 조정의 일환으로 수형자 등 친족에 대해 수형자 등의 개선갱생을 돕는 것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동시에 상담에 응하거나 지원기관의 정보제공을 하는 등 필요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약물의존이 있는 수형자 등의 가족에 대해서는 약물의존에 대한 지식, 본인과의 접촉방법, 다른 관계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지원에는 어떻게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조언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인수인·가족회⁴¹²⁾를 개최하고 있다. 2021년에 약물의존에

411) 교정시설, 그 밖에 재범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재범방지추진법 제17조).

412) 보호관찰소는 규제약물 등에 대한 의존이 있는 생활환경조정대상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관한 정보제공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외에 가족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한 개별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체조치를 강구하여 인수인·가족회 89회(전년도 99회) 실시, 566명(전년도 492명)의 인수인과 가족이 참가하였다.⁴¹³⁾

보호관찰소에서는 형무소 출소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정시설에서의 직업훈련의 충실에 도움이 되도록 지방경제단체·업계단체, 주요기업, 산업·고용에 관한 행정기관, 교정시설, 갱생보호관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무소출소자 등 취업지원추진협의회를 매년 주최하여 형무소출소자 등을 각 산업분야의 고용으로 연결시기 위한 시책과 일손부족 등의 산업분야로 보내는 대책 등에 대해 정보교환과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⁴¹⁴⁾

나) 중앙갱생보호위원회 및 지방갱생보호위원회

중앙갱생보호위원회는 법무성에 설치되어 있는 심사회로 첫째, 법무대신에 대한 사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감형, 형의 면제 또는 복권에 대해 신청, 둘째, 지방갱생보호 심사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 갱생보호법 및 행정불복심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소관사무로 하고 있다(갱생보호법 제4조).

지방갱생보호위원회는 전국 8곳의 고등재판소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다. 소관 사무는 가석방 허가와 취소, 보호관찰소 감독이다(갱생보호법 제16조).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서는 만기출소가 예상되는 수형자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보호관찰관에 의한 면접을 실시하고, 갱생긴급보호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 신청에의 동기부여를 하는 한편, 갱생긴급보호의 신청예정에 대해 보호관찰소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소에서 귀주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만기출소한 갱생긴급보호대상자에 대해 갱생보호시설 등에의 위탁을 하는 외에 필요에 따라 보건의료·복지관계기관 등의 지역지원 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등 일시적 거처의 제공과 지역사회 귀주지 확보를 위한 대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

인수인과 가족이 약물의존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약물의존 당사자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과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얻어 가족 등 자신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의료·보건·복지기관과 자조그룹 등과 연계하여 약물의존자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인수인·가족회를 실시하고 있다(법무성, 2022 재범방지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5면).

413)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5면.

414)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7면.

2021년에는 갇생보호시설 및 자립준비홈에 대해 2,388명(전년 2,383명)의 만기출소자 등에게 숙박장소 제공 등을 위탁하여 이러한 자의 일시적 거처를 확보하였다.⁴¹⁵⁾

다) 갇생보호시설

갇생보호시설은 주로 보호관찰소로부터 위탁을 받아 주거가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등의 이유로 즉시 자립하는 것이 곤란한 보호관찰대상자와 갇생긴급보호 대상자를 받아들여 숙박장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외에 사회복지기를 위한 취직원조와 생활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2022년 4월 현재, 전국에 103시설이 있고 갇생보호법인(갇생보호사업법(1995년 법률 제76호) 제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 갇생보호시설의 운영 등 갇생보호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갇생보호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법무대신의 인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에 의해 100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외에 사회복지법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및 일반사단법인으로 각각 1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 내역은 남성만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설이 88시설, 여성만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설이 7시설, 남녀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시설이 8시설로 되어 있다. 수용정원이 총계는 2,405명으로 남성 성인 1,900명과 소년 314명, 여성 성인 140명과 소년 51명이다.⁴¹⁶⁾

라) 공공직업안정소

보호관찰소와 공공직업안정소가 연계하여 구직활동의 노하우 등을 습득시키고 취직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미나’, 실제 직장과 사용숙소 등을 견학시키는 것에 의해 사업소의 이해의 촉진을 도모하는 ‘사무소 견학회’, 실제 직장환경과 업무를 체험시키는 ‘직장체험학습’, 보호관찰대상자 등을 시행적으로 고용한 협력고용주에 대해 최장 3개월간 월액 4만원(최대)을 지급하는 ‘트라이얼 고용’ 등의 지원메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세미나·사무소견학회 13회(전년도 17회), 직장체험학습 1회(전년도 2회)를 개최하고, 트라이얼 고용에 의해 71명(전년도 216명)이 채용되었다.⁴¹⁷⁾

415)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8면.

416)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5면.

417)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9면.

마)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고령 또는 장애에 의해 복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범죄자 등에 대해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및 지역의 복지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협력하면서 구속 중에서도 석방 후까지 일관된 상담지원을 실시하고, 사회복귀 및 지역생활에의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09년 후생노동성에 의해 '지역생활정착지원사업(현재는 지역생활정착촉진사업)'으로 사업화되었으며 원칙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⁴¹⁸⁾

2)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가) 귀주지 확보를 위한 신속한 조정

법무성은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수형자 등의 석방 후 생활환경 조정⁴¹⁹⁾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생활환경 조정에 대한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갱생보호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 후 초기단계에서부터 수형자에 대해 귀주지⁴²⁰⁾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을 한 가운데 보호관찰소에 대해 지도·조언·연락조정을 실시하고, 보호관찰소는 이것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와 민간복지원시설 등에서의 귀주조정도 포함하여 적절한 귀주지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서의 수형자 등에 대한 귀주지 등의 조정에 관한 면접조사가 4,829건(전년 4,201건)이 실시되었다. 또한, '재범방지추진계획가속화플랜'(2019년 12월 23일 범죄대책각료회의 결정)에서 생활환경의 조정의 충실강화와 가석방의 적극적 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명기하여 2020년부터는 전적으로 당해 조사 및 조정을 하는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보호관찰관을 전국 형사시설 11청⁴²¹⁾에 주재하도록 하여

418)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92면.

419) 생활환경의 조정이란 수형자 등의 출소후 귀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과 보호사가 인수인 등가 면접을 하는 등을 하여 귀주예정지의 상황을 조사하고 거주, 취업지 등이 개선갱생과 사회복귀에 적합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 이에 더해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서 조정이 유효하고 적절하게 실시되도록 보호관찰소에 대해 지도와 조언을 실시하는 외에 수용중인 자와의 면접 등에 의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결과에 기초하여 가석방 등 심리가 실시되는 외에 수형자 등의 가석방 후이 보호관찰이 실시된다(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4면).

420) 귀주지란 형사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자가 출소·출원 후 일정기간 생활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친조·지인집 외에 취업지의 가족사, 갱생보호시설과 자립준비홈, 그룹홈 등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다.

421)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보호관찰관이 주재하는 형사시설은 삿포로(삿포로형무지소 포함), 미야기, 후쿠오카, 요코하마, 나고야, 교토, 오사카, 코베, 히로시마, 다카마쓰 및 후쿠오카형무소(일

그 운용의 적극화를 도모하고 있다.⁴²²⁾

나) 갱생보호시설의 수용·처우기관의 충실

법무성은 출소 후 적당한 주거 등이 없는 형무소 출소자 등을 갱생보호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등 형무소 출소자 등의 거처 확보 활동을 하고 있다. 2021년 갱생보호시설에의 위탁실인원은 6,811명(전년도 7,206명)이었으며 그중 새롭게 위탁을 개시한 인원은 5,315명(전년도 5,791명)이었다. 또한, 1일 1인 단위로 한 연간 수용연인원은 542,407명(전년도 560,785명)으로 1인당 평균 재소기간은 79.6일(전년도 77.8일)이었다.⁴²³⁾

법무성은 형무소 출소자 등이 각각의 문제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갱생보호시설 중 일부를 고령·장애자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지정갱생보호시설과 약물의 존으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는 약물처우중점실시갱생보호시설을 지정하고 이러한 지정시설을 확대하는 등에 의해 갱생보호시설의 수용 및 처우기능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재범방지추진계획가속화플랜’(2019년 12월 23일 범죄대책각료회의의 결정)에서 2022년까지 만기석방자의 2년 이내 재입자 수를 2할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갱생보호시설에서의 만기석방자의 수용 촉진에 활동하는 동시에 만기석방자 등에 대한 상담지원 등의 충실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⁴²⁴⁾

다) 소셜 팜(social farm)과의 연계

법무성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창출 제공에 주안을 두고 비즈니스 전개를 도모하는 소위 ‘social farm’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2022년 5월말 현재 전국 169단체(전년 164단체)와 사이에 고용과 받아들임 등의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셜 팜과 보호관찰소와의 사이에 ‘소셜 팜 고용추진연합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이해를 깊게하는 동시에 일반취업과 복지적 지원과의 좁은 사이에 있는 자에의 취업지원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4면)

422)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4면.

423)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6면.

424)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5면.

도에는 2회(전년도 2회) 개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협력고용주 등록에 이해를 보이는 소셜 팜에 대해 협력고용주의 등록도 촉구하고 있다.⁴²⁵⁾

또한, 2021년도부터 일부 형사시설에서도 소셜 팜과의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 소셜 팜과 의견교환회를 개최하고 있고 실제로 소셜 팜으로부터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수형자 등의 사회복귀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자원을 발굴하거나 교정과 복지와의 쌍방이 가지고 있는 과제 해결에 이어지고 있다.

2019년 6월에 결정된 '농복연휴(農福連携)⁴²⁶⁾ 등 추진비전'에서 범죄를 한 자 등의 재기를 위한 활용의 확대가 보여지고 있는 점에서 법무성 및 농림수산업성이 연계하여 일반취업과 복지적 지원과의 좁은 사이에 있는 형무소출소자 등의 취업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3월에 경제단체, 농림수산업단체, 복지단체 그 밖의 관계단체, 지방공공단체, 관계부처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여 국민적 운동으로서 농복연계 등을 전개해 가기 위해 농복연계 등 응원컨소시엄을 설치하는 동시에 2021년부터는 농복연계에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를 표창하여, 전국에의 발신을 통해 가로전개를 도모하는 '노하우 어워드(Know-how Award)'를 실시하여 있다.⁴²⁷⁾

라) 갱생보호취업지원사업

법무성은 보호관찰소에서 2011년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2014년부터 갱생보호취업지원사업을 개시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25청(전년도 23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취업지원에 관한 노하우와 기업네트워크 등을 가지는 민간사업자가 보호관찰소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 노하우를 활용하여 형무소출소자 등의 취업지원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정시설 재소중부터 취업까지 끊임 없는 매우 상세한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취직활동지원' 및 취업계속에 필요한 달라붙는 형태의 지원을 협력고용주 및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쌍방이 하는 '직장정착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2021년에는 취직활동지원 2,006건(전년도 2,217건), 직장정착지원 1,176건(전년 1,167건)을 실시하였다.⁴²⁸⁾

425)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2면.

426) 농복연휴(農福連携)란 농업과 복지가 연계하여 장애인 등의 농업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농업 경영과 동시에 장애인 등의 자신과 사는 보람을 창출하고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2면).

427)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3면.

또한, 2012년 1월부터 2021년까지는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피해지역이었던 이와테현, 후쿠시마현의 본사업을 ‘갱생보호피해지역 취업지원대책 강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취업활동지원’ 및 ‘직장정착지원’에 더해 협력고용주의 개척과 협력고용주연수 실시 등을 하는 ‘고용기반정비’, 정주지가 원활하게 확보될 수 없는 것에 의해 취업확보에도 곤란을 가지고 있는 형무소출소자 등의 정주를 실현하는 ‘정주지원’ 활동도 실시하였다. 2021년에는 고용기반정비에 따라 79(전년 91)의 협력고용주를 새롭게 개척하여, 58명(전년 68명)에 정주지원을 실시하였다.⁴²⁹⁾

마) 종합적 취업지원대책

보호관찰소에서는 공공직업안정소와 연계하여 보호관찰대상자 중 취업체험이 부족한 자, 취업에 필요한 지식·기능이 몸에 베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형무소 출소자 등 종합적 취업지원대책에 의한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대상 소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직업인으로서 바람직한 근로관·직업관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실무경험학습을 실시하여 사회적·직업적 자립에 기초가 되는 능력과 태도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⁴³⁰⁾

그리고 형무소 출소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정시설에서의 직업훈련의 충실에 도움이 되도록 지방경제단체·업계단체, 주요기업, 산업·고용에 관한 행정기관, 교정시설, 갱생보호관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무소 출소자 등 취업지원추진협의회를 매년 주최하여 형무소 출소자 등을 각 산업분야의 고용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시책과 일손부족 등의 산업분야에로 보내는 대책 등에 대해 정보교환과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⁴³¹⁾

바) 이직한 자의 재취직지원

법무성은 보호관찰소에서 이직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면접지도 등에 의해 재취직을 촉구하는 등을 하고 있고, 특히 갱생보호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25청에서는 취직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관찰대상자

428)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71면

429)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71면

430)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5면.

431)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7면.

등에 대해 갱생보호취업지원사업소가 매우 세심한 취직활동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협력고용주들이 협력고용주 네트워크조직인 협력고용주회를 조직하여 정보교환을 해 가면서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고용에 활동하고 있는 점에서 동회와의 연계를 통해 이직자를 포함한 무직의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취직지원을 진행하고 있다.⁴³²⁾

사) 자립준비함의 확보 및 활용

법무성은 사회 속에 다양한 거처를 확보하는 대책으로 ‘긴급적 주거확보·자립지원 대책’을 실시하고 갱생보호시설 이외의 사전에 보호관찰소에 등록된 민간법인·단체 등에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숙박장소⁴³³⁾와 식사제공, 생활지원(자립 준비지원)을 위탁하고 있다. 2021년도 위탁 실인원은 1,863명(전년도 1,719명, 그중 새롭게 위탁을 개시한 인원은 1,474명(전년도 1,417명)), 1일당 1인을 단위로 한 연간 수용연인원은 129,198명(전년도 127,567명)으로 1인당 평균 재소기간은 69.3일(전년도 74.2일)이었다.⁴³⁴⁾

아) 주거 등 지원대책

법무성은 보호관찰대상자 등이 거주하는 등 공영주택 사업주체인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상담이 있는 때는 갱생보호관서에서 그 상담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는 한편, 신원보증제도⁴³⁵⁾의 활용사례에 대해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 등인 것을 알고 주거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계속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2017년 12월에 각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보호관찰대상자 등이 주택을

432)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79면.

433) 자립준비함이란 ‘긴급적 주거확보·자립지원대책’에 기초하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해 민간 법인·단체 등이 제공하는 숙박장소를 말한다. 2022년 4월 현재 등록사업자수는 473사업자이고, 그 내역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154사업자, 회사법인이 125사업자, 종교법인이 43사업자, 그 밖에 153사업자로 다양한 법인·단체가 등록되어 있다(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6면).

434)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6면.

435) 신원보증제이란 취직시 신원보증인을 확보할 수 없는 형무소출소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1년간 신원보증을 하고, 고용주에게 업무상 손해를 준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것에 대해 손해 등의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76면).

곤란하게 하는 상황과 지역 실정 등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공영주택에의 입주를 곤란하게 하고 있는 요건을 완하는 것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을 실시하고, 아울러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해 '현저하게 소득이 낮은 세대'로서 우선입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요청하는 등 공영주택에의 입주의 특별한 배려를 실시하고 있다. 법무성은 주택확보 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112호)에 따라 범죄를 한 자 등 가운데 동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택확보 요배려자⁴³⁶⁾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개별 사정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갱생보호시설 퇴소자의 주거확보의 관점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입주를 거절하지 않는 주거의 개척·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⁴³⁷⁾

3) 구체적 지원 현황(통계 및 사례)

가) 특별조사에 의해 복지서비스 등의 이용을 위한 조정

법무성은 교정시설에서 범죄를 한 자에 대해 복지서비스의 수요를 조기에 파악하여 원활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보건복지사를 비상근직원으로 하여 배치하는 외에 복지전문관(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또는 개호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상근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대규모 형사시설 8개소 및 여자형사시설 2시설 등 합계 10시설에서 인지증스크린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지증 등의 조기파악에 노력하고 있다.⁴³⁸⁾

특별조사에 의해 복지서비스 등의 이용을 위한 조정을 실시한 자의 수는 출 소수형자 수가 최근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거의 보합세로 추이하고 있고, 2021년에는 826명으로 전년도(767명) 보다도 증가하였다. 또한, 2021년의 내역(복수 해당 있음)을 보면 '고령'이 401명으로 약 반수를 차지하고 있다.⁴³⁹⁾

436) 주택확보 요배려자란 저소득자, 피해자, 고령자,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을 말한다.

437)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8면.

438)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90면.

439)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7면.

▶▶▶ [표 4-3-10] 특별조정 내역

(단위: 명)

연도	특별조정	종결인원 ⁴⁴⁰⁾			
		내역			
		고령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2017	809	437	117	225	252
2018	698	384	87	187	227
2019	775	398	106	199	317
2020	767	370	104	211	311
2021	826	401	90	235	373

※ 내역은 중복계산에 의한다.

출처 :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7면.

나) 약물사범 보호관찰대상자 중 치료·지원

약물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보건의료기관 등에 의한 치료·지원을 받은 자의 수 및 그 비율은 조사개시(2016년) 이후 증가·상승경향에 있었으나 2021년에는 각각 536명, 6.3%로 전년도(613명, 7.2%) 보다도 감소·저하하였다.⁴⁴¹⁾

▶▶▶ [표 4-3-11] 약물사범 보호관찰대상자 중 치료·지원자

(단위: 명, %)

연도	약물사범 보호관찰대상자 ⁴⁴²⁾	치료·지원을 받은 자
2017	7,569	393(5.2)
2018	7,717	527(6.8)
2019	8,096	566(7.0)
2020	8,549	613(7.2)
2021	8,501	536(6.3)

※ ()내는 약물사범 보호관찰대상자 가운데 정신보건복지센터, 보건소, 정신과의료기관 등이 실시하는 치료·지원을 받은 자의 비율이다.

출처 :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8면.

440) 종결인원은 소년을 포함하고, 특별조정의 희망취소 및 사망의 의한 것을 자를 포함한다.

441)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8면.

442) 약물사범 보호관찰대상자 수는 약물사범 보호관찰대상자로서 당해 년도 초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의 수와 당해 연도에 새롭게 보호관찰을 받게 된 자의 수를 계산한 것이다.

다) 갹생보호시설 및 자립준비홈에서 일시적 거주자

갹생보호시설 및 자립준비홈에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확보한 자의 수는 출소수형자 수가 최근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거의 보합세로 추이하고 있고, 2021년도는 각각 8,428명, 1,863명이었다.⁴⁴³⁾

▶▶ [표 4-3-12] 갹생보호시설 및 자립준비홈 거주자

(단위: 명, %)

연도	갹생보호시설	자립준비홈	계
2017	9,620	1,547(175)	11,167
2018	9,719	1,679(223)	11,398
2019	9,789	1,709(224)	11,498
2020	8,870	1,719(290)	10,589
2021	8,428	1,863(318)	10,291

※ ()내는 각연도 약물의존증rehabilitation시설(타르크 등 약물의존에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시설 가운데 자립준비홈에 등록되어 있는 것)에의 위탁인원 수(내수)이다.

출처 :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6면.

다. 민간기관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재범방지추진법은 사회내에서의 적절한 지도 및 지원을 위해 국가는 범죄를 한 자 등 가운데 사회 내에서 적절한 지도 및 원조를 받는 것이 재범방지 등에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교정시설에서의 처우를 경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교정시설에서의 처우에 계속하여 사회내에서 지도 및 원조를 조기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1) 담당기관

가) 독지면접위원

독지면접위원이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상담, 조언 및 지도 등을 실시하는 자원봉사자로 2021년 12월 현재 독지면접위원은

443)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6면.

1,387명(전년도 1,387명)이다.⁴⁴⁴⁾

나) 보호사

재범방지추진법에서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원조로 국가는 보호사회 및 협력고용주 그 밖에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재범방지 등에 관한 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상 또는 세제상의 조치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 보호사⁴⁴⁵⁾ 인원 및 보호사 충족율은 2017년 이후 감소·저하 경향에 있었으나 2022년에는 46,705명, 89.0%으로 전년도(46,358명, 88.3%)보다도 증가·상승하였다. 다만, 이것은 2021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정년제에 대한 특례⁴⁴⁶⁾에 따라 재임된 보호사 631명을 포함한 것이다.

법무성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보호사활동 인턴쉽⁴⁴⁷⁾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사회가 실시하는 자주연수나 범죄예방활동에 지역주민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보호사 활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실제 보호사 위탁으로 이어지는 등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⁴⁴⁸⁾

다) 교회사

교회사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희망에 따라 종교상 의식행사 및 교회를 실시하는 자원봉사자로, 2021년 12월 현재 교회사는 2,008명(전년도 1,925명)이다.⁴⁴⁹⁾

라) BBS회

444)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172면.

445) 보호사란 범죄를 한 자와 비행이 있는 소년의 재기를 지역에서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이다. 그 신분은 법무대신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비상근 국가공무원으로 보호관찰의 실시, 범죄예방활동 등 갇혀보호에 관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보호사 정수는 보호사법(1950년 법률 제204호)에 따라 52,500명을 넘지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0면).

446) 보호사의 정년제에 대한 특례란 지금까지 76세가 되기 전일까지 재임이 가능하였던 바, 2021년 4월 1일 이후 보호사 본인이 희망하면 78세가 되기 전일까지 재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0면).

447) 보호사활동 인턴쉽이란 지역주민 등의 보호사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보호사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보호사회가 지역주민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소속하는 사람들에게 보호사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156면).

448)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156면.

449)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173면.

BBS회란 Big Brothers and Sisters의 약칭으로 비행소년 등이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비행방지활동을 실시하는 청년자원봉사단체이다. 2022년 1월 회원수는 4,400명이다.⁴⁵⁰⁾

마) 갱생보호여성회

갱생보호여성회란 지역의 범죄예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범죄자·비행소년의 개선 갱생에 협력하는 여성자원봉사단체로 2022년 4월 회원수는 133,395명이다.⁴⁵¹⁾

바) 갱생보호서포트센터

갱생보호서포트센터는 보호사회 활동의 활성화와 지역네트워크 구축의 거점으로 2019년말까지 전국의 보호사회에 설치되었다. 동 센터는 지역공공단체와 연계하여 시청, 복지센터,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고, 보호사가 보호관찰대상자 등과의 면접 장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면접실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⁴⁵²⁾

사) 협력고용주

협력고용주란 보호관찰소에 등록하고 범죄를 한 자 등의 자립 및 사회복귀에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범죄를 한 자 등을 고용하거나 또는 고용하도록 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2021년에는 17청(전년도 18청)에서 총 20회(전년도 19회)의 강연을 실시하여 연인원 2,230명(전년도 2,364명)의 수형자 등이 수강하였다.⁴⁵³⁾

아) 갱생보호협회

보호사, 협력고용주, 갱생보호여성회, BBS회, 갱생보호법인 등 갱생보호에 협력하는 민간인·단체에 대해 조성, 연수회 실시, 표창 등을 실시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전국조직인 일본갱생보호협회와 각지방갱생보호위원회와 보호관찰소에 대응하는 형태로 갱생보호협회가 있다.⁴⁵⁴⁾

450)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116면.

451)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116면.

452)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158면.

453)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4~65면.

454)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166면.

2)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가) 범죄를 한 자 등에 관한 정보제공

법무성 및 검찰청은 민간협력자에 대해 범죄를 한 자 등에 대해 실시한 지도·지원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민간협력자가 실시하는 지원 등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등에 취급에 충분히 배려하면서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계속적으로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지도와 지원을 실시하는 보호사와 갱생보호시설직원, 자립준비함 직원 등에 대해 생활환경의 조정단계에서부터 보호관찰기간 동안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에 충분히 배려하면서 보호관찰대상자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⁴⁵⁵⁾

나) 직장정착 지원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이직과 트러블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적시에 적절하게 당해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면접지도 등을 실시하고, 취업한 자의 이직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갱생보호취업지원사업에서 '직장정착지원'을 실시하고 형무소출소자 등에 대해 취업후에도 계속적으로 방문·지도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취업한 지원대상자와 고용주에 대해 필요한 상담·조언 등을 실시하여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⁴⁵⁶⁾

다) 갱생보호시설 지역거점 기능 강화

갱생보호시설 퇴소자가 지역생활에 정착하기까지 계속적인 지원으로 생활상담과 약물의존회복훈련 실시를 갱생보호시설에 위탁하는 대처를 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갱생보호시설 퇴소자가 갱생보호시설에 와서 지원을 받는 받는 '팔로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위탁인원은 400명(전년도 208명), 연 인원 2,701명(전년도 1,239명)이다.⁴⁵⁷⁾

455)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173면.

456)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79면.

457)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167면.

라) 갱생보호시설에 의한 방문지원사업

갱생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해 계속적 지원을 통해 사회에서 고립되기 쉬운 퇴소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퇴소자의 갱생과 자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2021년 10월에 방문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대상자는 보호관찰대상자 또는 갱생긴급보호대상자로 시설을 퇴소하여 현재 시설에 수용보호되지 아니하는 자로 방문지원직원이 퇴소자의 자택을 방문하는 등으로 생활상담, 동행지원,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간 위탁실인원은 104명, 연인원 627명이다.⁴⁵⁸⁾

마) 기업 등 협력고용주에 대한 지원

보호관찰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지원사업자기구⁴⁵⁹⁾와 갱생보호관계자, 교정시설, 노동국, 공공직업안정소, 지방공공단체, 상공회의소 등 경제·산업단체 그 밖에 관계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협력고용주의 개척·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법무성 간부가 경제계에 대해 형무소 출소자 등의 취업시책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등 협력관계의 구축에 노력하였다. 이에 더해 보호관찰소와 갱생보호 취업지원사무소에서는 협력고용주모집 팸플렛 배포, 협력고용주 모집 포스터 게시⁴⁶⁰⁾, 사업소예의 개별방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협력고용주에 관련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기업 등에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고용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있다.⁴⁶¹⁾

이러한 활동에 의해 협력고용주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2021년 10월 현재

458)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167면, 169면.

459) 취업지원사업자 기구는 범죄를 한 자 등의 취업확보는 일부 선의의 독지가 만이 아니라 경제계 전체의 협력과 지원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사업자이 입장에서 안전안심의 사회만들기에 공헌하는 하는 법인을 말한다.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전국 취업지원사업자기구(전국기구)와 50의 도도부현 취업지원사업자기구(도도부현 기구)가 있다. 전국기구는 중앙경제 제단체(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전국상공회연합회,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대기업관계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도도부현기구 등에 대한 조성과 협의회 개최 등 전국적이 네트워크에서의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도도부현 기구는 협력고용주 등을 회원으로 가지고 보호관찰소 등의 관계기관과 보호사 등 민간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취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73면.).

460) 협력고용주 모집의 팸플렛과 포스터, https://www.moj.go.jp/hogo1/soumu/hogo02_00030.html, 2023.11.1. 최종검색)

461)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73면.

24,665사가 되었다. 또한, 보호관찰소에서 협력고용주를 등록하는 절차는 경찰청 및 후생노동성과 협의한 가운데 2018년 8월에 작성한 ‘협력고용주등록 등 요강’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다.⁴⁶²⁾

농림수산성은 2016년부터 농림어업의 관계단체 외에 개별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규 고용에 관한 보조사업의 설명회 등에서 협력고용주제도의 알림·등록요청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림어업관계의 협력고용주의 수는 2021년 10월 1일 현재 471사(전년도 460사)이다.⁴⁶³⁾

보호관찰소에서는 공공직업안정소, 취업지원사업자기구 등 관계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고용주모집 팸플릿 및 포스터를 활용한 홍보활동, 협력고용주에 관심이 있는 사업소예의 개별방문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협력고용주가 적은 업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협력고용주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 자립준비휴

법무성은 사회 속에 다양한 거처를 확보하는 대책으로 ‘긴급적 주거확보·자립지원 대책’을 실시하고 갱생보호시설 이외의 사전에 보호관찰소에 등록된 민간법인·단체 등에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숙박장소⁴⁶⁴⁾와 식사제공, 생활지원(자립준비지원)을 위탁하고 있다. 2021년도 위탁실인원은 1,863명(전년도 1,719명, 그중 새롭게 위탁을 개시한 인원은 1,474명(전년도 1,417명)), 1일당 1인을 단위로 한 연간 수용연인원은 129,198명(전년도 127,567명)으로 1인당 평균재소기간은 69.3일(전년도 74.2일)이었다.⁴⁶⁵⁾

462)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74면.

463)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75면.

464) 자립준비휴 : ‘긴급적 주거확보·자립지원대책’에 기초하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해 민간법인·단체 등이 제공하는 숙박장소를 ‘자립준비휴’이라 부른다. 2022년 4월 현재 등록사업자수는 473사업자이고, 그 내역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154사업자, 회사법인이 125사업자, 종교법인이 43사업자, 그 밖에 153사업자로 다양한 법인·단체가 등록되어 있다(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6면.)

465)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86면.

3) 구체적 지원 현황(통계 및 사례)

가) 보호사 확보

보호사 및 보호사 총족율은 2017년 이후 감소·저하 경향에 있었으나 2022년에는 46,705명, 89.0%으로 전년도(46,358명, 88.3%) 보다도 증가·상승하였다. 다만, 이것은 2021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정년제에 대한 특례⁴⁶⁶⁾에 따라 재임된 보호사 631명을 포함한 것이다.⁴⁶⁷⁾

▶▶▶ [표 4-3-13] 보호사 수 및 총족율

(단위: 명, %)

연도	보호사	총족율(%) ⁴⁶⁸⁾
2018	47,641	90.7
2019	47,245	90.0
2020	46,763	89.1
2021	46,358	88.3
2022	46,705	89.0

※ 매년 1월 1일 현재의 수치이다.

출처 :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60면.

나) 협력고용주 및 고용되어 있는 형무소 출소자

협력고용주 수는 최근 증가경향에 있으며 2021년 10월 1일 현재 24,665사이다. 실제로 형무소출소자 등을 고용하고 있는 협력고용주 수에 대해서는 ‘선언 : 범죄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범죄로 돌아가지 않게 한다’(2014년 12월 16일 범죄대책각료회의 결정)에서 2020년까지 약 1,500사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수치가 설정되어 있는 바, 2019년에 1,556사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코로나19의 감염이 확대한 2020년 이후는 감소경향에 있으며, 2021년은 1,208사로 전년(1,391사) 보다 감소하였다. 또한, 협력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형무소 출소자 등의 수에 대해서도 2020년 이후는 감소경향에 있고 2021년은 1,667명으로 전년(1,959명) 보다 감소하였다.⁴⁶⁹⁾

466) 보호사의 정년제에 대한 특례란 지금까지 76세가 되기 전일까지 재임이 가능하였던 바, 2021년 4월 1일 이후 보호사 본인이 희망하면 78세가 되기 전일까지 재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67)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60면.

468) 총족율은 정원(52,500명)에 대한 보호사 수의 비율이다.

▶▶▶ [표 4-3-14] 협력고용주 및 고용되어 있는 형무소 출소자

(단위: 명)

연도	협력고용주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협력고용주	고용되어 있는 형무소출소자 등 ⁴⁷⁰⁾
2017	20,704	887	1,465
2018	22,472	945	1,473
2019	23,316	1,556	2,231
2020	24,213	1,391	1,959
2021	24,665	1,208	1,667

※1. 2019년까지는 4월 1일 현재의 수치이다.

2. 2020년부터는 10월 1일 현재의 수치이다.

출처 :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3면

라. 평가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 갱생보호관계자에 너무 편향적이고 가석방 심리 등이 내부 사람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심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조관계자, 정신의학 전문가, 대학교수 등 갱생보호관 서 이외의 사람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⁷¹⁾

5. 요약 및 시사점

일본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의 특징은 첫째, 국가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분야에서 출소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 둘째, 범죄자가 재범을 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범죄와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가장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 셋째, 형사시설 입소시부터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진행하고 있는 점, 넷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기업과 민간단체의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한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재범방지 등 추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호)을 제정하여 법적·제

469)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3면.

470) ‘형무소출소자 수 등’은 소년원출원자 및 보호관찰대상자 등을 포함한다.

471) 川出敏裕, 金光旭. 刑事政策[第2版], 成文堂, 244면.

도적인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매년 『재범방지추진백서』을 발간하여 종단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즉 매우 효과적인 정책적, 행정적,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재범이 많은 약물사범, 성범죄에 대해 재범방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대책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약물사범과 관련하여 출소 전 형사시설에서의 약물의존이탈지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출소 후에는 보호관찰소의 약물남용방지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형사시설과 보호관찰소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약물의존을 가진 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의 충실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 의료·보건·복지기관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대상자에 관한 정보고류가 긴밀하게 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의 지도와 지원을 통해 약물사범에 대한 교화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시설과 보호관찰소에서 전문적 프로그램을 충실화하는 한편 출소자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게 파악하여 개개의 대상자의 상황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⁴⁷²⁾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배우자 폭행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성을 고려한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함께 생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예정한 가운데 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전문프로그램의 유형화·세분화를 진행한 결과 아동학대와 배우자 폭력에 대응한 지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자의 의향과 심정을 신중하게 확인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지도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⁴⁷³⁾

그리고 재범방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민간협력자, 협력고용주, 보호사에 대한 과제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472)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5~7면.

473)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14~15면.

의 과제는 첫째, 현행 재범방지추진계획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따른 대응이 실시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명시하는 것, 둘째, 재범방지시책은 복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창구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부서와 지역주민 등의 이해가 필요한 것,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재범방지시책을 기획입안하여 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통계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정보 등을 적절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무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개인정보에 유의하면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재검토가 요구되는 점 등이다.⁴⁷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범죄자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점이다.

2022년 4월 ‘재범방지추진계획등 검토위원회’는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첫째, 형무소 출소자 등이 지역사회내에서 고립되지 아니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개개의 대상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과제에 따른 ‘오랫동안 살아있는 지원’을 실시할 것, 둘째, ‘취업’과 ‘주거’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더하여 형무소 출소자 등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담거점과 민간협력자를 포함한 지역의 지원연계(네트워크)거점을 구축할 것,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협력자의 연계를 보다 강화할 것 등 세가지를 향후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재범방지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⁴⁷⁵⁾

2020년 교토에서 개최된 제14회 유엔범지방지형사사법회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어젠다’의 달성을 위한 범죄방지, 형사사법 및 법의 지배의 추진을 전체 테마로 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대책은 그 중요한 논점의 하나가 되었고 재범방지대책은 국제사회 전체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⁴⁷⁶⁾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우리나라는

474)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32~33면.

475) 일본 법무성, 2022 재범방지 추진백서, 2013년 1월 27일, 44면.

476) 일본 법무총합연구소에서는 영국, 한국 등 연구소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연구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이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를 초월한 공동연구를 착실하게 쌓아가는 것에 더해 장래에는 각국의 연

출소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통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일본의 재범방지를 위한 출소자 지원방안은 참고할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구자 등으로 구성되는 플랫폼의 설치가 바람직하다.(法務總合研究所, 再犯防止對策等に関する研究, 2019년 3월, 83면.

제4절 | 소결

1.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법률 마련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요국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각국은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미국의 Second Chance Act(SCA)와 Formerly Incarcerated Reenter Society Transformed Safely Transitioning Every Person Act(First Step Act; FSA), 독일의 재사회화법, 일본의 재범방지 등 추진에 관한 법률은 모두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법률이다.

이와 같이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된다면 현재 보호 관찰에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정시설 입소 시부터 출소자 사회복귀 준비

출소자의 사회복귀 준비는 교정시설 입소 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주요국은 출소자의 교정시설 입소단계부터 출소자 사회복귀 준비하도록 하고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정시설에 전문인력이 고용되어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범죄자의 교정시설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집행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능한 한 시설 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시설 출소자가 출소 시 겪게 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독일은 전환관리를 통해 교정시설 입소단계부터 교정시설에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인력과 함께 개인별로 적합한 처우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처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정단계에서부터 사회복귀 계획을 세우고 출소 준비를 시작한다면, 그만큼 사회복귀 효과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출소자는 사회에 발을 내딛을 때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즉, 재무회계 지원,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의료적 지원, 심리적 지원, 가족관계 회복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교정시설 입소단계부터 수형자의 출소 후의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교정시설 입소단계부터 개인별로 적합한 처우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 인력(사회복지사, 사회교육사, 채무상담사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도 형사 시설 입소 시부터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교정단계에서부터 교정시설에 출소자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가 상주한다면 그만큼 수형자는 출소 준비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소 후 사회정착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민간기관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에 민간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달리 앞서 살펴본 주요국은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이 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보다 민간기관에 의한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에 의해 연방·주·지방 정부 외에도 민간기관에 상당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기관들이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자원봉사단체 중 하나인 AmeriCorps에서는 재소자 및 출소자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과자에게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Safe Foundation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출소자 사회정착 비영리 단체 중 하나이다. 독일도 민간에 의한 범죄자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의 민간 참여와는 구별된다.

민간기관의 참여에 더해 출소자를 고용하는 민간 협력기업의 확보도 필요하다. 출소자가 재범으로 나아가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 정착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즉 생계유지가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출소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인 협력

고용주에게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며,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기업의 확보, 확충을 위해 협력기업 발굴, 세제 혜택 등 출소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어드벤처지가 필요하다.

5. 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교정당국과 출소자 지원 부처, 사회복지부처, 고용노동부처 등 중앙정부 관계부처의 연계 및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더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지역사회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출소자 재범률 감소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완화를 목적으로 한 SCA, FSA 등에 근거해 연방·주·지방 정부 및 민간조직에 상당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의 출소자 재범방지 및 사회정착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시행하면서 상호 협력과 지원으로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정당국과 출소자 지원 부처, 사회복지부처, 고용노동부처 등 중앙정부 관계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지역사회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제 5 장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1)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권수진·박성훈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 요약

1. 우리나라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가. 교정시설 입·출소, 재복역률 현황

우리나라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입·출소 현황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제외하고, 매년 교정시설 수형자 중 약 5만 명 이상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한다. 이들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성공적인 사회정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회복, 취·창업 등을 통한 기본 생계유지 및 경제활동, 문화활동, 종교활동 등 기타 사회활동, 재범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 중 출소자의 재범 여부는 출소자의 사회정착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출소 후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재복역률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출소자 중 재복역 인원 및 재복역률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였으나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출소자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의 재범률은 평균 0.3%~0.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출소자의 재복역률(25% 내외)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복지 서비스는 출소자가 자의로 신청하여 제공받는다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의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수형자 교정교화,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방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현행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출소 전 사회복귀 지원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 성공적인 사회정착,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관계 법령인 형집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등에 근거하여, 교육과 교화프로그램(기본 교육, 외부통학, 위탁교육), 작업과 직업훈련, 사회적 처우(귀휴,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 집 이용, 사회봉사 및 사회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출소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느냐 재범으로 나아가느냐는 출소 후 자립을 위한 생계유지와 관계가 깊다. 이런 점에서 교도작업 후 수형자에게 지급되는 작업장려금은 출소 후 사회정착을 위한 준비금으로서 중요하다. 따라서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교도작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작업장려금도 점진적인 상향 노력도 필요하다.

사회적 처우(귀휴,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가족만남의 집 이용, 사회견학, 사회봉사는 수형자들이 출소 전 가족 등 사회 구성원을 만나고 사회를 경험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한 연결망이 강할수록, 가족 및 외부의 지지가 많을수록, 지역사회결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출소 후 사회정착 준비를 적극적으로 한다. 이에 근거하여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사회적 처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귀휴, 사회봉사, 사회견학은 비교적 단기수형자에게 실시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사회와의 단절 기간이 긴 중·장기수형자에게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간처우시설로는 개방교도소(1개), 소망의집(4개), 희망센터(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청별로 각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중간처우시설은 기업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간처우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청별 차원의 협력기업 발굴이 필요하다.⁴⁷⁷⁾

다.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

교정시설 출소 후 사회에서 출소자에 대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가 출소자 사회정착을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숙식제공, 긴급지원, 기타 자립지원), 가족지원(주거지원, 가족희망, 학업지원, 결혼지원), 취업지원(직업훈련, 취업알선,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상담지원(사전상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멘토링, 사회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은 교정시설에서와 달리 출소자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의한다.

출소자 사회복귀 준비는 출소 임박한 시점이 아니라 교정시설 입소 시부터 준비하는 것이 효과가 더 높다. 따라서 교정단계에서도 공단의 다양한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제도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제도가 출소 후 또는 출소 임박한 시점보다는 적어도 출소 몇 개월 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교정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겠다.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회복, 취·창업, 지역사회 편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제도는 비록 관 주도하에 이루어지지만, 사회의 민간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 취·창업을 위한 지원 및 민간 협력기업의 확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현황 조사연구

이번 조사연구는 출소예정자 및 출소자 등 4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과거 출소 시절의 경험, 출소 이후 삶에 대한 계획, 출소 이후 삶을 위한 준비, 출소 이후 삶에서 겪는 어려움, 가족과의 관계, 지인(친구 포함) 관계, 출소 이후 도움을 받은 경험, 출소 이후 필요한 도움 등 출소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477) 권수진·권창모·오영근,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437~458면.

‘주관적 실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출소를 앞둔 시점에서 출소 준비 및 계획 관련 내용은 과거와 달라진 점, 출소 이후 계획, 가족과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과거와 달라진 점으로는 금주, 단약, 삶에 대한 태도 등 달라진 생각과 습관, 부모님, 자녀 등 가족과 지인에 대한 미안함, 재범중단의 다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심리상담, 사회봉사, 신용회복 등 구체적인 계획, 수감 이후 아버지의 사망, 자녀의 출산 등 가족의 변화된 상황과 나이듦에 대한 인식, 반복되는 재범의 굴레 속에서 출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느끼는 막막함을 언급하였다. 출소 이후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우선 가족을 만나 도움 요청, 구직이나 자격증 취득, 주거 마련, 재혼 준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상담, 단약, 금주 실천, 교정 선고 등 종교 활동을 언급하였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교류가 유지되는 참여자와 그렇지 못한 참여자로 나뉘었다. 다만, 관계가 지속되는 가족은 주로 누나, 여동생 등 여자 형제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대부분 잦은 재범과 오랜 수형생활로 가족뿐 아니라 친구, 동료 등 다른 사회적 유대도 크게 나빠진 상태였다.

둘째, 출소 이후 예상되는 기대와 우려와 관련해서는 출소 이후 우려되는 것, 출소 자에게 필요한 지원, 출소 이후 사회적 낙인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출소 이후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은 참여자일수록 주거·생계를, 구직을 생각하는 참여자일수록 취업을 우려하였고, 주거나 취업보다 사회부적응 자체를 걱정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출소 후 차게 될 전자발찌와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한번 실망을 안기고 자기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재범 또한 우려의 대상이었다. 출소자에게 필요한 지원으로는 숙식지원, 심리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이 언급되었고, 특히 나이가 어린 청소년 출소자와 점차 증가하는 정신질환 출소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보았다. 출소 이후 겪었거나 겪게 될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시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참여자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참여자로 나뉘었다. 후자의 경우 사회적 낙인을 출소자 스스로 가지는 심리적 부담으로 여기거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재범에 대한 인식은 출소자가 생각하는 재범의 원인, 그리고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재범의 원인으로는 부족한 돈이나 힘겨운 생활고 같은

경제적 문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극복해야 할 술, 낮은 자기통제나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와 같은 성격이나 기질, 출소 이후 찾아오는 무료함과 외로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차별과 답답함이 거론되었다. 재범예방을 위해 출소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모, 아내, 자녀와 같은 가족의 도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가족과의 유대가 약한 경우 대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멘토의 도움, 출소자를 돕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언급되었고, 일부 참여자는 재범예방과 억제를 위해서 무엇보다 출소자 스스로의 변화의지(마음가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출소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인식은 교정시설 프로그램과 갱생보호제도 및 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해 일부 참여자는 긍정적으로, 다른 참여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 소통의 기회,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 계기, 강사의 공감 능력을 들었는데 특히 심리교육, 인성교육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평이한 내용, 강사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복역 기간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는 점, 출소 이후 자신이 배운 기술이나 취득한 자격증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으로 대표되는 갱생보호와 관련해서는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불신이나 무관심한 참여자가 있는가 하면, 출소 후 생활지원을 제공받고 있는 참여자들은 공단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공단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상담 교육의 내용이 어렵고 전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 심리상담 지원이 출소자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여성출소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 생활시설의 규율이 약하다는 점, 공단의 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은 개선사항으로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직원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 공단을 기반으로 삶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 외국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가.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 마련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Second Chance Act와 First Step Act, 독일의 재사회화법, 일본의 재범방지 등 추진에 관한 법률은 모두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법률이다. 각국은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소자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된다면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교정시설 입소 시부터 사회복귀 준비

출소자의 사회복귀 준비는 교정시설 입소 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범죄자의 교정시설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집행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능한 한 시설 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시설 출소자가 출소 시 겪게 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독일은 전환관리를 통해 교정시설 입소단계부터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인력과 함께 개인별로 적합한 처우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처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정단계에서부터 사회복귀 계획을 세우고 출소 준비를 시작한다면, 그만큼 사회복귀 효과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재무회계 지원,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의료적 지원, 심리적 지원, 가족관계 회복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은 수형자의 출소 후의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교정시설 입소단계부터 개인별로 적합한 처우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인력(사회복지사, 사

회교육사, 채무상담사 등)이 있다. 일본도 형사시설 입소 시부터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정단계에서부터 교정시설에 출소자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가 상주해 출소 준비를 지원한다면 출소 후 사회정착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라. 민간기관의 참여, 협력기업의 확보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에 민간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다.

외국은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이 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보다 민간기관에 의한 경우가 많다. 미국은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에 의해 연방·주·지방 정부 외에도 민간기관에 상당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도 민간에 의한 범죄자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출소자를 고용하는 민간 협력기업의 확보도 필요하다. 출소자가 재범으로 나아가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 정착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즉 생계유지가 중요하다. 일본은 출소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인 협력 고용주에게 세제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며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마.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출소자 재범률 감소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완화를 목적으로 한 SCA, FSA 등에 근거해 연방·주·지방 정부 및 민간 조직에 상당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출소자 재범방지 및 사회정착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시행하면서 상호 협력과 지원으로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정당국과 출소자 지원 부처, 사회복지부처, 고용노동부처 등 관계부처의 연계 및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더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지역사회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제2절 | 정책제언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1차 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제조건, 그리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⁴⁷⁸⁾

1.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 더 일찍, 더 많이, 더 확실히

가. 교정시설 입소 시부터 사회복귀 준비

사형수 또는 무기수가 아닌 유기형 수형자는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수형자, 출소자의 재사회화가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다.

수형자의 재사회화, 사회복귀 준비는 교정시설 입소 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실제 교정시설 입소 시부터 사회복귀, 사회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형기종료 약 2개월 전에 15시간 석방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석방전교육이 너무 늦은 시점에 적은 시간 이루어져, 교육시기를 더 앞당기고 교육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도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출소 1개월 전부터 1시간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이 출소 1개월 전, 1시간 실시된다는 점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매우 늦은 시점, 적은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출소 전 공단과 지원사업을 알리고 출소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공단 상담자와 라포를 형성하여 함께 구체적인 출소 계획을 세우고 출소 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출소 임박한 시점이 아니라 초기 교정단계부터 수형자가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수형자의 교정시설 입소 후 본인을 비롯한 수형자 가족도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교정 단계부터 이들을 상담,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478) 본 연구는 2차 년도 연구과제로 기획되었으며, 1차 년도에는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2차 년도에 1, 2차 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나. 사회와의 연계, 사회적 처우 확대

사회와 단절된 구금생활은 오히려 범죄자의 재사회화, 수형자의 사회복귀, 사회정착에 큰 장애가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정시설에서는 사회적 처우(귀휴,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가, 가족만남의 집 이용, 사회견학, 사회봉사 등)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처우는 대부분 형기 3년 또는 6년, 잔여형기 80~90% 이상으로 주로 단기수형자에게 실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수형자의 경우 가족, 사회와의 단절 기간이 긴 만큼 가족관계 회복,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⁴⁷⁹⁾

독일의 경우, 범죄자의 교정시설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집행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능한 한 시설 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시설 출소자가 출소 시 겪게 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교정단계에서부터 사회와의 단절을 줄이고,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정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사회적 처우(귀휴,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가, 가족만남의 집 이용, 사회견학, 사회봉사 등)를 확대하고, 중간처우시설을 확충하여 사회와 유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교정시설과 사회와의 중간 완충지대 마련

수형자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사회에 발을 내딛으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장기간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한 장기수형자에게 사회로의 복귀는 더욱 낮설고 막막하고 어려운 생활의 시작이다.

이에 교정시설 출소자가 사회와의 단절된 생활을 청산하고 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정시설과 사회와의 중간 완충지대(Halfway House)를 마련하여 출소 전 모든 출소예정자가 의무적으로 중간 완충지대를 거쳐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⁴⁸⁰⁾

479) 이윤호 외,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2006, 227~228면.

480) 김영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워크숍 발표문(2023.7.5.), 1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간처우시설로서 개방교도소, 소망의 집, 희망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은 수용 대상이 일부 모범수형자로 제한적이고, 수용인원도 소규모로, 여기서 제안되는 중간 완충지대(Halfway House)와는 구별된다.

이와 달리 교정시설과 사회와의 중간 완충지대(Halfway House)를 마련하여 의무적으로 모든 수형자가 교정시설 출소 전 일정기간 이곳에서 직장생활 등 일정 부분 사회를 경험하다가 출소하게 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정시설과 사회와의 중간 완충지대(Halfway House)의 운영은 기존 교정시설보다는 민영교도소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2.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전제조건

가. 근거 법령의 정비 : 독립 법률의 제정

현재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은 보호관찰법이다.

그러나 현행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근거 법령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법무부가 직접 수행하는 교정 및 보호관찰업무와 달리, 현행 법무보호복지업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사업자가 업무를 대행하고 법무부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⁴⁸¹⁾

무엇보다 현행 보호관찰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호관찰과 법무보호복지의 법적 성격 차이, 법무보호복지업무의 정체성 재정립, 법무보호복지업무의 위상 제고,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전문성 확보,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제고, 법무보호복지업무의 유기적 민관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독립된 근거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⁸²⁾⁴⁸³⁾

481) 권수진·탁희성·박선영·오병두,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211면.

482) 권수진·탁희성·박선영·오병두,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190~192면; 원혜옥,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규정의 검토”, 법무보호연구 제1권, 2015, 17~19면; 최응렬, “한국 갱생보호사업의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61호, 2013, 28면; 홍완식,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법무보호연구 제5권 제1호(통권 제7호), 2019.6.30., 70면.

483)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법적 정비방안은 차년도에 연구에서 검토 예정이다.

나.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보호복지업무의 정체성 재정립, 법무보호복지업무의 위상 제고, 법무법무보호복지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효과성 제고, 법무보호복지업무의 유기적 민관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독립된 근거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1995년 갇생보호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흡수통합 당시 제정 이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출소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범방지업무 추진기반을 조성⁴⁸⁴⁾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하여 수형생활을 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교정본부와 각 교정시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보호관찰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간의 협조가 필요하겠⁴⁸⁵⁾다. 예를 들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담당 직원이 각 교정시설에 배치되어 상주하면서 수형자의 출소 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관련 전문인력 확보

교정시설에서도 수형자들의 출소 후 사회정착을 위해 교육, 상담,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교정직원들의 주된 업무는 교정시설 내 수형자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도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교정시설에 찾아가서 출소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출소 1개월 전부터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범유발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개별 혹은 집단상담을 진행하여 출소예정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현재 출소자 사전상담은 공단 인력의 부족으로 직원과 함께 사전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실시되고 있다.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부분 민간 자원의 활용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48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법률 제4933호, 시행 1995.1.5.), 제정 이유 참조.

485) 박선영, “출소자 가족지원 사업의 필요성”, 법무보호연구 제2권, 2016.12., 88~89면.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교육 등은 전담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법률자문, 경제자문, 의료자문, 생활자문, 심리상담 등 출소(예정)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라. 민간 자원 확보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각 교정시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관 주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일례로,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출소 후 가장 중요한 지지자인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사랑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형자 가족이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교정시설과 민간 자원이 연계하여 민간시설에서 수형자의 가정으로의 복귀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그리고 거부감 해소 등으로 가족의 참여도 더 높일 수 있고 효과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⁴⁸⁶⁾

또한, 출소자가 교정시설 출소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는 취업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출소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에 외국의 경우와 같이 출소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모범수 출소자에 대한 국가의 보증 및 보험 등의 방안을 활용해 출소자를 고용하는 협력기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⁴⁸⁷⁾

486) 양혜경·서보람,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63호, 2014, 138면.

487) 이윤호 외,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2006, 229면.

3.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가. 교정시설 프로그램

1) 인성교육 확대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크게 집중 인성교육, 학과교육, 석방전교육으로 구분된다. 집중 인성교육은 준법교육 및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학과교육은 검정고시 및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석방전교육은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1317호)에 따라 형기종료 2개월 내외의 자,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절차, 신용회복절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안내 등으로 이루어진다.⁴⁸⁸⁾ 심층면접 결과에서는 이 가운데 인성교육을 언급하면서 인성교육이 다른 수형자와의 소통 기회 제공,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 계기, 수형자에 대한 강사의 공감과 격려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정시설에서 인성교육을 확대하되, 일부 외부강사의 경우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콘텐츠와 강사섭외 등 인성교육에 대한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석방전교육 내실화

석방전교육은 형기종료를 2개월 정도 앞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15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심층면접과 자문회의에 따르면, 석방전교육이 출소예정자의 낮은 동기와 저조한 참여율, 교육 시간의 부족 등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심층면접에서 드러나듯이 상당수 출소자는 출소 이후 삶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불안과 우려 속에서 출소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석방전교육이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고 교육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석방전교육이 지역사회 또는 개방시설과 연계로 통해 이루어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8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교정본부 워크숍 자료에서 인용(2023.11.1.).

3) 직업훈련제도 개선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은 출소자의 근로 동기와 취업 역량을 강화시켜 출소 후 구직활동 및 취업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는 제도이다. 현재 교정본부는 기술훈련을 학과교육과 연계하여 자격증 및 학위취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구인구직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중계를 활성화하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력하여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⁴⁸⁹⁾ 그러나 심층면접과 자문회의에 따르면, 직업훈련교도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은 모든 수용자의 욕구를 채우기에 부족한 형편이며, 교정시설에서 취득한 자격증이나 수료증은 출소 이후 현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숙련도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출소자에게 오히려 좌절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교정당국도 인지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⁴⁹⁰⁾ 따라서 교정시설에서부터 출소자에게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 현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취업동기나 근로의식이 높은 수용자를 선별하고, 출소 후 관련 분야의 취업 및 고용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직업훈련 프로그램 선발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당락여부만 알릴 것이 아니라 사유 또한 전달할 필요가 있다.

4) 작업장려금 활성화

출소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느냐 재범으로 나아가느냐는 출소 후 자립을 위한 생계유지와 관계가 깊다. 이런 점에서 교도작업 후 수행자에게 지급되는 작업장려금은 출소 후 사회정착을 위한 준비금으로서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작업장려금은 수감 기간 수용자가 국민연금 납부, 신용회복, 피해자기금, 가족부조 등에 사용하거나 출소 이후 생활비 명목으로 저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교도작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작업장려금의 점진적인 상향 노력도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교정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화하

48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교정본부 워크숍 자료에서 인용(2023.11.1.).

490) 교정시설 자문회의 내용에서 인용(2023.7.25.).

여 교정시설에서 일정 수준의 작업장려금을 모아서 출소 후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작업장려금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출소자가 출소 이후 일정기간 사회정착을 위한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법무보호 복지서비스

1) 사전상담 개선

법무보호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는 보라미방송과 석방전교육을 통해 교정시설에서부터 시작한다. 심층면접에서도 출소자의 상당수가 보라미방송을 통해 법무보호복지제도와 공단의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석방전교육을 통해 진행하는 사전상담에 대해서는 많은 출소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공단에 따르면, 1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사전상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⁴⁹¹⁾ 따라서 사전상담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교정시설에 공단 직원이 상주하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수시로 사전상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심층면접에 드러나듯이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출소자 대부분이 남성 중심이어서 여성 출소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 보인다.

2)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법무보호 서비스 절차는 사전상담을 거쳐 출소 후 본인 신청 및 심사를 거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본인 신청이 각 지부에서 현장 신청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접수와 상담 과정에서 오해와 큰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⁴⁹²⁾ 따라서 여타 사회서비스의 변화 추세에 맞게 법무보호 서비스 역시 온라인 서비스 전달체계로 점차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공단에서는 구비서류 역시 상당히 간소화하였으나 여전히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복잡

49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워크숍 자료에서 인용(2023.10.5.).

49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워크숍 자료에서 인용(2023.10.5.).

해 보일 수 있으므로 최소한 서류만 구비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받도록 법무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3) 심리상담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심리상담은 일대일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로 나뉘며 상담주제에 제한 없이 출소자와 그 가족을 상담하고 있다. 주요 호소 문제는 출소 이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우울, 불안, 대인관계 위축, 가족 문제, 재범 충동, 각종 중독 문제이며, 심리상담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⁴⁹³⁾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은 양적 팽창만큼이나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개인상담 3,293명, 집단상담 10,227명, 심리검사 4,197명으로 목표로 설정한 12,665명에 거의 근접하고 있으나, 상담회기로 치면 1인당 평균 1.4회에 불과하다.⁴⁹⁴⁾ 이러한 현실은 각 지부에 소속된 임상심리사 등 심리상담 인력이 매우 부족한데 기인한다. 따라서 날로 수요가 높아지는 심리상담에 대한 출소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심리상담 인력을 거점 기관을 두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임의적 서비스 개선

현재 임의적 성격의 법무보호 서비스를 고위험군 혹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소자에게 부분적이거나 필요적 성격의 서비스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⁴⁹⁵⁾ 다만, 어떤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원할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심층면접에서 드러나듯이 공단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자원과 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다면 출소 이후 삶의 만족도 제고와 재범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49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58면.

49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워크숍 자료에서 인용(2023.10.5.).

49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워크숍 자료에서 인용(2023.10.5.).

1. 국내문헌

- 공정식·김정현, “출소자의 삶의 질과 낙인이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5), 2018.
- 권수진·권창모·오영근,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 권수진·탁희성·박선영·오병두,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 김대권, 기업고용주의 전과자 채용에 관한 인식연구, 경찰학논총 6(1), 2011.
- 김인숙, “여성출소자들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6, 1992.
- 김정현·공정식,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교정전문가의 중요도와 출소자의 선호도 비교연구: IPA기법 적용”,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11), 2019.
- 노용준,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 ‘소망의 집’ 소개”, 한국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110호, 2009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원홍·원일,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47, 2014.
- 민원홍·원일,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47, 2017.
- 박경래 외,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박선영, “출소자 가족지원 사업의 필요성”, 법무보호연구 (제2권), 2016.12.
- 박혜림, “미국의 연방수형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 법률(First Step Act of 2018)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21호, 2020.
-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 신연희, “출소 후 재범 예방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08.
- 양혜경·서보람,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제63호), 2014.
- 오삼광,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필요성 검토”, 법무보호연구,

- 8(2), 2022.
- 원혜옥,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규정의 검토”, 법무보호연구 제1권, 2015.
- 유수연, “독일의 출소(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15권 제1호, 2015.
- 이동훈·강수운·지승희,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복귀 경험에 관한 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4), 2016a.
- 이동훈·신지영·조은정·김진주,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 관계 경험”,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1(1), 2016b.
- 이동훈·전지열·신지영,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2016.
- 이동훈·조은정·양순정·양하나, “교정전문가 및 교정상담자가 인식하는 출소자의 사회재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7), 2017.
- 이신영,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갱생보호사업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38, 2008.
- 이연미·백진, “‘단계별 처우 차별화 전략(Progressive Treatment)’에 따른 개방 교정시설 건축계획 연구 - 일본 이치하라 형무소와 우리나라 천안 개방 교도소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2023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43권 제1호(통권 제79집), 2023.
- 이윤호 외,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2006.
- 이은경·양난미·이진화·송미경, “출소자 취업지원관의 경험에 대한 연구: 취업지원 업무, 출소자의 취업과 취업유지”, 상담학연구 17(3), 2016.
- 이현희, “재범요인에 관한 인과적 분석 : 형벌과 사회적 결속”, 교정연구 24, 2004.
- 정소영, 영국미국의 갱생보호제도 및 법령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02호 최신외국법제정보(Global Issue Paper), 2017.
- 정진수·하태훈·최군용·김광호,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정진연,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방향-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23, 2004.
- 조운오, 미국의 출소자 사회복귀정책 심층분석 및 제언 -리엔트리(Reentry)를 중심으로

- 로, 202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 연구용역 과제, 2023.
- 천안개방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20년사, 4면, 2008.
- 최응렬, “한국 갱생보호사업의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61호, 2013, 28면;
- 최인섭·김지선,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배임호,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발전방향”, 교정연구 제60호, 201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법무보호연감.
- 홍완식,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법무보호연구 제5권 제1호(통권 제7호), 2019.
- 林眞琴, 北村篤, 名取俊也 저, 안성훈, 금융명 책임번역, 축조해설 일본행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2. 국외문헌

- Alper, M., Durose, M. R., & Markman, J. (2018). 2018 update on prisoner recidivism: A 9-year follow-up period (2005-2014).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Berg, M. T., & Huebner, B. M. (2011). Reentry and the ties that bind: An examination of social ties, employment, and recidivism. *Justice quarterly*, 28(2).
- Broadus, J., Muller-Ravett, S., Sherman, A., & Redcross, C. (2016). A successful prisoner reentry program expands: Lessons from the replication of the 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New York, NY: MDRC.
- BÜRGERSCHAFT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Drucksache 21/198 16.
- Burghardt, J. A., Schochet, P. Z., McConnell, S., Johnson, T., Gritz, R. M., Glazer, S., & Jackson, R. (2001). Does Job Corps Work?: Summary of the National Job Corp Study (pp. 8140-530).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Office of Policy and Research.
- Carson, A. (2022). Prisoners in 2021 – Statistical Table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https://bjs.ojp.gov/sites/g/files/xyckuh236/files/media/document/p21st.pdf>

- Clear, T. R., Hardyman, P. L., Stout, B., Lucken, K., & Dammer, H. R. (2000). The value of religion in prison: An inmate perspective.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16(1).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The First Step Act of 2018: An Overview. R45558.
- CSG Justice Center (2018) The Second Chance Act (Fact Sheet), URL: <https://csgjusticecenter.org/publications/fact-sheet-the-second-chance-act/>
- Cullen and Jonson. "Correctional Theory: Context and Consequences", 2017.
- Davis, L. M., Turner, S., & Tolbert, M. C. (2022). Evaluation of the Minnesota Department of Correction's Career Navigators Program. RAND.
- Ekland-Olson, S., Barrick, D. M., & Cohen, L. E. (1983). Prison overcrowding and disciplinary problems: An analysis of the Texas prison system.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19(2).
- Fahmy, C., & Mitchell, M. M., Examining recidivism during reentry: Proposing a holistic model of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Criminal Justice* 83, 2022.
- Finn, P. (1998). Chicago's Safer Foundation: A road back for ex-offenders.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Fort Bend County. (2022). Fort Bend County Program Aims to Expand Services for Incarcerated Parents and Their Minor Children. 2022년 11월 1일자 보도자료.
- Gaes, G. G. (1985). The effects of overcrowding in prison. *Crime and justice*, 6.
- Giordano, P. C., Cernkovich, S. A., & Rudolph, J. L., Gender, crime, and desistance: Toward a theory of cognitive transform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4), 2002.
- Harrison, L. D. (2001). The revolving prison door for drug-involved offende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rime & delinquency*, 47(3).
- Heinz Cornel, Geschichte des Strafens und der Straffälligenhilfe. In: Arbeitskreis der Hochschullehrer und Hochschullehrerinnen Kriminologie/Straffällige

- nhilfe in der Sozialen Arbeit (Hrsg.), Kriminologie und soziale Arbeit. Ein Lehrbuch. Beltz Juventa, Weinheim/Basel 2014.
- Hwang, K. J. (2022). From Prison to Entrepreneurship: Can Entrepreneurship be a Reentry Strategy for Justice-Impacted Individual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701(1).
- LeBel, Thomas P., Ros Burnett, Shadd Maruna, & Shawn Bushway, "The 'Chicken and Egg' of Subjective and Social Factors in Desistance from Crime.",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5(2), 2008.
- Loeffler, C. E., & Nagin, D. S. (2022). The impact of incarceration on recidivism.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5.
- National Association of Counties. (2023). Increase funding for the Second Chance Act to support local reentry programs that reduce recidivism among formerly incarcerated individuals. 2023 Policy Brief.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19).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Journal*. Issue No. 281.
- Padfield, N., & Maruna, S. (2006). The revolving door at the prison gate: Exploring the dramatic increase in recalls to prison.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6(3).
- Peak, K. J. (2016). *Justice Administration*. Eighth Edition. Pearson.
- Petersilia, Joan., *When Prisoners Come Home: Parole and Prisoner Reentry*, 2003.
- Pratt, T. C. (2018). *Addicted to incarceration: Corrections policy and the politics of mis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Sage Publications.
- Reingle Gonzalez, J. M., Rana, R. E., Jetelina, K. K., & Roberts, M. H., The value of lived experience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 qualitative study of peer re-entry specialist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3(10), 2019.
- Roman, C. G., Wolff, A., Correa, V., & Buck, J. (2007). Assessing intermediate outcomes of a faith-based residential prisoner reentry program.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7(2).
- Safer Foundation. (2022a). *A Safer Return*. FY20 Annual Report.

- Safer Foundation. (2022b). 2021 Impact Report.
- Sawyer, W., & Wagner, P. (2023). Mass incarceration: the whole pie 2023. Prison policy initiative.
- Strong, S. M., Rantala, R. R., & Kyckelhahn, T. (2016). Census of problem-solving courts, 2012.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Visher, C. A., Lattimore, P. K., Barrick, K., & Tueller, S., Evaluating the long-term effects of prisoner reentry services on recidivism: What types of services matter?. *Justice Quarterly* 34(1), 2017.
- Weisburd, D., Farrington, D. P., & Gill, C. (2017). What works in crim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An assessment of systematic reviews. *Criminology & Public Policy*, 16(2).
- Willison, J. B., Bieler, S., & Kim, K. (2016). Evaluation of the Allegheny County jail collaborative reentry program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 Wolfgang Heinz, 58 Jahre Bewährungshilfe im Spiegel der Bewährungshilfestatistik. Ein Überblick über die Entwicklung von 1963 bis 2020 im früheren Bundesgebiet, Stand: Berichtsjahr 2020; Version: 1/2022.
- U.S. Department of Justice. (April 2023). First Step Act Annual Report.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9). Federal Student Aid. Actions Needed to Evaluate Pell Grant Pilot for Incarcerated Students. GAO-19-130.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22). Second Chance Reentry Grants: DOJ Should Report Limitations When Publishing Performance Data. GAO-22-104641.

法務省 保護國, 更生保護のあり方を考える有識者會議 관계자료집, 附錄, 2007年 8月 29日
 法務省, 2022年版 再犯防止推進白書, 2023년 1월 27일
 法務省矯正局, 矯正の現状, 2020년 12월
 法務総合研究所, 再犯防止対策等に關する研究, 2019년 3월
 鴨下守孝, 新行刑法要論, 東京法令出版, 2006년 12월 20일
 川出敏裕, 金光旭. 刑事政策[第2版], 成文堂, 2018년 5월 1일

3. 기타

김영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워크숍 발표문(2023.7.5.).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자문회의 자료(2023. 4. 14.)

120대 국정과제 중 63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https://www.opm.go.kr/opm/info/government04.do>, 2023년 11월 1일 최종검색)

교도소영적상담넷 홈페이지(<https://gefaengnisseelsorge.net/resozialisierungsgesetz> 2023.11.1. 최종검색).

교정시설 자문회의 내용(2023.7.25.).

굿라이프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goodlife2020> 2023. 11. 1. 최종검색)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법포탈(https://www.justiz.nrw.de/Gerichte_Behoerden/landesjustizvollzugsdirektion/statistik_und_forschung/zahlen_daten_und_fakten/index.php: 2023.11.1. 최종검색).

니더작센주 사법포탈(https://justizportal.niedersachsen.de/startseite/justizvollzug_und_ambulanter_justizsozialdienst/justizvollzug/justizvollzug_im_ueberblick/justizvollzug-im-ueberblick-155604.html: 2023.11.1. 최종검색).

니더작센주의 외래 사법사회복지부 홈페이지(https://ajsd.niedersachsen.de/wir_ueber_uns/unsere_aufgaben/fuehrungsaufsicht-im-ajsd-96884.html: 2023.11.1. 최종검색).

담안선교회 홈페이지 (http://www.daman.co.kr/introduction/info1_03.htm 2023. 11. 1. 최종검색)

독일 Welt지 인터넷기사, “Ein Gesetz allein ändert gar nichts“, Welt, 12.04.2019(<https://www.welt.de/regionales/hamburg/article191832745/Resozialisierung-Ein-Gesetz-allein-aendert-gar-nichts.html>: 2023.11.1. 최종검색).

독일 교도소 목회 gefaengnisseelsorge 홈페이지(<https://gefaengnisseelsorge.net/resozialisierungsgesetz> (2023년 11월 1일 최종검색).

독일 연방통계청(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operation=abruf_tabelleBearbeiten&levelindex=2&levelid=1693230480984&auswahloperation=abruf_tabelleAuspraegungAuswaehlen&auswahlverzeichnis=ordnung

sstruktur&auswahlziel=werteabruf&code=24321-0001&auswahltext=&wert
eabruf=Werteabruf#abreadcrumb: 2023.11.1. 최종검색).

독일 위키페디아의 설명(<https://de.wikipedia.org/wiki/Gerichtshilfe>: 2023.11.1. 최종검색)

미국 연방 교정부 홈페이지 - FSA 소개 (<https://www.bop.gov/inmates/fsa/index.jsp>
2023. 11. 2. 최종검색)

미국 연방 교정부 홈페이지 - Pell Grant 소개 (https://www.bop.gov/resources/news/20230712_pell_grant.jsp 2023. 11. 2. 최종검색)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WIOA 소개 (<https://www.dol.gov/agencies/eta/wioa>
2023. 11. 2. 최종검색)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American Job Centers 소개 (<https://www.dol.gov/general/topic/training/onestop> 2023. 11. 2. 최종검색)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GO Fact Shee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youth/pdfs/GO%20factsheet%205.11.2023.pdf> 2023. 11. 2. 최종검색)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Job Corps 소개 (<https://www.dol.gov/agencies/eta/jobcorps> 2023. 11. 2. 최종검색)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Job Corps 자격기준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jobcorps/pdfs/Exhibit%201-1%20Job%20Corps%20Eligibility%20Requirements.pdf> 2023. 11. 2. 최종검색)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Pathway Home Fact Shee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youth/pdfs/Pathway%20Home%201234%20Fact%20Sheet.pdf> 2023. 11. 2. 최종검색)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PROWD Grant Fact Shee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youth/pdfs/2022-10_PROWD%20Grants%20Fact%20Sheet.pdf 2023. 11. 2. 최종검색)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Reentry Project Fact Shee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reentry/pdf/Reentry_Projects_Fact_Sheet_4.9.2021.pdf 2023. 11. 2. 최종검색)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REO Fact Shee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reentry/pdf/REO-Fact-Sheet-5.15.23.pdf> 2023. 11. 2. 최종검색)

미국 연방 노동부 홈페이지 - YAPP Fact Shee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

- es/ETA/reentry/pdf/YARP_Fact_Sheet_7.29.21.pdf 2023. 11. 2. 최종검색)
- 미국 연방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 홈페이지 - Always Parenting: A Fort Bend County Program for Incarcerated Parents and Their Children 사업 소개 (<https://ojdp.ojp.gov/funding/awards/15pjdp-22-gg-03098-coip> 2023. 11. 2. 최종검색)
- 미국 연방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 홈페이지 - OJJDP FY 2022 Second Chance Act Addressing the Needs of Incarcerated Parents and Their Minor Children 사업 소개 (<https://ojdp.ojp.gov/funding/fy2022/o-ojdp-2022-171233> 2023. 11. 2. 최종검색)
-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BJA FY 2023 Improving Adult and Youth Crisis Stabilization and Community Reentry Program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funding/O-BJA-2023-171525.pdf> 2023. 11. 2. 최종검색)
-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BJA FY 2023 Second Chance Act Pay for Success Program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funding/O-BJA-2023-171523.pdf> 2023. 11. 2. 최종검색)
-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BJA FY 21 Second Chance Act: Adult Reentry Education, Employment, Treatment and Recovery Program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sites/g/files/xyckuh186/files/media/document/O-BJA-2021-98001.pdf> 2023. 11. 2. 최종검색)
-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BJA FY 21 Smart Probation: Innovations in Supervision Initiative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sites/g/files/xyckuh186/files/media/document/O-BJA-2021-93003.pdf> 2023. 11. 2. 최종검색)
-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BJA FY23 Improving Substance Use Disorder Treatment and Recovery Outcomes for Adults in Reentry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funding/O-BJA-2023-171537.pdf> 2023. 11. 2. 최종검색)
-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FY 2021 Innovations in Reentry Initiative: Building System Capacity & Testing Strategies to Reduce Recidivism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funding/opportunities/o-bja-2021-93002> 2023. 11. 2. 최종검색)
-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FY 2023 Second Chance Act Community-Based Reentry Program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funding/opportunities/o-bja-2023-171683> 2023. 11. 2. 최종검색)

-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FY23 Second Chance Act Smart Supervision Program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funding/O-BJA-2023-171505.pdf> 2023. 11. 2. 최종검색)
-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Improving Reentry for Adults with Co-occurring Substance Abuse and Mental Illness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sites/g/files/xyckuh186/files/media/document/BJA-2019-15183.PDF> 2023. 11. 2. 최종검색)
-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Second Chance Act FACT SHEET (<https://bja.ojp.gov/doc/sca-pay-for-success-fact-sheet.pdf> 2023. 11. 2. 최종검색)
-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Second Chance Act Statewide Adult Recidivism Reduction Strategic Plan Implementation Program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sites/g/files/xyckuh186/files/media/document/BJA-2018-13636.PDF> 2023. 11. 2. 최종검색)
- 미국 연방사법지원국 Smart Reentry and Supervision: Grants, Tools, and Technical Assistance to Facilitate Change 제안요청서 (<https://bja.ojp.gov/funding/O-BJA-2022-171302.pdf> 2023. 11. 2. 최종검색)
- 미국 연방사법통계국 - Frequently Requested Statistics (<https://csat.bjs.ojp.gov/frequently-requested-charts> 2023. 11. 2. 최종검색)
-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대담회 보고서(Podiumsdiskussion), “Brauchen wir Resozialisierungsgesetze?”(https://bag-s.de/fileadmin/user_upload/Podiumsdiskussion_BAG-S.pdf: 2023.11.1. 최종검색).
-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안내책자 Wegweiser für Inhaftierte, Entlassene und deren Familien, 2019(<https://www.bag-s.de/materialien/wegweiser>: 2023.11.1. 최종검색).
- 범죄자지원을 위한 연방복지공동체(BAG · S)의 정기간행물 Informationsdienst Straffälligenhilfe(<https://www.bag-s.de/materialien/infodienst>: 2023.11.1. 최종검색), Heft 2/2013.
- 뷰티플 라이프 홈페이지 (<http://bt-life.co.kr/> 2023. 11. 1. 최종검색)
- 사단법인 바스카교화복지회 (<http://cafe.daum.net/pascha9722664/8z4c/10> 2023. 11. 1. 최종검색)
- 사단법인 바스카교화복지회 (<http://cafe.daum.net/pascha9722664/8z4c/9> 2023. 11.

1. 최종검색)

사회복지, 형법 그리고 형사정책을 위한 전문연합 홈페이지(<https://www.dbh-online.de/fachverband/ueber-uns>: 2023.11.1. 최종검색).

세계교화갱보협회 홈페이지 (<http://www.aftercare.or.kr/biz/biz1.html> 2023. 11. 1. 최종검색)

아시아뉴스전북, “(사)굿라이프 이사회, 출소자 자활·범죄예방 활동에 최선” (<https://www.mjeonbu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3> 2023. 11. 1. 최종검색)

양지뜸 홈페이지 (<http://www.1004home.co.kr> 2023. 11. 1. 최종검색)

열린낙원 홈페이지 (<http://열린낙원.org/> 2023. 11. 1. 최종검색)

워싱턴주 교정부 홈페이지 - 조직도 (<https://www.doc.wa.gov/docs/publications/100-DG001.pdf> 2023. 11. 2. 최종검색)

일본의 교정통계 (<https://www.prisonstudies.org/country/japan>)

재단법인 한국교화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pici.co.kr/sh_page/page34.php 2023. 11. 1. 최종검색)

중부독일방송국(Der Mitteldeutsche Rundfunk: mdr)의 인터넷기사, Wie der Soziale Dienst der Justiz Straftätern zurück ins Leben hilft, mdr, 12.11.2022.(<https://www.mdr.de/nachrichten/sachsen-anhalt/halle/halle/perspektiven-nach-der-haft-sozialer-dienst-100.html>: 2023.11.1. 최종검색).

지방재범방지 추진계획 (URL:https://www.moj.go.jp/hisho/saihanboushi/hisho04_00022.html, 2023. 11. 1. 최종검색)

천안개방교도소 내부 자료(2018.8.).

캘리포니아주 CDCR 홈페이지 - 보도자료 (<https://www.cdcr.ca.gov/news/2023/07/06/incarcerated-students-now-eligible-for-federal-pell-grants/> 2023. 11. 2. 최종검색)

코레워크 관계자료 (https://www.moj.go.jp/KYOUSEI/CORRE-WORK/pdf/CORRE-WORK_pamphlet.pdf)

평등협회 홈페이지(<https://www.der-paritaetische.de/verband/>: 2023.11.1. 최종검색).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 주택당국 홈페이지 - Job Corps 설명 (<https://www.clearwaterhousingauth.org/wp-content/uploads/2021/06/Job-Corp-Flyer.pdf> 2023. 11. 2. 최종검색)

- 하노버 사법집행시설 홈페이지의 설명(https://www.justizvollzugsanstalt-hannover.niedersachsen.de/startseite/wir_uber_uns/menschen_im_vollzug/menschen-im-vollzug-82283.html: 2023.11.1. 최종검색).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료(2022. 3. 10.).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교정본부 워크숍 자료(2023.11.1.).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워크숍 자료(2023.10.5.).
- 함부르그시 공식 포털(<https://www.hamburg.de/bjv/justizvollzug/11078696/resozialisierung/>: 2023.11.1. 최종검색).
- 협력고용주 모집의 팸플렛과 포스터, https://www.moj.go.jp/hogo1/soumu/hogo02_00030.html, 2023.11.1. 최종검색)
- AIR 홈페이지 -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소개 (<https://www.air.org/centers/national-reentry-resource-center> 2023. 11. 2. 최종검색)
- Carrer Onestop 홈페이지 - American Job Centers 위치 (<https://www.careeronestop.org/Veterans/JobSearch/FindOpenings/american-job-centers.aspx> 2023. 11. 2. 최종검색)
- CrimeSolutions 홈페이지 - Allegheny County (Pa.) Jail-Based Reentry Specialist Program 소개 (<https://crimesolutions.ojp.gov/ratedprograms/494#relatedpractices> 2023. 11. 2. 최종검색)
- CrimeSolutions 홈페이지 - California Prison Industry Authority (CALPIA) 소개 (<https://crimesolutions.ojp.gov/ratedprograms/1794#ar> 2023. 11. 2. 최종검색)
- CrimeSolutions 홈페이지 - Corrections-Based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소개 (<https://crimesolutions.ojp.gov/ratedpractices/24#relatedprograms> 2023. 11. 2. 최종검색)
- Defy Ventures 홈페이지 - 2021 Annual Report (<https://www.defyventures.org/static/uploads/files/2021-defy-ventures-annual-report-wfnvqjqrkzcg.pdf> 2023. 11. 2. 최종검색)
- Federal Student Aid 홈페이지 - Pell Grant 지원방법 (<https://studentaid.gov/understand-aid/types/grants/pell#how-apply> 2023. 11. 2. 최종검색)
- Heinz Cornel, Der Resozialisierungsbeitrag der freien Straffälligenhilfe. Präsentation, Alice Salomon Hochschule Berlin, 8. Oktober 2015, Folie 11 (<https://w>

- ww.dbh-online.de/sites/default/files/doku/vortraege/cornel_resozialisierungsbeitrag-der-freien-straffaelligenhilfe_verzahnung_damp-09-2015_0.pdf: 2023.11.1. 최종검색).
- Informationsdienst Straffälligenhilfe der BAG-S: Ehrenamt in der Freien Straffälligenhilfe(<https://www.der-paritaetische.de/alle-meldungen/informationsdienst-straffaelligenhilfe-der-bag-s-ehrenamt-in-der-freien-straffaelligenhilfe/>: 2023.11.1. 최종검색).
- Inmates to Entrepreneurs 홈페이지 - CORRECTIONAL FACILITY BOOT CAMPS 소개 (<https://inmatestoentrepreneurs.org/programs/eight-week-course/> 2023. 12. 15. 최종검색)
- MINNCOR. (2017). FY17 Annual Report. <https://minncorprod.blob.core.windows.net/files/MINNCOR%20Industries%20FY17%20Annual%20Report-Accessible.pdf>.
- MINNCOR. (2020). FY20 Annual Report. https://mn.gov/doc/assets/MINNCOR%20Industries%20FY20%20Annual%20Report_tcm1089-487458.pdf.
-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홈페이지 - About (<https://nationalreentryresourcecenter.org/about-national-reentry-resource-center> 2023. 11. 2. 최종검색)
-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홈페이지 - Adult Reentry & Employment Strategic Planning and Implementation (FY 2016) 제안요청서 (<https://nationalreentryresourcecenter.org/second-chance-act/program-tracks/adult-reentry-employment-strategic-planning-and-implementation> 2023. 11. 2. 최종검색)
-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홈페이지 - Contact (<https://nationalreentryresourcecenter.org/contact-national-reentry-resource-center> 2023. 11. 2. 최종검색)
-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홈페이지 - SCA Program Tracks (<https://nationalreentryresourcecenter.org/second-chance-act/program-tracks> 2023. 11. 2. 최종검색)
- Safer Foundation 홈페이지 - (<https://saferfoundation.org/> 2023. 11. 2. 최종검색)
- Safer Foundation 홈페이지 - 교육훈련 (<https://saferfoundation.org/training-education/> 2023. 11. 2. 최종검색)
- Safer Foundation 홈페이지 - 소개 (<https://saferfoundation.org/about-us/> 2023. 11. 2. 최종검색)

Safer Foundation 홈페이지 - 재진입 지원 및 웰니스 (<https://saferfoundation.org/re-entry-support-wellness/> 2023. 11. 2. 최종검색)

Safer Foundation 홈페이지 - 취업지원 (<https://saferfoundation.org/job-placement/> 2023. 11. 2. 최종검색)

The Federal Bonding Program 홈페이지 - About Us (<https://bonds4jobs.com/about-us> 2023. 11. 2. 최종검색)



Correctional Policy and Intervention to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of Released Prisoners (I)

Kwon, Soojin · Park, Seonghoon · Keum, Yongmyeong ·

Ra, Kwang Hyun · Heo, Hwang

1. Supporting the Reintegration of Released Prisoners in Korea

In Korea, more than 50,000 convicts are released from correctional facilities each year and reintegrate into society, excep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in the past decad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victs who struggle to resettle in society after their release from correctional facilities.

With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various programs are carried out based on relevant laws such as the Act on Execution of Sentences and Treatment of Inmates. These programs include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work and vocational training, social treatment, community service, and social excursions. The goal of these programs is to promote a healthy reintegration into society, successful adaptation, and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In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s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Social Protection Policy Division operates under the Act on Probation to provide support for the rehabilitation of released prisoners. This division collaborates with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and other private institutions to facilitate the social reintegration of the released prisoners. Support programs include accommodation services, emergency assistance, family support services, and employment support services.

2. Policy Implications:

Preparing for the Return to Society

Pre-release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earlier and with enhanced content to better prepare convicts for their return to society. Additionally, a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early stages of the correctional process, rather than just when release is imminent.

Expanding Social Treatment

Isolation during confinement hinders the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of offenders. Long-term convicts require more opportunities and time to rebuild family relationships and reintegrate into society. Therefore, expanding social treatment and halfway houses is desirable to increase their contact with society and help them adjust after their release.

Establishing an Intermediate Sanctions

Returning to society after a long period in correctional facilities can be challenging.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mates with a social environment, such as an office, during their working period in correctional facilities. Private prisons can also be considered for operating this buffer zone.

Reorganization of Laws

To better support the social resettlement of ex-convicts,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existing laws and the probation system. Establishing separate legal basis for supporting ex-convicts will ensure the professionalism of support services, evaluate and improve programs, and establish public-private

cooperation for legal aid welfare.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To prevent recidivism effectively, a cooperative system among relevant agencies, including correctional headquarters, the Ministry of Justice,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and various government bodies, needs to be established.

Securing Professional Manpower

Correctional officers primarily focus on managing convicts within facilities, limiting their ability to support convicts after release. To ensure effective support, specialized personnel in areas like legal advice, economic guidance, medical advice, lifestyle guidance,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should be secured.

Securing Private Resources

Government support alone is limited, so integrating public correctional resources with private resources can increase support for convicted individuals in need. Encouraging companies to hire released convicts by providing incentives and extending national guarantees and insurance for those who demonstrated exemplary behavior during incarceration is essential.

연구총서 23-B-17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Ⅰ)

발행 | 2023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인 | 하태훈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j.re.kr

정가 | 10,000원

인쇄 | 한결엠 02) 6952-0551

I S B N | 979-11-986225-2-5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Ⅰ)

Correctional Policy and Intervention to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of Released Prisoners (Ⅰ)